

최종보고서

#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009. 10

박형수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박형수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전병목 연구위원

2009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요 약

### ■ 연구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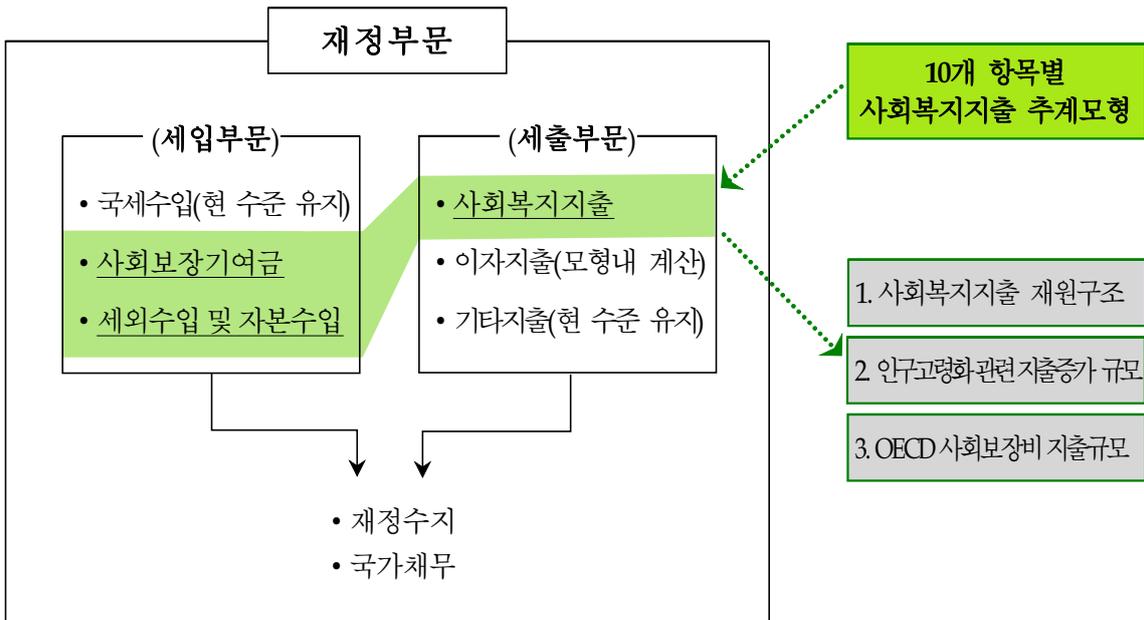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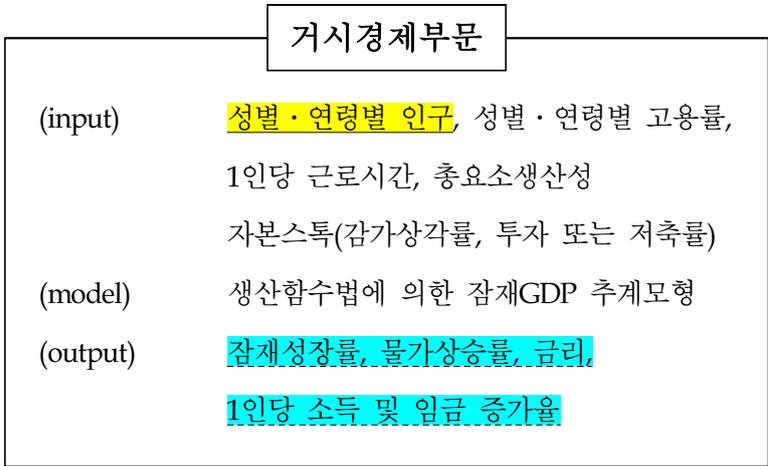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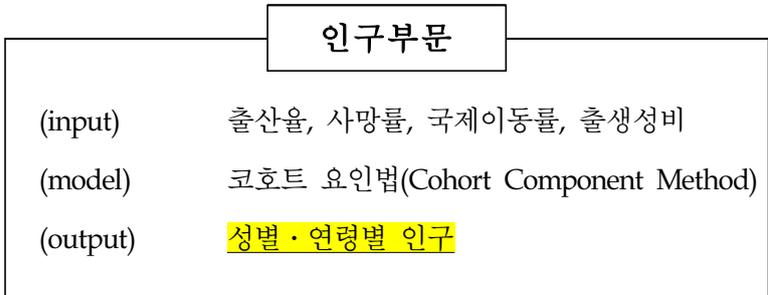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정책 변경이 사회복지 재정(재원구조 및 지출규모) 및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영향을 모두 감안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모형이 필요
-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또는 특정분야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각기 따로 추진되면서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 지출 및 전체 재정전망에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
  - 기존 연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2년 및 2003년), 국민연금연구원(2007년), 한국조세연구원(최준욱·전병목, 2003년), KDI(최경수 외, 2003), 경제사회연구회(최준욱·전병목, 2004년 및 2005년),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 2006년, 2007년 및 2008년) 등
- 다만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류덕현, 2006년)의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연구에서는 인구-거시경제-재정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이들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을 개발하였으나, 사회복지지출 모형은 세분화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한계

### ■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모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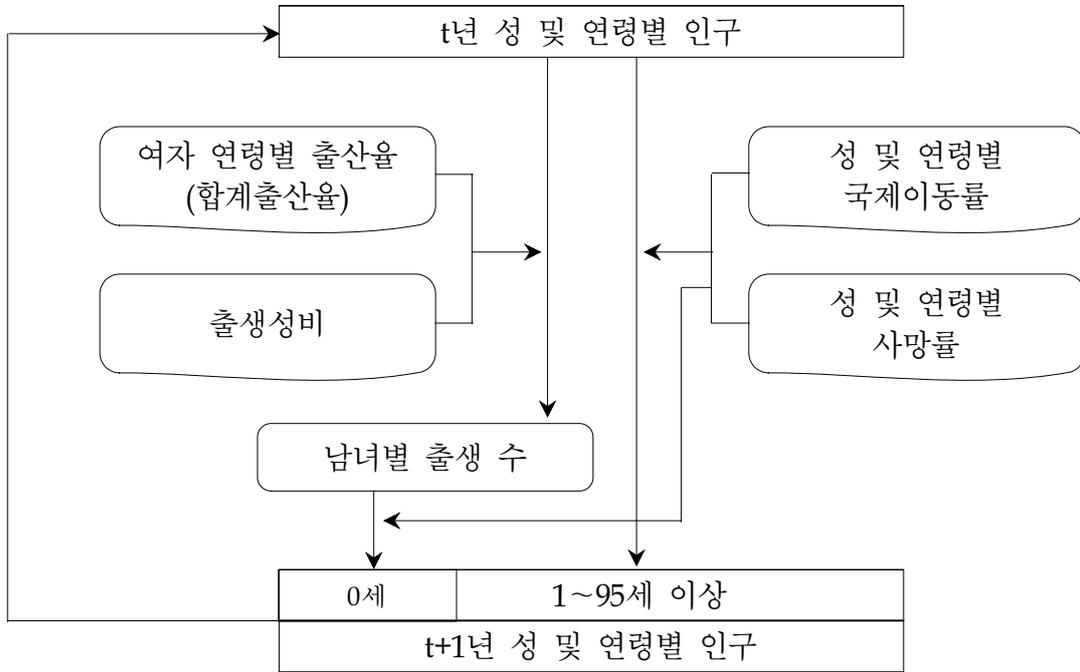
-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류덕현, 2006년)의 『한국의 장기재정모형』을 통해 개발된 인구-거시경제-재정부문을 모두 통합한 장기재정모형을 기본으로 함
- 동일한 성별·연령별 인구추계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적용하여 10개 항목별 사회복지지출 등 2050년까지 통일되게 재정추계

- 10개 항목별 사회복지지출 간 체계적으로 연계된 재정추계
  -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초생보(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서로 연계되어 추계
  -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A값,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의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계
  - 의료관련 지출 증가율 연계 : 건강보험, 기초생보(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
  - 공적부조·서비스 관련 증가율 연계 : 최저생계비 및 1인당 생계급여(시설), 교육급여의 품목별 지급액, 보육비 지원 단가,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 기초생보 지급시 기초노령연금 감액
  
- 또한, 본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 및 전체 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tool이 마련됨
  -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리오가 바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장기재정모형이 구축됨
  - 나아가 복지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험률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야 하는지 그 크기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음

■ 모형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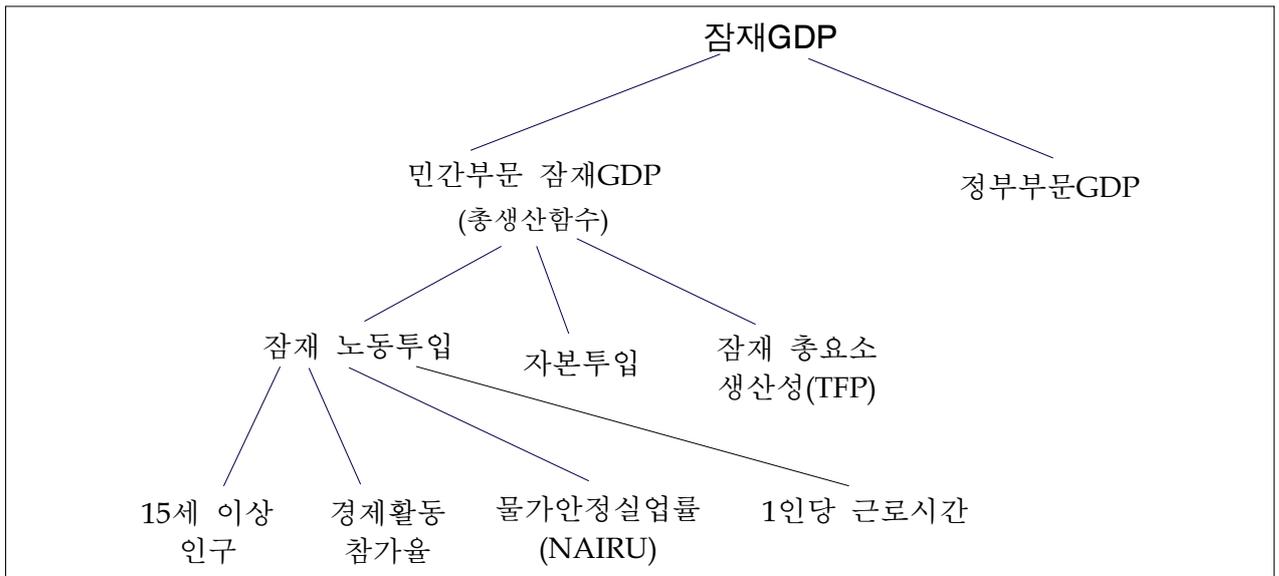
[그림 1] 인구부문 :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그림 2] 거시경제부문 : 잠재GDP 추정구조

$$Y = (A \cdot L)^\alpha K^{(1-\alpha)}$$

단, Y:GDP, A:총요소생산성, L:노동투입, K:자본스톡, α:노동소득분배율



<표 1> 10개 항목별 사회복지지출 추계모형

항목	단계	지출내역
1. 건강보험	input	성별·연령별 인구, 성별·연령별 적용인구비율, 성별·연령별 1인당 급여비(1인당 총진료비, 요양급여비율) 및 증가율, 급여외 지출비율
	model	구성법(component method)
	output	건강보험 총지출액, 재원조달 내역(보험료, 국비, 수지적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	input	65세 이상/미만 인구, 자격별 인구비중, 등급출현율, 이용률, 급여종류별 수가 및 증가율, 국고보조율, 급여외 지출비율
	model	구성법(component method)
	output	급여종류별 지출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액, 재원조달내역(보험료, 국비, 지방비, 수지적자)
3.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계산제도에 의해 제시된 “2008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를 이용	
4. 기초노령연금	input	65세 이상/미만 인구, 수급률, 평균소득(A값) 및 임금증가율, 급여율, 국고보조율
	model	단순계산
	output	기초노령연금 총지출액, 재원조달내역(국비, 지방비)
5. 기초생보	input	성별·연령별 인구, 수급자비율, 현금급여(최저생계비·균등화지수·타법지원액) 및 증가율, 1인당 진료비 및 증가율, 품목별 의료급여 지급액 및 증가율, 1인당 해산·장제급여 및 증가율, 국고보조율
	model	구성법(component method)
	output	급여종류별 지출액 및 기초생활보장 총지출액, 재원조달내역(국비, 지방비)
6.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장기요양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input	총인구, 3가지 적용대상 장애인 비율, 급여종류별·장애인등급별 수가 및 증가율, 연금·장애수당 단가 및 증가율
	model	구성법(component method)
	output	시설별·등급별 지출액 및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액 중증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총지출액
7. 보육	input	0~5세 연령별 인구, 이용비율 및 시설별 비중, 소득계층별 분포, 대상아동별 지원단가 및 증가율, 기타지출 비율
	model	구성법(component method)
	output	차등보육료 지출액 및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 총지출액
8. 고용보험	input	성별·연령별 인구, 취업률 및 피보험률, 보험료율 및 징수율, 평균급여 및 임금증가율, 기타사업 1인당 평균지출액, 기타 지출비율
	model	보험수리모형
	output	실업급여 및 사업비지출액, 고용보험 총지출액, 보험료 및 운용수입, 기금수지 및 적립금
9. 산재보험	input	총인구, 적용률, 급여종류별 수급률·평균지출액 및 임금증가율, 1인당 평균부담액 및 임금증가율
	model	구성법(component method)
	output	급여종류별 지출액 및 산재보험 총지출액, 보험료, 기금수지 및 적립금
10. 특수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2008년 9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추계결과
	사학연금	2008년 11월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추계결과
	군인연금	2006년 비전 2030 수립시 국방부 추계결과

## ■ 인구 및 거시경제 추계결과

### 1. 인구추계 결과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인구부문>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인구를 추계해 본 결과, 통계청의 2006년 11월 추계결과보다 10만~52만명 정도 많음 (오차율은 평균 0.73%)

<표 2> 총인구 추계결과

(단위: 명)

	본 연구	통계청	차이
2009	48,844,513	48,746,693	97,820
2010	48,976,779	48,874,539	102,240
2011	49,099,839	48,988,833	111,006
2012	49,211,322	49,083,184	128,138
2013	49,308,278	49,162,816	145,462
2014	49,389,278	49,227,451	161,827
2015	49,456,737	49,277,094	179,643
2016	49,507,989	49,311,793	196,196
2017	49,542,994	49,332,392	210,602
2018	49,565,570	49,340,350	225,220
2019	49,575,064	49,337,991	237,073
2020	49,573,404	49,325,689	247,715
2030	48,939,039	48,634,571	304,468
2040	46,726,873	46,343,017	383,856
2050	42,865,202	42,342,769	522,433

## 2. 잠재성장률 및 거시경제변수 추계결과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거시경제부문>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잠재성장률 등을 추계해 본 결과, 국민연금재정계산(2008년 11월)에 비해 다소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잠재성장률은 4% 중반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에 기인
- 그러나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으로 1인당 GDP 증가율은 2050년에도 3% 수준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동일기간 중 2.75%에서 1.5%로 하락

<표 3> 거시경제변수 추계결과

(단위: %)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	명목GDP (조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인당 소득 증가율	명목 임금 증가율	회사채 수익률	국채 금리
2009	-1.50	1.10	1035.2	2.64	2.75	0.81	1.57	6.50	5.50
2010	4.00	6.60	1103.5	2.50	2.75	6.31	5.97	6.27	5.92
2015	4.46	7.00	1569.2	2.42	2.59	6.85	6.54	6.65	6.30
2020	2.96	5.32	2086.2	2.29	2.44	5.32	5.36	5.05	4.79
2030	2.09	4.16	3306.1	2.03	2.13	4.38	5.27	3.95	3.74
2040	1.03	2.81	4546.6	1.76	1.81	3.44	4.14	2.67	2.53
2050	0.48	1.99	5739.3	1.50	1.50	2.99	3.60	1.89	1.79

<표 4> 국민연금재정계산과 거시경제 전체 비교

(단위: %)

	본 연구			국민연금재정계산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명목금리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명목금리
2011~2020	4.1	6.2	6.9	4.1	6.1	6.1
2021~2030	2.5	5.4	4.9	2.8	5.3	4.9
2031~2040	1.3	4.6	3.4	1.7	4.9	4.4
2041~2050	0.7	3.8	2.5	1.2	4.6	4.2

## ■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

### 1. 보건·사회복지 지출규모 장기전망

- 보건분야 지출규모는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건의료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16%)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건강보험지원 : 제Ⅲ장 1절의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5) 활용
  - 식품의약품안전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02%)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표 5> 보건분야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보건 의료	건강보험				식품 의약 안전	보건소계			
		총 지출	국고 부담	보험료	재정 적자		총 지출	국고 부담	보험료	재정 적자
2009	0.14	2.72	0.41	2.03	0.28	0.02	<b>2.88</b>	0.57	2.03	0.28
2010	0.15	2.77	0.41	2.03	0.33	0.02	<b>2.94</b>	0.58	2.03	0.33
2015	0.16	3.07	0.41	2.03	0.62	0.02	<b>3.24</b>	0.58	2.03	0.62
2020	0.16	3.38	0.41	2.04	0.93	0.02	<b>3.55</b>	0.58	2.04	0.93
2030	0.16	4.08	0.41	2.03	1.65	0.02	<b>4.26</b>	0.58	2.03	1.65
2040	0.16	4.67	0.40	2.01	2.25	0.02	<b>4.84</b>	0.58	2.01	2.25
2050	0.16	5.12	0.40	2.01	2.71	0.02	<b>5.29</b>	0.58	2.01	2.71

- 사회복지분야 지출규모도 GDP 대비 6.54%에서 2050년 17.0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초생활보장 : 제Ⅲ장 5절의 기초생활보장 재정추계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3) 활용
  - 취약계층지원 : 제Ⅲ장 6절의 장애인장기요양보험(baseline인 시나리오 3),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취약계층지원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1%)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공적연금 : 제Ⅲ장 3절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10절의 특수직역연금 재정추계를 활용.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이므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기금수지 적자분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보육, 가족 및 여성 : 제Ⅲ장 7절의 보육 재정추계 결과 활용
  - 노인·청소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Ⅲ장 2절의 재정추계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3)를, 기초노령연금은 제Ⅲ장 4절의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
  - 노동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각각 제Ⅲ장 8절 및 9절의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노동관련 지출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14%)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성기금이므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보훈·주택·사회복지일반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30%·1.32%·0.04%)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표 6>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소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2009	0.81	0.63	0.18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3	0.01	0.12	0.10	0.01
2010	0.83	0.64	0.18	0.01	0.01	0.00	0.05	0.04	0.01	0.03	0.02	0.01	0.16	0.14	0.02
2015	0.84	0.65	0.18	0.04	0.03	0.01	0.09	0.06	0.02	0.01	0.01	0.00	0.24	0.20	0.04
2020	0.85	0.66	0.19	0.04	0.03	0.01	0.08	0.06	0.02	0.01	0.00	0.00	0.23	0.19	0.04
2030	0.90	0.71	0.20	0.04	0.03	0.01	0.06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40	1.01	0.79	0.22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50	1.09	0.86	0.24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공적연금								보육, 가족 및 여성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소계					
			총지출	국고	총지출	국고	총지출	국고	총지출	국고	지방비	
2009	0.83	0.12	0.20	0.10	0.69	0.20	1.84	0.30	0.34	0.19	0.16	
2010	0.86	0.13	0.20	0.10	0.71	0.22	1.90	0.32	0.39	0.21	0.18	
2015	1.09	0.16	0.20	0.10	0.88	0.42	2.33	0.52	0.42	0.23	0.19	
2020	1.44	0.23	0.20	0.10	1.09	0.63	2.96	0.73	0.51	0.27	0.23	
2030	2.46	0.37	0.22	0.11	1.53	1.11	4.57	1.22	0.42	0.23	0.19	
2040	3.94	0.48	0.26	0.13	1.73	1.30	6.41	1.43	0.33	0.18	0.15	
2050	5.48	0.64	0.31	0.15	1.97	1.49	8.39	1.64	0.28	0.15	0.13	

	노인·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기타	소계				
	총지출	국고	보험료	지방비	재정적자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보험료	재정적자	
2009	0.19	0.02	0.12	0.05	0.00	0.37	0.26	0.10	0.03	0.58	0.31	0.15	0.12	0.00	
2010	0.22	0.03	0.12	0.06	0.02	0.38	0.27	0.11	0.02	0.62	0.32	0.16	0.12	0.02	
2015	0.35	0.03	0.12	0.08	0.12	0.43	0.31	0.12	0.00	0.78	0.34	0.21	0.12	0.12	
2020	0.44	0.03	0.12	0.11	0.19	0.51	0.37	0.14	0.00	0.95	0.40	0.25	0.12	0.19	
2030	0.67	0.03	0.12	0.16	0.37	0.98	0.71	0.27	0.00	1.66	0.74	0.44	0.12	0.37	
2040	0.90	0.03	0.12	0.22	0.54	1.40	1.00	0.39	0.00	2.29	1.04	0.61	0.12	0.54	
2050	1.06	0.03	0.12	0.25	0.66	1.72	1.24	0.48	0.00	2.78	1.27	0.74	0.12	0.66	

	노동									보훈	주택	사회 복지 일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기타	소계						
		총지출	보험료	재정적자		총지출	국고	보험료	재정적자			
2009	0.54	0.39	0.50	-0.11	0.20	1.14	0.20	1.04	-0.11	0.32	1.45	0.04
2010	0.52	0.41	0.51	-0.10	0.19	1.12	0.19	1.03	-0.10	0.31	1.51	0.04
2015	0.50	0.50	0.57	-0.07	0.14	1.14	0.14	1.07	-0.07	0.30	1.32	0.04
2020	0.55	0.56	0.57	-0.01	0.14	1.24	0.14	1.11	-0.01	0.30	1.32	0.04
2030	0.64	0.73	0.59	0.14	0.14	1.51	0.14	1.24	0.14	0.30	1.32	0.04
2040	0.62	0.93	0.65	0.29	0.14	1.69	0.14	1.27	0.29	0.30	1.32	0.04
2050	0.60	1.16	0.68	0.48	0.14	1.90	0.14	1.29	0.48	0.30	1.32	0.04

	사회복지소계				
	총지출	국고부담	지방비	보험료	재정적자
2009	6.64	3.54	0.50	2.70	-0.11
2010	6.87	3.67	0.54	2.73	-0.08
2015	7.40	3.73	0.62	3.01	0.05
2020	8.40	4.05	0.71	3.46	0.18
2030	10.94	4.86	0.86	4.71	0.50
2040	13.59	5.40	1.01	6.37	0.82
2050	16.31	5.89	1.13	8.15	1.14

○ 이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0%p나 증가

<표 7>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보건소계				사회복지소계				
	총지출	국고 부담	보험료	재정 적자	총지출	국고 부담	지방비	보험료	재정 적자
2009	<b>2.88</b>	0.57	2.03	0.28	6.64	3.54	0.50	2.70	-0.11
2010	<b>2.94</b>	0.58	2.03	0.33	6.87	3.67	0.54	2.73	-0.08
2015	<b>3.24</b>	0.58	2.03	0.62	7.40	3.73	0.62	3.01	0.05
2020	<b>3.55</b>	0.58	2.04	0.93	8.40	4.05	0.71	3.46	0.18
2030	<b>4.26</b>	0.58	2.03	1.65	10.94	4.86	0.86	4.71	0.50
2040	<b>4.84</b>	0.58	2.01	2.25	13.59	5.40	1.01	6.37	0.82
2050	<b>5.29</b>	0.58	2.01	2.71	16.31	5.89	1.13	8.15	1.14

## 2. 보건·사회복지지출 재원구조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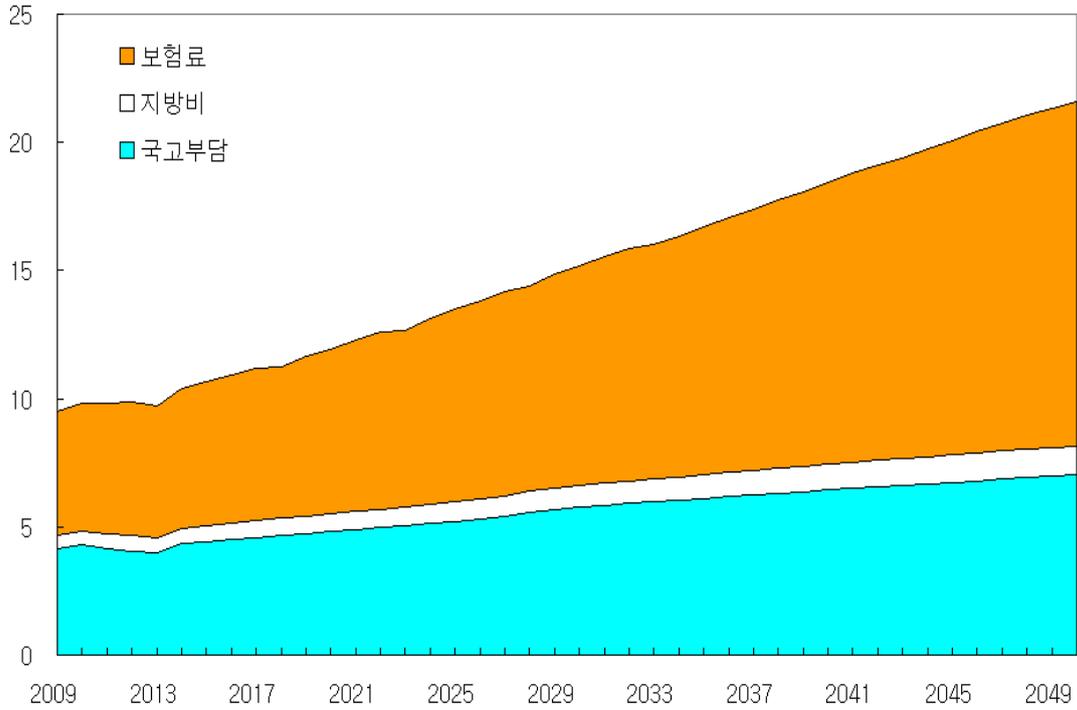
-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재원구조 추계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국고부담이 2.36%p(4.11%→6.47%),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0.63%p(0.50%→1.13%),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5.42%p(4.73%→10.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는 궁극적으로 보험료와 국고부담(5:1의 비율)으로, 산재보험의 재정적자는 전액 보험료로 충당될 것이므로
  - 이들 사회보장보험들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 국고부담 및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은 각각 2.87%p 및 8.59%p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사학연금의 적자는 국고지원이 없으므로 보험료부담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음

	보건 및 사회복지 합계								
	적자보전 이전					적자보전 이후			
	총지출	국고 부담	지방비 <sup>1)</sup>	보험료	재정 <sup>2)</sup> 적자	총지출	국고 부담	지방비 <sup>1)</sup>	보험료
2009	9.51	4.11	0.50	4.73	0.17	9.51	4.16	0.50	4.85
2010	9.80	4.25	0.54	4.76	0.25	9.80	4.31	0.54	4.95
2015	10.64	4.31	0.62	5.04	0.67	10.64	4.43	0.62	5.59
2020	11.95	4.63	0.71	5.49	1.12	11.95	4.82	0.71	6.42
2030	15.20	5.44	0.86	6.74	2.15	15.20	5.78	0.86	8.56
2040	18.44	5.97	1.01	8.38	3.07	18.44	6.44	1.01	10.99
2050	21.61	6.47	1.13	10.16	3.85	21.61	7.03	1.13	13.44

주: 1) 10개 항목의 사회복지지출을 제외한 지방비(2007년 기준 약 1.55% 정도)는 포함되지 않음  
 2) 재정적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을 고정시킬 경우 발생

[그림 3] 보건 및 사회복지지출 재원구조  
(재정적자 보전 후)

(단위 : GDP대비, %)



주: 10개 항목의 사회복지지출을 제외한 지방비(2007년 기준 약 1.55% 정도)는 포함되지 않음

### 3.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증가 규모

- EU에서 2006년 실시한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5개 분야)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비교
  -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에 불과하지만 25개 EU회원국의 평균은 21.7%
  -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이 EU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50년 지출규모가 2004년 대비 13.9%p(EU국가 평균은 4.2%p)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규모는 GDP 대비 22.4%로 EU국가의 26.8% 또는 25.9%에 비해 여전히 낮음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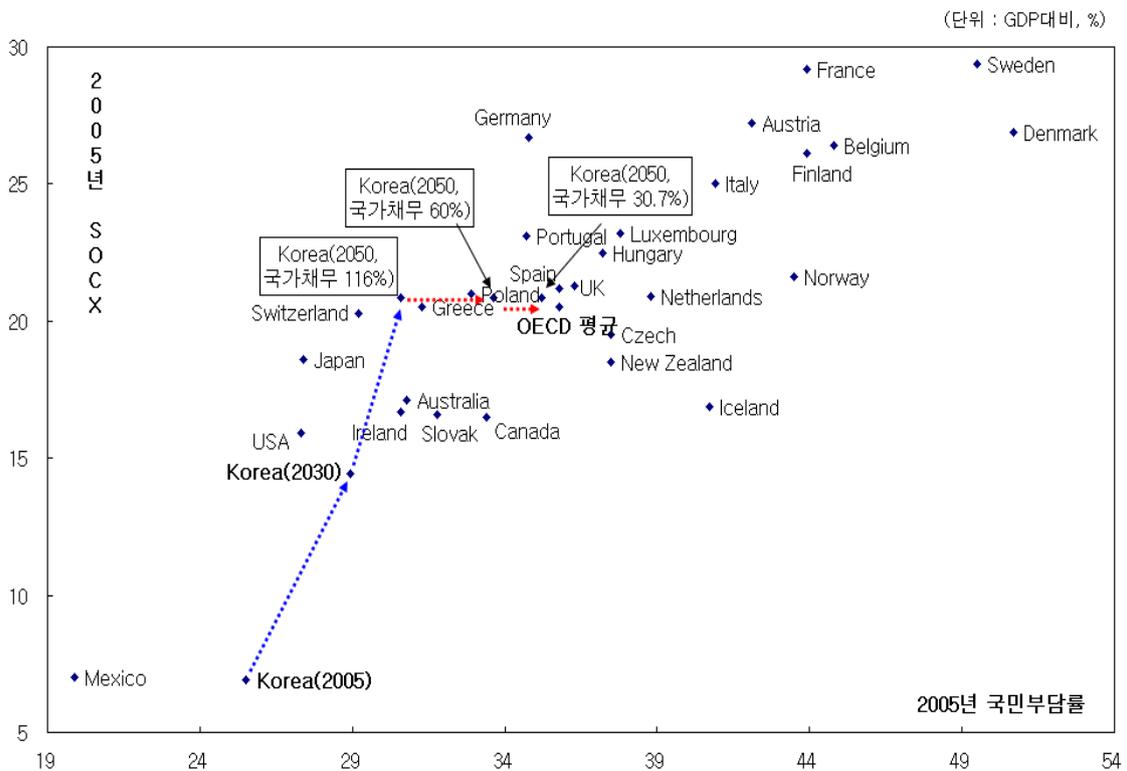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우리나라	1.8	3.8	8.3	2.5	1.8	2.8	0.0	0.7	1.1
EU전체	10.6	1.3	2.2	6.4	1.0	1.6	0.9	0.3	0.7
EU평균	9.5	1.8	3.2	5.6	0.9	1.4	0.9	0.3	0.7

	노동(실업 등)			교육			합계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우리나라	0.8	0.7	1.1	3.4	0.6	0.6	8.5	7.5	13.9
EU전체	0.9	-0.3	-0.3	4.6	-0.7	-0.6	23.4	1.6	3.4
EU평균	0.8	-0.2	-0.2	4.9	-0.9	-0.9	21.7	2.0	4.2

출처: 우리나라는 본 연구결과(교육지출은 박형수 등(2007)), EU는 Economic Policy Committee and the European Commission(2006)

#### 4. OECD 공공사회지출 규모

- 본 연구의 재정추계 결과를 OECD에서 발표하는 사회보장비(SOCX) 통계기준으로 환산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OECD기준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8.6%에서 2050년 20.8%로 12.2%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수치에는 지방자체사업에 의한 지방비 부담 및 국비와의 매칭사업 중 누락분(2007년 기준 약 5.4조원, 2007년 GDP 대비 0.55%) 포함
- 2050년 20.8%는 2005년 OECD국가 평균 공공사회지출 규모(20.5%)와 비슷한 수준
- 2050년 국가채무 116%를 EU국가 상한(60%) 또는 2008년 수준(30.7%)으로 줄이기 위해 조세부담이나 사회보험 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국민부담률은 당초 30.6%에서 33.7% 또는 35.2%로 상승



<표 8> 공공사회지출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1.노령 2.유족	3.근로 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합계	
									계	(지방비 추가)
2009	2.21	0.53	3.15	0.44	0.39	0.35	-	0.99	8.06	8.62
2010	2.33	0.53	3.26	0.48	0.37	0.34	-	0.99	8.30	8.85
2015	2.86	0.61	3.73	0.51	0.32	0.32	-	0.98	9.32	9.87
2020	3.55	0.67	4.13	0.60	0.34	0.34	-	0.99	10.62	11.18
2030	5.62	0.84	5.08	0.51	0.37	0.41	-	1.04	13.87	14.43
2040	7.86	1.03	5.90	0.41	0.37	0.39	-	1.15	17.11	17.67
2050	10.17	1.25	6.52	0.37	0.36	0.38	-	1.23	20.28	20.84

○ 우리나라의 2050년 항목별 공공사회지출 규모 2005년 G-7국가 및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 노령 및 유족, 기타복지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근로무능력, 가족, 실업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항목별 공공사회지출 전망비교

(단위: GDP 대비, %)

	1. 노령	2. 유족	3. 근로 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합계
Canada	3.7	0.4	0.9	6.8	1.0	0.3	0.6	0.4	2.2	16.5
France	10.9	1.8	1.9	7.8	3.0	0.9	1.7	0.8	0.4	29.2
Germany	11.2	0.4	1.9	7.7	2.2	1.0	1.7	0.6	0.2	26.7
Italy	11.6	2.5	1.7	6.8	1.3	0.6	0.5	0.0	0.0	25.0
Japan	8.6	1.3	0.7	6.3	0.8	0.3	0.3	(a)	0.3	18.6
U K	6.1	0.2	2.4	7.0	3.2	0.5	0.3	1.4	0.2	21.3
U S A	5.3	0.8	1.3	7.0	0.6	0.1	0.3	(a)	0.6	15.9
G-7평균	8.2	1.1	1.5	7.1	1.7	0.5	0.8	0.6	0.6	21.9
OECD 평균	7.0	0.7	2.3	6.2	2.0	0.6	1.0	0.4	0.7	20.5
Korea(2005)	1.5	0.2	0.6	3.2	0.3	0.1	0.2	(a)	0.7	6.9
Korea(2030)	5.6		0.8	5.1	0.5	0.4	0.4	-	1.0	14.4
Korea(2050)	10.2		1.3	6.5	0.4	0.4	0.4	-	1.2	20.8

주: 포르투갈은 2004년

## 5.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 이상과 같이 추계된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기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의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
  -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시킬 경우 세출의 지속적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GDP 대비 116%에 달할 전망
  - 2050년 116%라는 장기전망 결과는 EU국가들의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16% 또는 125%와 비슷한 수준
  - 이러한 추계결과는 2007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30.7%로 EU국가 평균 65.9% 또는 59.3%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향후 재정악화 속도가 EU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이러한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라지게 됨을 시사
-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시킨다는 baseline 시나리오하에서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이러한 가정을 변경할 경우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볼 수 있음
  - 목표 ①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EU의 가이드라인인 6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경우
  - 목표 ②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2007년 말 수준인 30.7%로 감축하는 경우
  - 계산결과 목표 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0.38%p씩 2050년까지 총 3.04%p를 인상시켜야 하며, 목표 ②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 인상규모는 매 5년마다 0.576%p씩 2050년까지 총 4.61%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세입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 부담률	통합재정수입			
		국세	지방세		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		소계	국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 자본수입
2009	20.45	15.90	4.55	6.30	2.91	3.27	26.50	<b>25.51</b>	15.90	3.44	6.17
2010	20.04	15.28	4.77	6.37	2.91	3.38	26.40	<b>23.49</b>	15.28	3.48	4.74
2015	20.76	15.64	4.79	6.81	2.96	3.85	27.57	<b>23.65</b>	15.64	3.67	4.35
2020	20.76	15.64	4.79	7.18	2.94	4.24	27.94	<b>23.96</b>	15.64	3.74	4.58
2030	20.76	15.64	4.79	8.18	2.98	5.20	28.94	<b>24.12</b>	15.64	4.02	4.47
2040	20.76	15.64	4.79	9.05	3.09	5.97	29.82	<b>24.08</b>	15.64	4.24	4.20
2050	20.76	15.64	4.79	9.85	3.26	6.59	30.61	<b>23.56</b>	15.64	4.51	3.41

<표 11> 세출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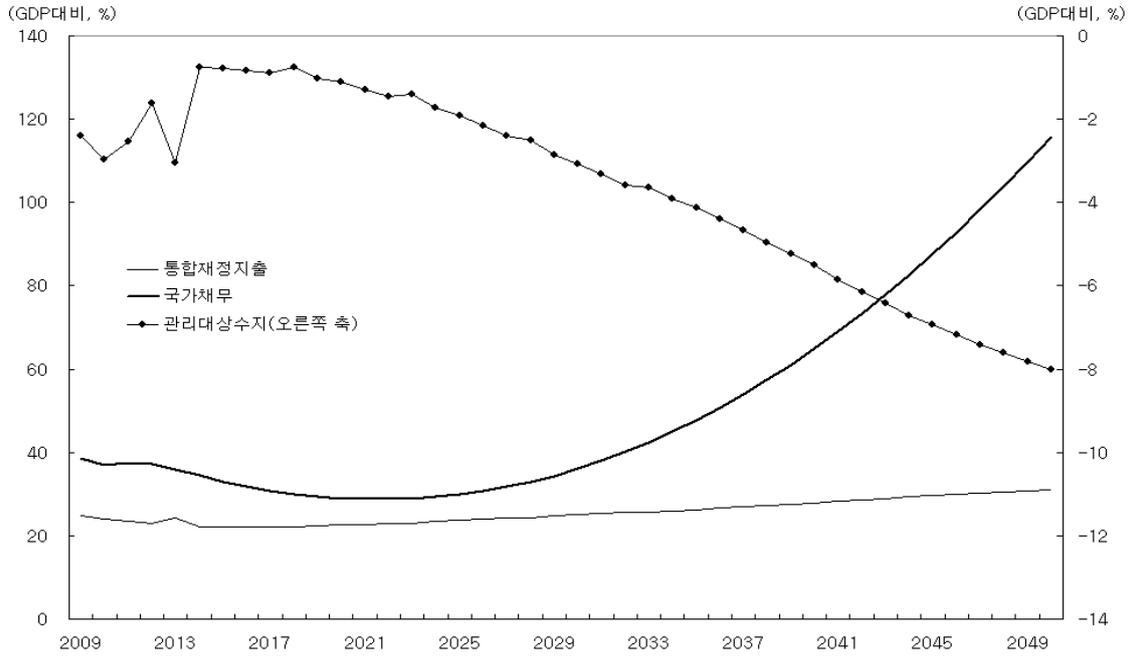
	복지·노동	보건	일반공공행정			기타지출	총지출	통합 재정지출
			소계	이자	기타			
2009	6.54	0.66	4.82	1.54	3.28	15.46	27.48	<b>24.89</b>
2010	6.69	0.66	4.78	1.67	3.12	14.32	26.44	<b>23.93</b>
2015	6.56	0.69	3.80	1.20	2.60	13.60	24.65	<b>22.06</b>
2020	7.41	0.74	3.40	0.80	2.60	13.60	25.15	<b>22.56</b>
2030	9.66	0.86	3.51	0.91	2.60	13.60	27.62	<b>25.04</b>
2040	12.02	0.95	3.92	1.32	2.60	13.60	30.50	<b>27.91</b>
2050	14.51	1.03	4.46	1.86	2.60	13.60	33.60	<b>31.01</b>

<표 12> 재정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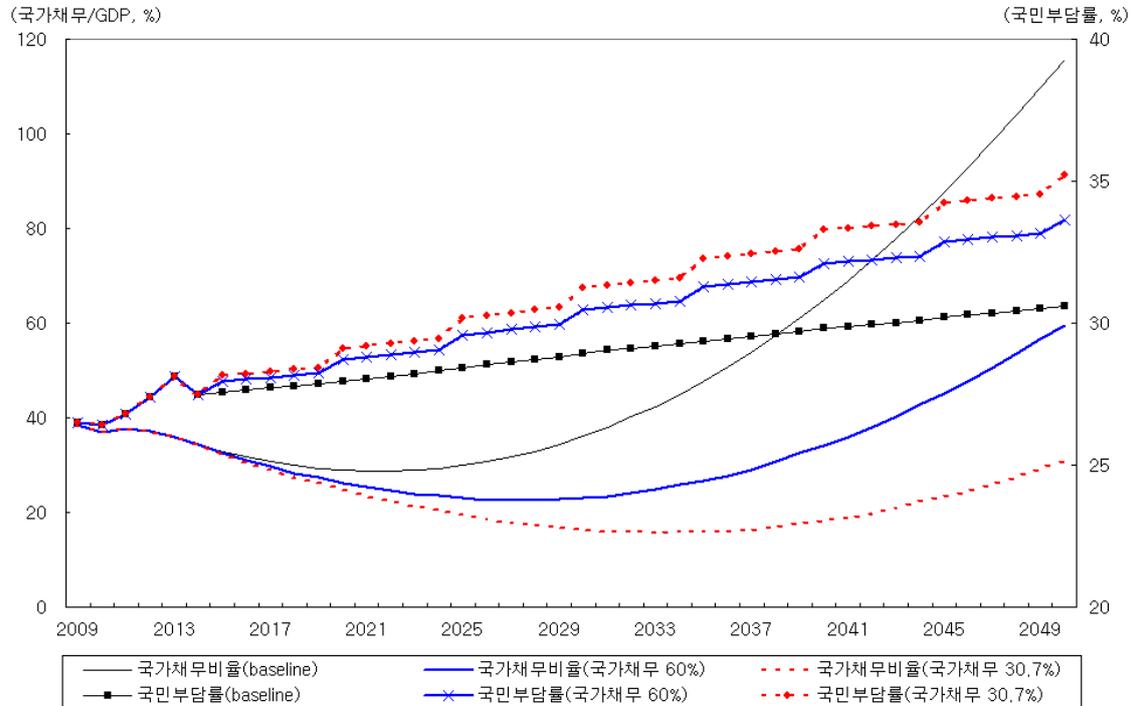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통합재정 수입	통합재정 지출	통합재정 수지	사회보장 기금수지	관리대상 수지	국가채무
2009	25.51	24.89	0.62	3.01	<b>-2.40</b>	<b>38.50</b>
2010	23.49	23.93	-0.43	2.54	<b>-2.97</b>	<b>36.89</b>
2015	23.65	22.06	1.59	2.37	<b>-0.78</b>	<b>32.93</b>
2020	23.96	22.56	1.39	2.50	<b>-1.11</b>	<b>28.95</b>
2030	24.12	25.04	-0.91	2.17	<b>-3.08</b>	<b>36.05</b>
2040	24.08	27.91	-3.83	1.68	<b>-5.51</b>	<b>64.91</b>
2050	23.56	31.01	-7.46	0.56	<b>-8.01</b>	<b>115.62</b>

[그림 4] Baseline 재정추계 결과



[그림 5]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 목 차

<b>I.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b> .....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국내외 연구동향 .....	4
가.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	4
나.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추계 .....	11
다. 일본의 중복지·중부담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중기프로그램” .....	18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5
<b>II. 인구 및 거시부문 모형</b> .....	<b>26</b>
1. 모형의 구조 .....	26
2. 인구부문 모형 .....	30
가. 추계모형 .....	30
나. 추계결과 .....	39
3. 거시경제부문 모형 .....	43
가. 추계모형 .....	43
나. 추계결과 .....	46
4. 재정수입 및 사회복지 이외 지출모형 .....	50
가. 추계모형 .....	50
나. 추계결과 .....	55

<b>III. 사회복지 재정추계모형</b> .....	<b>58</b>
1. 건강보험 .....	58
가. 현행제도 .....	58
나. 추계모형 .....	67
다. 추계결과 .....	78
2. 노인장기요양보험 .....	85
가. 현행제도 .....	85
나. 추계모형 .....	92
다. 추계결과 .....	101
3. 국민연금 .....	112
가. 현행제도 .....	112
나. 추계모형 및 추계결과 .....	117
4. 기초노령연금 .....	121
가. 현행제도 .....	121
나. 추계모형 .....	128
다. 추계결과 .....	129
5. 기초생활보장 .....	132
가. 현행제도 .....	132
나. 추계모형 .....	139
다. 추계결과 .....	149
6. 취약계층 지원 .....	155
가. 현행제도 .....	155
나. 추계모형 .....	165
다. 추계결과 .....	169

7. 보육 .....	171
가. 현행제도 .....	171
나. 추계모형 .....	186
다. 추계결과 .....	189
8. 고용보험 .....	192
가. 현행제도 .....	192
나. 추계모형 .....	197
다. 추계결과 .....	200
9. 산재보험 .....	202
가. 현행제도 .....	202
나. 추계모형 .....	207
다. 추계결과 .....	210
10. 특수직역 연금 .....	213
가. 현행제도 .....	213
나. 추계모형 및 추계결과 .....	227
<b>IV. 구축된 모형의 활용 .....</b>	<b>230</b>
1. 사회복지지출 장기전망 .....	230
2. 장기재정전망 .....	247
3. 정책 시뮬레이션 .....	251
<b>참고문헌 .....</b>	<b>253</b>

## 표목차

<표 I-2-1>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개요 .....	5
<표 I-2-2> 미국 CBO의 장기재정추계(2005년 기준) .....	5
<표 I-2-3> 미국 OMB의 장기재정추계(2007년 기준) .....	7
<표 I-2-4> 영국의 장기재정추계 .....	9
<표 I-2-5> 독일의 장기재정추계 .....	10
<표 I-2-6> 비전 2030 복지지출 확대 목표 .....	11
<표 I-2-7> 비전 실행계획 예시 .....	12
<표 I-2-8>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	13
<표 I-2-9> 시나리오별 비전 2030 장기 재정전망 종합 .....	15
<표 I-2-10> 소비세율 인상폭에 대한 시산결과 .....	19
<표 II-2-1> 출생(률)·사망(률)·국제이동(률) .....	32
<표 II-2-2> 가정별 합계출산율 .....	33
<표 II-2-3> 중위시나리오의 향후 출산율(2005~2050년) .....	34
<표 II-2-4>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	35
<표 II-2-5> 기대수명 및 사망자 수 .....	35
<표 II-2-6> 향후 사망확률 가정(2005~2050년) .....	36
<표 II-2-7> 국제이동 .....	37
<표 II-2-8> 2000~2005년 연평균 국제이동률 .....	37
<표 II-2-9> 총인구 추계결과 .....	42
<표 II-3-1> 거시부문 주요변수 추계 결과 .....	49
<표 II-4-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6개 분야 .....	53
<표 II-4-2> 세입추계 결과 .....	55
<표 II-4-3> 세출추계 결과 .....	57

<표 III-1-1> 의료보장 관련 제도 .....	58
<표 III-1-2> 재원조달 체계 .....	60
<표 III-1-3> 보험급여의 구성 .....	61
<표 III-1-4> 요양급여 지급 내용 .....	62
<표 III-1-5> 보험료 및 보험급여비 추이 .....	63
<표 III-1-6> 인구구조 고령화 전망 .....	64
<표 III-1-7> Elasticity of health care spending per capita with respect to GDP per capita .....	71
<표 III-1-8>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	73
<표 III-1-9> 급여 외 지출비중 추이 .....	76
<표 III-1-10> 추계결과의 중기재정전망과의 비교 .....	79
<표 III-1-11> 시나리오별 건강보험재정 추계결과 .....	81
<표 III-1-12> 건강보험재정 재원조달 추계결과 : 시나리오 5 기준 .....	82
<표 III-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85
<표 III-2-2> 요양등급 판정 기준 .....	86
<표 III-2-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87
<표 III-2-4>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	88
<표 III-2-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	88
<표 III-2-6>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88
<표 III-2-7>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월) .....	89
<표 III-2-8> 등급별 시설급여 .....	89
<표 III-2-9> 등급별 시설급여 .....	89
<표 III-2-10>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결과 .....	91
<표 III-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카테고리별 구분 .....	92
<표 III-2-12> 2008년 12월말 자격별 인구비율 .....	95
<표 III-2-13> 등급출현율 추정결과 .....	96
<표 III-2-14> 급여종류별 이용률 추정결과 .....	97

<표 III-2-15> 급여종류별 수가 추정결과 .....	98
<표 III-2-16> 급여종류별 수가사용률 추정결과 .....	99
<표 III-2-17> 급여종류별 급여율 .....	100
<표 III-2-18> 추계결과의 중기재정전망과의 비교 .....	104
<표 III-2-19>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추계 결과 .....	105
<표 III-2-20>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 결과 .....	107
<표 III-2-2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추계결과 : 시나리오 3 기준 .....	108
<표 III-2-2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추계인구 비율 전망 비교 .....	109
<표 III-3-1> 국민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114
<표 III-3-2>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	115
<표 III-3-3> 국민연금기금 운용 추이 .....	116
<표 III-3-4> 주요 거시변수 가정 .....	117
<표 III-3-5>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GDP 비중) .....	119
<표 III-3-6>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2008재정재계산 기금수익률) .....	120
<표 III-4-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21
<표 III-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122
<표 III-4-3> 기초노령연금 기초지자체별 국고지원 비율 및 분포(2009년) .....	123
<표 III-4-4>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수준(1인수급의 경우) .....	124
<표 III-4-5>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수준(2인수급의 경우) .....	125
<표 III-4-6> 연금액별 수급자 분포(2009년 4월 기준) .....	125
<표 III-4-7> 시도별 수급률 분포(2009년 4월 기준) .....	126
<표 III-4-8>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예산집행 현황(2008년) .....	127
<표 III-4-9> 기초노령연금 지출 전망 .....	130
<표 III-4-10> 기초노령연금(총지출)에 대한 민감도 분석 .....	131
<표 III-5-1> 가구별 최저생계비 .....	133
<표 III-5-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2007.12월 이후 기준) .....	133
<표 III-5-3> 자활소득관련 공제율 .....	133

<표 III-5-4>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134
<표 III-5-5>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134
<표 III-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구성 .....	135
<표 III-5-7> 생계 및 주거급여 수준(2009년 기준) .....	136
<표 III-5-8>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137
<표 III-5-9> 교육급여 수준(2009년 기준) .....	137
<표 III-5-10> 자활급여 수준(2009년 기준) .....	138
<표 III-5-11> OECD 기준 균등화지수 .....	141
<표 III-5-12> 가구규모별 최저생계 .....	141
<표 III-5-13> 추계결과의 중기재정전망과의 비교 .....	152
<표 III-5-14> 시나리오별 기초생보 지출(국비기준) 추계결과 .....	153
<표 III-6-1>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정책 추진내용 .....	155
<표 III-6-2> 아동·청소년활동 지원내용 .....	156
<표 III-6-3> 아동·청소년복지 지원내용 .....	157
<표 III-6-4> 아동·청소년보호 지원내용 .....	158
<표 III-6-5>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여 구성(CRC 기준) .....	159
<표 III-6-6>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용 .....	161
<표 III-6-7>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내용 .....	163
<표 III-6-8> 국민건강보험관련 사업내용 .....	163
<표 III-6-9> 취약계층지원 재정추계 결과 .....	170
<표 III-7-1> 보육료 지원 세부 내용(2009년 기준) .....	172
<표 III-7-2>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2009년 7월 이전) .....	174
<표 III-7-3>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2009년 7월 이후 기준) .....	174
<표 III-7-4> 정부지원 및 미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7월 이전) .....	175
<표 III-7-5> 정부지원 및 미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7월 이후) .....	176
<표 III-7-6>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	177
<표 III-7-7>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	178

<표 III-7-8> 방과후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	178
<표 III-7-9>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	179
<표 III-7-10>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2009년 기준) .....	180
<표 III-7-11> 국공립·법인시설 지원 내용(2009년 기준) .....	181
<표 III-7-12> 장애인 보육시설 지원내용(2009년 기준) .....	182
<표 III-7-13>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내용(2009년 기준) .....	182
<표 III-7-14>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용(2009년 기준) .....	184
<표 III-7-15>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용(2009년 기준) .....	185
<표 III-7-16> 2009년 기준 정부지원 단가 .....	188
<표 III-7-17> 보육,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 추계결과 .....	190
<표 III-8-1>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이 .....	192
<표 III-8-2>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추이 .....	193
<표 III-8-3> 실업급여별 지원내용 .....	195
<표 III-8-4> 고용보험 가입자/재정수지 추이 .....	197
<표 III-8-5> 고용보험 장기재정 추계결과 .....	201
<표 III-9-1>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추이 .....	202
<표 III-9-2> 2009년도 산재보험 요율 .....	203
<표 III-9-3> 산재보험 가입자/재정수지 추이 .....	206
<표 III-9-4> 산재보험 장기재정 추계결과 .....	212
<표 III-10-1> 기여금 및 부담금의 종류 .....	214
<표 III-10-2> 공무원연금 가입자 추이 .....	215
<표 III-10-3> 공무원연금 급여의 구분 .....	216
<표 III-10-4> 공무원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217
<표 III-10-5> 공무원연금재정 운영 현황 .....	218
<표 III-10-6>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	220
<표 III-10-7> 사학연금 가입자 추이 .....	220
<표 III-10-8> 사학연금 급여의 구분 .....	221

<표 III-10-9> 사학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222
<표 III-10-10> 사학연금재정 운영 현황 .....	224
<표 III-10-11> 복무기간별 신규 퇴직자 추이 .....	225
<표 III-10-12> 군인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226
<표 III-10-13> 군인연금재정 운영 현황 .....	227
<표 III-10-14> 공무원연금 향후 재정전망 .....	228
<표 III-10-15> 특수직역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 .....	229
<표 IV-1-1>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	230
<표 IV-1-2> 보건분야 재정추계 결과 .....	234
<표 IV-1-3>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 .....	235
<표 IV-1-4>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1) .....	240
<표 IV-1-5>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2) .....	241
<표 IV-1-6> 장기재정전망의 국제비교 .....	242
<표 IV-1-7> OECD 사회보장비(SOCX) 통계 포괄범위 .....	243
<표 IV-1-8> OECD 공공사회지출(SOCX) 전망결과 .....	245
<표 IV-1-9> OECD 공공사회지출의 국제비교 : 2005년 기준 .....	246
<표 IV-2-1>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 .....	249
<표 IV-2-2> 장기재정추계 결과의 국제비교 .....	250
<표 IV-3-1> 정책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	252

## 그림목차

[그림 I-2-1] 6가지 시나리오하에서의 연방채무잔고/GDP 비율 추계결과 .....	6
[그림 I-2-2] 2가지 시나리오하에서의 연방채무잔고/GDP 비율 추계결과(2007년 기준) ...	8
[그림 I-2-3] 2가지 세입전제에 대응한 채무잔고/GDP 비율 추계결과(2005년 기준) ...	11
[그림 I-2-4] 비전2030 추진시 재정소요 비교 .....	13
[그림 I-2-5]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과 사회보장지출 .....	14
[그림 I-2-6] 전액 국채로 충당할 경우 재정전망 .....	16
[그림 I-2-7] 전액 조세로 충당할 경우 재정전망 .....	16
[그림 I-2-8] 전액 조세와 국채로 나누어 충당할 경우 재정전망 .....	17
[그림 I-2-9] 사회보장급부에 대응한 안정적 재원확보 개념도 .....	18
[그림 II-1-1] 모형 전체의 흐름도 .....	27
[그림 II-1-2]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흐름도 .....	28
[그림 II-1-3] 잠재GDP 추정 구조 .....	29
[그림 II-2-1] 가정별 합계출산율 추이 .....	33
[그림 II-2-2] 총인구 추계결과 .....	39
[그림 II-2-3] 인구 피라미드 추정결과 .....	40
[그림 II-3-1] 잠재성장률 추계결과 .....	47
[그림 II-3-2] 1인당 소득 및 명목임금 증가율 추계결과 .....	48
[그림 II-4-1]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추이 .....	52
[그림 III-1-1] 건강보험 적용체계 .....	59
[그림 III-1-2]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63
[그림 III-1-3] 건강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68
[그림 III-1-4]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 추이 .....	69

[그림 Ⅲ-1-5] 2008년도 성별·연령별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 .....	69
[그림 Ⅲ-1-6] 시나리오별 건강악화 기간 .....	73
[그림 Ⅲ-1-7]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 추이 .....	74
[그림 Ⅲ-1-8] 2008년도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 .....	75
[그림 Ⅲ-1-9]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 추이 .....	75
[그림 Ⅲ-1-10] 2008년도 성별·연령별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 .....	76
[그림 Ⅲ-1-11] 시나리오별 건강보험재정 추계결과 .....	80
[그림 Ⅲ-1-12] 건강보험재정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83
[그림 Ⅲ-1-13] 건강보험재정수입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84
[그림 Ⅲ-2-1]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 .....	90
[그림 Ⅲ-2-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93
[그림 Ⅲ-2-3] 급여종류별 이용자 수 추계결과 .....	101
[그림 Ⅲ-2-4] 급여종류별 급여비 추계결과(시나리오 3 기준) .....	101
[그림 Ⅲ-2-5]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 결과 .....	102
[그림 Ⅲ-2-6]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추계 결과 .....	103
[그림 Ⅲ-2-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에 대한 추정치 .....	110
[그림 Ⅲ-2-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110
[그림 Ⅲ-2-9]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111
[그림 Ⅲ-5-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	132
[그림 Ⅲ-5-2]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흐름 .....	134
[그림 Ⅲ-5-3] 2008년 성별·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 .....	140
[그림 Ⅲ-5-4] 기초생보(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 재정추계 흐름도 .....	143
[그림 Ⅲ-5-5] 기초생보(의료급여) .....	145
[그림 Ⅲ-5-6] 기초생보(교육급여) .....	146
[그림 Ⅲ-5-7] 기초생보(해산급여·장제급여) .....	148
[그림 Ⅲ-5-8] 기초생보 수급자 수 추계결과 .....	149
[그림 Ⅲ-5-9] 교육·해산·장제 급여 수급자 수 추계결과 .....	149

[그림 Ⅲ-5-10] 시나리오별 의료급여 지출 추계결과 .....	150
[그림 Ⅲ-5-11] 기타 기초생보 지출 추계결과 .....	150
[그림 Ⅲ-5-12] 시나리오별 기초생보 지출총액 추계결과 .....	151
[그림 Ⅲ-5-13] 기초생보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154
[그림 Ⅲ-6-1]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166
[그림 Ⅲ-6-2] 중증장애인연금 재정추계 흐름도 .....	167
[그림 Ⅲ-6-3] 장애수당 재정추계 흐름도 .....	169
[그림 Ⅲ-7-1]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재정추계 흐름도 .....	186
[그림 Ⅲ-7-2]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 전망 .....	187
[그림 Ⅲ-7-3]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추계결과 .....	189
[그림 Ⅲ-7-4] 보육,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 추계결과 .....	189
[그림 Ⅲ-7-5] 보육관련 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191
[그림 Ⅲ-8-1] 고용보험 사업체계 .....	194
[그림 Ⅲ-8-2] 고용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198
[그림 Ⅲ-9-1] 산재보험 보상 과정 .....	204
[그림 Ⅲ-9-2] 산재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208
[그림 Ⅲ-9-3] 산재보험재정수입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211
[그림 Ⅳ-1-1] 사회복지지출 총규모 및 재원구조 추계결과 .....	233
[그림 Ⅳ-1-2] OECD 공공사회지출 규모 추계결과 .....	244
[그림 Ⅳ-2-1]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 .....	248

# I.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의료 등 사회복지 재정 및 경제성장률 등의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립시 필요한 체계적인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
  - 2006년 8월 31일 발표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에서도 향후 30년간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재원조달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부족하였다는 평가
  
-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또는 특정 분야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수 발표되고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2년, 2003년) : 인구구조 및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의 변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 한국조세연구원(최준욱·전병목, 2003년)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지출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전망
  - KDI(최경수 외, 2003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재정·금융·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경제사회연구회(최준욱·전병목, 2004년)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경사연 협동연구과제) :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별 인구전망 및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의료

및 복지수요·주거수요·거시경제·재정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각각에 대해 나누어 분석

- 경제사회연구회(최준욱 편, 2005년)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 인구고령화가 재정수입·복지지출·농업지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분석
-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 2006년) 『조세부담 및 재정수요 전망』(조세개혁실무기획단 용역보고서) : 향후 30년간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전망

□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각기 따로 추진되면서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 지출 및 전체 재정전망에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이용하였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전제가 의료지출 등 고령화에 따른 다른 복지재정 지출 항목의 중장기 지출추계에 이용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기존 연구결과들만으로는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 지출 및 전체 재정전망이 불가능**
-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는 인구추계의 변화 또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제 변경에 따른 재정재추계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 다른 복지재정 지출추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조차 없는 실정

□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거시경제·재정(사회복지 지출 포함) 3개 부문을 통합하여 특히 **3개 부문 간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의 개발에는 이르지 못함

- 기존 연구들은 인구부문과 거시경제부문 또는 인구부문과 재정부문 등과 같이 2개 부문만을 포괄하는 부분모형으로 분석
  -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인구고령화가 잠재성장률 또는 분야별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였을 뿐, 잠재성장률 및 분야별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없었음

- 한편, 기존 연구들은 인구고령화나 잠재성장률 저하가 복지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분석만 가능할 뿐,
  -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 자체가 인구 및 인구구조 나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정책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할 수 없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부문·거시경제부문·재정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전망이 가능하고, 이들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함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 및 전체 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tool이 마련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복지재정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험률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야 하는지 그 크기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음
  - 또한 보육 등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 자체가 인구 및 인구구조 나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정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

## 2. 국내외 연구동향

### 가.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향후 30~50년 정도의 장기재정전망(사회복지 재정지출 포함)을 정부당국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인구·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EU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2001년, 200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음
  - 특히 2003년 11월, The Council(Ecofin)의 결정에 따라 25개 회원국들에 대해 공통된 방법을 적용하여 2050년까지의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하기 위해 EPC Working Group on Ageing Population(AWG) 구성
    - 2006년 2월, The impact of ageing on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s for the EU 25 Member States on pensions, health care, long-term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 transfers(2004~2050) 발표
-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목적 및 추계기간
  - 장기재정추계 목적 : 인구고령화에 수반하는 세출 증가에 따른 재정예의 영향을 분석해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검증
  - 추계기간 : 향후 2세대(50년간)~3세대(75년간) 정도

<표 1-2-1> 주요국의 장기재정추계 개요

국가	추계기간	추계의 공표시기 등
미국(CBO)	45년간	2003년 이후 2년에 1회 공표
미국(OMB)	75년간	1996년 이후 매년 1회 공표
영국(장기재정보고)	50년간	2002년 이후 매년 1회 공표
독일(장기재정추계)	45년간	2005년 6월 공표 이후 2008년에 2차 공표
EU위원회(EU가맹 25국)	45년간	2006년 이후 매년 1회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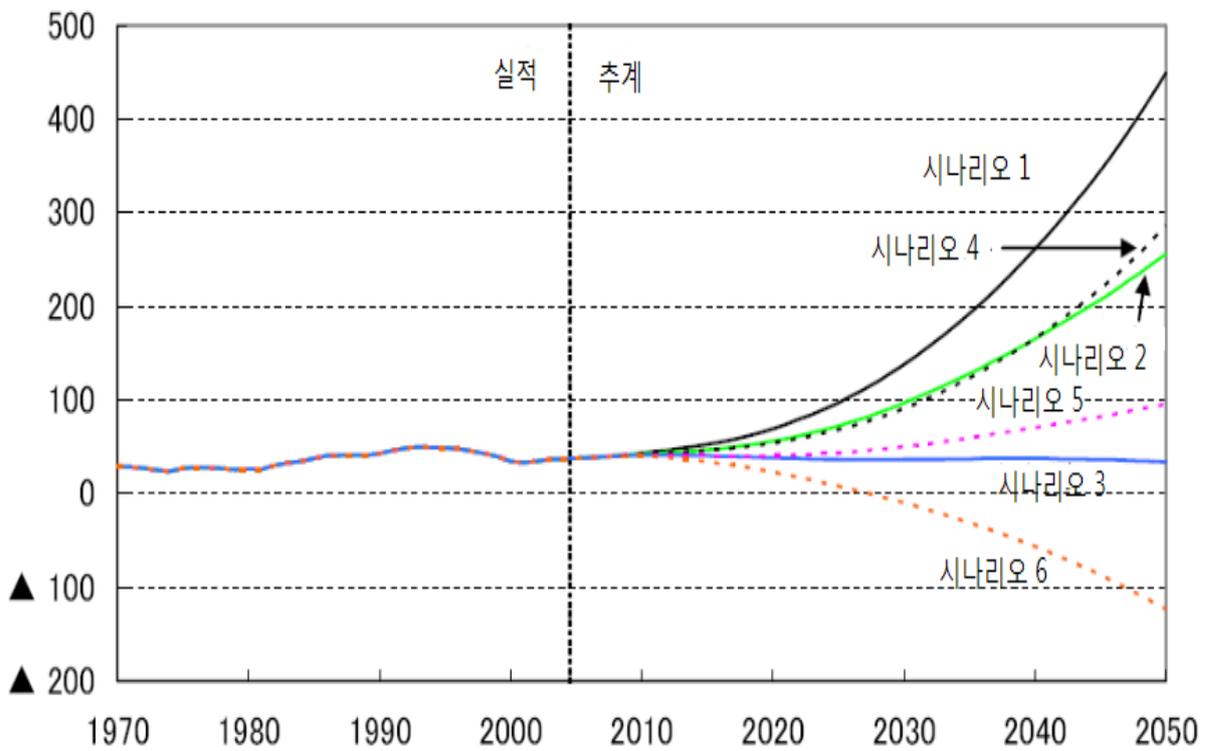
<표 1-2-2> 미국 CBO의 장기재정추계(2005년 기준)

작성주체	연방의회예산국(CBO)
목적·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계대상은 연방정부의 재정상황</li> <li>법적 근거에 기초를 두는 것은 아님. 의회 등에 정보 제공을 위해 2003년 이후 2년에 1회 공표(2007년 12월의 것이 최신)</li> </ul>
인구동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의 장래추계에 이용되는 인구추계를 사용</li> </ul>
경제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상승률 1.6%(실질)</li> <li>장기금리: 3.2%(실질)</li> </ul>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 장래추계에 근거해 고령화에 따라 증가</li> <li>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1인당 비용의 신장률이 ① 1인당 GDP성장률+2.5%, ② 1인당 GDP성장률+1.0%, ③ 1인당 GDP성장률과 같은 수준의 3방법으로 추계</li> <li>기타 세출: GDP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3방법의 추계) → 세출 전체에 대해 3방법(① 높고 ② 중간 정도 ③ 낮은)의 시나리오를 설정</li> </ul>
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낮은 시나리오: 세입의 대 GDP비가 18.3%(과거 30년간 평균)로 일정 (참고: 2006년도 세입의 대 GDP비는 18.4%)</li> <li>② 높은 시나리오: 세입의 대 GDP비가 상승해 2050년에 23.7%에 이름</li> </ul>
추계결과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방법의 세출×2방법의 세입으로 합계 6방법의 시나리오를 제시</li> <li>중간 정도의 세출(의료비 증가가 일정 정도 억제)-낮은 세입(현행 GDP비와 동일한 정도)의 시나리오로 채무잔고 대 GDP비가 2050년도에 250%에 이름</li> </ul>

[그림 1-2-1] 6가지 시나리오 하에서의 연방채무잔고/GDP 비율 추계결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세출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세입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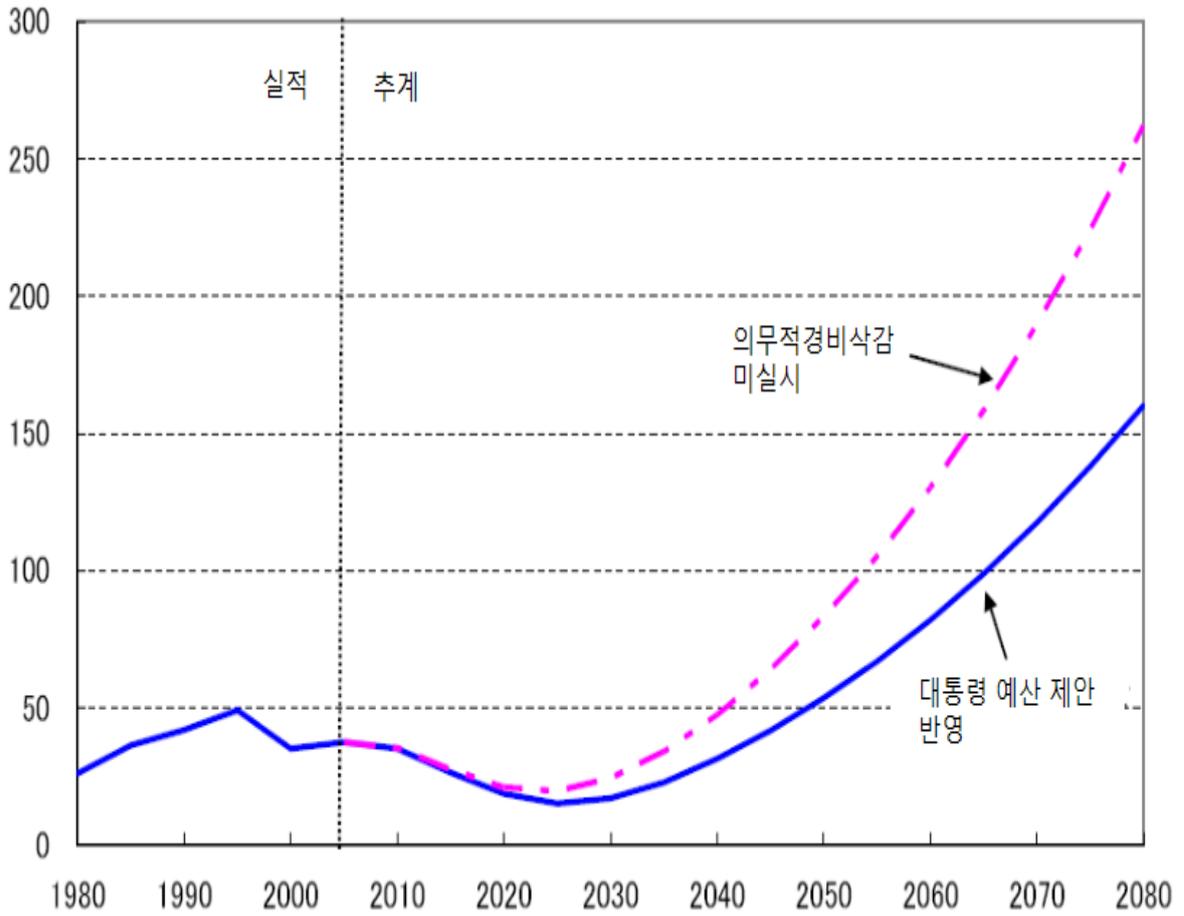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05년 12월

<표 1-2-3> 미국 OMB의 장기재정추계(2007년 기준)

작성주체	연방정부 대통령 행정관리예산국(OMB)
목적·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계대상은 연방정부의 재정상황</li> <li>• 법적 근거에 기초를 두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예산제안을 포함시킨 추계로서 1996년 이후 매년 예산교서로 공표(2009년 2월의 것이 최신)</li> <li>• 대통령의 예산제안에 포함될 의무적 경비 삭감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영향 등도 추계</li> </ul>
인구동태	• 연금의 장래추계에 이용되는 인구추계를 사용
경제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 GDP성장률 2.5%(실질), 노동생산성 상승률 2.3%(실질)</li> <li>• 장기금리 : 3.0%(실질)</li> <li>• 물가상승률 : CPI상승률 2.3%, GDP디플렉터 상승률 2.0%</li> </ul>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 장래추계에 근거해 고령화에 따라 증가</li> <li>• 의료 :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1인당 비용 신장률이 1인당 GDP성장률+1% 가정</li> <li>• 기타 : 대통령 예산제안에 근거해 연장하여 장기적으로는 GDP성장률 등에 연동</li> </ul>
세입	• 세입의 GDP 대비가 18.3%(과거 40년간 평균)로 일정하다는 가정
추계결과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잔고 GDP 대비는 2060년 82%, 2080년 160%</li> <li>• 대통령 예산제안의 의무적 경비 삭감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잔고 GDP 대비는 2060년 130%, 2080년 262%</li> </ul>

[그림 1-2-2] 2가지 시나리오하에서의 연방채무잔고/GDP 비율 추계결과(2007년 기준)  
 의무적 경비 삭감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vs 대통령의 예산제안을 반영한 bas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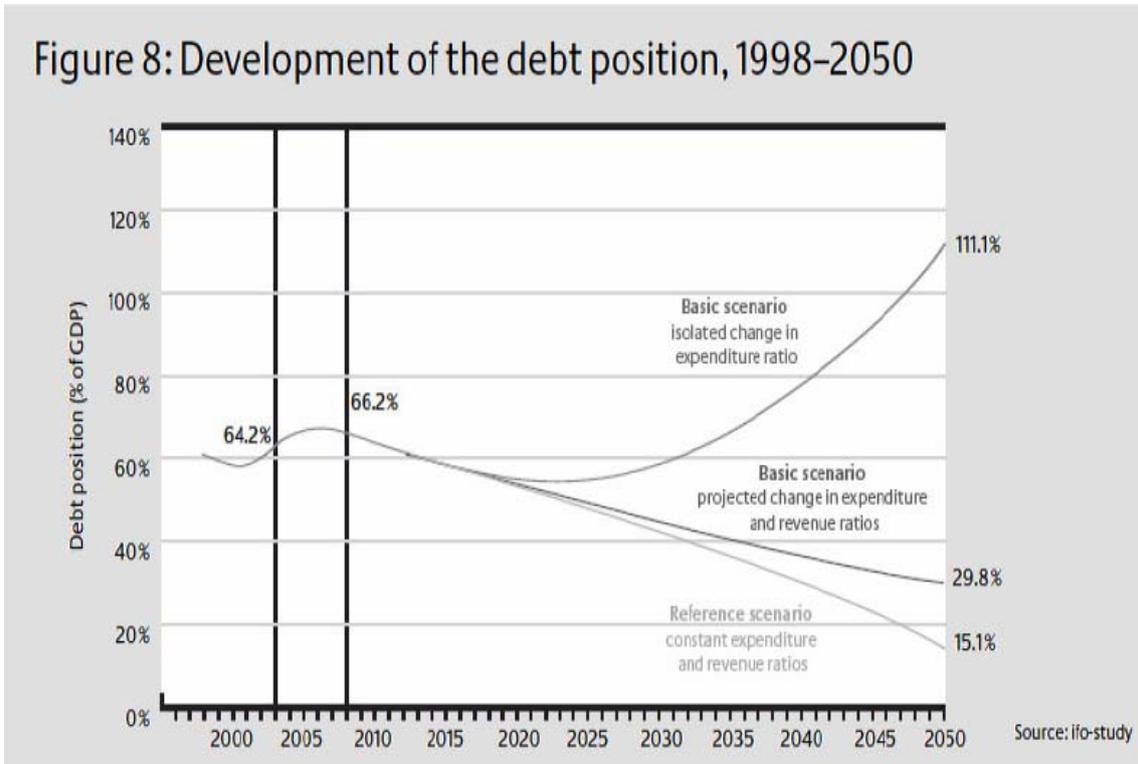
**<표 1-2-4> 영국의 장기재정추계**

작성주체	재무성
목적·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의 재정안정화규율(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에 근거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30년간의 재정전망을 예산에 맞추어 공표</li> <li>•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50년간의 장기재정추계(Long-term public finance report)를 pre-budget report의 부속자료로 2002년부터 매년 공표(2008년 3월 공표의 것이 최신)</li> <li>• 추계대상은 일반정부의 재정상황</li> </ul>
인구동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리청의 인구 추계를 사용</li> </ul>
경제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 노동생산성 상승률 2.0%(실질)</li> <li>• 장기금리 : 3.0%(실질)</li> </ul>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 연금수리청의 추계를 사용</li> <li>• 기타 : 세출항목별로 연령별 일인당 세출액을 추계해 이를 노동생산성 상승률 등으로 연장한 다음, 매년도의 연령별 인구와 곱해 전체 세출액을 추계</li> </ul>
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항목별로 연령별 일인당 부담액을 추계해 이를 노동생산성 상승률로 연장한 다음, 매년도의 연령별 인구와 곱해 전체 세입액을 추계</li> </ul>
추계결과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에 수반해 세출의 GDP 대비는 50년간에 +4% 정도 증가. 한편, 세입의 GDP 대비는 +3% 정도 증가해 수지는 악화</li> <li>• 순채무 잔고 GDP 대비 40% 유지하는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은 안정적</li> </ul>

**<표 1-2-5> 독일의 장기재정추계**

작성주체	연방재무성(IFO연구소(독일 6대 경제연구소 중 1개)에 위탁)
목적·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감안한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5년 6월에 처음으로 공표(이후 2008년에 2번째 장기재정 보고서 공표). 법적 근거에 기초를 두는 것은 아님</li> <li>• 추계대상은 일반정부의 재정상황</li> </ul>
인구동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사용</li> </ul>
경제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 노동생산성 상승률 1.75%(실질)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 2개의 전제(2050년의 실업률에 대해 ① 3.3%, ② 5.9%)를 설정</li> <li>• 장기금리 : 3.5%(실질)</li> </ul>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의료·개호·교육 : 인구구성 변화의 영향을 근거로 해 개별적으로 추계 (2050년까지의 세출 대 GDP비의 변화 : 연금 +3%, 의료·개호 +2%, 교육 △0.5%)</li> <li>• 실업급여 : 실업급여 제도의 개혁과 실업률의 저하를 포함시켜 추계</li> <li>• 기타 세출 : 대 GDP비 일정</li> </ul>
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2방법의 케이스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입의 대 GDP비 일정한 케이스</li> <li>② 사회보험료가 급부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인상되는) 케이스(보험료율이 2012년의 38.7%에서 2050년에는 45.5%가 되는 추계)</li> </ul> </li> </ul>
추계결과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의 GDP 대비 일정한 경우 2050년 채무잔고 GDP 대비는 111%</li> <li>• 사회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2050년 채무잔고 GDP 대비는 30% 정도</li> </ul>

[그림 1-2-3] 2가지 세입전제에 대응한 채무잔고/GDP 비율 추계결과(2005년 기준)



#### 나.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추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31일 발표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에서 향후 30년간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음
  -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5년 GDP 대비 8.6% 수준에서 2030년에는 OECD국가의 2001년 평균 수준인 21%까지 대폭 확대시키는 게 목표

<표 1-2-6> 비전 2030 복지지출 확대 목표

	2005	2020	2030
공공사회지출비율 (GDP 대비, %)	8.6	2001 美·日 수준 (14.8~16.9)	2001 OECD 평균 (21.2)

- 비전과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방안을 제시하였고, 단계별 목표 지표를 설정하여 비전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을 수립

<표 1-2-7> 비전 실행계획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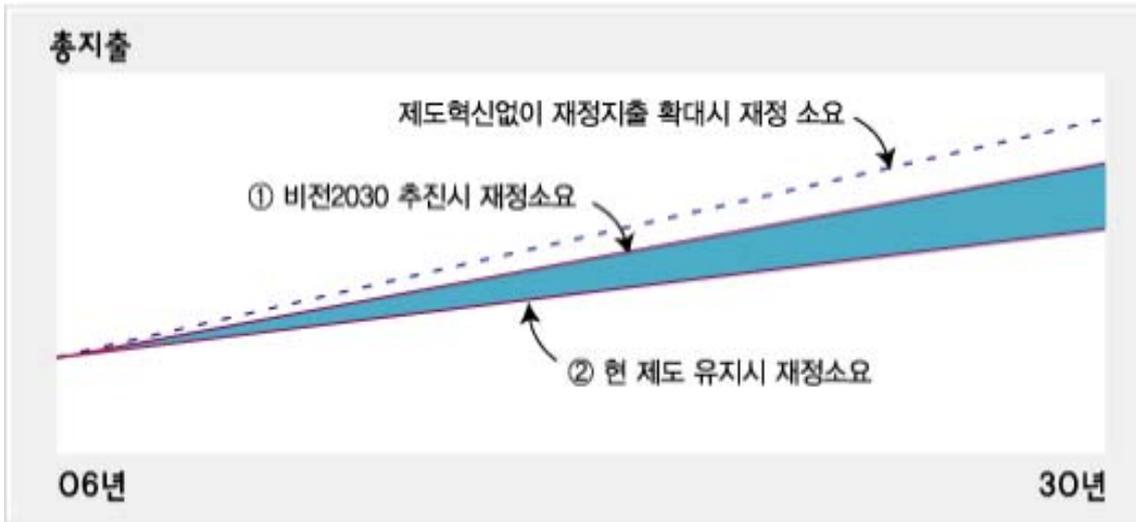
전략	항목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 표						근거/국제비교	
				지표명	'95	'00	'05	'10	'20		'30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보험	노후소득 보장	· 전국민 연금수급 · 연금개혁	· 공적연금 수급률(%)	1.1	6.6	16.6	30.4	47.0	65.5	미국 93, 영국 91, 일본 84('03)
	사회서비스	출산·육아 부담 완화	· 만4세 무상보육·교육 · 차등보육료 지원	· 육아서비스 수혜율(%)	20	31	47	65	67	74	· '10: 저출산대책 · '20: 만4세 무상보육·교육 · '25: 유아 100% 수혜
		교육양극화 해소	· 저소득층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 · 방과후 활동간 연계	· 방과후 활동 수혜율(%)	36 (96)	40	32	67	72	75	· 방과후 학교 참여율(교육부 계획) 반영 ('05)31→('10)65→('20)70%

자료: 『함께가는 비전 2030』, 정부, 민간합동작업단 '06. 8.

□ 그러나 지출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자원조달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부족하였다는 평가

- 비전 2030 추진시 추가 재정소요는 2030년까지 향후 25년간 경상가격 기준으로 약 1,100조원(GDP 대비 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이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원 수준
  - 추가 재정소요는 비전 2030 추진시 재정소요(①)에서 현 재정운용 유지시 재정소요(②)를 차감하여 추계

[그림 1-2-4] 비전2030 추진시 재정소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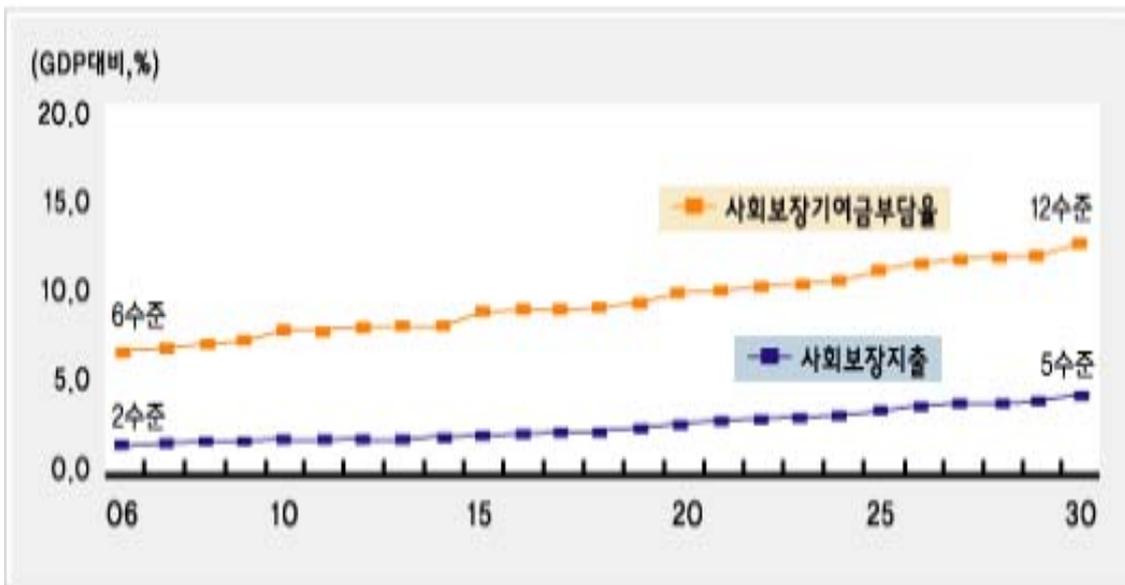
- 사회보장부담률은 보험료 인상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현재 6%에서 2030년 12%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 일반재정 지출은 조세 또는 국가채무로 재원을 충당하는 반면, 사회보장성 지출은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
  -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5%에서 2030년 8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얻은 수치

<표 1-2-8>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GDP 대비, %)			
	2006(A)	2020	2030(B)	B-A(%p)
사회보장기여금부담률	6.0	9.1	11.6	5.6
· 국민연금	2.5	3.8	4.8	2.3
· 건강보험	2.1	3.6	4.8	2.7
· 기타보험	1.4	1.7	2.0	0.6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확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안정,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 등 사회보험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
  -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보장성 지출은 일반 재정사업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개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림 1-2-5]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과 사회보장지출



- 일반재정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국민합의를 거쳐 결정
  - 통상적인 재정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재정 지출은 추가소요에 대한 자원조달 대책이 필수
  - 이 경우 추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국가채무 또는 조세로 전액 조달하거나, 국가채무와 조세로 나누어 조달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비전 2030 재정전망 시나리오(예시)

- 비전 2030 추진시의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채무 또는 조세 등 재원조달 수단, 각 선택 대안별로도 세율 인상시기, 국가채무와 조세의 분담비율, 추가재원 투자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전망결과가 나올 수 있음
- 각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을 전망해 보면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채로 전액 충당시에는 OECD 평균 수준만큼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지만 조세/국민부담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반면, 조세로 전액 충당시에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국채와 조세로 적절히 나누어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 비율, 조세/국민부담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임

<표 1-2-9> 시나리오별 비전 2030 장기 재정전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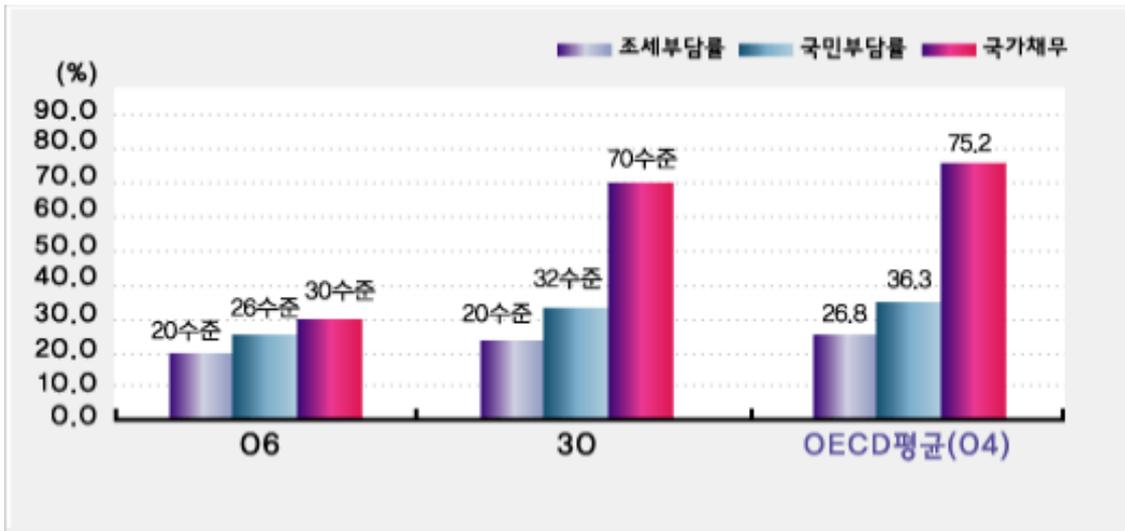
(단위: %)

	한국				미국 (‘04)	일본 (‘04)	영국 (‘04)	스웨덴 (‘04)	OECD 평균 (‘04)
	(‘06)	①	(‘30) ②	③					
국가채무비율	30수준	70수준	30수준	40수준	61.6	68.1	43.7	58.9	75.8
조세부담률	20수준	20수준	24수준	23수준	18.8	16.4	29.2	36.1	26.5
국민부담률	26수준	32수준	35수준	34수준	25.5	26.4	36.0	50.4	35.9

주: ① 전액 국채로 충당, ② 전액 조세로 충당, ③ 조세와 국채로 나누어 충당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06.10), Economic Outlook(‘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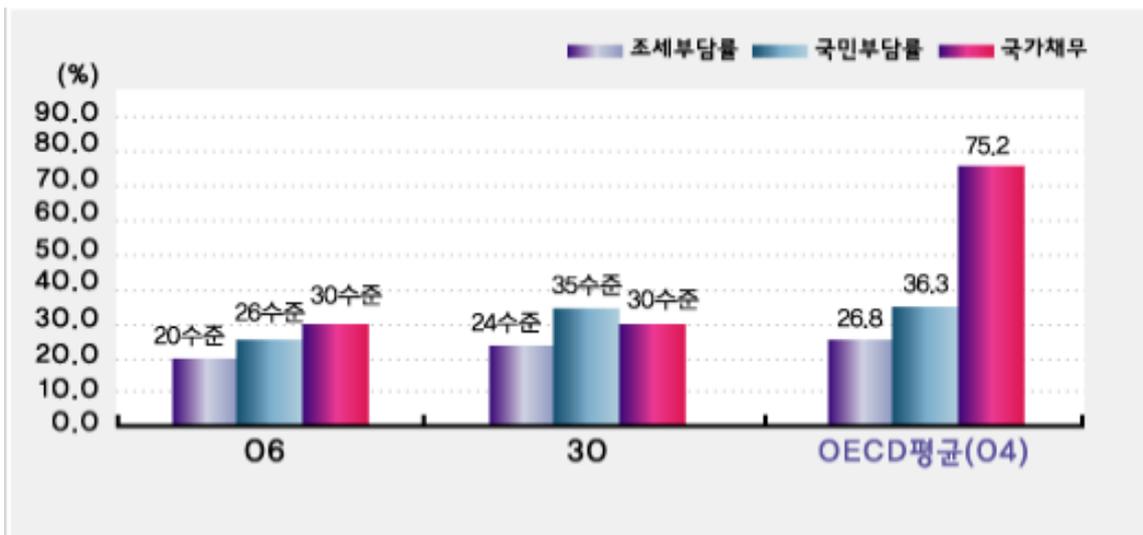
① 전액 국채로 충당할 경우

[그림 1-2-6] 전액 국채로 충당할 경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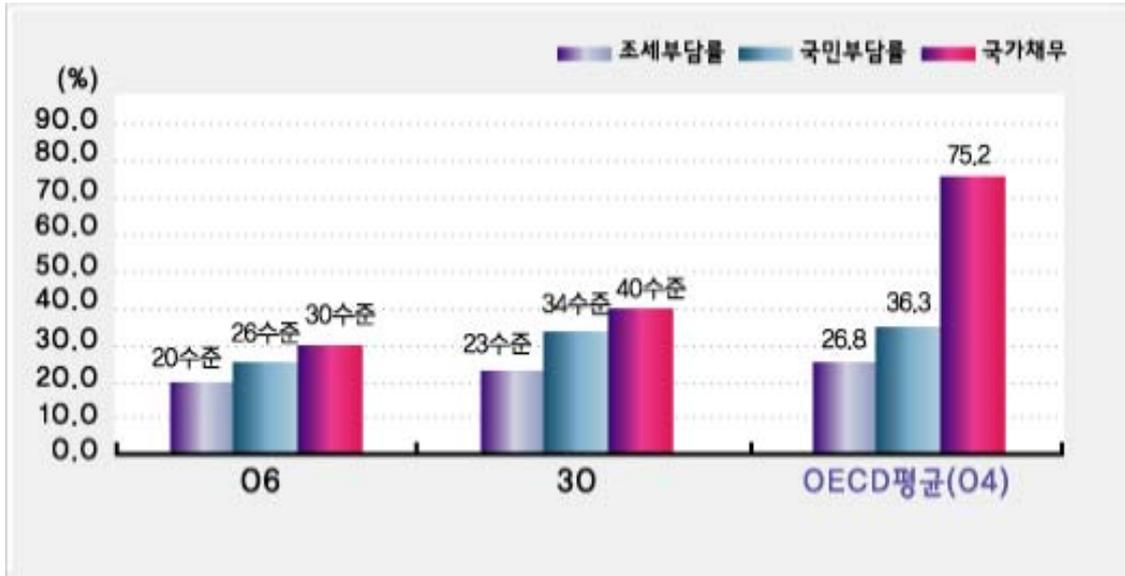
② 전액 조세로 충당할 경우

[그림 1-2-7] 전액 조세로 충당할 경우 재정전망



③ 조세와 채무로 나누어 총당할 경우

[그림 1-2-8] 전액 조세와 국채로 나누어 총당할 경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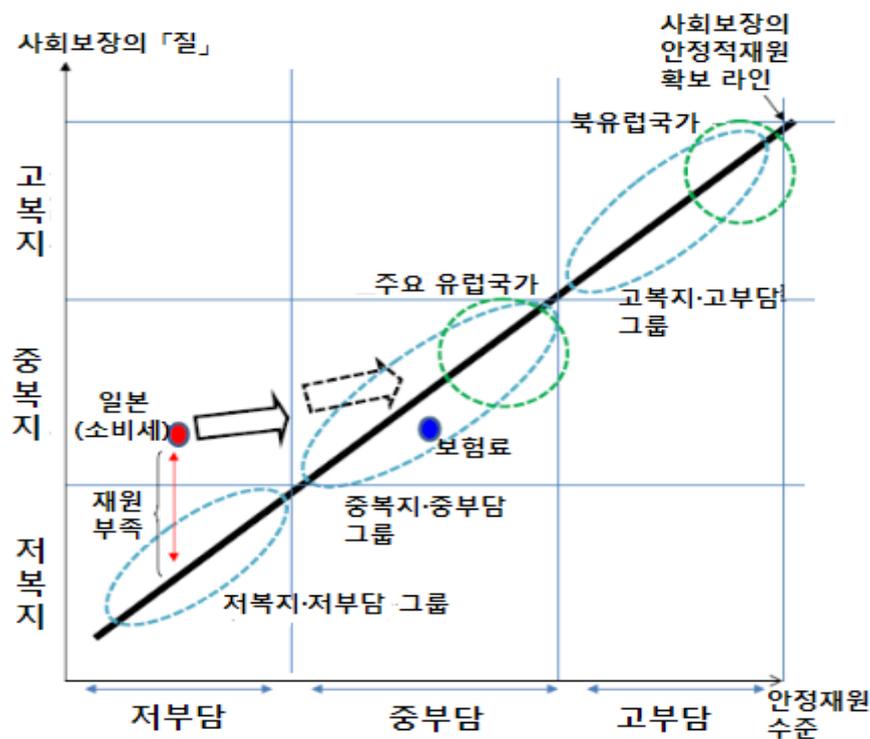


- 비전 2030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적절한 복지수준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위에서 제시된 장기재정전망 예시는 좋은 참고가 될 것임
  - 또한 복지수준과 재원규모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 -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 국채와 조세로 나누어 조달하는 방안 - 에 대해서도 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정해야 할 것임

#### 다. 일본의 중복지·중부담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중기프로그램”

- 최근 일본정부는 중간 정도의 복지수준 및 중간 정도의 국민부담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중기 재원확보 방안인 “중기프로그램”을 발표
- ‘사회보장 - 조세 -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혁하는 “중기프로그램”은 2008년 12월 24일 각의결정을 통해 확정되어 대외공표됨
- 향후 지속가능한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의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고, 특히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되는 재원은 전액 사회보장비용에 충당하여 모두 국민들에게 환원시킬 계획

[그림 1-2-9] 사회보장급부에 대응한 안정적 재원확보 개념도



- 내각부 산하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소비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10> 소비세율 인상폭에 대한 시산결과

구 분		재정소요	소비세율	
2015	사회보장 기능 강화	조세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17조~34조엔	5~10%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7.6조~8.3조엔	2.3~2.5%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포함시	조세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6~11%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3.3~3.5%
2025	사회보장 기능 강화	조세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31조~48조엔	8~12%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19조~20조엔	5%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포함시	조세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9~13%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6%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 및 안정재원 확보를 위한 「중기프로그램」>**

2008년 12월 24일 각의결정

**I.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 등**

- 세계경제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지키고 3년 내의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해 경기회복 기간 중에 감세조치 및 정액급부금을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II. 국민의 안심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안정재원의 확보**

(안심 강화의 3원칙)

- 원칙 1.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
- 원칙 2. 안심 강화와 재원 확보의 동시진행을 실시한다.
- 원칙 3. 안심과 책임 간에 밸런스가 잡힌 안정재원의 확보를 꾀한다.

## 1.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급속히 진행되는 소자·고령화하에서 국민의 안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는 아래와 같은 2개의 과제에 동시에 임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다.

- (1) 「사회보장 국민회의 최종보고(2008년 11월 4일)」 등에서 지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그 기능 강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심으로 연결되는 질 높은 「중복지」를 실현한다.
- (2) 사회보장제도의 재원(보험료 부담, 공비 부담, 이용자 부담) 가운데 공비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그 3분의 1 정도를 장래세대의 외상 돌리기(공채)에 의존하면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지·저부담」의 현상을 고쳐 급부에 알맞은 세부담을 국민 전체에 넓고 얇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중복지·중부담」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다.

## 2. 안심 강화와 재원 확보의 동시 진행

국민의 안심 강화와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중복지」의 실현을 향해 연금, 의료, 개호의 사회보장 급부나 소자녀화 대책에 대해 기능 강화와 효율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별첨의 일정표에 나타난 개혁의 제과제나 제도개정 시기도 감안해 검토를 진행시켜 확립·제도화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안정재원을 확보한 다음, 단계적으로 내용의 구체화를 꾀한다.

## 3. 안심과 책임 간에 밸런스가 잡힌 재원 확보

- (1) 사회보장 안정재원에 대해서는 급부에 알맞은 부담이라고 하는 시점 및 국민이 넓게 수익하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모든 세대가 넓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관점으로부터, 소비세율 인상을 축으로 해 확보한다. 이 소비세율 인상은 세제근본개혁의 일환으로서 실현된다.
- (2) 이 때, 중앙·지방을 통한 연금, 의료, 개호의 사회보장급부 및 소자녀화 대책에 필요로 하는 공비 부담의 비용에 대해 그 전액을 중앙·지방의 안정재원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대 중반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국고부담 비율의 2분의 1로의 인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노인의료 및 개호와 관련되는 사회보장급부에 가세해 상기 2.에 나타낸 개혁의 확립·제도화에 필요한 공비 부담의 비용을 소비세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현세대의 안심 확보와 장래세대에의 책임의 밸런스를 취하면서, 중앙·지방의 안정재원 확보에의 제 일보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의 사회보장급부 및 소자녀화 대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상황이나 향후 재정건전화의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세제의 근본적 개혁 법안의 제출 시기까지 그 실시 방법과 아울러 결정한다.

### Ⅲ. 세제 근본개혁의 전체상

(경제상황의 호전 후에 실시하는 세제 발본개혁의 3원칙)

- 원칙 1. 다년도에 걸치는 증감세를 법률에 대해 일체적으로 결정해 각각의 실시 시기를 명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원칙 2. 잠재성장률의 발휘가 전망될까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향후 경제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원칙 3. 소비세수는 확립·제도화한 사회보장의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모두 국민에게 환원해 관의 비대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1. 세제 발본개혁의 이치

- (1) 기초연금 국고부담의 2분의 1로의 인상을 위한 재원 조치나 연금, 의료, 개호의 사회 보장급부나 소자녀화 대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망을 밝으면서, 경제상황의 호전 후에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근본개혁을 2011년(3년 후)부터 실시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2010년에 미리 강구해 두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개혁의 실시에 있어서는 잠재성장률의 발휘가 전망될까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향후 경제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2) 소비세수가 충당되는 사회보장의 비용은 기타 예산과는 엄밀하게 구분 경리하여 예산·결산에 대해 소비세수와 사회보장비용의 대응관계를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의 전체 세수입을 확립·제도화한 연금·의료·개호의 사회보장급부 및 소자녀화 대책의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소비세수는 모두 국민에게 환원해 관의 비대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세제 근본개혁의 기본적 방향성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를 시작해 사회에 있어서의 다양한 격차의 시정, 경제의 성장력 강화, 세제의 그린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과제에 정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적 방향성에 의해 더욱 검토를 진행시켜 구체화를 꾀한다.

- (1) 개인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격차의 시정이나 소득재분배 기능의 회복의 관점으로부터 각종 공제나 세율 구조를 다시 본다. 최고세율이나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 조정 등에 의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급부침부 세액공제의 검토를 포함한 세출측면도 대면시킨 종합적 대응 중에서 육아 등에 배려해 중저소득자 세대의 부담 경감을 검토한다. 금융소득 과세의 일체화를 더욱 추진한다.
- (2) 법인과세에 대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의 관점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에 유의하면서 과세 베이스의 확대와 함께 법인 실효세율의 인하를 검토한다.
- (3) 소비과세에 대해서는 그 부담이 확실히 국민에게 환원될 것을 밝히는 관점으로부터 소비세의 전액이 이른바 확립·제도화된 연금·의료·개호의 사회보장급부와 소자녀화 대책에 충당되는 것을 예산·결산에 대해 명확화한 다음, 소비세의 세율을 검토한다. 그 때 세출측면도 함께 보아 복수세율의 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자의 배려에 대해 검토한다.
- (4)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세제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어려운 재정 사정, 환경에 주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세제의 기본방향 및 잠정세율을 포함한 세율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부담의 경감을 검토한다.
- (5)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격차의 고정화 방지, 노후부양의 사회화 진전에의 대처 등 관점으로부터 상속세의 과세 베이스나 세율구조 등을 재검토하여, 부담의 적정화를 검토한다.
- (6) 납세자번호제도의 도입 준비를 포함해 납세자 편의의 향상과 과세의 적정화를 꾀한다.
- (7) 지방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중앙·지방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재원 확보의 관점으로부터 지방소비세의 충실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법인 과세에

대한 기본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세원의 편재성이 작고 세수입이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의 구축을 진행시킨다.

(8)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관점으로부터 세계 전체의 그린화를 추진한다.

#### IV. 향후 세출개혁의 본연의 자세

(세출개혁의 원칙)

- 원칙 1. 세계 근본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의 추진과 헛됨 배제 철저의 계속을 대전제로 한다.
- 원칙 2. 경제상황 호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재정규율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세를 근거로 해 상황에 따라 과단한 대응을 기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 원칙 3. 경제상황 호전 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를 꾀하는 가운데 엄격한 재정규율을 확보해 나간다.

(1)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경기회복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꾀하는 관점으로부터 재정규율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세를 근거로 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한 대응을 기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2) 경제상황이 호전된 이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를 향해 소비세를 포함한 세계 근본개혁을 실행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의 후퇴에 의해 악화된 재정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재정규율을 확보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을 통해 사회보장, 비사회보장의 각 부문에 대해 이하의 기본적 방침 아래에 개혁을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회보장 부문)

- 「중복지」에 알맞은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재원의 확보와 병행해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코스트 감축, 급부의 중점화 등 효율화를 진행시킨다.

(비사회보장 부문)

- 비사회보장 부문 전체적으로 국민 요구 등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효과적·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진행시킨다.

## V. 중기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

(준비와 실행에 관한 원칙)

원칙 1. 경제호전 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세제 근본개혁의 실시 시기에 앞서 제도적 준비를 갖춘다.

원칙 2.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중기프로그램」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 세제 근본개혁의 이치를 입법상 분명히 한다.

(1) 경제호전 후 세제 근본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그 실시 시기에 앞서 개혁 내용의 구체화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법안 및 기타 제도적 준비를 갖춘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자문회의나 정부세제조사회 등에서 행해지는 논의도 감안하면서 관계 부처가 제휴해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2)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중기프로그램」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 세제 근본개혁의 이치를 입법상 분명히 한다.

(3) 기초연금 국고부담 비율의 2분의 1로의 인상에 대해서는 2004년(헤세이 16년) 연금개정법에 따라 2011년도에 필요한 안정재원을 확보한 다음 영구화한다. 지금까지의 사이는 국고부담 비율의 법정분은 현행대로이지만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2년간은 임시의 재원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기초연금 국고부담 비율을 2분의 1로 한다.

###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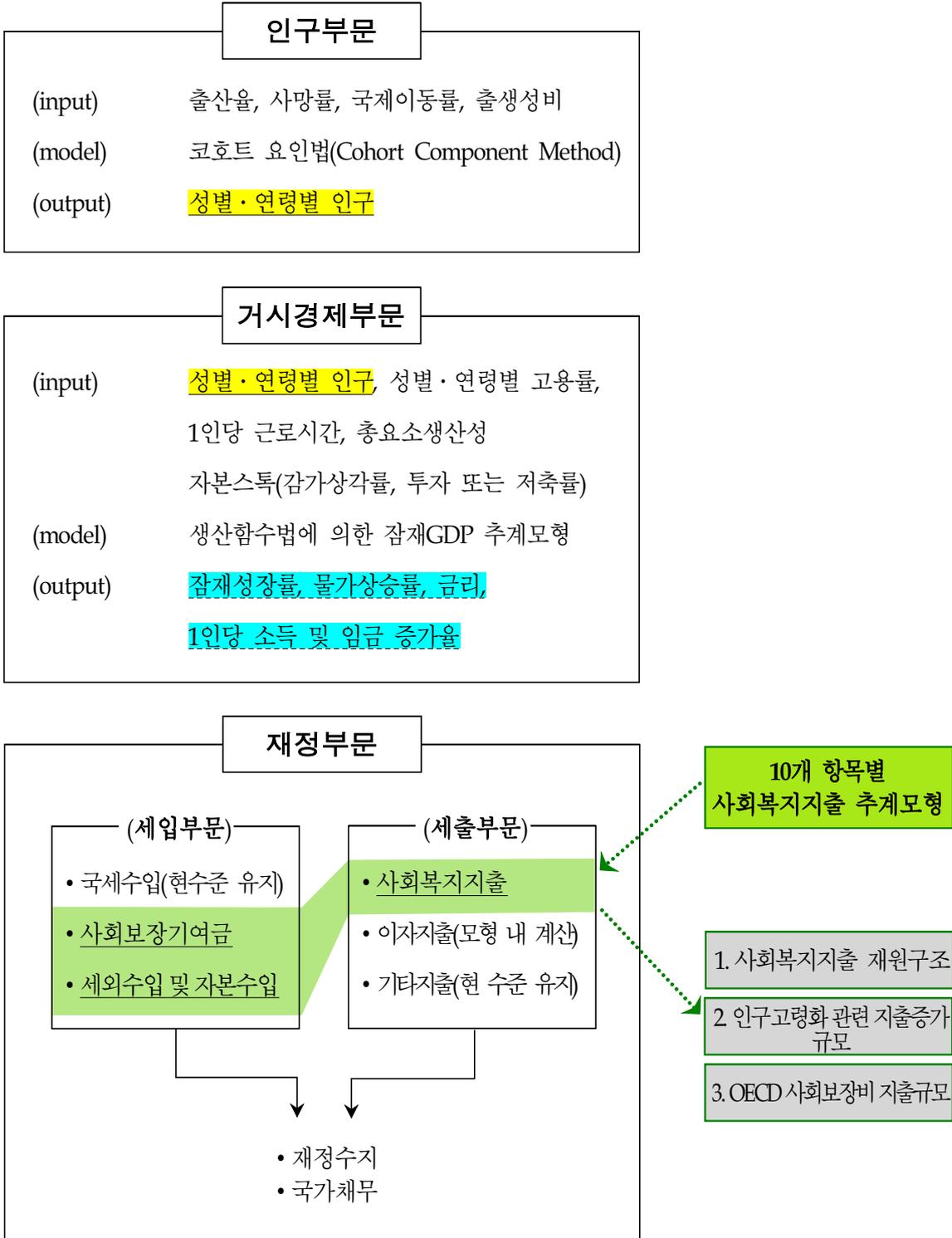
-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전망(각 항목별 사회복지 재정지출 포함)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재정모형이 구축되고, 2050년까지 향후 40년간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할 수 있게 됨
  - 특히 본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부문·거시경제부문·재정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전망이 가능하고, 이들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본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 및 전체 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tool이 마련될 수 있음
  -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에 대한 시나리오가 바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장기재정모형이 구축됨
  - 나아가 복지재정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험률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야 하는지 그 크기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음

## II. 인구 및 거시부문 모형

### 1. 모형의 구조

- 기본 모형 : 한국조세연구원(박형수·류덕현, 2006년) 『한국의 장기재정모형』을 통해 개발된 장기재정모형을 기본으로 함
  - 인구부문·거시경제부문·재정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이들 3개 부문 간의 상호연관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
    - EU, 미국, 호주, 영국 등 재정선진국들의 장기재정전망 모형처럼 인구추계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률 등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이러한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설정된 시나리오하에서의 재정전망치를 추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재정정책의 변화가 인구구조 또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다른 방향에서의 영향(예를 들면 출산장려, 보육지원 정책 강화가 출산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장기재정 전망
  - 보다 과학적인 모형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구블록>, <거시경제블록>, <재정블록>별 탄성치 등 각종 파라미터들은 과거 우리나라 및 OECD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ESTIMATION)하거나 연구수행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들을 활용(CALIBRATION)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의 장기재정전망 이외에 <인구블록>의 핵심변수인 출산율과 사망률, <거시경제블록>의 핵심변수인 성별·연령별 고용률 및 총요소생산성 <재정블록>에서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보육관련 정책 강화 및 연금개혁 등과 같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변동할 경우 장기재정모형에 의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민감도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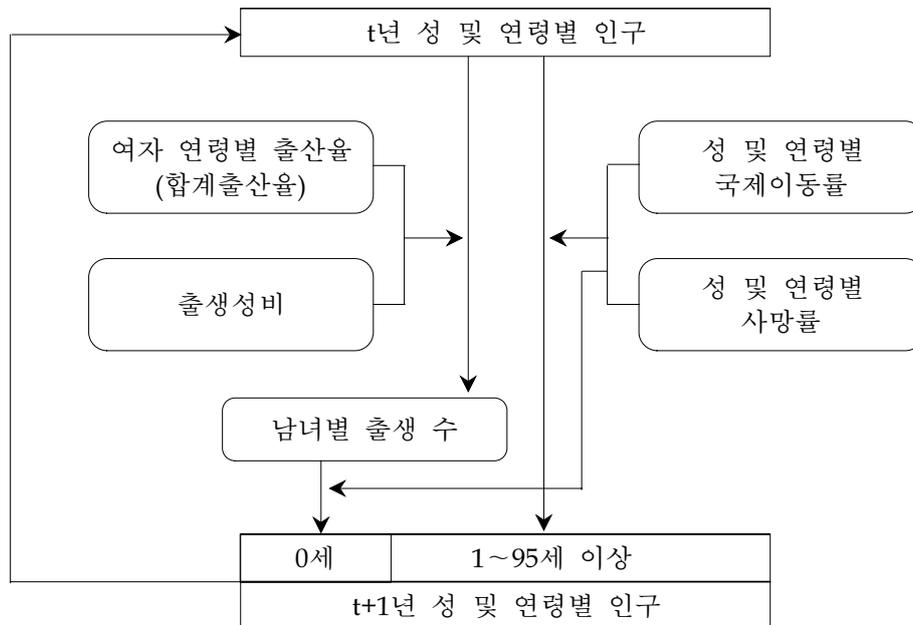
[그림 11-1-1] 모형 전체의 흐름도



□ 인구부문 :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한 인구추계

- 성별·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등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하여 특정연도 인구 수에 이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인구추계 방법
-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 출생성비에 대한 정보 또는 가정만 있으면 연령별·성별 인구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그림 11-1-2]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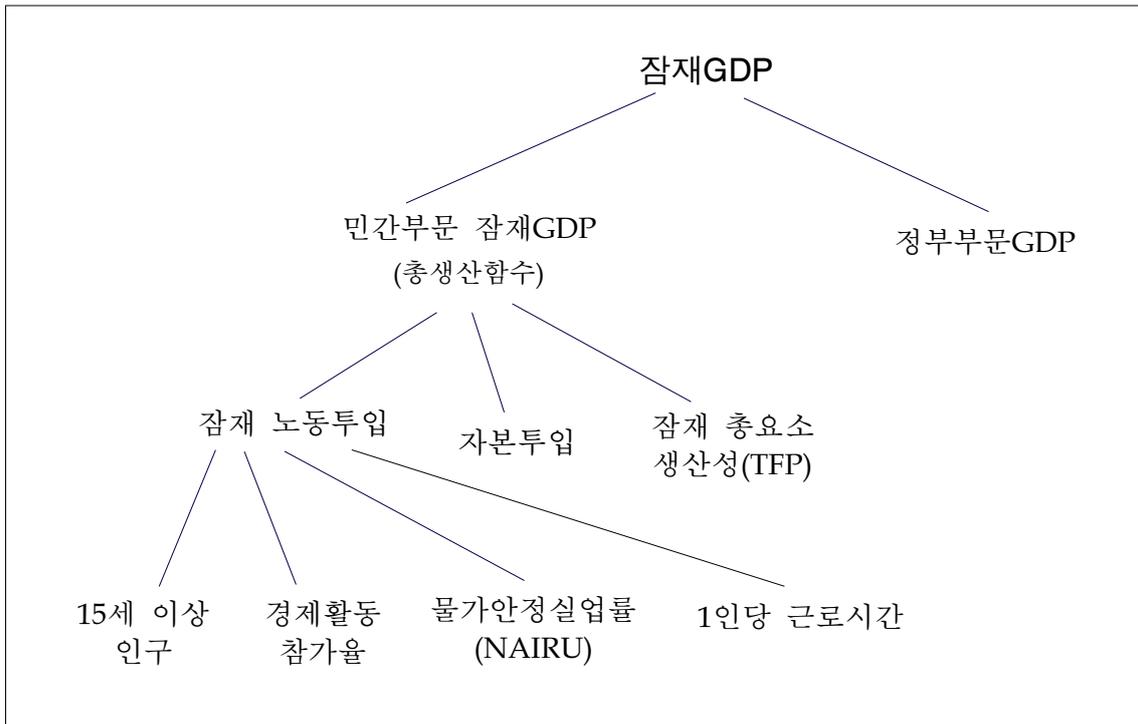
□ 거시경제부문 : 잠재성장률 추정에 의한 경제성장률 이외에 경상성장률, 임금상승률, 금리 등을 전망

- 잠재성장률은 인구부문 추계결과 이외에 성별·연령별 고용률, 무역개방도 및 R&D 투자비율 등에 대한 전망치 또는 가정만 있으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Y = (A \cdot L)^\alpha K^{(1-\alpha)}$$

단, Y:GDP, A:총요소생산성, L:노동투입, K:자본스톡, α:노동소득분배율

[그림 11-1-3] 잠재GDP 추정 구조



- 사회복지를 제외한 재정부문 : 조세수입 등 세입전망, 교육·국방·경제·통일 및 외교·일반공공행정 등 재정지출을 각각 전망하여 합산
  - 현재의 재정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상정하되, 인구부문 및 거시경제부문 추계결과에 따른 성별·연령별 인구 및 거시경제 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모형을 설계
- 항목별 사회복지 재정추계모형
  - 포괄 대상 :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포함),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의 항목

- 각 항목별 제도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을 개발
  - 인구부문 및 거시경제부문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대상인구 및 재정단가를 산출하는 등 가능한 한 인구부문 및 거시경제부문에서 추계가능한 변수만으로 중장기 사회복지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모형의 일관성 및 완성도를 제고토록 함
  -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분만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정부 부담분도 함께 추계
  - 각 제도별 정책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 지출추계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변수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정책변수(예: 건강보험의 보장률)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변동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2. 인구부문 모형

### 가. 추계모형

-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은 크게 1세 이상인 경우와 0세의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음
  - 1세 이상인 경우의 인구추계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t년도 연초인구에 사망률, 국제이동률을 적용하여 (t+1)년도, (t+2)년도 연초인구를 산출한 후, (t+1)년도 및 (t+2)년도 연초인구를 산술평균하여 (t+1)년도 연앙인구를 산출<sup>1)</sup>.

$$\begin{aligned}
 Pop_0[y+1, s, g+1] &= Pop_0[y, s, g] \times (1 + RtMig[s, g]) \times (1 - RtDeath[y, s, g]) \\
 &Pop_0[y+2, s, g+2] \\
 &= Pop_0[y+1, s, g+1] \times (1 + RtMig[s, g+1]) \times (1 - RtDeath[y+1, s, g+1])
 \end{aligned}$$

1) 기준연도 인구가 연앙인구이므로 이를 연초인구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연앙인구와 2000년 연앙인구의 산술평균을 2000년 연초인구로 사용하였다.

$$Pop[y+1, s, g+1] = \frac{Pop_0[y+1, s, g+1] + Pop_0[y+2, s, g+2]}{2}$$

여기서  $Pop$  : 연앙인구,  $Pop_0$  : 연초인구,

$RtMig$  : 국제이동률,  $RtDeath$  : 사망률

- 0세의 연앙인구는 15~49세 여성인구에 출산력을 적용하여 출생아를 구하고 이를 출생성비를 적용하여 성별( $s=1$ (남자),  $s=2$ (여자)) 출생아수를 산출한 후, 당해연도와 다음 해의 성별 출생아 수에 각각의 사망률과 국제이동률을 적용하여 연초인구를 산출한 후 1세 이상 인구와 마찬가지로 이를 산술평균하여 당해연도 성별 0세 연앙인구를 산출

$$Pop[y, s, 0] = \{NewBorn[y, s] \times (1 + RtMig[s, 0]) \times (1 - RtDeath[y, s, 0]) + NewBorn[y+1, s] \times (1 + RtMig[s, 0]) \times (1 - RtDeath[y+1, s, 0])\} / 2$$

$$\text{여기서 } NewBorn[y] = \sum_{gc=1}^7 Pop[y, 2, gc] \times RtFer[y, gc]$$

단,  $gc$  : 15세~49세의 5세별 연령계층,

$$NewBorn[y, 1] = NewBorn[y] \times SexRatio / (100 + SexRatio),$$

$$NewBorn[y, 2] = NewBorn[y] \times 100 / (100 + SexRatio),$$

$NewBorn$  : 출생아 수,  $RtFer$  : 출산율,

$SexRatio$  : 출생성비

-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 출생성비에 대한 2050년까지의 추계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들을 이용

<표 11-2-1> 출생(률) · 사망(률) · 국제이동(률)

(단위: 천명, 인구 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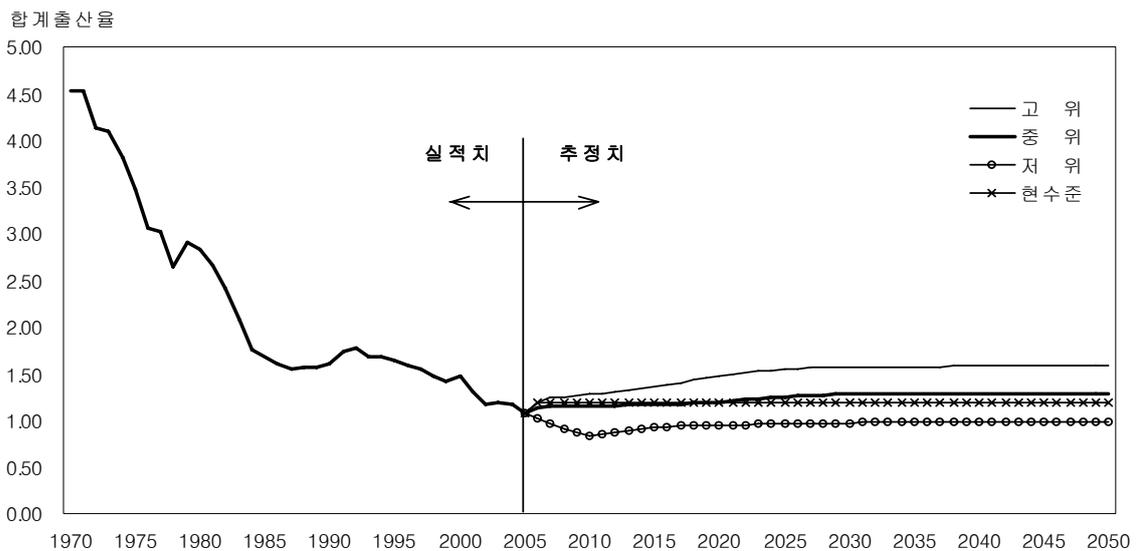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국제이동자 수	출생률	사망률	국제이동률
2005	438	246	-81	9.0	5.0	-1.7
2006	451	252	-39	9.3	5.2	-0.8
2007	449	260	-39	9.3	5.4	-0.8
2008	445	267	-38	9.2	5.5	-0.8
2009	440	275	-37	9.0	5.6	-0.8
2010	434	284	-36	8.9	5.8	-0.7
2011	427	298	-35	8.7	6.1	-0.7
2012	420	306	-34	8.6	6.2	-0.7
2013	412	314	-33	8.4	6.4	-0.7
2014	405	323	-32	8.2	6.6	-0.7
2015	398	332	-32	8.1	6.7	-0.6
2016	391	340	-31	7.9	6.9	-0.6
2017	387	349	-30	7.8	7.1	-0.6
2018	384	358	-29	7.8	7.2	-0.6
2019	382	366	-28	7.7	7.4	-0.6
2020	377	375	-27	7.6	7.6	-0.6
2021	373	384	-27	7.6	7.8	-0.5
2022	375	392	-26	7.6	8.0	-0.5
2023	376	401	-26	7.6	8.2	-0.5
2024	376	410	-26	7.6	8.3	-0.5
2025	375	419	-25	7.6	8.5	-0.5
2026	373	428	-25	7.6	8.7	-0.5
2027	369	437	-24	7.5	8.9	-0.5
2028	363	446	-24	7.4	9.1	-0.5
2029	356	456	-24	7.3	9.3	-0.5
2030	348	465	-24	7.1	9.6	-0.5
2040	262	573	-21	5.7	12.4	-0.5
2050	226	679	-16	5.3	16.0	-0.4

- (출산율) 출산력의 향후 전망은 상당히 낮은 출산력 수준에서 점차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통계청의 중위시나리오를 활용
  - 중위: 연령별 출산율 구조 변동에 따라 25~29세 출산율 감소세, 30세 이상 출산율 상승세를 반영하여 2040년에 1.28 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
  - 고위: 초혼연령이 상승하지 않아 25~29세, 30~34세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여 2040년에 1.58 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
  - 저위: 25~29세의 출산율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30~34세의 출산율은 최근 수준을 유지하여 2040년에 0.97 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
  - 현 수준 : 2001~2005년 평균출산율이 지속

<표 11-2-2> 가정별 합계출산율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중 위	1.08	1.15	1.17	1.20	1.25	1.28	1.28	1.28
고 위	1.08	1.28	1.36	1.48	1.54	1.57	1.58	1.58
저 위	1.08	0.83	0.92	0.95	0.96	0.97	0.97	0.97
현수준	1.0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그림 11-2-1] 가정별 합계출산율 추이



<표 II-2-3> 중위시나리오의 향후 출산율(2005~2050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TFR	1.08	1.15	1.17	1.20	1.25	1.28	1.28
15	0.00016	0.00012	0.00010	0.00007	0.00007	0.00007	0.00007
16	0.00052	0.00041	0.00034	0.00029	0.00029	0.00029	0.00029
17	0.00122	0.00102	0.00094	0.00087	0.00087	0.00087	0.00087
18	0.00280	0.00227	0.00194	0.00165	0.00165	0.00165	0.00165
19	0.00567	0.00455	0.00380	0.00317	0.00317	0.00317	0.00317
20	0.00664	0.00612	0.00581	0.00551	0.00551	0.00551	0.00551
21	0.00973	0.00914	0.00894	0.00875	0.00875	0.00875	0.00875
22	0.01437	0.01356	0.01334	0.01313	0.01313	0.01313	0.01313
23	0.02218	0.02067	0.01991	0.01918	0.01918	0.01918	0.01918
24	0.03252	0.03004	0.02853	0.02710	0.02710	0.02710	0.02710
25	0.05022	0.04626	0.04195	0.03741	0.03741	0.03741	0.03741
26	0.07220	0.06546	0.05783	0.05023	0.05023	0.05023	0.05023
27	0.10150	0.09031	0.07729	0.06505	0.06505	0.06505	0.06505
28	0.11809	0.10619	0.09250	0.07924	0.07924	0.07924	0.07924
29	0.12294	0.11890	0.10501	0.09119	0.09119	0.09119	0.09119
30	0.11660	0.12541	0.11406	0.10120	0.10120	0.10120	0.10120
31	0.10252	0.11688	0.11325	0.10706	0.10706	0.10706	0.10706
32	0.08421	0.09995	0.10356	0.10469	0.10660	0.10660	0.10660
33	0.06473	0.08031	0.08960	0.09753	0.10085	0.10085	0.10085
34	0.04855	0.06260	0.07447	0.08643	0.09123	0.09123	0.09123
35	0.03389	0.04632	0.05966	0.07313	0.07917	0.07917	0.07917
36	0.02341	0.03379	0.04593	0.05942	0.06615	0.06615	0.06615
37	0.01645	0.02421	0.03401	0.04546	0.05050	0.05358	0.05358
38	0.01111	0.01677	0.02453	0.03415	0.03919	0.04231	0.04231
39	0.00794	0.01207	0.01789	0.02522	0.02979	0.03277	0.03277
40	0.00509	0.00758	0.01192	0.01874	0.02247	0.02512	0.02512
41	0.00347	0.00510	0.00860	0.01449	0.01697	0.01919	0.01919
42	0.00229	0.00334	0.00557	0.00928	0.01133	0.01383	0.01464
43	0.00113	0.00175	0.00323	0.00595	0.00853	0.01032	0.01106
44	0.00072	0.00115	0.00222	0.00429	0.00647	0.00764	0.00827
45	0.00038	0.00062	0.00115	0.00214	0.00472	0.00563	0.00616
46	0.00022	0.00041	0.00078	0.00148	0.00364	0.00408	0.00454
47	0.00011	0.00022	0.00045	0.00091	0.00229	0.00268	0.00333
48	0.00007	0.00014	0.00027	0.00055	0.00130	0.00204	0.00250
49	0.00007	0.00012	0.00021	0.00037	0.00096	0.00160	0.00192

- (출생성비) 출생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조 및 태아성감별에 대한 법적 대응, 여성의 지위 향상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낮아져 2025년에 이르면 첫째아, 둘째아는 정상수준(105~106)에 도달하나, 셋째아 이상은 여전히 높은 120~124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자료(1996~2005년)를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미래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추정
  - 추정된 출생성비를 출산순위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총출생성비 산출
    - 다만, 말띠, 용띠, 범띠는 다른 해에 비해 다소 높은 성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하는 속도에 가중치를 적용

<표 II-2-4>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여아 백명당)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25
총출생아	107.2	109.5	116.5	113.2	110.2	107.7	108.2	106.4	106.0
첫째아	106.3	106.0	108.5	105.8	106.2	104.8	105.8	105.0	105.0
둘째아	106.7	107.8	117.0	111.7	107.4	106.4	106.7	105.4	105.2
셋째아	107.1	129.0	188.8	177.2	141.7	127.7	128.4	122.1	120.2
넷째아+	113.5	148.2	209.2	203.9	167.5	132.6	136.1	127.0	124.1

- (사망률) 향후 기대수명은 최근 증가속도를 반영하여 당분간은 다소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가정하여 2030년은 남자 79.79세, 여자 86.27세, 2050년은 남자 82.87세, 여자 88.92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표 II-2-5> 기대수명 및 사망자 수

(단위: 세, 천명)

	1971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기대수명 계	62.33	65.69	71.28	76.02	78.63	79.60	81.45	83.13	86.02
남 자	58.99	61.78	67.29	72.27	75.14	76.15	78.04	79.79	82.87
여 자	66.07	70.04	75.51	79.59	81.89	82.88	84.68	86.27	88.92
사망자 수	238	278	249	247	246	284	375	465	679

<표 II-2-6> 향후 사망확률 가정(2005~2050년)

【 남 자 】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0	0.00526	0.00465	0.00411	0.00363	0.00284	0.00221	0.00173
1~4	0.00137	0.00127	0.00118	0.00109	0.00094	0.00080	0.00069
5~9	0.00102	0.00081	0.00065	0.00052	0.00033	0.00021	0.00014
10~14	0.00084	0.00067	0.00053	0.00042	0.00026	0.00017	0.00010
15~19	0.00197	0.00179	0.00162	0.00147	0.00121	0.00100	0.00082
20~24	0.00293	0.00258	0.00227	0.00199	0.00154	0.00119	0.00092
25~29	0.00371	0.00325	0.00285	0.00249	0.00191	0.00147	0.00112
30~34	0.00489	0.00426	0.00371	0.00322	0.00244	0.00185	0.00140
35~39	0.00756	0.00660	0.00577	0.00504	0.00384	0.00293	0.00224
40~44	0.01281	0.01121	0.00981	0.00858	0.00657	0.00503	0.00385
45~49	0.02093	0.01847	0.01630	0.01439	0.01120	0.00873	0.00680
50~54	0.03106	0.02764	0.02459	0.02188	0.01733	0.01372	0.01086
55~59	0.04407	0.04107	0.03827	0.03567	0.03098	0.02690	0.02337
60~64	0.06821	0.06360	0.05929	0.05528	0.04805	0.04177	0.03631
65~69	0.10828	0.10042	0.09314	0.08638	0.07431	0.06392	0.05498
70~74	0.17142	0.15680	0.14342	0.13118	0.10975	0.09182	0.07681
75~79	0.27401	0.25776	0.24247	0.22809	0.20183	0.17860	0.15804
80~84	0.41196	0.38882	0.36697	0.34635	0.30852	0.27483	0.24481
85~89	0.56605	0.54325	0.52136	0.50035	0.46085	0.42446	0.39095
90~94	0.70967	0.69287	0.67647	0.66046	0.62957	0.60012	0.57205
95+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여 자 】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0	0.00457	0.00402	0.00354	0.00312	0.00241	0.00187	0.00145
1~4	0.00122	0.00111	0.00102	0.00093	0.00078	0.00065	0.00054
5~9	0.00075	0.00060	0.00048	0.00038	0.00024	0.00015	0.00010
10~14	0.00063	0.00049	0.00038	0.00030	0.00018	0.00011	0.00007
15~19	0.00112	0.00097	0.00084	0.00073	0.00055	0.00041	0.00031
20~24	0.00190	0.00169	0.00149	0.00132	0.00103	0.00081	0.00063
25~29	0.00219	0.00197	0.00177	0.00159	0.00129	0.00105	0.00085
30~34	0.00271	0.00243	0.00218	0.00195	0.00157	0.00126	0.00101
35~39	0.00369	0.00321	0.00280	0.00244	0.00185	0.00141	0.00107
40~44	0.00511	0.00445	0.00388	0.00338	0.00256	0.00194	0.00147
45~49	0.00764	0.00670	0.00588	0.00516	0.00398	0.00306	0.00236
50~54	0.01089	0.00940	0.00812	0.00701	0.00522	0.00389	0.00290
55~59	0.01591	0.01366	0.01173	0.01007	0.00742	0.00547	0.00403
60~64	0.02608	0.02256	0.01952	0.01689	0.01264	0.00946	0.00708
65~69	0.04467	0.03920	0.03441	0.03019	0.02325	0.01791	0.01379
70~74	0.08546	0.07691	0.06920	0.06227	0.05042	0.04083	0.03306
75~79	0.16428	0.14852	0.13428	0.12140	0.09923	0.08111	0.06629
80~84	0.29485	0.27306	0.25289	0.23421	0.20088	0.17229	0.14777
85~89	0.46037	0.43861	0.41788	0.39813	0.36139	0.32804	0.29776
90~94	0.63081	0.61499	0.59957	0.58454	0.55559	0.52808	0.50193
95+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국제이동률) 향후 국제이동률은 최근 5년간(2000~2005년) 성 및 연령별 국제이동률의 평균치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16천명에서 39천명까지의 출국초과 현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

<표 11-2-7> 국제이동

(단위: 천명)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계	-81	-36	-32	-27	-25	-24	-21	-16
남 자	-49	-17	-14	-12	-12	-11	-10	- 7
여 자	-32	-19	-17	-15	-14	-13	-11	- 9

<표 11-2-8> 2000~2005년 연평균 국제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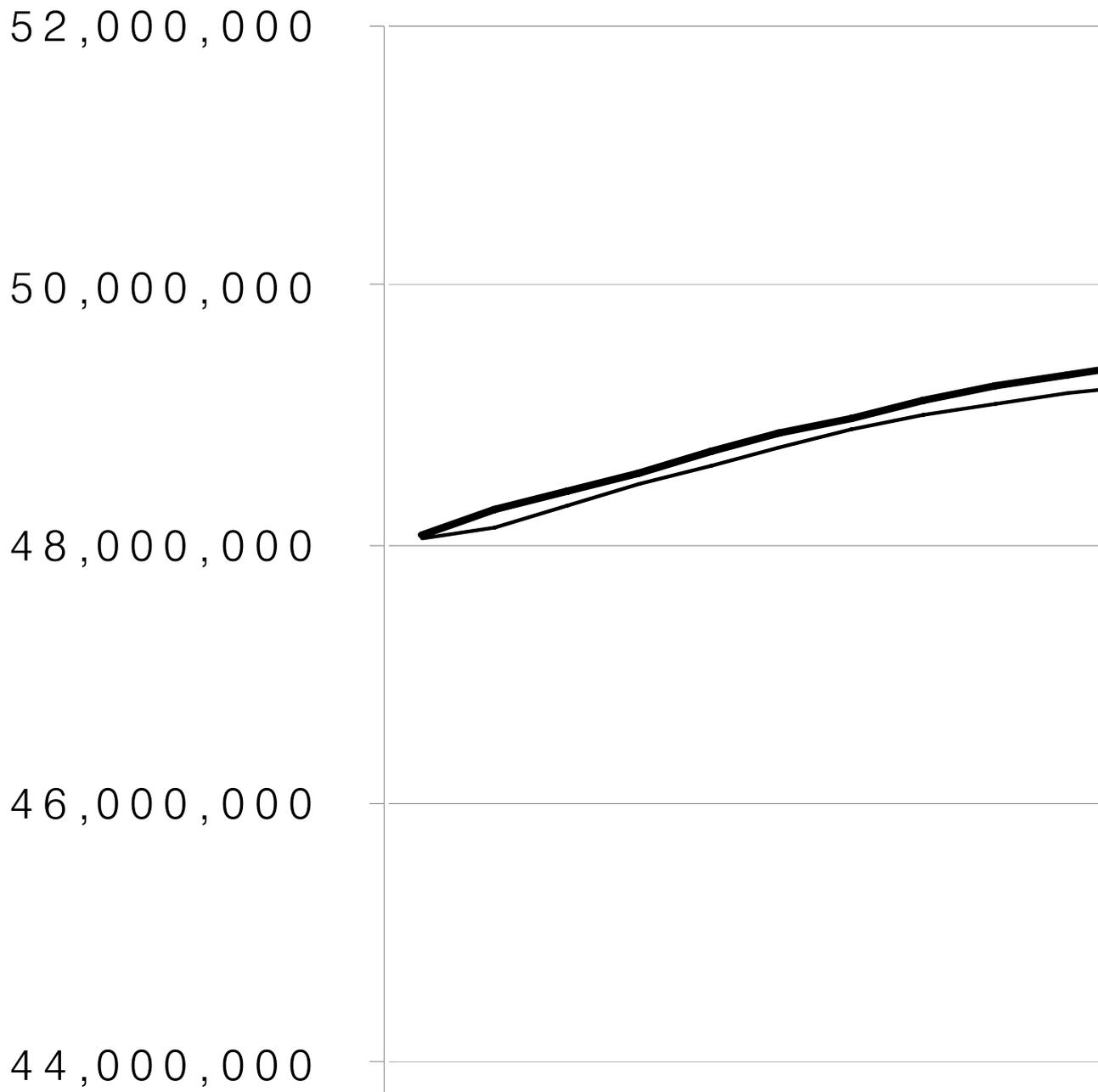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0	-0.00688	-0.00639	43	-0.00096	-0.00033
1	-0.00225	-0.00220	44	-0.00086	0.00021
2	-0.00155	-0.00149	45	-0.00066	0.00038
3	-0.00159	-0.00142	46	-0.00029	0.00056
4	-0.00159	-0.00164	47	-0.00018	0.00076
5	-0.00198	-0.00190	48	0.00003	0.00079
6	-0.00176	-0.00165	49	0.00004	0.00083
7	-0.00211	-0.00199	50	0.00093	0.00203
8	-0.00234	-0.00233	51	0.00136	0.00176
9	-0.00308	-0.00272	52	0.00108	0.00100
10	-0.00345	-0.00318	53	0.00065	0.00069
11	-0.00302	-0.00283	54	0.00019	-0.00007
12	-0.00273	-0.00270	55	0.00017	-0.00025
13	-0.00373	-0.00349	56	-0.00006	-0.00032
14	-0.00428	-0.00385	57	-0.00008	-0.00014
15	-0.00576	-0.00504	58	0.00013	-0.00019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16	-0.00265	-0.00247	59	0.00001	-0.00020
17	0.00031	0.00033	60	0.00004	-0.00011
18	-0.00151	-0.00121	61	-0.00006	-0.00010
19	0.00128	-0.00198	62	-0.00013	-0.00020
20	0.00225	-0.00776	63	-0.00004	-0.00023
21	0.00276	-0.00485	64	-0.00012	-0.00021
22	-0.00091	0.00367	65	0.00058	0.00051
23	-0.00324	0.00133	66	0.00005	0.00029
24	-0.00578	-0.00095	67	-0.00009	0.00005
25	0.00275	-0.00134	68	-0.00014	-0.00025
26	0.00283	-0.00140	69	0.00002	0.00012
27	0.00099	-0.00120	70	-0.00023	-0.00005
28	0.00034	-0.00085	71	-0.00019	-0.00009
29	0.00015	-0.00097	72	-0.00018	0.00001
30	0.00016	-0.00053	73	-0.00008	-0.00003
31	-0.00006	-0.00063	74	-0.00023	-0.00009
32	-0.00029	-0.00081	75	-0.00027	-0.00007
33	-0.00021	-0.00061	76	0.00011	-0.00004
34	-0.00019	-0.00088	77	-0.00009	0.00023
35	-0.00027	-0.00088	78	-0.00014	-0.00004
36	-0.00026	-0.00096	79	-0.00016	0.00016
37	-0.00025	-0.00102	80	0.00023	-0.00009
38	-0.00030	-0.00104	81	-0.00013	0.00003
39	-0.00088	-0.00097	82	-0.00008	0.00002
40	-0.00137	-0.00115	83	0.00007	-0.00003
41	-0.00147	-0.00081	84	-0.00002	0.00008
42	-0.00122	-0.00070	85+	0.00008	0.00016

## 나.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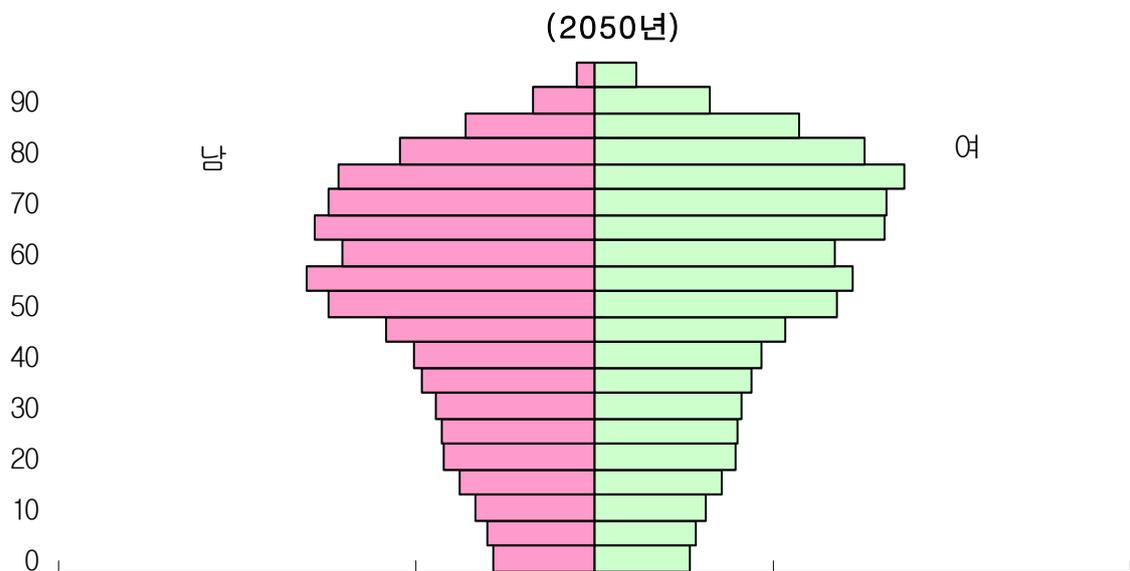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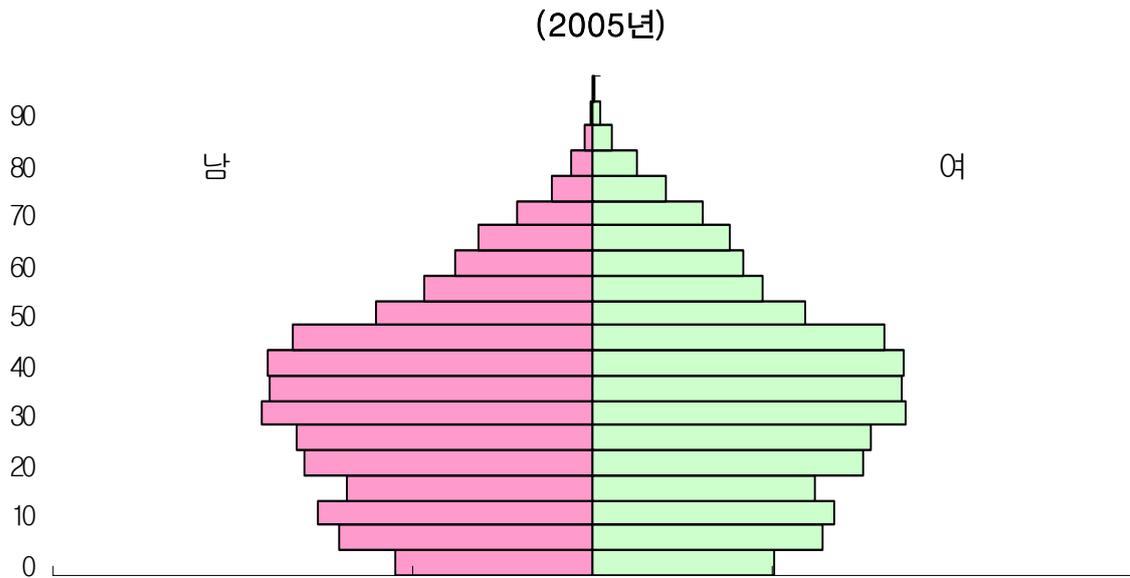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인구블록>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구를 추계해 본 결과, 통계청의 2006년 11월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연도별 총인구 추계결과도 통계청의 추계결과보다 10만~52만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오차율이 평균 0.73%에 그침

[그림 11-2-2] 총인구 추계결과



[그림 11-2-3] 인구 피라미드 추정결과

(통계청 2006년 11월 추계)





<표 II-2-9> 총인구 추계결과

(단위: 명)

연도	본연구	통계청	차이	연도	본연구	통계청	차이
2009	48,844,513	48,746,693	97,820	2030	48,939,039	48,634,571	304,468
2010	48,976,779	48,874,539	102,240	2031	48,817,467	48,493,265	324,202
2011	49,099,839	48,988,833	111,006	2032	48,671,299	48,333,265	338,034
2012	49,211,322	49,083,184	128,138	2033	48,499,896	48,153,817	346,079
2013	49,308,278	49,162,816	145,462	2034	48,301,186	47,954,283	346,903
2014	49,389,278	49,227,451	161,827	2035	48,078,347	47,734,323	344,024
2015	49,456,737	49,277,094	179,643	2036	47,837,615	47,493,912	343,703
2016	49,507,989	49,311,793	196,196	2037	47,576,062	47,233,606	342,456
2017	49,542,994	49,332,392	210,602	2038	47,298,986	46,954,437	344,549
2018	49,565,570	49,340,350	225,220	2039	47,015,187	46,657,404	357,783
2019	49,575,064	49,337,991	237,073	2040	46,726,873	46,343,017	383,856
2020	49,573,404	49,325,689	247,715	2041	46,426,200	46,011,395	414,805
2021	49,560,542	49,299,993	260,549	2042	46,097,126	45,662,678	434,448
2022	49,534,130	49,263,040	271,090	2043	45,738,643	45,297,469	441,174
2023	49,495,635	49,219,121	276,514	2044	45,356,663	44,916,600	440,063
2024	49,442,819	49,167,733	275,086	2045	44,953,998	44,520,935	433,063
2025	49,376,491	49,107,949	268,542	2046	44,549,293	44,111,099	438,194
2026	49,304,654	49,038,710	265,944	2047	44,134,511	43,687,610	446,901
2027	49,225,260	48,958,603	266,657	2048	43,708,330	43,251,164	457,166
2028	49,137,606	48,865,746	271,860	2049	43,288,094	42,802,545	485,549
2029	49,043,517	48,758,260	285,257	2050	42,865,202	42,342,769	522,433

### 3. 거시경제부문 모형

#### 가. 추계모형

□ [그림 II-3-1]에서 보듯이 국민경제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구분하여 민간부문의 잠재GDP를 추정한 후, 여기에 정부부문의 실제GDP를 합산하여 경제 전체에 대한 잠재GDP를 구함

○ 정부부문은 정부부문 실제GDP를 정부부문 잠재GDP로 간주

□ 민간부문 실제GDP( $Y^p$ )는 민간부문 노동투입( $N^p$ ), 민간부문 자본투입( $K^p$ ), 총요소생산성( $E$ )이 Cobb-Douglas 형태의 총생산함수에 의해 결합되어 생산된다고 가정함

$$Y_t^p = (N_t^p \cdot E_t)^\alpha \cdot (K_t^p)^{1-\alpha} \quad \text{또는} \quad y_t^p = \alpha \cdot (n_t^p + e_t) + (1-\alpha) \cdot k_t^p$$

단,  $y^p = \ln Y^p$ ,  $n^p = \ln N^p$ ,  $k^p = \ln K^p$ ,  $e = \ln E$ ,  $\alpha$ 는 노동소득 분배율 (labor income share)임

□ 총생산함수가 추정되면 여기에 잠재 노동투입( $n^{p*}$ ) 및 잠재 총요소생산성( $e^*$ )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민간부문 잠재GDP( $Y^{p*}$ )를 구함

$$y_t^{p*} = \alpha \cdot (n_t^{p*} + e_t^*) + (1-\alpha) \cdot k_t^p$$

○ 자본투입( $K$ )은 노동투입과는 달리 장기균형 수준에서 벗어나더라도 단기간에 조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저장(stock)변수인 자본스톡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실제 자본투입을 잠재 자본투입으로 볼 수 있음

○ 잠재 노동투입( $N$ )은 '잠재 취업자 수( $E$ )\*잠재 1인당 근로시간( $HR$ )'으로 계산됨

- '잠재 취업자 수'는 물가안정실업률( $U^*$ , NAIRU :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과 함께 Hodrick-Prescott 필터(가중치는 반기별 데이터의 경우 2,000)를 적용하여 구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치( $\rho^*$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E^{p*} = POP \cdot \rho^* \cdot (1 - U^*) - E^g$$

- '잠재 1인당 근로시간'은 1인당 근로시간 데이터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여 구한 추세치를 이용
- 잠재 총요소생산성은 총생산함수를 추정할 때 잔차(Solow residuals)로 구해지는 총요소생산성 데이터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여 구한 추세치를 이용

□ 민간부문 잠재GDP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 근로시간,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등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함

- 취업자 수는 연령대별 인구추계 결과 및 고용률 전망 결과를 적용하여 전망
  - 고용률은 연령별·성별로 구분하여 최근 우리나라 추세, OECD 평균, 일본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되, 정부부문 취업자 비중은 최근 3년간('02~'04년) 비중 유지를 전제
  - 연령별·성별 고용률에 대한 세부 전망결과는 박형수·류덕현(2006) 참조
- 근로시간은 OECD국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인당 GDP, 시간추세 등을 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망

**< 1인당 근로시간 전망 방법 >**

- OECD국가(27개)의 '70년 이후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1인당 GDP 등에 회귀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전망

$$\ln(\text{1인당 근로시간}) = 7.927 - 0.0458 \cdot \ln(\text{1인당 GDP}) - 0.001 \cdot \text{시간추세}$$

- 자본스톡은 감가상각률과 투자를 감안하여 전망

$$NK_t = (1 - d)NK_{t-1} + I_t$$

NK : 순자본스톡, d: 감가상각률, I: 투자

- 경상수지 균형시 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이 동일하므로 총저축률 함수를 통해 투자 전망
- 투자의 범위는 OECD 방식에 따라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주거용 자본스톡을 제외한 민간부문 비주택 자본스톡으로 추정

**< 저축률 함수 추정방법 >**

-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OECD국가들의 피부양인구, 성장률, 가계부채비율로 회귀분석하여 추정
  - 총저축률 = 0.433-0.452\*피부양인구비율 - 0.022\*가계부채/GDP + 0.443\*경제성장률
- 피부양인구비율은 인구전망에서 도출, 가계부채비율은 2003년 77%(선진국 수준) 유지 가정

- 감가상각률 : 과거추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하락효과 등을 감안하여 '19년까지는 연 6%, '20년 이후는 연 5%로 전제
- 총요소생산성은 1인당 GDP, 무역개방도, R&D투자(GDP 대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전망

### < 총요소생산성 전망 방법 >

- OECD국가들(19개)의 '96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을 1인당 GDP(달러) 무역개방도, R&D투자비율(GDP 대비) 등으로 회귀분석
  - $\ln(\text{총요소생산성}) = -13.488 + 0.353 \cdot \ln(\text{1인당GDP}) + 0.0078 \cdot \text{OPEN} + 0.039 \cdot \text{R\&D}$
  - 무역개방도는 2005년 수준(82.3%)에서 한미·한일·한중 FTA체결 등으로 2025년까지 90%로 상승
  - R&D 투자비율은 최근의 3% 수준에서 2025년까지 4%, 2050년까지 5.5%로 증가 전제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 민간부문 잠재GDP에 정부부문 잠재GDP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잠재GDP를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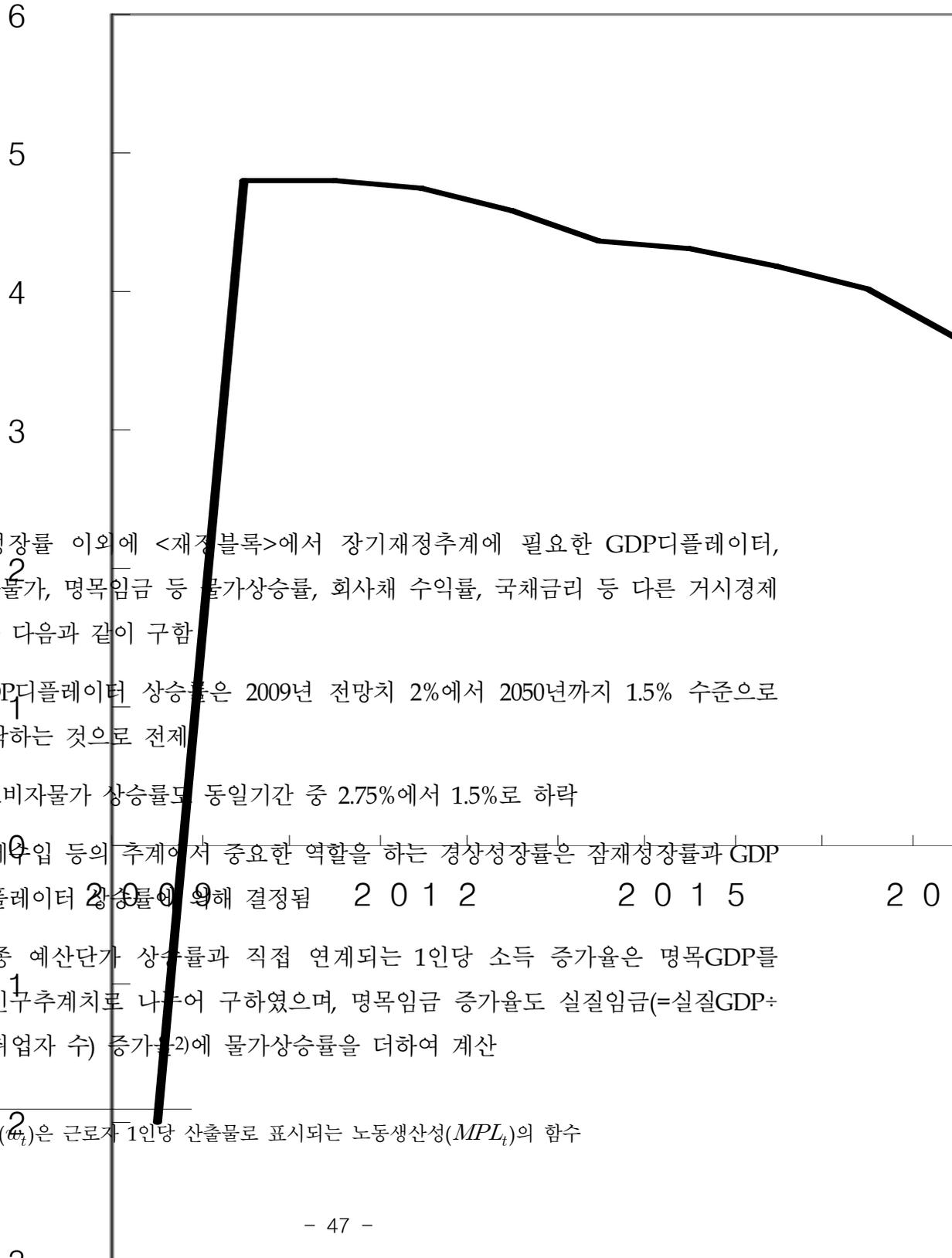
- 정부부문 잠재GDP는 과거추세를 감안하여 민간부문 잠재GDP의 23.7%로 가정

### 나. 추계결과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 및 전망한 결과, 2000년대 후반 4% 중반에서 2020년 3% 내외, 2030년 2% 내외, 2050년 0.5% 내외로 추세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주로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의 감소, 1인당 근로시간 감소, 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하락에 기인

[그림 II-3-1] 잠재성장률 추계결과



□ 잠재성장률 이외에 <재정블록>에서 장기재정추계에 필요한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등 물가상승률, 회사채 수익률, 국채금리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함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09년 전망치 2%에서 2050년까지 1.5%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제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동일기간 중 2.75%에서 1.5%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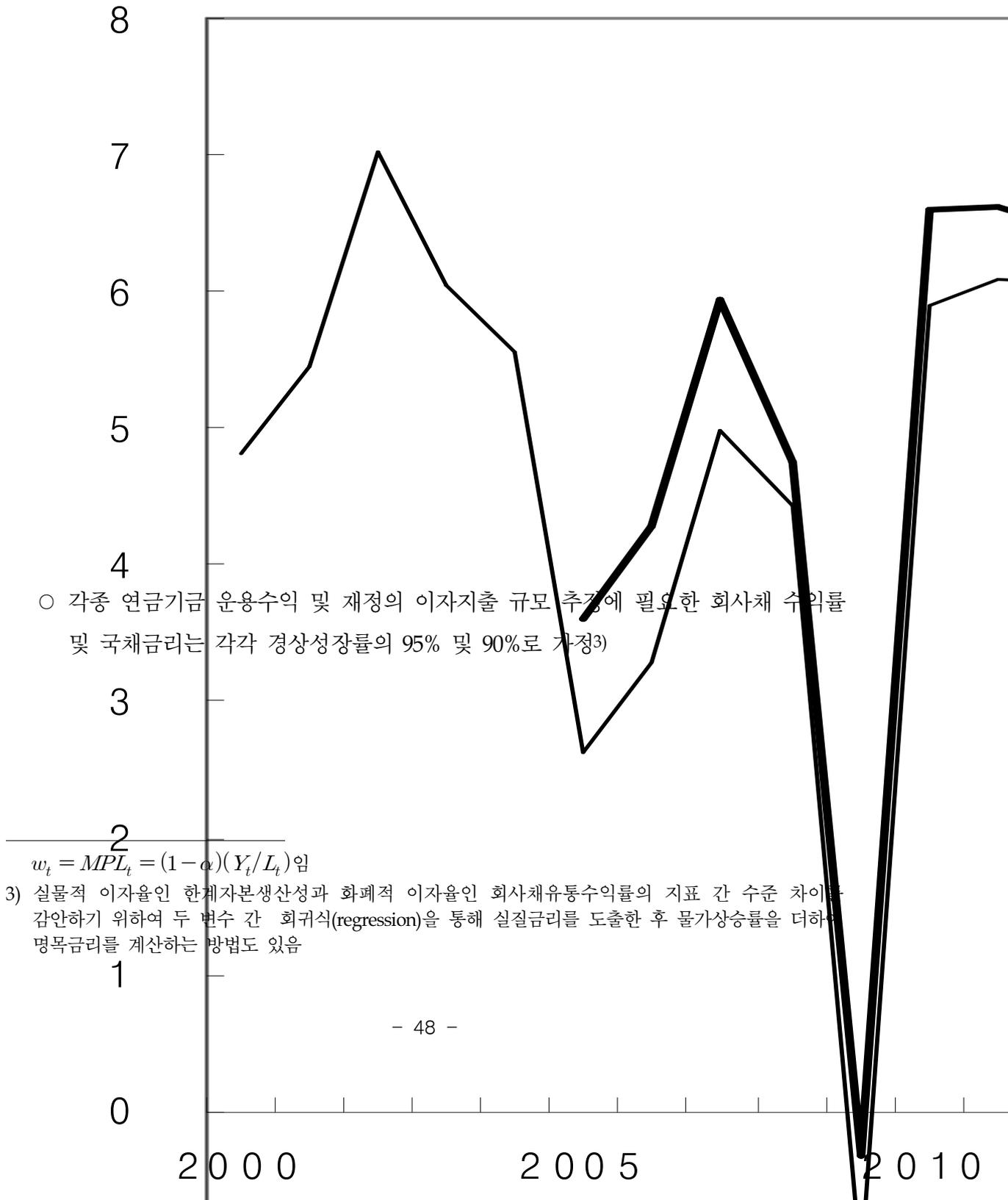
○ 조세<sup>1</sup> 수입 등의 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상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sup>2</sup>에 의해 결정됨 2012 2015 20

○ 각종 예산단가 상승률과 직접 연계되는 1인당 소득 증가율은 명목GDP를 총인구<sup>1</sup>추계치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명목임금 증가율도 실질임금(=실질GDP÷총취업자 수) 증가율<sup>2</sup>에 물가상승률을 더하여 계산

2) 실질임금<sup>2</sup>은 근로자 1인당 산출물로 표시되는 노동생산성( $MPL_t$ )의 함수

-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0년을 경계로 명목임금 증가율이 1인당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3-2] 1인당 소득 및 명목임금 증가율 추계결과



<표 II-3-1> 거시부문 주요변수 추계 결과

(단위: %)

	경제 성장률	경상 성장률	명목GDP (조원)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	1인당 소득	명목임금	회사채 수익률	국채금리
2009	-1.50	1.10	1035.2	2.64	2.75	0.81	1.57	6.50	5.50
2010	4.00	6.60	1103.5	2.50	2.75	6.31	5.97	6.27	5.92
2011	5.00	7.60	1187.4	2.48	2.72	7.33	6.78	7.22	6.84
2012	5.00	7.60	1277.6	2.48	2.69	7.36	6.95	7.22	6.84
2013	5.00	7.60	1374.7	2.48	2.66	7.39	7.09	7.22	6.84
2014	4.13	6.68	1466.6	2.45	2.63	6.50	6.27	6.35	6.01
2015	4.46	7.00	1569.2	2.42	2.59	6.85	6.54	6.65	6.30
2016	3.96	6.45	1670.3	2.40	2.56	6.34	5.97	6.13	5.80
2017	3.65	6.11	1772.3	2.37	2.53	6.03	5.71	5.80	5.50
2018	3.41	5.83	1875.7	2.34	2.50	5.79	5.52	5.54	5.25
2019	3.21	5.60	1980.8	2.32	2.47	5.58	5.46	5.32	5.04
2020	2.96	5.32	2086.2	2.29	2.44	5.32	5.36	5.05	4.79
2021	3.04	5.37	2198.3	2.27	2.41	5.40	5.54	5.10	4.84
2022	2.80	5.10	2310.4	2.24	2.38	5.15	5.39	4.84	4.59
2023	2.57	4.84	2422.2	2.21	2.34	4.92	5.28	4.60	4.35
2024	2.44	4.67	2535.4	2.19	2.31	4.79	5.26	4.44	4.21
2025	2.37	4.58	2651.5	2.16	2.28	4.72	5.20	4.35	4.12
2026	2.62	4.81	2779.1	2.13	2.25	4.97	5.53	4.57	4.33
2027	2.56	4.72	2910.3	2.11	2.22	4.89	5.54	4.49	4.25
2028	2.42	4.55	3042.8	2.08	2.19	4.74	5.45	4.33	4.10
2029	2.22	4.32	3174.2	2.05	2.16	4.52	5.33	4.10	3.88
2030	2.09	4.16	3306.1	2.03	2.13	4.38	5.27	3.95	3.74
2031	1.96	4.00	3438.3	2.00	2.09	4.26	5.13	3.80	3.60
2032	1.81	3.82	3569.7	1.97	2.06	4.13	4.97	3.63	3.44
2033	1.63	3.61	3698.6	1.95	2.03	3.98	4.82	3.43	3.25
2034	1.42	3.37	3823.2	1.92	2.00	3.79	4.67	3.20	3.03
2035	1.26	3.18	3944.9	1.90	1.97	3.66	4.58	3.02	2.86
2036	1.13	3.02	4064.1	1.87	1.94	3.54	4.49	2.87	2.72
2037	1.05	2.91	4182.3	1.84	1.91	3.47	4.40	2.76	2.62
2038	1.01	2.84	4301.3	1.82	1.88	3.45	4.31	2.70	2.56
2039	1.01	2.82	4422.4	1.79	1.84	3.44	4.22	2.68	2.53
2040	1.03	2.81	4546.6	1.76	1.81	3.44	4.14	2.67	2.53
2041	1.04	2.79	4673.5	1.74	1.78	3.46	4.06	2.65	2.51
2042	1.02	2.74	4801.8	1.71	1.75	3.48	4.01	2.61	2.47
2043	0.96	2.66	4929.4	1.68	1.72	3.46	3.97	2.53	2.39
2044	0.87	2.54	5054.6	1.66	1.69	3.40	3.93	2.41	2.29
2045	0.75	2.39	5175.5	1.63	1.66	3.31	3.89	2.27	2.15
2046	0.63	2.25	5291.7	1.61	1.63	3.17	3.84	2.13	2.02
2047	0.54	2.13	5404.4	1.58	1.59	3.09	3.79	2.02	1.92
2048	0.50	2.06	5515.7	1.55	1.56	3.05	3.73	1.96	1.85
2049	0.49	2.03	5627.5	1.53	1.53	3.02	3.66	1.93	1.83
2050	0.48	1.99	5739.3	1.50	1.50	2.99	3.60	1.89	1.79

## 4. 재정수입 및 사회복지 이외 지출모형

### 가. 추계모형

- (추계의 범위) 본 연구에서 구축되는 모형의 <재정블록>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 당국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앙정부 재정을 기준으로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을 개발
  -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기금이 포함되는데, 회계 간 및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 기준임
    - 이러한 재정의 범위는 IMF의 재정통계작성 매뉴얼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고 있는 통합재정통계와 거의 동일함
    -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비금융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며, 세출규모를 통합재정통계의 '지출 및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가 아닌 '총지출(지출 및 융자지출의 합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남
  -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앙정부 재정을 기준으로만 장기재정전망을 하게 되면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통합재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등 매우 중요한 재정지표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와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대한 전망을 별도로 추가
  
- (재정수입 항목) 본 연구의 <재정블록> 모형에서 포괄하고 있는 세입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는 조세부담
  - ②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기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부담

③ 기타 세외수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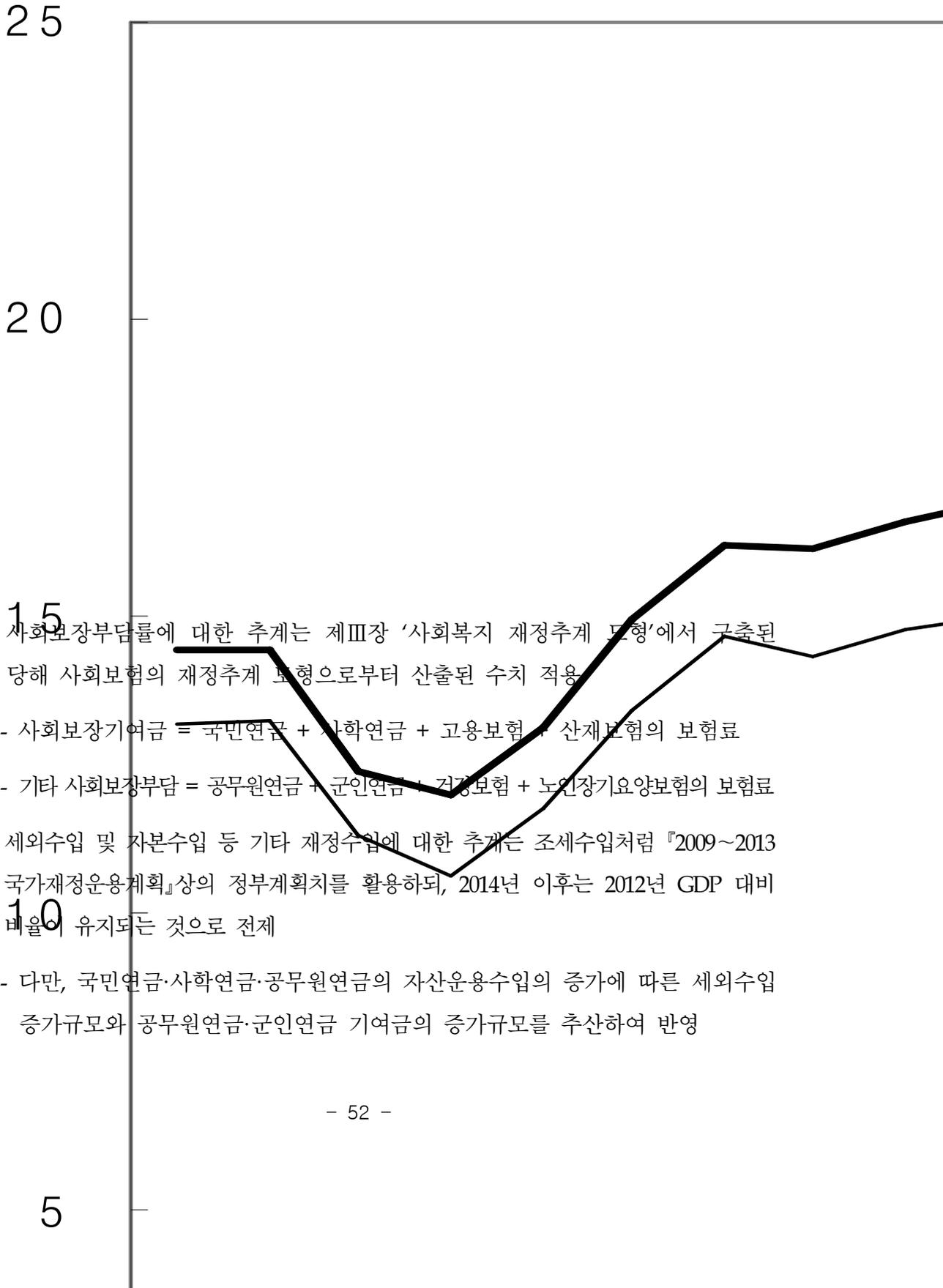
- 여기에서 통합재정의 총수입은 '국세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세외수입(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자산운용수입,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여금 등 포함) + 자본수입 + 비금융공기업 수입'으로 구성
- 최종적으로 통합재정수입 및 세입관련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이 추정
  - 통합재정수입 = 국세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세외수입(국민연금 자산운용수입,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포함) + 자본수입 + 비금융공기업 수입
  -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명목GDP × 100
  - 사회보장부담률(%) = {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기타 사회보장부담(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수발보험) } ÷ 명목GDP × 100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재정수입 추계)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입의 중장기 추계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

- 국세·지방세 수입 추계는 주요 선진국의 장기재정전망 모형에서처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활용하되, 2014년 이후는 2013년 조세부담률 20.8%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EU도 중기재정전망(Convergence Report 또는 Stability Report) 마지막 연도의 재정수입/GDP 비율을 적용
  - CBO의 중기재정전망 및 2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장기전망
    - ① 부시 감세정책이 지속된다고 보아 최근 30년간의 세입/GDP 비율 18.4% 적용
    - ② 부시 감세정책의 일몰시한이 지켜져 2012년부터 조세부담률이 상승(2050년 24.7%)
  - 호주 재무성은 세율인하 등 최근의 세제개편을 반영하여 최근 30년간의 조세수입/GDP 비율 24%보다 낮은 20.8%를 적용하고, 세외수입 추계시에는 가장 최근연도 실적인 GDP 대비 비율 1.6% 적용
  - 영국 재무성은 중기재정전망 및 전망 마지막 연도 세입/GDP 비율 적용

[그림 11-4-1]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추이

(GDP 대비, %)



- 사회보장부담률에 대한 추계는 제Ⅲ장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에서 구축된 당해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수치 적용
  - 사회보장기여금 =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보험료
  - 기타 사회보장부담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기타 재정수입에 대한 추계는 조세수입처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계획치를 활용하되, 2014년 이후는 2012년 GDP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다만,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자산운용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규모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여금의 증가규모를 추산하여 반영

- (재정지출 추계) 한편, 세출부문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16개 분야별 중앙정부 세출항목을 구성 내역별로 각각 전망한 후 합산

<표 II-4-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6개 분야

	분야별 구성 내역
복지·노동	공적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노동, 기초생보,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주택, 보육·가족·여성, 보훈, EITC, 기타사회서비스
보건	건강보험 및 노인수발보험(국고지원분만)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교육	유아·초중등교육(지방교육재정지원) 고등교육, 기타교육, 평생·직업교육
국방	-
경제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
통일·외교	통일, 외교
공공질서 및 안전	-
과학기술	-
환경	-
문화·체육·관광	-
지역개발	-
주 분야 외 지출	예비비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지방재정지원
	이자지출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6개 분야임

- 제Ⅲ장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제외한 지출분야의 중장기 지출추계는 조세수입에서처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계획치를 활용하되, 2014년 이후는 2013년 GDP 대비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다만 이자지출 규모는 기초재정수지, 금리, 국가채무 규모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추계되도록 함

① 추계된 '총지출(이자 제외)'을 다음과 같이 '통합재정지출(이자 제외)'로 환산

$$\text{통합재정지출(이자 제외)} = \text{총지출(이자 제외)} - \text{융자회수} - \text{기업특별회계 차감}$$

② 추계된 '통합재정수입'에서 ①에서 계산된 '통합재정지출(이자 제외)'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수지(이자 제외)'를 계산

③ 통합재정수지(이자 제외)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 관련 지출'을 차감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이자제외)'를 계산

④ 관리대상재정수지(이자 제외), 전기 말 국가채무 규모<sup>4)</sup>, 금리<sup>5)</sup>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이자지급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계산

$$\text{이자지급 규모} = (\text{전기 말 국가채무 규모} + \text{관리대상재정수지}/2 + \text{이자지급 규모}/2) \times 3\text{년 평균}^6) \text{ 금리}$$

○ 이렇게 추계된 지출 추계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지출 및 융자지출)' 규모이므로 여기에서 '융자회수' 규모를 차감하고 '기업특별회계'를 합산하여 『통합재정』상의 '총지출 및 순융자' 규모로 전환시켜 주어야 중요한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등을 추계할 수 있음

4)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채권, 지방정부 채무 및 이자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이자지급 계산에 이용되는 국가채무 규모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민주택채권은 연 3%의 고정금리로 발행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이자지급 규모를 산정하여 합산하였다. 한편, 2013년 이후 외국환평형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신규채권 발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 향후 국채금리는 경상성장률의 90%(1998년을 제외한 1995~2004년 기간중 국채금리/경상성장률 비율의 평균은 82%)로 가정하였다.

6) 이자규모 계산시 3년 평균 금리를 사용한 것은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로 발행되는 우리나라 국채의 만기별 3년:5년:10년:20년 비중이 22:40:28:10(2007년 기준)이지만 국채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이다.

## 나. 추계결과

□ (세입추계 결과) GDP 대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2009년 25.5% 수준에서 2050년 23.6% 수준으로 감소

○ 조세부담률은 2013년 수치인 20.8%가 유지되는 반면, 국민부담률은 2009년 26.5%에서 2050년 30.6%로 증가

□ (세출추계 결과) GDP 대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009년 24.9%에서 2050년 31.0%로 크게 증가

<표 11-4-2> 세입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통합재정수입			
	소계	국세	지방세	소계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		계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자본수입
2009	20.45	15.90	4.55	6.30	2.91	3.27	26.50	<b>25.51</b>	15.90	3.44	6.17
2010	20.04	15.28	4.77	6.37	2.91	3.38	26.40	<b>23.49</b>	15.28	3.48	4.74
2011	20.11	15.34	4.78	6.42	2.95	3.48	26.80	<b>23.48</b>	15.34	3.52	4.62
2012	20.42	15.64	4.78	6.52	2.95	3.56	27.40	<b>23.84</b>	15.64	3.55	4.65
2013	20.76	15.97	4.79	6.61	2.96	3.66	28.10	<b>23.72</b>	15.97	3.58	4.17
2014	20.76	15.64	4.79	6.70	2.96	3.74	27.46	<b>23.52</b>	15.64	3.62	4.26
2015	20.76	15.64	4.79	6.81	2.96	3.85	27.57	<b>23.65</b>	15.64	3.67	4.35
2016	20.76	15.64	4.79	6.88	2.96	3.92	27.64	<b>23.63</b>	15.64	3.68	4.31
2017	20.76	15.64	4.79	6.96	2.96	3.99	27.72	<b>23.72</b>	15.64	3.70	4.38
2018	20.76	15.64	4.79	7.03	2.96	4.06	27.79	<b>23.80</b>	15.64	3.71	4.45
2019	20.76	15.64	4.79	7.09	2.95	4.14	27.85	<b>23.87</b>	15.64	3.71	4.52
2020	20.76	15.64	4.79	7.18	2.94	4.24	27.94	<b>23.96</b>	15.64	3.74	4.58
2021	20.76	15.64	4.79	7.28	2.95	4.33	28.04	<b>23.57</b>	15.64	3.77	4.17
2022	20.76	15.64	4.79	7.36	2.95	4.41	28.13	<b>23.64</b>	15.64	3.79	4.21
2023	20.76	15.64	4.79	7.46	2.96	4.50	28.22	<b>23.70</b>	15.64	3.82	4.25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 부담률	통합재정수입			
	소계	국세	지방세	소계	공적 연금	기타 사회 보장		계	국세	사회 보장 기여금	세외 자본 수입
2024	20.76	15.64	4.79	7.55	2.97	4.59	28.31	<b>23.76</b>	15.64	3.84	4.28
2025	20.76	15.64	4.79	7.67	2.97	4.71	28.43	<b>23.86</b>	15.64	3.89	4.33
2026	20.76	15.64	4.79	7.77	2.97	4.80	28.53	<b>23.91</b>	15.64	3.92	4.36
2027	20.76	15.64	4.79	7.87	2.98	4.89	28.63	<b>23.96</b>	15.64	3.93	4.39
2028	20.76	15.64	4.79	7.97	2.99	4.98	28.73	<b>24.03</b>	15.64	3.96	4.43
2029	20.76	15.64	4.79	8.06	2.98	5.07	28.82	<b>24.06</b>	15.64	3.97	4.45
2030	20.76	15.64	4.79	8.18	2.98	5.20	28.94	<b>24.12</b>	15.64	4.02	4.47
2031	20.76	15.64	4.79	8.28	2.99	5.29	29.04	<b>23.94</b>	15.64	4.05	4.25
2032	20.76	15.64	4.79	8.35	3.00	5.35	29.11	<b>23.95</b>	15.64	4.05	4.26
2033	20.76	15.64	4.79	8.42	3.00	5.42	29.18	<b>23.98</b>	15.64	4.06	4.28
2034	20.76	15.64	4.79	8.51	3.02	5.49	29.27	<b>24.01</b>	15.64	4.08	4.29
2035	20.76	15.64	4.79	8.62	3.02	5.60	29.38	<b>24.06</b>	15.64	4.12	4.30
2036	20.76	15.64	4.79	8.70	3.04	5.67	29.46	<b>24.07</b>	15.64	4.14	4.29
2037	20.76	15.64	4.79	8.78	3.04	5.74	29.54	<b>24.07</b>	15.64	4.15	4.28
2038	20.76	15.64	4.79	8.86	3.06	5.80	29.62	<b>24.07</b>	15.64	4.18	4.26
2039	20.76	15.64	4.79	8.95	3.08	5.87	29.71	<b>24.06</b>	15.64	4.20	4.23
2040	20.76	15.64	4.79	9.05	3.09	5.97	29.82	<b>24.08</b>	15.64	4.24	4.20
2041	20.76	15.64	4.79	9.12	3.09	6.03	29.88	<b>23.95</b>	15.64	4.25	4.06
2042	20.76	15.64	4.79	9.20	3.11	6.09	29.96	<b>23.93</b>	15.64	4.27	4.02
2043	20.76	15.64	4.79	9.26	3.12	6.14	30.02	<b>23.89</b>	15.64	4.27	3.97
2044	20.76	15.64	4.79	9.33	3.14	6.19	30.09	<b>23.85</b>	15.64	4.29	3.92
2045	20.76	15.64	4.79	9.44	3.16	6.29	30.21	<b>23.85</b>	15.64	4.35	3.86
2046	20.76	15.64	4.79	9.52	3.17	6.35	30.28	<b>23.79</b>	15.64	4.37	3.78
2047	20.76	15.64	4.79	9.60	3.19	6.40	30.36	<b>23.73</b>	15.64	4.39	3.70
2048	20.76	15.64	4.79	9.66	3.21	6.45	30.43	<b>23.66</b>	15.64	4.41	3.61
2049	20.76	15.64	4.79	9.74	3.24	6.50	30.50	<b>23.60</b>	15.64	4.44	3.52
2050	20.76	15.64	4.79	9.85	3.26	6.59	30.61	<b>23.56</b>	15.64	4.51	3.41

<표 II-4-3> 세출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복지·노동	보건	일반공공행정			기타지출	총지출	통합 재정지출
			소계	이자	기타			
2009	6.54	0.66	4.82	1.54	3.28	15.46	27.48	24.89
2010	6.69	0.66	4.78	1.67	3.12	14.32	26.44	23.93
2011	6.50	0.69	4.44	1.63	2.81	14.48	26.11	23.46
2012	6.45	0.65	4.23	1.51	2.72	14.14	25.47	22.98
2013	6.42	0.63	3.95	1.35	2.60	13.60	24.60	24.39
2014	6.39	0.68	3.91	1.31	2.60	13.60	24.58	21.99
2015	6.56	0.69	3.80	1.20	2.60	13.60	24.65	22.06
2016	6.75	0.70	3.68	1.08	2.60	13.60	24.72	22.14
2017	6.92	0.71	3.60	1.01	2.60	13.60	24.84	22.25
2018	6.89	0.72	3.51	0.92	2.60	13.60	24.72	22.13
2019	7.23	0.73	3.44	0.85	2.60	13.60	25.00	22.41
2020	7.41	0.74	3.40	0.80	2.60	13.60	25.15	22.56
2021	7.65	0.75	3.37	0.77	2.60	13.60	25.37	22.79
2022	7.88	0.76	3.35	0.76	2.60	13.60	25.60	23.01
2023	7.86	0.77	3.34	0.75	2.60	13.60	25.58	22.99
2024	8.22	0.79	3.33	0.73	2.60	13.60	25.94	23.35
2025	8.47	0.80	3.33	0.73	2.60	13.60	26.20	23.61
2026	8.72	0.81	3.36	0.76	2.60	13.60	26.49	23.91
2027	8.95	0.82	3.40	0.81	2.60	13.60	26.78	24.19
2028	9.06	0.83	3.45	0.85	2.60	13.60	26.94	24.35
2029	9.39	0.84	3.48	0.88	2.60	13.60	27.32	24.73
2030	9.66	0.86	3.51	0.91	2.60	13.60	27.62	25.04
2031	9.90	0.87	3.54	0.95	2.60	13.60	27.91	25.32
2032	10.13	0.88	3.58	0.99	2.60	13.60	28.20	25.61
2033	10.18	0.89	3.62	1.02	2.60	13.60	28.29	25.70
2034	10.45	0.90	3.64	1.05	2.60	13.60	28.59	26.00
2035	10.70	0.91	3.67	1.07	2.60	13.60	28.87	26.29
2036	10.97	0.92	3.69	1.09	2.60	13.60	29.18	26.59
2037	11.24	0.93	3.72	1.13	2.60	13.60	29.49	26.91
2038	11.52	0.94	3.77	1.18	2.60	13.60	29.83	27.25
2039	11.76	0.94	3.84	1.24	2.60	13.60	30.14	27.55
2040	12.02	0.95	3.92	1.32	2.60	13.60	30.50	27.91
2041	12.29	0.96	4.01	1.41	2.60	13.60	30.87	28.28
2042	12.55	0.97	4.10	1.51	2.60	13.60	31.23	28.64
2043	12.77	0.98	4.18	1.59	2.60	13.60	31.54	28.95
2044	13.03	0.99	4.25	1.65	2.60	13.60	31.87	29.28
2045	13.30	0.99	4.29	1.69	2.60	13.60	32.18	29.59
2046	13.57	1.00	4.31	1.71	2.60	13.60	32.48	29.89
2047	13.84	1.01	4.32	1.73	2.60	13.60	32.77	30.18
2048	14.07	1.02	4.34	1.75	2.60	13.60	33.03	30.45
2049	14.30	1.02	4.39	1.80	2.60	13.60	33.32	30.73
2050	14.51	1.03	4.46	1.86	2.60	13.60	33.60	31.01

### Ⅲ. 사회복지 재정추계모형

#### 1. 건강보험

##### 가. 현행제도

- 의료보장은 크게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으로 구분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포괄
  - 의료급여대상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에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자로 구분되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표 III-1-1> 의료보장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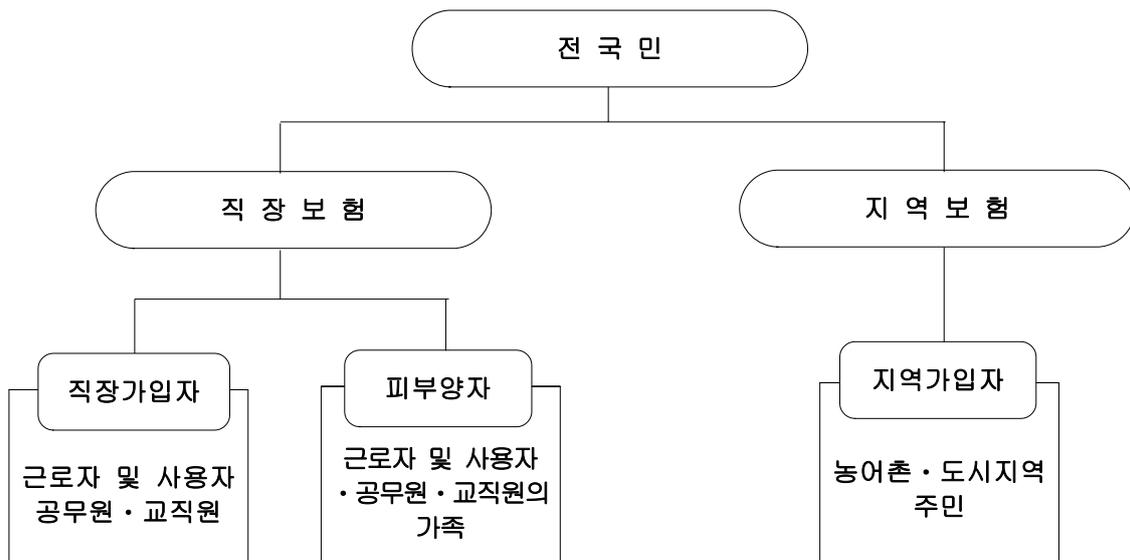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본성격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의료혜택 부여																																
관리대상	가입자, 사용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재원조달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정부, 세대원),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본인, 국고, 지방비																																
보험료 부과기준	임금, 재산, 소득 등	-																																
급여내용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진단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	의료급여, 요양비, 건강진단비 등																																
진료기관	모든 요양기관 (단, 의료전달체계가 있음)	진료권별로 순차적으로 진료																																
본인부담	○입원 : 20% ○외래 - 의원급 이하 : 30% - 병원급 : 35~40% - 종합병원급 : 45~50% ○약국 : 3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차 (의원)</th> <th>2차 ((종합)병원)</th> <th>3차 (지정병원)</th> <th>약국</th> <th>PET 등</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종</td> <td>입원</td> <td>없음</td> <td>없음</td> <td>없음</td> <td>500원</td> <td>없음</td> </tr> <tr> <td>외래</td> <td>1,000원</td> <td>1,500원</td> <td>2,000원</td> <td>500원</td> <td>5%</td> </tr> <tr> <td rowspan="2">2종</td> <td>입원</td> <td>15%</td> <td>15%</td> <td>15%</td> <td>500원</td> <td>15%</td> </tr> <tr> <td>외래</td> <td>1,000원</td> <td>15%</td> <td>15%</td> <td>500원</td> <td>15%</td> </tr> </tbody> </table>	구분	1차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5%	15%	15%	500원	1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구분	1차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5%	15%	15%	500원	1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2009)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사업 안내(2009)

□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구분

- 직장보험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이 대상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피부양자 :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지역보험은 자신이 스스로 종사·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그림 III-1-1] 건강보험 적용체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2009)

- 건강보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으로 구성
  - 보험료(2009년 기준, 5.08%)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담규모가 상이
    -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가 원칙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와 종합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역가입자의 부과체제로 이원화
    - 직장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및 공무원은 본인 및 사용자(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 교직원은 본인, 학교경영자, 정부가 각각 50%, 30%, 20%씩 부담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 국고지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
  - 건강증진기금지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표 III-1-2> 재원조달 체계**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 험 료	산정방법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소득·재산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단가
	부담주체	- 근로자, 사용자가 각각 50% - 교직원은 본인, 학교경영자, 정부가 각각 50%, 30%, 20%씩 부담	본인 전액부담
정부지원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담배부담금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보험급여는 의료보장을 위한 현물급여와 의료비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
  -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진단비, 현물급여는 요양비, 장제비 등으로 구성

**<표 III-1-3> 보험급여의 구성**

구분	급여종류	내용
현물급여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진단비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함
현금급여	요양비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본인부담액보상금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대하여 실구입액의 80%를 보험급여로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가 전액 부담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2009)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시에는 진료비용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 적용

<표 III-1-4> 요양급여 지급 내용

구분	내 용
입원	20%
외래	- 종합전문요양병원: 진찰료총액+나머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읍·면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 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읍·면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 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1,500원(방문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약국조제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1,500원(방문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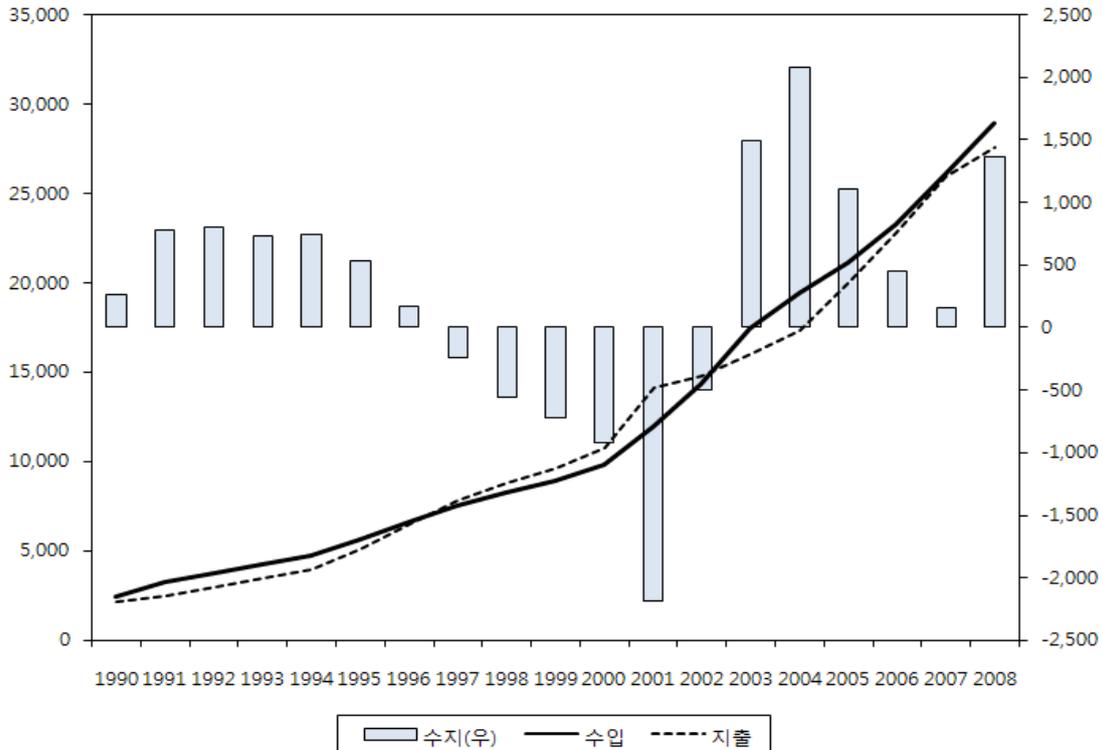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2009)

□ 건강보험 재정현황

- 1995년까지는 재정이 비교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급여범위의 확대, 수가 인상, 수진율 증가,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96년 이후부터 적자 심화
- 누적된 적자구조, 의약분업의 시행, 수가인상 등의 요인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까지 추진되어 2000년에는 약 1조원, 2001년에는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
-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
- 이후 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폭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급여비 지출 증가폭 둔화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증대

[그림 III-1-2]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십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호

<표 III-1-5> 보험료 및 보험급여비 추이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보험료(A)	조원	7.2	8.9	10.9	13.7	15.6	16.9	18.8	21.7
	보험급여비(B)	조원	9.3	13.2	13.8	14.9	16.3	18.4	21.6	24.6
	순수지율(B/A)	%	129.2	148.3	126.6	108.8	104.5	108.9	114.9	113.4
연간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	원	187,432	245,659	297,005	362,593	401,097	432,368	475,304	532,722
	보험급여비	원	202,144	286,294	297,261	317,135	344,151	388,017	455,360	515,09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호

□ 건강보험제도 여건 변화

○ 인구구조 고령화

- 보험수입 감소, 의료비 급증
- 단기치료 중심에서 장기요양 및 재활 중심으로 전환

<표 III-1-6> 인구구조 고령화 전망

(단위: 만명, ( )안 %)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4,701	4,814	4,888	4,933	4,864	4,234
65+ 인구(만명)	340	437	536	770	1,181	1,616
인구비중	(7.2)	(9.1)	(11.0)	(15.6)	(24.3)	(38.2)
80+ 인구(만명)	48	68	95	178	258	613
인구비중	(1.0)	(1.4)	(1.9)	(3.6)	(5.3)	(14.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6)

○ 국민소득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 증가

○ 의료공급체계의 변화

- 의료분야 기술발전: 의료소비자 욕구 증가, 의료보장범위 확대 압력
- 의료 인력 공급 증가로 시장 확대
-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 건강보험제도 변화 전망

○ 보장성 비율은 2007년 기준 64.6%(급여율일 경우 2008년 기준 약 74%)이며 2016년까지 80%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

-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
-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 담배부담금 인상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지원 확대
  - 적정 보험료 산출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 지불제도 개선 방안 검토
  -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 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진료수입 증대 유인 상존, 현재 8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 시범적 시행
  - 2010년 입원 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검토
  -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 검토
-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지출 절감
  -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 약제사용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으로 현재의 약제비 비율(약 29%)을 2011년까지 24%로 감소시킬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지출 증가 전망

< 참고 > 건강보험재정 관련 통계

(단위: 십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A)							
보험료(C1)	9,828	11,928	14,305	17,467	19,408	21,091	23,263	26,050
국고지원금	7,229	8,856	10,928	13,741	15,579	16,928	18,811	21,729
- 보험재정국고지원금(C2)	1,553	2,625	3,014	3,424	3,483	3,695	3,836	3,672
- 관리재정국고지원금	1,381	2,467	2,445	2,643	2,716	2,643	2,757	2,704
- 관리재정국고지원금	172	158	130	136	140	127	113	n.a.
- 담배부담금(C3)	0	0	439	645	626	925	966	968
기 타	1,046	447	364	302	347	469	616	649
	계(B)							
보험급여비(실급여비)(D)	10,744	14,106	14,798	15,972	17,330	19,980	22,818	25,889
- 오양급여비	9,286	13,196	13,824	14,893	16,265	18,394	21,588	24,560
- 오양급여비	9,081	13,007	13,621	14,654	16,005	18,056	21,125	24,018
- 장제비	47	50	52	51	50	49	46	49
- 본인부담액보상금	61	41	32	26	28	54	59	65
- 건강진단비	97	97	118	163	181	235	357	427
관리운영비	696	629	598	634	693	759	779	720
기 타	763	281	377	445	372	827	451	609
총수지출(B/A)	109.3	118.3	103.4	91.4	89.3	94.7	98.1	99.4
보험료 대 급여비 비율(D/(C1+C2+C3))	128.5	116.5	103.4	87.5	86.0	89.7	95.8	96.7
당기차액(A-B)	-916.5	-2,177.5	-493.1	1,494.3	2,078.7	1,111.1	445.3	161.3
이월금	335.5	257.9	-250.5	1,228.5	3,285.2	3,456.4	3,883.0	4,110.2
누적준비금적립금(E)	1,994.9	0.0	0.0	0.0	75.7	995.4	995.4	895.1
적립률(E/D)	21.5	0.0	0.0	0.0	0.5	5.4	4.6	3.6
연간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원)	187,432	245,659	297,005	362,593	401,097	432,368	475,304	532,722
연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원)	202,144	286,294	297,261	317,135	344,151	388,017	455,360	515,09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호

## 나. 추계모형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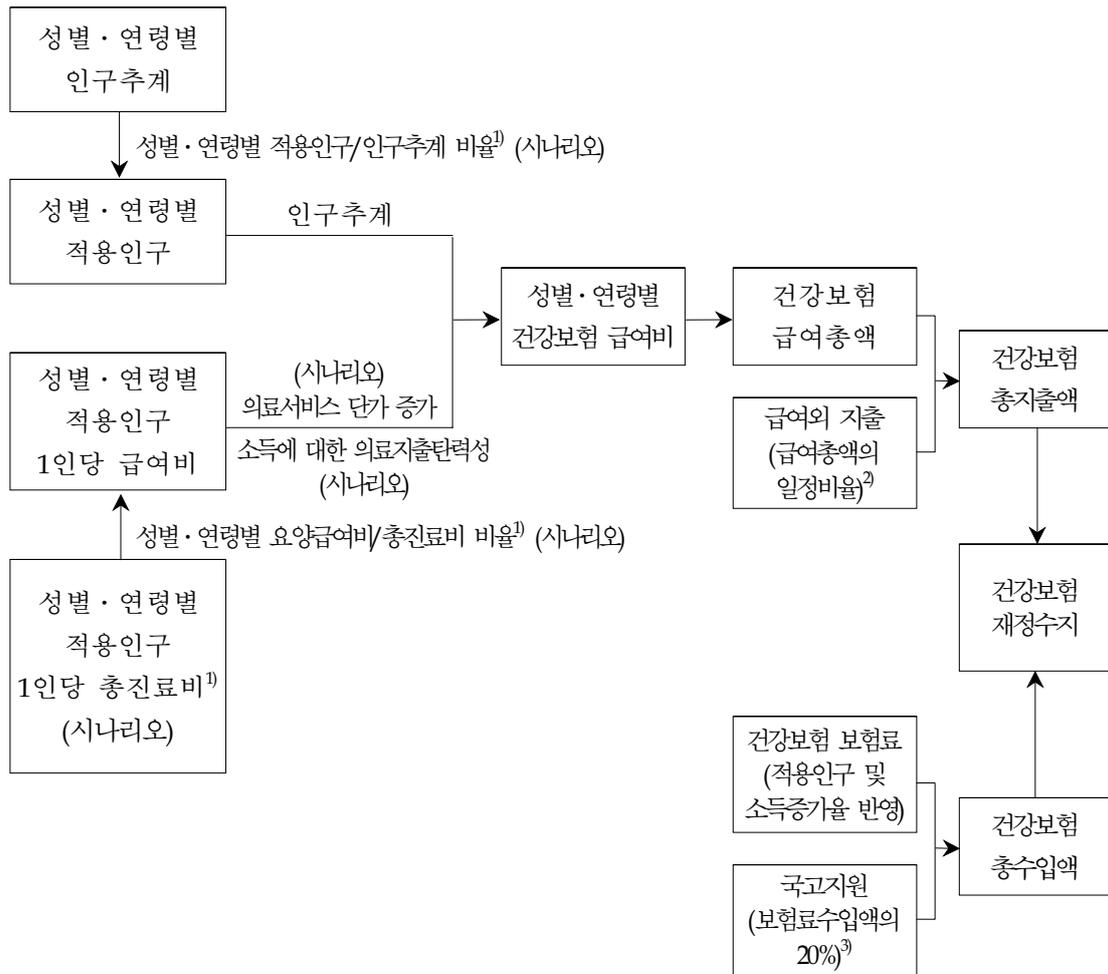
- 건강보험 지출은 조성법(component method)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액을 성별·연령별 요양급여비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한 후 합산
  -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0세 및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추계하되, 성별·연령별 급여인구와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를 곱하여 추계
  - 건강보험 총지출 중에서 요양급여비 이외의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총액의 일정비율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계
    -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건강진단비, 관리운영비, 기타
  
- 건강보험 수입은 현행 건강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수입액 총액을 적용인구 및 1인당 소득의 변동을 감안하여 추계
  - 건강보험 총수입 중에서 보험료 수입액 이외의 국고지원금 수입항목에 대해서는 법정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국고 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현행처럼 각각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 및 6%로 유지된다고 전제
    - 관리재정국고지원금은 2006년 현재 보험료 수입의 0.6%에 불과하므로 무시하기로 함

### 2) 지출추계

-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인구부문에서 추계된 성별·연령별 인구추계 결과에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8년도 성별·연령별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자(약 100만명) 등으로 인해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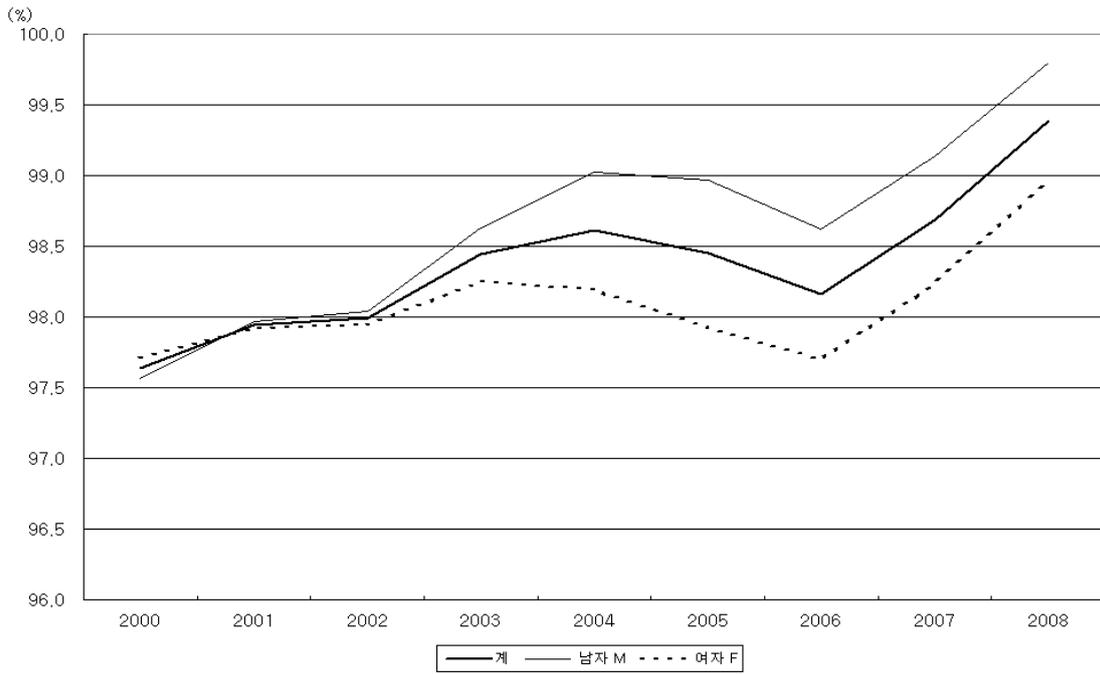
[그림 III-1-3] 건강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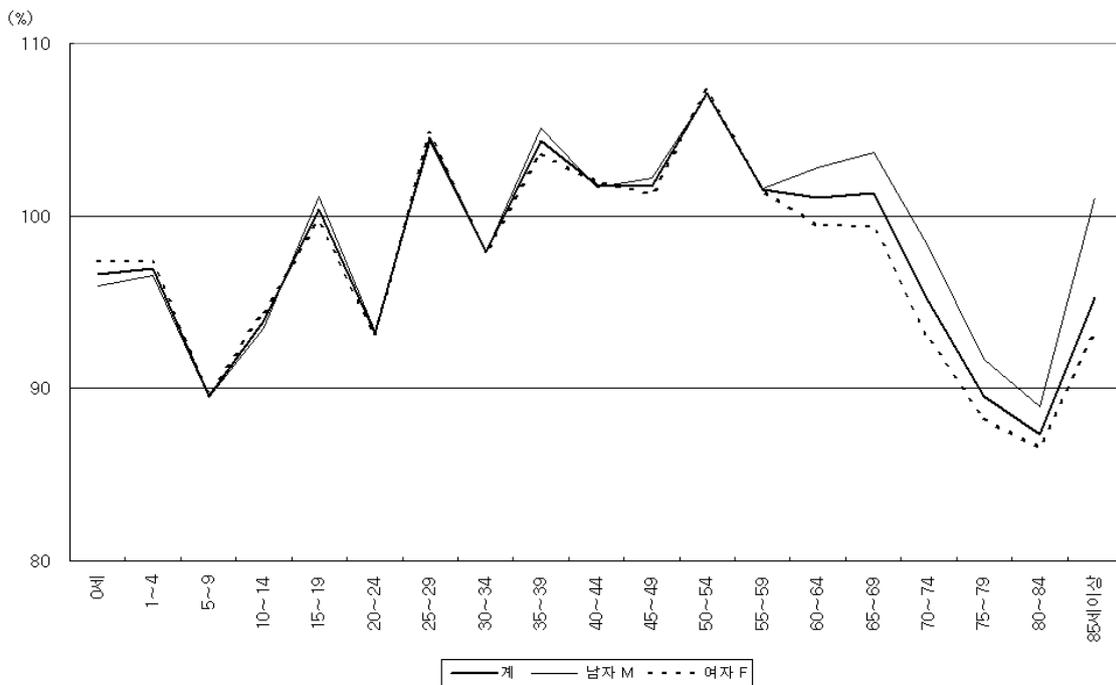
주: 1) 2008년 수준, 2) 2008년 비율 6.30%, 3) 2009년 현재 법정비율

- 2003년까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보이고 있어 추계시 가장 최근 연도인 2007년 실적 적용 가능
- 다만 급여요건의 완화 등 정책변경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가능

[그림 III-1-4]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 추이



[그림 III-1-5] 2008년도 성별·연령별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



□ (총진료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할 경우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첫째는 향후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성별·연령별 1인당 의료비지출(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급여비) 구조가 기준연도(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비해 얼마나 달라지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

- Nusselder(2003)의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3가지 가설이 있음

① Gruenberg(1977), Verbrugge(1984), Olshansky et al.(1991)이 주장하고 Guralnik(1991)이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한 “건강악화 기간 증가 가설(expansion of morbidity hypothesis)”에 따르면, 평균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의 건강상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함

② 반면, Manton(1982) 및 Manton et al.(1995)에 의해 주장된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건강악화 기간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설(dynamic equilibrium hypothesis)”은 생애 의료비의 대부분이 사망 직전 몇 년 동안 발생한다는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음

③ 마지막으로는 Fries(1980, 1983, 1989, 1993 및 2003)가 주장한 “건강악화 기간 감소가설(compression of morbidity hypothesis)”이 있으나 Oeppen and Vaupel(2002), Robine and Vaupel(2002), Robine et al.(2005) 등의 실증적 분석에 의해 기각된 바 있음

○ 다음 문제는 이러한 1인당 의료비지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 EU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의료비지출 증가율을 1인당 GDP 증가율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기준선 전망으로 하고 민감도 분석에서 임금증가율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최준욱·전병목(2004)이 1인당 소득증가율 및 근로자 1인당 소득증가율(즉 임금상승률)의 2가지 가능성을 동일한 중요도로 모두 고려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자연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의 문제
  - 자연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은 자연증가 건강보험수가 상승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 EU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전망 초기에는 탄성치를 1.1로 설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전망의 마지막 연도에는 1.0이 되도록 함
    - EU(2006)의 Table 4-7에 따르면 19개 EU회원국의 1982~2002년 기간 중 공공의료비지출의 탄성치 평균은 1.26(1992~2002년 기간 중은 1.04)으로 나타남
  - 최준욱·전병목(2004)에서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1인당 국민의료비의 소득탄력성 1.174를 적용하는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추계하여 소득탄력성을 1.0으로 본 기준전망과 비교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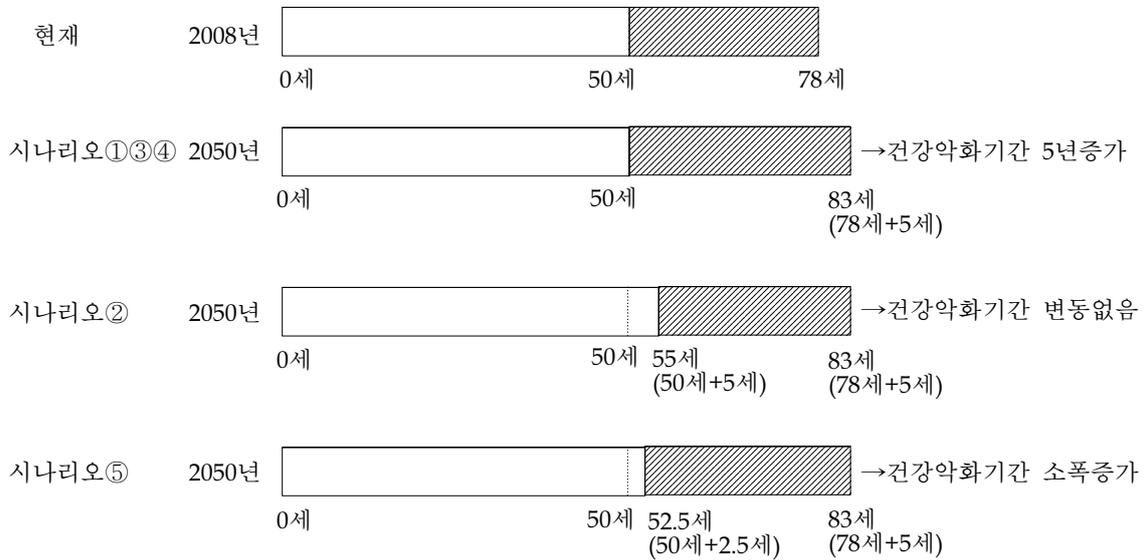
<표 III-1-7> Elasticity of health care spending per capita with respect to GDP per capita

	Total health care spending			Public health care spending		
	2002-1992	2002-1982	2002-1972	2002-1992	2002-1982	2002-1972
Austria	1.88	1.28	1.56	0.55	1.15	1.73
Belgium	3.34	1.45	2.34	:	:	:
Czech Republic	1.70	:	:	1.59	:	:
Denmark	1.40	0.92	1.11	1.37	0.84	1.09
Finland	-0.40	1.14	1.25	-0.62	1.05	1.35
France	3.20	1.76	1.91	2.99	1.62	1.93
Germany	-1.79	1.43	1.70	-0.93	1.44	1.78
Greece	2.13	1.80	1.68	1.79	1.63	2.08
Hungary	1.03	:	:	0.55	:	:
Ireland	1.08	0.93	1.21	1.19	0.85	1.21
Italy	0.38	1.32	:	0.84	1.22	:
Luxembourg	0.97	1.02	1.77	0.70	0.92	1.70
Netherlands	1.65	1.28	1.41	0.65	1.07	1.46
Poland	0.96	:	:	0.85	:	:
Portugal	3.15	1.77	2.93	4.72	2.29	3.49
Slovak Republic	0.78	:	:	0.56	:	:
Spain	2.01	1.47	1.86	0.26	1.28	1.99
Sweden	0.13	0.98	1.34	0.32	0.85	1.32
United Kingdom	1.39	1.49	1.73	1.33	1.40	1.63
Unweighted average	1.32	1.34	1.70	1.04	1.26	1.75
Standard deviation	1.25	0.30	0.48	1.27	0.40	0.61

Source: OECD Health Data 2005

- 본 연구에서는 EPC and European Commission(2006) 및 최준욱·전병목(2005)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추계하기로 함
  - 시나리오 ①(인구고령화만 반영 시나리오)에서는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구조가 향후에도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8년의 구조와 동일하고 의료서비스 단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만 감안하는 경우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악화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pure ageing scenario)
  - 시나리오 ②(노인건강 개선 시나리오)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되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건강악화 기간이 보다 고연령 기간으로 이동하되 건강악화 기간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constant health scenario: dynamic equilibrium)
  - 시나리오 ③(소득효과 감안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①에서 소득에 대한 의료지출 탄력성을 2008년 1.0~2050년 1.0에서 2008년 1.1~2050년 1.0으로 조정하는 경우
  - 시나리오 ④(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 상승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①에서 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을 인구가 감소하는 2020년 이후에 1인당 소득증가율보다 높아지는 실질임금 증가율로 조정하는 경우
  - 시나리오 ⑤에서는 성별·연령별 1인당 건강보험급여비 구조를 시나리오 ①과 ②의 중간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소득에 대한 의료지출탄력성은 시나리오 ③처럼 2008년 1.1~2050년 1.0으로 높은 것으로 가정

[그림 III-1-6] 시나리오별 건강악화 기간  
(평균수명이 78세에서 83세로 5년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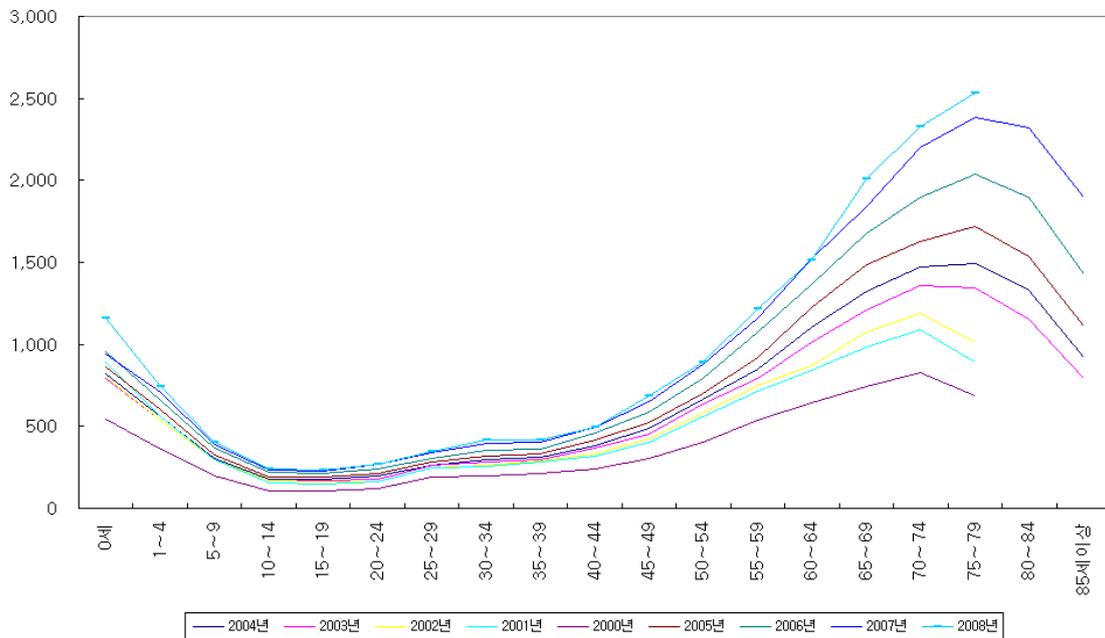
<표 III-1-8>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성별·연령별 1인당 건강보험급여비 구조	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	자연증가 등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
시나리오 ① (인구고령화만 반영)	2008년과 동일	1인당 소득증가율	1.0(2008년)~ 1.0(2050년)
시나리오 ② (노인건강 개선)	2008년 구조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우측으로 이동	1인당 소득증가율	1.0(2008년)~ 1.0(2050년)
시나리오 ③ (소득효과 감안)	2008년과 동일	1인당 소득증가율	1.1(2008년)~ 1.0(2050년)
시나리오 ④ (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 상승)	2008년과 동일	임금 증가율	1.0(2008년)~ 1.0(2050년)
시나리오 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①과 ②의 평균	1인당 소득증가율	1.1(2008년)~ 1.0(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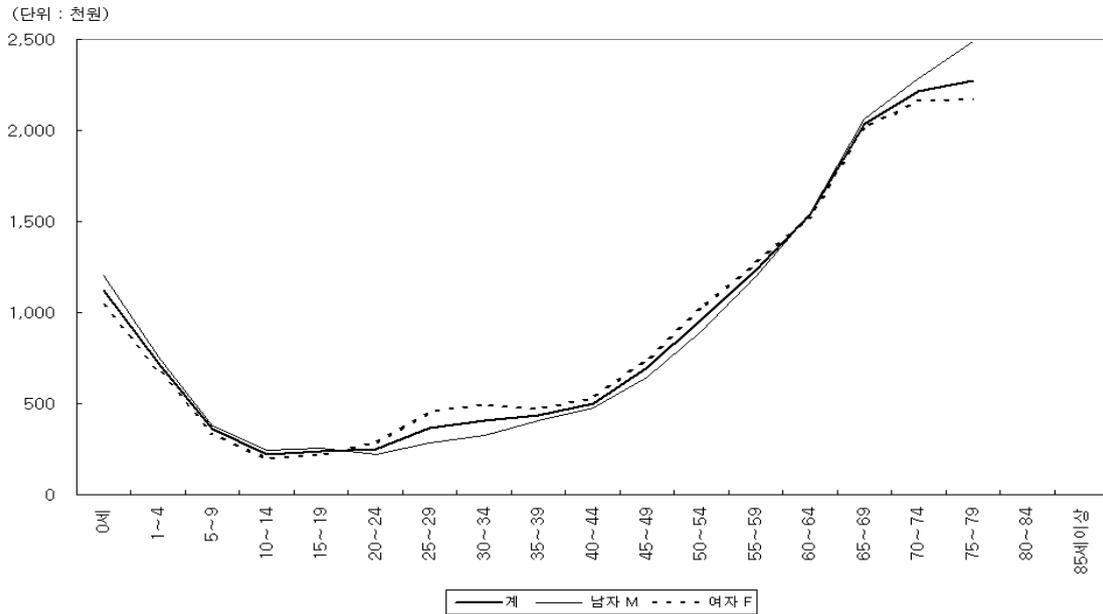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에 성별·연령별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연도의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를 추계한 후, 여기에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이동 여부, 의료서비스 단가 증가율,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 등을 적용하여 기준연도 이후의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를 추계
- 건강보험수가와 관련된 지표인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에 대해서는 추계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08년 실적을 적용하되, 건강보험수가가 정책변수인 만큼 시나리오 분석 가능
  - 2008년 이후의 성별·연령별 1인당 건강보험급여비 구조에 대해서는 Nusselder(2003)가 정리한 3가지 가설 중 pure ageing scenario 및 constant health scenario를 적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그림 III-1-7]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 추이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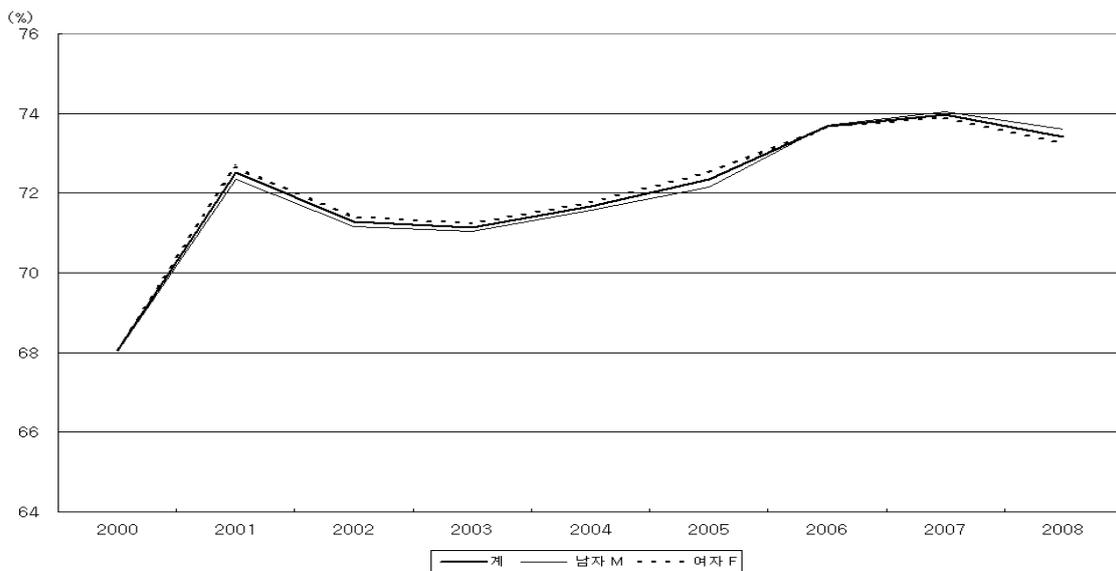


[그림 III-1-8] 2008년도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총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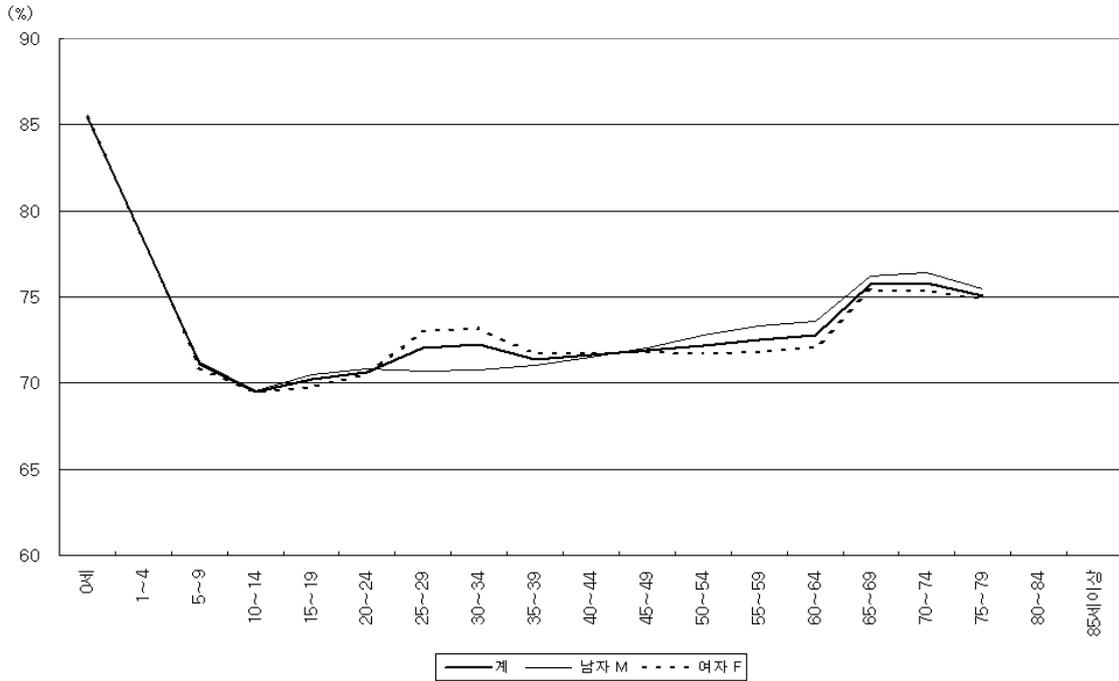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된 지표인 성별·연령별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에 대해서는 추계시 가장 최근 연도인 2007년 실적을 적용하되, 정책변수인 만큼 시나리오 분석 가능

[그림 III-1-9]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 추이



[그림 III-1-10] 2008년도 성별·연령별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



-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0세 및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추계된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추계결과와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 추계결과를 곱하여 성별·연령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추계한 후 동 결과를 합산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액을 추계
- (요양급여비 이외의 지출항목)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요양급여 외 지출/급여 비중이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인 2008년 실적을 적용
    - 급여 외 지출항목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진단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의 급여외 관리운영비를 포함

<표 III-1-9> 급여 외 지출비중 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급여 외 지출비중	8.44	8.64	9.00	8.27	10.66	8.01	7.79	6.30

### 3) 수입추계

- (보험료 수입) 건강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수입액 총액을 적용인구 및 1인당 소득의 변동을 감안하여 추계
  - 2008년도 이후 보험료 수입 총액 = 2008년도 보험료 수입 총액 × 적용인구 증가율 × 1인당 소득증가율
    - 적용인구 증가율은 지출추계 과정의 성별·연령별 적용인구 추계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음
    - 1인당 소득증가율은 거시경제부문의 전망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음
  
- (국고지원금 수입) 건강보험 총수입 중에서 보험료 수입액 이외의 국고지원금 수입항목에 대해서는 법정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국고 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현행처럼 각각 예상 보험료수입의 14% 및 6%로 유지된다고 전제
  
- 건강보험 수입 전망에 있어 다른 대안으로는 건강보험의 총지출액이 추계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하여 국고지원(총지출액의 20%)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 보험료로 조달된다고 보는 방법이 있음
  - 물론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의 재정적지는 보험료율의 미세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 일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 전망에서는 결코 무리한 가정이 아님

## 다. 추계결과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을 전망해 보면 2008년 GDP 대비 2.68% 수준에서 2050년 5.12%로 2.44%p나 증가(베이스라인인 시나리오 5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이러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만 국고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는 지출증가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
  - 또한 보험료율을 2009년 기준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보험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하여 2050년에는 적자규모가 GDP 대비 2.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별 전망결과를 비교해 보면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베이스라인인 시나리오 5는 5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결과 중 중간 정도에 해당
  -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건강악화 기간이 늘어나고 의료비지출에 탄력성을 적용하여 1인당 소득증가율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 전망치가 가장 큼
    - 다만 2040년대에는 인구감소가 심각해져 임금증가율이 1인당 소득증가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4가 시나리오 3보다 더 커짐
  - 평균수명이 연장되더라도 건강악화 기간에 변동이 없으며 의료비지출이 1인당 소득증가율 정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 전망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강보험 지출 중에서 국고지원규모 전망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5 기준)는 복지부 내부전망치에 비해서는 과소추계되지만,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다소 과대 추계되는 경향
  - 보건복지부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매년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재정적자를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5:1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여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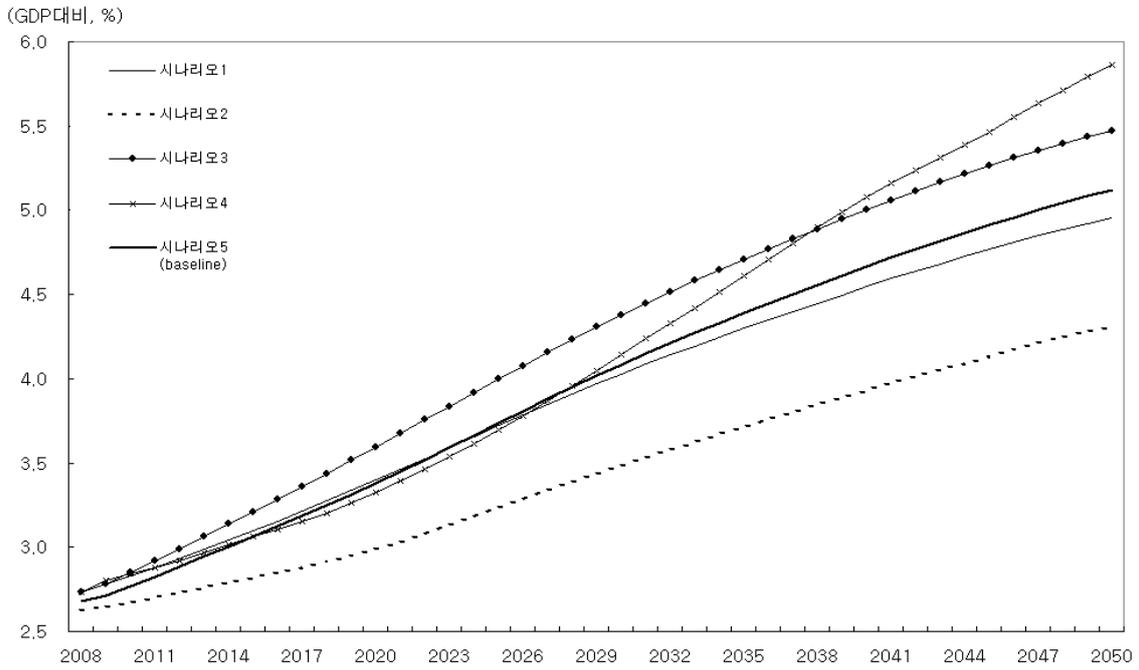
- 본 연구의 2009~2013년 중 국고지원규모 추계결과는 복지부 내부전망치에 비해서는 0.5조원에서 1.5조원 정도 과소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서는 -0.5조원~+0.5조원으로 전망기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과대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0> 추계결과의 중기재정전망과의 비교

(단위: 조원)

	본 연구		복지부 내부추계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2009	28.12	4.21	31.31	5.22	31.22	5.20
2010	30.55	4.49	34.27	5.71	32.30	5.38
2011	33.56	4.83	39.47	6.58	34.87	5.81
2012	36.87	5.20	44.32	7.39	35.67	5.95
2013	40.50	5.59	49.59	8.27	37.70	6.28
차이						
2009	-	-	-3.19	-0.53	-3.11	-0.52
2010	-	-	-3.72	-0.62	-1.75	-0.29
2011	-	-	-5.91	-0.99	-1.32	-0.22
2012	-	-	-7.45	-1.24	1.19	0.20
2013	-	-	-9.09	-1.51	2.81	0.47

[그림 III-1-11] 시나리오별 건강보험재정 추계결과



<표 III-1-11> 시나리오별 건강보험재정 추계결과  
(단위: GDP 대비, %)

	총수입			총지출				
	소계	보험료	국고 지원금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baseline)
2009	2.85	2.44	0.41	2.78	2.65	2.78	2.80	2.72
2010	2.85	2.44	0.41	2.83	2.67	2.85	2.84	2.77
2011	2.85	2.44	0.41	2.88	2.70	2.92	2.88	2.83
2012	2.85	2.44	0.41	2.93	2.73	2.99	2.92	2.89
2013	2.85	2.44	0.41	2.99	2.76	3.06	2.97	2.95
2014	2.85	2.44	0.41	3.04	2.79	3.14	3.01	3.01
2015	2.85	2.44	0.41	3.10	2.82	3.21	3.06	3.07
2016	2.85	2.44	0.41	3.16	2.85	3.29	3.11	3.13
2017	2.85	2.44	0.41	3.21	2.88	3.36	3.15	3.19
2018	2.85	2.44	0.41	3.27	2.92	3.44	3.20	3.25
2019	2.85	2.44	0.41	3.34	2.95	3.52	3.26	3.31
2020	2.85	2.44	0.41	3.40	2.99	3.60	3.32	3.38
2021	2.85	2.44	0.41	3.46	3.03	3.68	3.39	3.45
2022	2.85	2.44	0.41	3.53	3.08	3.76	3.46	3.52
2023	2.85	2.44	0.41	3.59	3.13	3.84	3.54	3.59
2024	2.85	2.44	0.41	3.66	3.18	3.92	3.62	3.66
2025	2.85	2.44	0.41	3.72	3.23	4.00	3.70	3.74
2026	2.85	2.44	0.41	3.79	3.29	4.08	3.78	3.81
2027	2.84	2.44	0.41	3.85	3.34	4.16	3.87	3.88
2028	2.84	2.44	0.41	3.91	3.39	4.23	3.96	3.95
2029	2.84	2.44	0.41	3.97	3.44	4.31	4.05	4.02
2030	2.84	2.43	0.41	4.03	3.49	4.38	4.14	4.08
2031	2.84	2.43	0.41	4.09	3.53	4.45	4.24	4.15
2032	2.83	2.43	0.40	4.14	3.58	4.52	4.33	4.21
2033	2.83	2.43	0.40	4.19	3.62	4.58	4.42	4.27
2034	2.83	2.43	0.40	4.25	3.67	4.65	4.51	4.33
2035	2.83	2.42	0.40	4.30	3.71	4.71	4.61	4.39
2036	2.83	2.42	0.40	4.35	3.76	4.77	4.71	4.45
2037	2.82	2.42	0.40	4.40	3.80	4.83	4.80	4.50
2038	2.82	2.42	0.40	4.45	3.85	4.89	4.90	4.56
2039	2.82	2.42	0.40	4.50	3.89	4.95	4.99	4.61
2040	2.82	2.41	0.40	4.55	3.93	5.00	5.08	4.67
2041	2.82	2.41	0.40	4.59	3.98	5.06	5.16	4.72
2042	2.81	2.41	0.40	4.64	4.01	5.11	5.24	4.77
2043	2.81	2.41	0.40	4.68	4.05	5.16	5.31	4.82
2044	2.81	2.41	0.40	4.72	4.09	5.21	5.39	4.86
2045	2.81	2.41	0.40	4.77	4.13	5.26	5.47	4.91
2046	2.81	2.41	0.40	4.81	4.17	5.31	5.55	4.96
2047	2.81	2.41	0.40	4.85	4.21	5.35	5.63	5.00
2048	2.81	2.41	0.40	4.89	4.25	5.40	5.71	5.04
2049	2.81	2.41	0.40	4.92	4.28	5.44	5.79	5.08
2050	2.81	2.41	0.40	4.95	4.31	5.47	5.87	5.12

<표 III-1-12> 건강보험재정 자원조달 추계결과 : 시나리오 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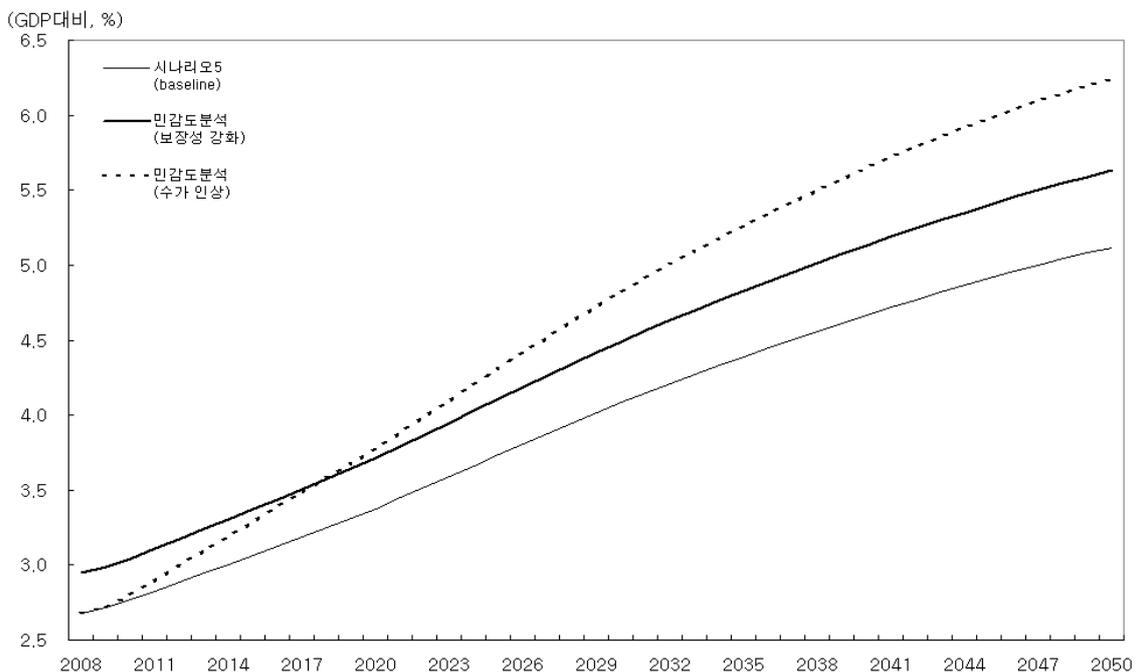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총지출	국고부담	보험료	재정적자
2009	2.72	0.41	2.44	0.13
2010	2.77	0.41	2.44	0.08
2011	2.83	0.41	2.44	0.02
2012	2.89	0.41	2.44	-0.04
2013	2.95	0.41	2.44	-0.10
2014	3.01	0.41	2.44	-0.16
2015	3.07	0.41	2.44	-0.22
2016	3.13	0.41	2.44	-0.28
2017	3.19	0.41	2.44	-0.34
2018	3.25	0.41	2.44	-0.40
2019	3.31	0.41	2.44	-0.46
2020	3.38	0.41	2.44	-0.53
2021	3.45	0.41	2.44	-0.60
2022	3.52	0.41	2.44	-0.67
2023	3.59	0.41	2.44	-0.74
2024	3.66	0.41	2.44	-0.82
2025	3.74	0.41	2.44	-0.89
2026	3.81	0.41	2.44	-0.96
2027	3.88	0.41	2.44	-1.04
2028	3.95	0.41	2.44	-1.11
2029	4.02	0.41	2.44	-1.18
2030	4.08	0.41	2.43	-1.24
2031	4.15	0.41	2.43	-1.31
2032	4.21	0.40	2.43	-1.38
2033	4.27	0.40	2.43	-1.44
2034	4.33	0.40	2.43	-1.50
2035	4.39	0.40	2.42	-1.56
2036	4.45	0.40	2.42	-1.62
2037	4.50	0.40	2.42	-1.68
2038	4.56	0.40	2.42	-1.74
2039	4.61	0.40	2.42	-1.79
2040	4.67	0.40	2.41	-1.85
2041	4.72	0.40	2.41	-1.90
2042	4.77	0.40	2.41	-1.96
2043	4.82	0.40	2.41	-2.00
2044	4.86	0.40	2.41	-2.05
2045	4.91	0.40	2.41	-2.10
2046	4.96	0.40	2.41	-2.15
2047	5.00	0.40	2.41	-2.19
2048	5.04	0.40	2.41	-2.23
2049	5.08	0.40	2.41	-2.27
2050	5.12	0.40	2.41	-2.31

□ 민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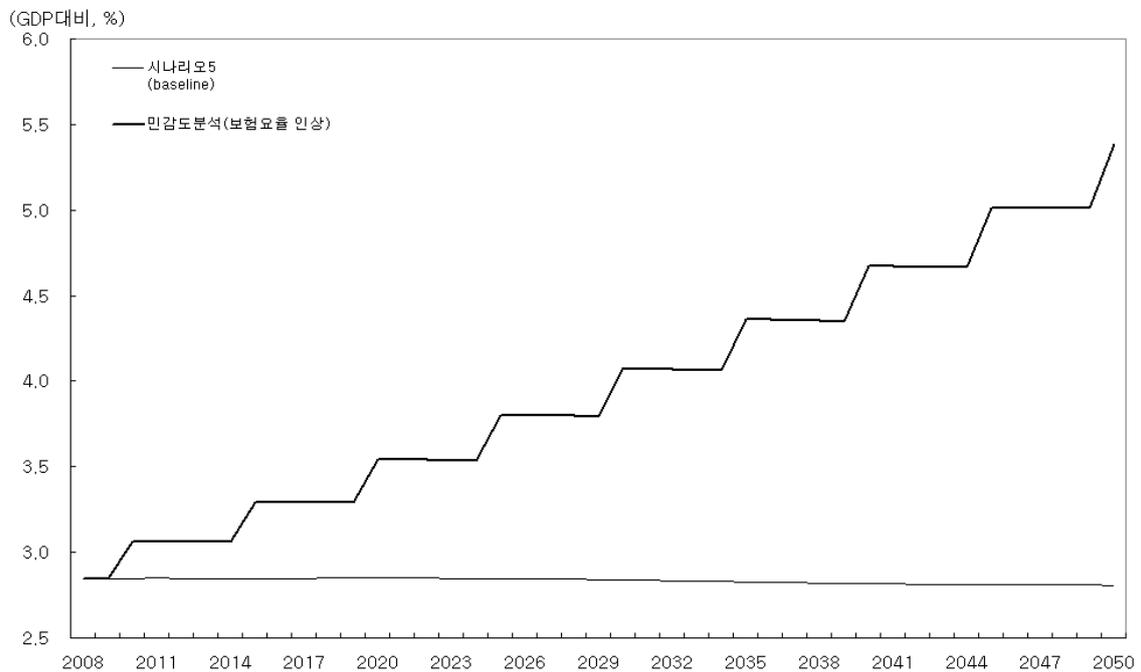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성별·연령별 요양급여비/총진료비 비율이 2008년 수준(69.5%~85.5%, 총 73.4%)에서 일률적으로 10% 정도(총 80.8%) 상승할 경우
  - 2050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baseline의 GDP 대비 5.12%에서 5.63%로 0.51%p 정도 증가
-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상향 조정 등으로 자연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이 baseline의 1.1(2008년)~1.0(2050년)에서 1.3(2008년)~1.00(2050년)으로 커질 경우
  - 2050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baseline의 GDP 대비 5.12%에서 6.24%로 1.12%p 정도 증가

[그림 III-1-12] 건강보험재정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baseline하에서의 2050년까지의 건강보험지출을 위한 재정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010년부터 매 5년 마다 동일한 인상률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로 국고보조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전제)을 역산
  - 계산 결과 매 5년마다 7.5%씩 보험료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현재 보험료율의 1.92배가 되어야 건강보험지출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13] 건강보험재정수입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2.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 현행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 7.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전국민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

<표 III-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구 분	범 위
가입대상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부담주체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09)

#### □ 장기요양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수혜 대상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보조 여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1등급(最重症)~3등급(中等症) 판정

<표 III-2-2> 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도움정도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전적	95점 이상
2등급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 도움으로 휠체어 이용 상태	상당부분	75점~95점 미만
3등급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분적	55점~75점 미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2009)

□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고지원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와 동일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장기보험료 총액/건강보험료 총액) 4.78%(2009년 기준)를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되,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여 부담

○ 본인일부부담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의 경우 각각 20%, 15%를 본인이 부담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의 경우 50% 감경 (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는 면제

□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

-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으로 구성
-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전문요양서비스 제공
-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가족요양비

<표 III-2-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는 것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23조~제26조

□ 장기요양급여비용(2009년 기준)7)

○ 재가급여

-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표 III-2-4>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단위: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1,600	37,900	31,900
단기보호	43,300	39,600	35,900

주: 주야간보호의 경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기준

<표 III-2-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단위: 원/회당)

구 분	수 가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방문요양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8,700		36,650		44,600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표 III-2-6>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단위: 원)

구분	대상자 방문	의사방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15,000	48,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지소)	4,000	9,000

7) 국민연금관리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심사 민원상담 사례집(2009)을 참조하여 작성

<표 III-2-7>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월)

(단위: 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비 고
2008.7~2008.12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2009.1~	1,140,600	971,200	814,700	

주: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 시설급여

<표 III-2-8> 등급별 시설급여

(단위: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	38,020	34,440	30,860
노인전문시설	48,150	44,590	41,0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48,150	44,590	41,030

○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sup>8)</sup>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표 III-2-9> 등급별 시설급여

(단위: 원/월)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8)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별표1제8호의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함
-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그림 III-2-1]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1.1)

□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요재정은 당초 추계액보다 3,102억원 늘어난 약 2.1조원 규모이며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1,100억원), 노인요양시설·재가시설 수가 조정(345억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316억원) 등

<표 III-2-10>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당초추계	수정추계	증감액
총 재 정	수 입	17,853	20,955	3,102
	- 요양보험료	10,495	12,382	1,887
	- 국고지원금	2,114	2,035	△79
	- 의료급여부담금	5,244	6,538	1,294
	지 출	17,853	20,955	3,102
	- 요양급여비	15,880	18,825	2,945
	- 관리운영비	1,973	2,130	157
건 강 보 험	수 입	12,609	14,417	1,808
	- 요양보험료	10,495	12,382	1,887
	- 국고지원금	2,114	2,035	△79
	지 출	12,609	14,417	1,808
	- 요양급여비	11,070	12,834	1,764
	- 관리운영비	1,539	1,583	44
의 료 급 여	수 입	5,244	6,538	1,294
	- 의료급여부담금	5,244	6,538	1,294
	지 출	5,244	6,538	1,294
	- 요양급여비	4,810	5,991	1,181
	- 관리운영비	434	547	11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11.27)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 전망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2009년의 경우 2008년 20만명에서 15% 증가한 23만명으로 추산
-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시행
  -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009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 경감

## 나. 추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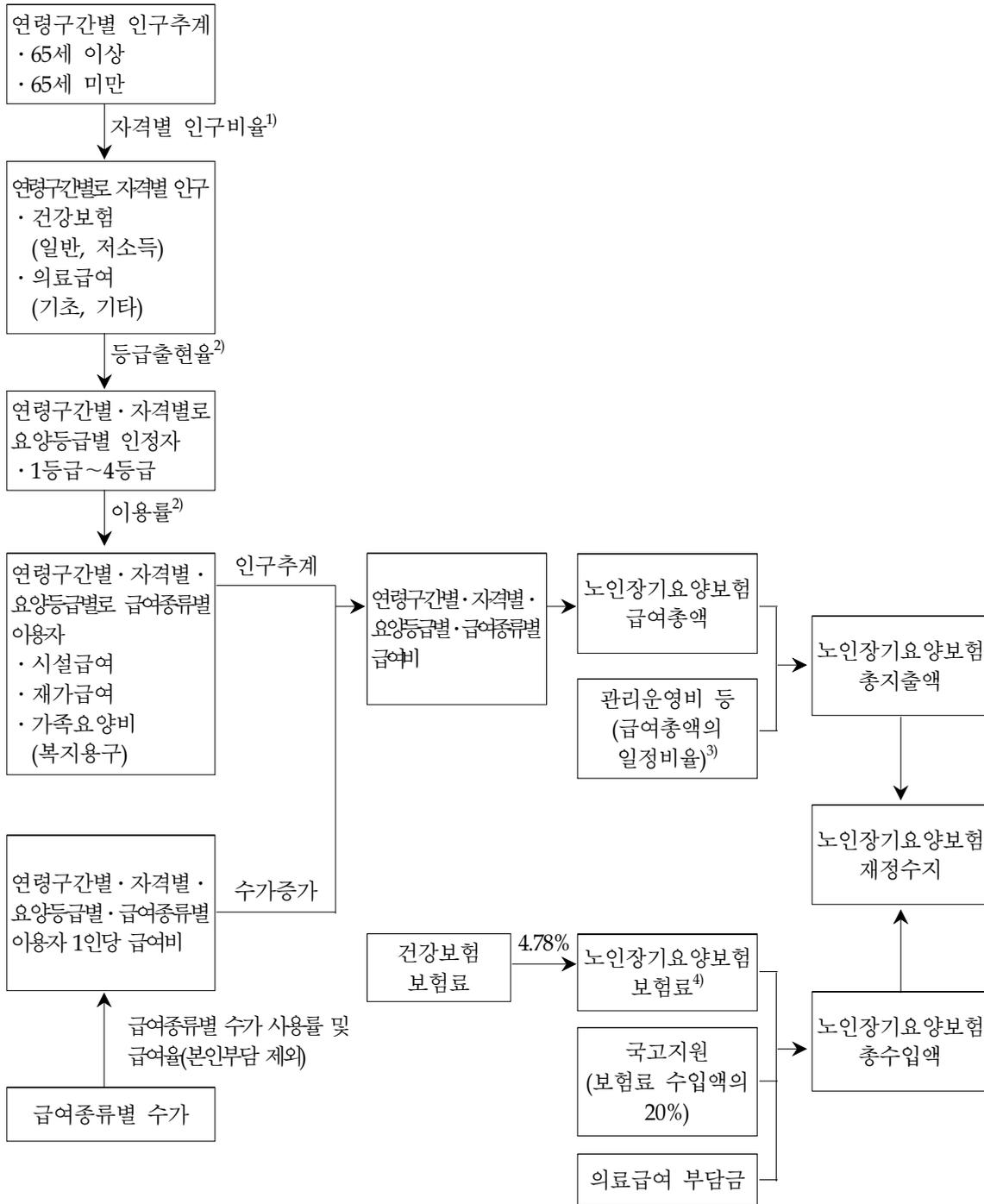
### 1) 개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조성법(component method)에 따라 요양급여 총액을 연령구간별·자격별·요양등급별·급여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한 후 합산
  - 연령구간별·자격별·요양등급별·급여종류별 요양급여비는 해당 급여인구와 해당 급여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를 곱하여 추계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2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자격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일반, 저소득) 및 의료급여 대상자(기초생활보장대상, 기타)로 구분
    - 요양등급은 1등급~4등급으로 구분되고, 급여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하지만 재가급여 이용자 중에서 복지용구 이용자를 별도로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중에서 요양급여비 이외의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총액의 일정비율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계
    - 의사소견서발급 급여비, 방문간호지시서발급 급여비, 관리운영비

<표 III-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카테고리별 구분

연령구간별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자격별	(일반)	(저소득)	(기초)	(기타)	(일반)	(저소득)	(기초)	(기타)
요양등급별	1등급~4등급							
급여종류별	시설 / 재가 / 가족요양							

[그림 III-2-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주: 1) 2008년 12월 말 실적  
 2) 2008년 12월 말 실적치를 기본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  
 3) 기타급여비(의사소견서 발급 급여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로 요양급여 총액의 7%  
 4) 2009년 현재 건강보험보험료액의 4.78%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현행 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료의 4.78%를 적용하여 추계
  - 국고지원금은 법정지원비율인 예상 보험료수입의 20%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액 국고부담

## 2) 지출추계

- (자격별 인구 수) 제Ⅲ장 5절 '기초생활보장'에서 추정한 기초생보 수급자 수를 활용하고 기타 의료급여자 수는 기초생보 의료수급자의 7.76%(=7.2%/92.8)로 추계. 건강보험 가입자는 추계인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감하여 추계하고 일반 및 저소득층의 분해는 9:1의 비율을 적용
  - '1절 건강보험'에서 적용인구 비율이 2007년 98.7%인 반면, <표 Ⅲ-2-12>에서는 96.2%에 불과한 것은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자의 일부가 추계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표 III-2-12> 2008년 12월말 자격별 인구비율

구분	차상위 의료급여 기타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 기타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이후		
	인구 수(명)	비율(%)	인구 수(명)	비율(%)	
전체	계	48,606,787	100.0%	48,606,787	100.0%
	건강보험	46,765,448	96.2%	46,972,119	96.6%
	(일반)	-	-	42,556,740	90.6%
	(저소득)	-	-	4,415,379	9.4%
	의료급여	1,841,339	3.8%	1,634,668	3.4%
	(기초)	1,516,524	82.4%	1,516,524	92.8%
	(기타)	324,815	17.6%	118,144	7.2%
65세 이상	소계	5,016,026	10.3%	5,016,026	10.3%
	건강보험	4,529,395	90.3%	4,564,810	91.0%
	(일반)	-	-	4,135,718	90.6%
	(저소득)	-	-	429,092	9.4%
	의료급여	486,631	9.7%	451,216	9.0%
	(기초)	406,660	83.6%	406,660	90.1%
	(기타)	79,971	16.4%	44,556	9.9%
65세 미만	소계	43,590,761	89.7%	43,590,761	89.7%
	건강보험	42,236,053	96.9%	42,407,309	97.3%
	(일반)	-	-	38,421,022	90.6%
	(저소득)	-	-	3,986,287	9.4%
	의료급여	1,354,708	3.1%	1,183,452	2.7%
	(기초)	1,109,864	81.9%	1,109,864	93.8%
	(기타)	244,844	18.1%	73,588	6.2%

□ (인정자 수) 연령구간별·자격별 인구 수에 등급출현율을 적용하여 요양등급별로 인정자 수를 추계

○ 등급출현율은 2008년 12월 말 실적치를 기본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를 활용

○ 2013년 이후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III-2-13> 등급출현율 추정결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50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일반, 저소득)	총계	5.039%	5.218%	5.883%	6.299%	6.722%	7.098%
		1등급	0.943%	0.938%	1.057%	1.132%	1.208%	1.276%
		2등급	1.267%	1.356%	1.528%	1.636%	1.746%	1.844%
		3등급	2.290%	2.543%	2.867%	3.070%	3.276%	3.459%
		4등급	0.539%	0.381%	0.430%	0.461%	0.491%	0.519%
	의료급여 기초	총계	16.771%	14.921%	16.085%	16.838%	17.568%	18.550%
		1등급	2.482%	2.402%	2.590%	2.711%	2.829%	2.987%
		2등급	3.147%	3.231%	3.483%	3.646%	3.804%	4.016%
		3등급	7.700%	8.076%	8.707%	9.114%	9.509%	10.041%
		4등급	3.442%	1.211%	1.306%	1.367%	1.426%	1.506%
	의료급여 기타	총계	9.323%	9.421%	10.156%	10.631%	11.092%	11.712%
		1등급	1.769%	1.798%	1.938%	2.029%	2.117%	2.235%
2등급		2.200%	2.364%	2.548%	2.667%	2.783%	2.938%	
3등급		4.143%	4.573%	4.930%	5.161%	5.385%	5.685%	
4등급		1.211%	0.686%	0.740%	0.774%	0.808%	0.853%	
65세 미만	건강보험 (일반, 저소득)	총계	0.041%	0.046%	0.051%	0.053%	0.056%	0.056%
		1등급	0.010%	0.011%	0.012%	0.013%	0.014%	0.014%
		2등급	0.008%	0.010%	0.011%	0.011%	0.012%	0.012%
		3등급	0.019%	0.022%	0.024%	0.026%	0.027%	0.027%
		4등급	0.003%	0.003%	0.004%	0.004%	0.004%	0.004%
	의료급여 기초	총계	0.643%	0.681%	0.719%	0.741%	0.763%	0.763%
		1등급	0.136%	0.147%	0.155%	0.160%	0.165%	0.165%
		2등급	0.130%	0.148%	0.156%	0.161%	0.165%	0.165%
		3등급	0.294%	0.336%	0.355%	0.366%	0.377%	0.377%
		4등급	0.083%	0.050%	0.053%	0.055%	0.056%	0.056%
	의료급여 기타	총계	0.335%	0.383%	0.404%	0.417%	0.429%	0.429%
		1등급	0.131%	0.149%	0.158%	0.163%	0.167%	0.167%
2등급		0.084%	0.095%	0.101%	0.104%	0.107%	0.107%	
3등급		0.104%	0.120%	0.127%	0.131%	0.134%	0.134%	
4등급		0.016%	0.018%	0.019%	0.020%	0.020%	0.020%	

주: 1) '08년은 실적치이며, '09년은 장기요양위원회('08. 11. 26)에서 발표된 자료임

2) '08~'09년은 1~3등급, '10년 이후는 4등급을 포함

□ (이용자 수) 인정자 수에 급여종류별로 구분하여 추정된 이용률을 적용하여 연령 구간별·자격별·요양등급별·급여종류별 이용자 수 추계

○ 이용률은 최근실적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를 활용

<표 III-2-14> 급여종류별 이용률 추정결과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2050년					
	계	시설	재가	복지 용구	가족 요양비	계	시설	재가	복지 용구	가족 요양비	계	시설	재가	복지 용구	가족 요양비	
전체	계	82.1%	25.5%	56.0%	5.5%	0.6%	82.1%	25.5%	55.9%	5.5%	0.6%	82.0%	28.0%	53.4%	5.2%	0.6%
	1등급	81.9%	44.0%	37.5%	5.4%	0.4%	81.9%	43.9%	37.6%	5.4%	0.4%	81.8%	43.7%	37.7%	5.3%	0.4%
	2등급	81.9%	40.2%	41.2%	4.8%	0.4%	81.8%	40.1%	41.3%	4.8%	0.4%	81.7%	39.9%	41.3%	4.8%	0.4%
	3등급	82.3%	10.5%	71.0%	6.0%	0.8%	82.2%	15.4%	66.0%	5.5%	0.8%	82.1%	20.5%	60.9%	5.1%	0.8%
	4등급								81.4%	7.2%	0.8%		0.0%	81.3%	7.1%	0.8%
건강 보험	계	80.0%	21.2%	58.2%	4.4%	0.6%	80.0%	22.1%	57.3%	4.3%	0.7%	80.0%	25.0%	54.3%	4.1%	0.7%
	1등급	80.0%	38.4%	41.2%	4.8%	0.4%	80.0%	38.4%	41.2%	4.8%	0.4%	80.0%	38.4%	41.2%	4.8%	0.4%
	2등급	80.0%	35.9%	43.6%	4.1%	0.4%	80.0%	35.9%	43.6%	4.1%	0.4%	80.0%	35.9%	43.6%	4.1%	0.4%
	3등급	80.0%	5.9%	73.2%	4.5%	0.9%	80.0%	11.9%	67.2%	4.1%	0.9%	80.0%	18.0%	61.2%	3.7%	0.9%
	4등급								79.1%	4.8%	0.9%		0.0%	79.1%	4.8%	0.9%
의료 급여	계	89.4%	40.3%	48.6%	9.4%	0.5%	89.4%	37.8%	51.0%	9.6%	0.5%	89.4%	39.0%	49.9%	9.4%	0.5%
	1등급	89.3%	65.3%	23.7%	7.8%	0.3%	89.3%	65.2%	23.8%	7.8%	0.3%	89.3%	65.1%	23.8%	7.8%	0.3%
	2등급	89.3%	57.6%	31.3%	7.6%	0.4%	89.3%	57.5%	31.3%	7.6%	0.4%	89.3%	57.5%	31.4%	7.6%	0.4%
	3등급	89.5%	24.6%	64.3%	10.6%	0.6%	89.4%	26.8%	62.1%	10.3%	0.6%	89.4%	29.0%	59.9%	9.9%	0.6%
	4등급								88.8%	14.7%	0.6%		0.0%	88.8%	14.7%	0.6%
기초	계	90.0%	41.7%	47.8%	9.6%	0.5%	90.0%	39.1%	50.4%	9.9%	0.5%	90.0%	40.1%	49.4%	9.7%	0.5%
	1등급	90.0%	67.6%	22.1%	7.9%	0.3%	90.0%	67.6%	22.1%	7.9%	0.3%	90.0%	67.6%	22.1%	7.9%	0.3%
	2등급	90.0%	59.6%	30.0%	7.8%	0.4%	90.0%	59.6%	30.0%	7.8%	0.4%	90.0%	59.6%	30.0%	7.8%	0.4%
	3등급	90.0%	25.7%	63.7%	10.9%	0.6%	90.0%	27.8%	61.7%	10.6%	0.6%	90.0%	29.8%	59.6%	10.2%	0.6%
	4등급						90.0%		89.4%	15.3%	0.6%	90.0%	0.0%	89.4%	15.3%	0.6%
기타	계	80.0%	18.2%	60.8%	5.6%	1.1%	80.0%	19.1%	59.8%	5.4%	1.1%	80.0%	21.7%	57.3%	5.3%	1.1%
	1등급	80.0%	34.1%	45.2%	6.3%	0.7%	80.0%	34.1%	45.2%	6.3%	0.7%	80.0%	34.1%	45.2%	6.3%	0.7%
	2등급	80.0%	30.2%	48.9%	5.8%	0.9%	80.0%	30.2%	48.9%	5.8%	0.9%	80.0%	30.2%	48.9%	5.8%	0.9%
	3등급	80.0%	4.3%	74.4%	5.2%	1.3%	80.0%	9.7%	69.0%	4.9%	1.3%	80.0%	15.1%	63.6%	4.5%	1.3%
	4등급						80.0%		78.7%	5.5%	1.3%	80.0%	0.0%	78.7%	5.5%	1.3%

- 주: 1) '09년은 장기요양위원회('08. 11. 26)에서 발표된 자료임  
 2) "시설", "재가", "가족요양비"는 등급별 전체 이용자 중 급여종류별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3) 65세 이상·미만 구분 없이 서비스 이용률 동일 적용  
 4) 건강보험 가입자 내의 일반과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 동일 적용  
 5) '10년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4등급의 이용률은 3등급의 경우와 동일 적용  
 6) '10년 하반기(7월) 4등급 재가서비스 급여 포함(시설제외) 가정  
 7) '11년 하반기(7월) 4등급 시설서비스 급여 포함 가정

□ (급여종류별 수가) 2008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 급여종류별 수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수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시나리오 1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처럼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2 : 건강보험 장기추계에서처럼 수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3(baseline) : 건강보험 장기추계의 baseline처럼 수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증가하고 동시에 자연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이 1.1(2007년)~1.0(2050년)인 것으로 가정

<표 III-2-15> 급여종류별 수가 추정결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설(전문) (원/1개월)	1등급	1,464,563	1,508,500	1,553,755	1,600,368	1,648,379
	2등급	1,356,279	1,396,967	1,438,876	1,482,043	1,526,504
	3등급	1,247,996	1,285,436	1,323,999	1,363,719	1,404,630
	4등급	1,148,358	1,182,809	1,218,293	1,254,842	1,292,487
재가 한도액 (원/1개월)	1등급	1,140,600	1,174,818	1,210,063	1,246,364	1,283,755
	2등급	971,200	1,000,336	1,030,346	1,061,256	1,093,094
	3등급	814,700	839,141	864,315	890,245	916,952
	4등급	683,419	703,921	725,039	746,790	769,194
가족요양비(원/1개월)		150,000	154,500	159,135	163,909	168,826
복지용구(원/1년)		1,600,000	1,648,000	1,697,440	1,748,363	1,800,814

주: 2010년부터 포함되는 4등급의 수가(시설, 재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  
 - 산식 : 4등급 수가=3등급 수가×(3등급 수가/2등급 수가)

□ (1인당 요양급여비) 급여종류별 수가에 수가사용률 및 급여율을 적용하여 1인당 급여비를 추계

○ 급여종류별 수가사용률은 최근실적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를 활용

○ 급여율도 최근실적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를 활용

<표 III-2-16> 급여종류별 수가사용률 추정결과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	의료급여 기타	
시설	2009	1등급	90.0%	93.0%	93.0%
		2등급	90.0%	93.0%	93.0%
		3등급	90.0%	93.0%	93.0%
	2010 ~2050	1등급	95.0%	95.0%	95.0%
		2등급	95.0%	95.0%	95.0%
		3등급	95.0%	95.0%	95.0%
재가	2009	1등급	80.0%	85.0%	80.0%
		2등급	80.0%	85.0%	80.0%
		3등급	80.0%	85.0%	80.0%
	2010 ~2050	1등급	80.0%	85.0%	80.0%
		2등급	80.0%	85.0%	80.0%
		3등급	80.0%	85.0%	80.0%
복지용구	2009 ~2050	1등급	50.0%	50.0%	50.0%
		2등급	50.0%	50.0%	50.0%
		3등급	50.0%	50.0%	50.0%

주: 1) 65세 이상·미만 구분 없이 수가 사용률 동일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내의 일반과 저소득층의 경우 수가 사용률 동일 적용

3) '10년 이후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4등급의 수가 사용률은 3등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표 III-2-17> 급여종류별 급여율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	저소득	기초	기타
시설	80.0%	90.0%	100.0%	90.0%
재가	85.0%	92.5%	100.0%	92.5%
복지용구	85.0%	92.5%	100.0%	92.5%
가족요양비	100.0%	100.0%	100.0%	100.0%

주: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비율은 건강보험 일반의 50%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기타 보험자 부담률과 동일

-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중에서 요양급여비 이외의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총액의 일정비율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계
  - 의사소견서발급 급여비, 방문간호지시서발급 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됨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 전제인 2009년 12%, 2010년 및 2011년 8%, 2012년 이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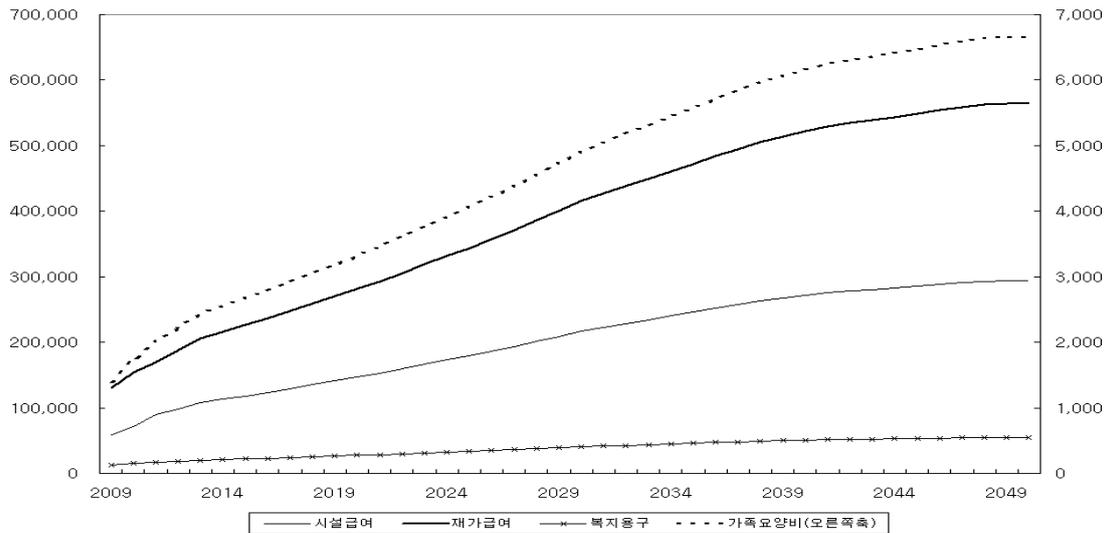
### 3) 수입추계

- (건강보험상의 수입)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장기보험료 총액/건강보험료 총액) 4.78%(2009년 기준)를 곱하여 추계
  - 보험료 수입액 이외의 국고지원금 수입항목에 대해서는 법정지원비율(예상 보험료수입의 20%)을 적용하여 추계
- (의료급여 재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액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담
  - 기초수급자의 급여비는 100% 지방비(분권교부세 포함)로 충당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8:2(서울은 5:5)로 분담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실적치인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 97:3을 적용하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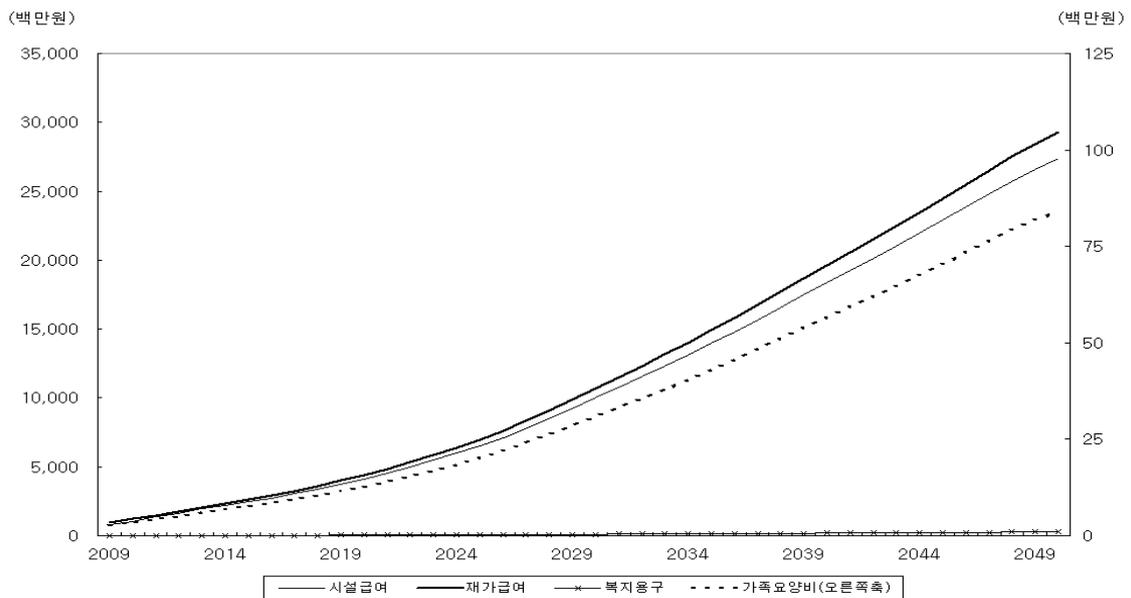
## 다. 추계결과

- 2050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자 수와 수가를 추계한 결과는 [그림 III-2-3] 및 [그림 III-2-4]와 같음

[그림 III-2-3] 급여종류별 이용자 수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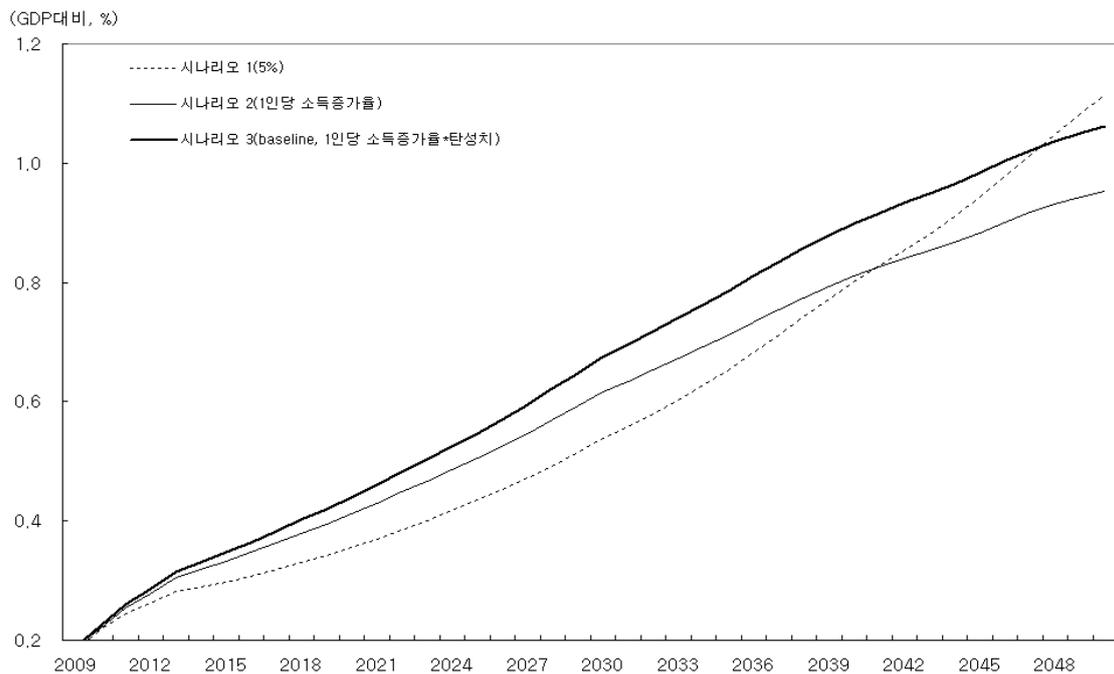


[그림 III-2-4] 급여종류별 급여비 추계결과(시나리오 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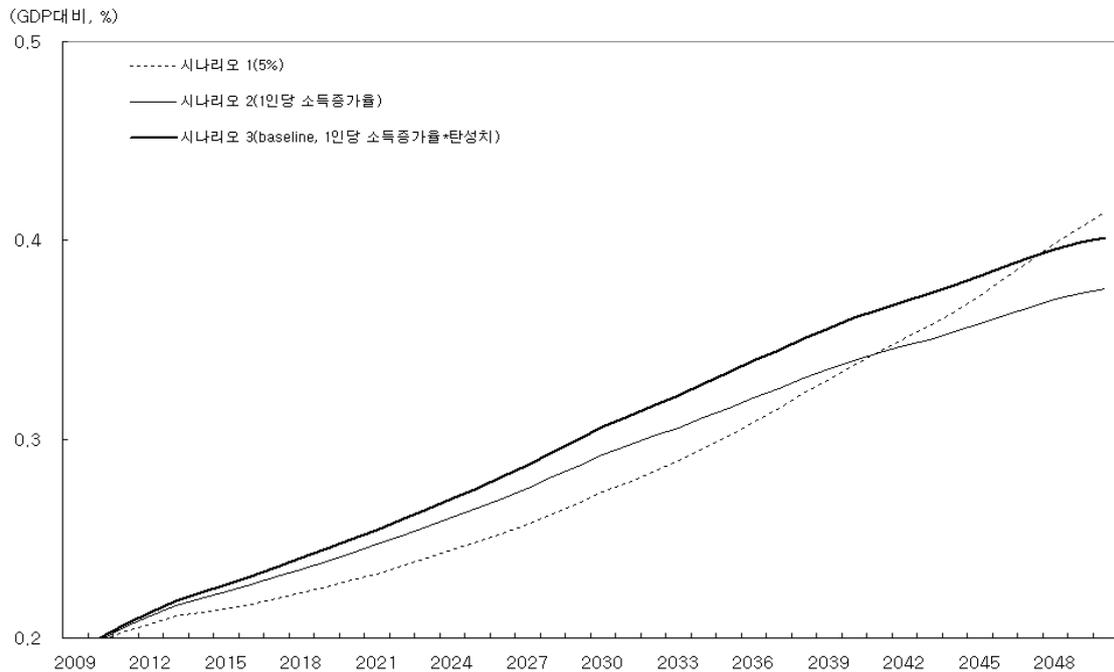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전망해 보면 2009년 GDP 대비 0.19% 수준에서 2050년 1.06%로 0.87%p 증가(베이스라인인 시나리오 3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을 전망해 보면 2009년 GDP 대비 0.19% 수준에서 2050년 0.40%로 0.21%p 증가(베이스라인인 시나리오 3 기준)하는 데 그침
    - 이처럼 수입이 지출에 비해 증가폭이 작은 것은 보험료율을 2009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4.78%)으로 동결시켰기 때문
  - 시나리오별 전망결과를 비교해 보면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baseline인 시나리오 3은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결과 중 가장 큼

[그림 III-2-5]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 결과



[그림 III-2-6]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추계 결과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중에서 국고지원규모 전망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3 기준)는 복지부 내부전망치에 비해서는 다소 과대추계되지만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매년 보험료를 조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재정적자를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5:1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여 비교하였음
  - 본 연구의 2009~2013년 중 국고지원규모 추계결과는 복지부 내부전망치에 비해서는 0.0조원에서 0.2조원 정도 과대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서는 -0.02조원~-0.05조원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18> 추계결과의 중기재정전망과의 비교

(단위: 조원)

	본 연구		복지부 내부추계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2009	1.95	0.25	2.19	0.32	-	0.27
2010	2.46	0.32	2.53	0.31	-	0.37
2011	3.08	0.41	2.82	0.35	-	0.46
2012	3.65	0.48	3.08	0.38	-	0.52
2013	4.32	0.58	3.32	0.41	-	0.59
차이						
2009	-	-	-0.24	-0.06	-	-0.02
2010	-	-	-0.07	0.01	-	-0.05
2011	-	-	0.26	0.06	-	-0.05
2012	-	-	0.57	0.11	-	-0.04
2013	-	-	1.00	0.17	-	-0.02

<표 III-2-19>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총수입											
	합계			보험료	국고지원금			지방비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2009	0.19	0.19	0.19	0.12	0.02	0.02	0.02	0.05	0.05	0.05	0.05	
2010	0.20	0.20	0.20	0.12	0.03	0.03	0.03	0.06	0.06	0.06	0.06	
2011	0.20	0.21	0.21	0.12	0.03	0.03	0.03	0.06	0.06	0.06	0.06	
2012	0.21	0.21	0.21	0.12	0.03	0.03	0.03	0.06	0.07	0.07	0.07	
2013	0.21	0.22	0.22	0.12	0.03	0.03	0.03	0.07	0.07	0.07	0.08	
2014	0.21	0.22	0.22	0.12	0.03	0.03	0.03	0.07	0.08	0.08	0.08	
2015	0.21	0.22	0.23	0.12	0.03	0.03	0.03	0.07	0.08	0.08	0.08	
2016	0.22	0.23	0.23	0.12	0.03	0.03	0.03	0.07	0.08	0.08	0.09	
2017	0.22	0.23	0.24	0.12	0.03	0.03	0.03	0.08	0.09	0.09	0.09	
2018	0.22	0.23	0.24	0.12	0.03	0.03	0.03	0.08	0.09	0.09	0.10	
2019	0.23	0.24	0.24	0.12	0.03	0.03	0.03	0.08	0.10	0.10	0.10	
2020	0.23	0.24	0.25	0.12	0.03	0.03	0.03	0.09	0.10	0.10	0.11	
2021	0.23	0.25	0.25	0.12	0.03	0.03	0.03	0.09	0.10	0.10	0.11	
2022	0.24	0.25	0.26	0.12	0.03	0.03	0.03	0.09	0.11	0.11	0.12	
2023	0.24	0.26	0.26	0.12	0.03	0.03	0.03	0.10	0.11	0.11	0.12	
2024	0.24	0.26	0.27	0.12	0.03	0.03	0.03	0.10	0.12	0.12	0.13	
2025	0.25	0.27	0.28	0.12	0.03	0.03	0.03	0.10	0.12	0.12	0.13	
2026	0.25	0.27	0.28	0.12	0.03	0.03	0.03	0.11	0.13	0.13	0.14	
2027	0.26	0.28	0.29	0.12	0.03	0.03	0.03	0.11	0.13	0.13	0.14	
2028	0.26	0.28	0.29	0.12	0.03	0.03	0.03	0.12	0.14	0.14	0.15	
2029	0.27	0.29	0.30	0.12	0.03	0.03	0.03	0.12	0.14	0.14	0.16	
2030	0.27	0.29	0.31	0.12	0.03	0.03	0.03	0.13	0.15	0.15	0.16	

	총수입									
	합계			보험료	국고지원금			지방비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2031	0.28	0.30	0.31	0.12	0.03	0.03	0.03	0.13	0.15	0.17
2032	0.28	0.30	0.32	0.12	0.03	0.03	0.03	0.14	0.16	0.17
2033	0.29	0.31	0.32	0.12	0.03	0.03	0.03	0.14	0.16	0.18
2034	0.30	0.31	0.33	0.12	0.03	0.03	0.03	0.15	0.17	0.18
2035	0.30	0.32	0.33	0.12	0.03	0.03	0.03	0.16	0.17	0.19
2036	0.31	0.32	0.34	0.12	0.03	0.03	0.03	0.16	0.18	0.19
2037	0.32	0.33	0.35	0.12	0.03	0.03	0.03	0.17	0.18	0.20
2038	0.32	0.33	0.35	0.12	0.03	0.03	0.03	0.18	0.19	0.21
2039	0.33	0.34	0.36	0.12	0.03	0.03	0.03	0.19	0.19	0.21
2040	0.34	0.34	0.36	0.12	0.03	0.03	0.03	0.19	0.19	0.22
2041	0.34	0.34	0.37	0.12	0.03	0.03	0.03	0.20	0.20	0.22
2042	0.35	0.35	0.37	0.12	0.03	0.03	0.03	0.20	0.20	0.22
2043	0.36	0.35	0.37	0.12	0.03	0.03	0.03	0.21	0.20	0.23
2044	0.36	0.35	0.38	0.12	0.03	0.03	0.03	0.22	0.21	0.23
2045	0.37	0.36	0.38	0.12	0.03	0.03	0.03	0.23	0.21	0.24
2046	0.38	0.36	0.39	0.12	0.03	0.03	0.03	0.23	0.22	0.24
2047	0.39	0.37	0.39	0.12	0.03	0.03	0.03	0.24	0.22	0.24
2048	0.40	0.37	0.40	0.12	0.03	0.03	0.03	0.25	0.22	0.25
2049	0.41	0.37	0.40	0.12	0.03	0.03	0.03	0.26	0.23	0.25
2050	0.41	0.38	0.40	0.12	0.03	0.03	0.03	0.27	0.23	0.25

<표 III-2-20> 시나리오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총지출		
	시나리오 1 (3%)	시나리오 2 (1인당 소득증가율)	시나리오 3 (baseline, 1인당 소득증가율*탄성치)
2009	0.18	0.19	<b>0.19</b>
2010	0.22	0.22	<b>0.22</b>
2011	0.25	0.25	<b>0.26</b>
2012	0.26	0.28	<b>0.29</b>
2013	0.28	0.30	<b>0.31</b>
2014	0.29	0.32	<b>0.33</b>
2015	0.30	0.33	<b>0.35</b>
2016	0.31	0.35	<b>0.36</b>
2017	0.32	0.36	<b>0.38</b>
2018	0.33	0.38	<b>0.40</b>
2019	0.34	0.40	<b>0.42</b>
2020	0.35	0.41	<b>0.44</b>
2021	0.37	0.43	<b>0.46</b>
2022	0.38	0.45	<b>0.48</b>
2023	0.40	0.47	<b>0.50</b>
2024	0.42	0.49	<b>0.53</b>
2025	0.43	0.50	<b>0.55</b>
2026	0.45	0.52	<b>0.57</b>
2027	0.47	0.55	<b>0.60</b>
2028	0.49	0.57	<b>0.62</b>
2029	0.51	0.59	<b>0.65</b>
2030	0.54	0.62	<b>0.67</b>
2031	0.56	0.63	<b>0.70</b>
2032	0.58	0.65	<b>0.72</b>
2033	0.60	0.67	<b>0.74</b>
2034	0.63	0.69	<b>0.76</b>
2035	0.65	0.71	<b>0.79</b>
2036	0.68	0.73	<b>0.81</b>
2037	0.71	0.75	<b>0.83</b>
2038	0.74	0.77	<b>0.86</b>
2039	0.77	0.79	<b>0.88</b>
2040	0.80	0.81	<b>0.90</b>
2041	0.83	0.83	<b>0.92</b>
2042	0.85	0.84	<b>0.93</b>
2043	0.88	0.85	<b>0.95</b>
2044	0.91	0.87	<b>0.97</b>
2045	0.94	0.88	<b>0.98</b>
2046	0.98	0.90	<b>1.00</b>
2047	1.01	0.92	<b>1.02</b>
2048	1.05	0.93	<b>1.04</b>
2049	1.08	0.94	<b>1.05</b>
2050	1.12	0.95	<b>1.06</b>

<표 III-2-21>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원조달 추계결과 : 시나리오 3 기준

(단위: GDP 대비, %)

	총지출	국고	보험료	지방비	재정적자
2009	0.19	0.02	0.12	0.05	0.00
2010	0.22	0.03	0.12	0.06	0.02
2011	0.26	0.03	0.12	0.06	0.05
2012	0.29	0.03	0.12	0.07	0.07
2013	0.31	0.03	0.12	0.08	0.10
2014	0.33	0.03	0.12	0.08	0.11
2015	0.35	0.03	0.12	0.08	0.12
2016	0.36	0.03	0.12	0.09	0.13
2017	0.38	0.03	0.12	0.09	0.15
2018	0.40	0.03	0.12	0.10	0.16
2019	0.42	0.03	0.12	0.10	0.17
2020	0.44	0.03	0.12	0.11	0.19
2021	0.46	0.03	0.12	0.11	0.20
2022	0.48	0.03	0.12	0.12	0.22
2023	0.50	0.03	0.12	0.12	0.24
2024	0.53	0.03	0.12	0.13	0.25
2025	0.55	0.03	0.12	0.13	0.27
2026	0.57	0.03	0.12	0.14	0.29
2027	0.60	0.03	0.12	0.14	0.31
2028	0.62	0.03	0.12	0.15	0.33
2029	0.65	0.03	0.12	0.16	0.35
2030	0.67	0.03	0.12	0.16	0.37
2031	0.70	0.03	0.12	0.17	0.38
2032	0.72	0.03	0.12	0.17	0.40
2033	0.74	0.03	0.12	0.18	0.42
2034	0.76	0.03	0.12	0.18	0.43
2035	0.79	0.03	0.12	0.19	0.45
2036	0.81	0.03	0.12	0.19	0.47
2037	0.83	0.03	0.12	0.20	0.49
2038	0.86	0.03	0.12	0.21	0.51
2039	0.88	0.03	0.12	0.21	0.52
2040	0.90	0.03	0.12	0.22	0.54
2041	0.92	0.03	0.12	0.22	0.55
2042	0.93	0.03	0.12	0.22	0.56
2043	0.95	0.03	0.12	0.23	0.58
2044	0.97	0.03	0.12	0.23	0.59
2045	0.98	0.03	0.12	0.24	0.60
2046	1.00	0.03	0.12	0.24	0.62
2047	1.02	0.03	0.12	0.24	0.63
2048	1.04	0.03	0.12	0.25	0.64
2049	1.05	0.03	0.12	0.25	0.65
2050	1.06	0.03	0.12	0.25	0.66

□ 민감도 분석

- 1~4등급 출현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인정자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 추계한 결과 이외에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2008년 별도로 추정한 결과를 활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및 지출규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
  -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등급출현율 추계치를 사용하였으나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이를 별도 추계
  -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등급출현율 추계치를 사용할 경우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는 baseline인 시나리오 3과 비슷하지만 2010년대~2020년대는 0.2%p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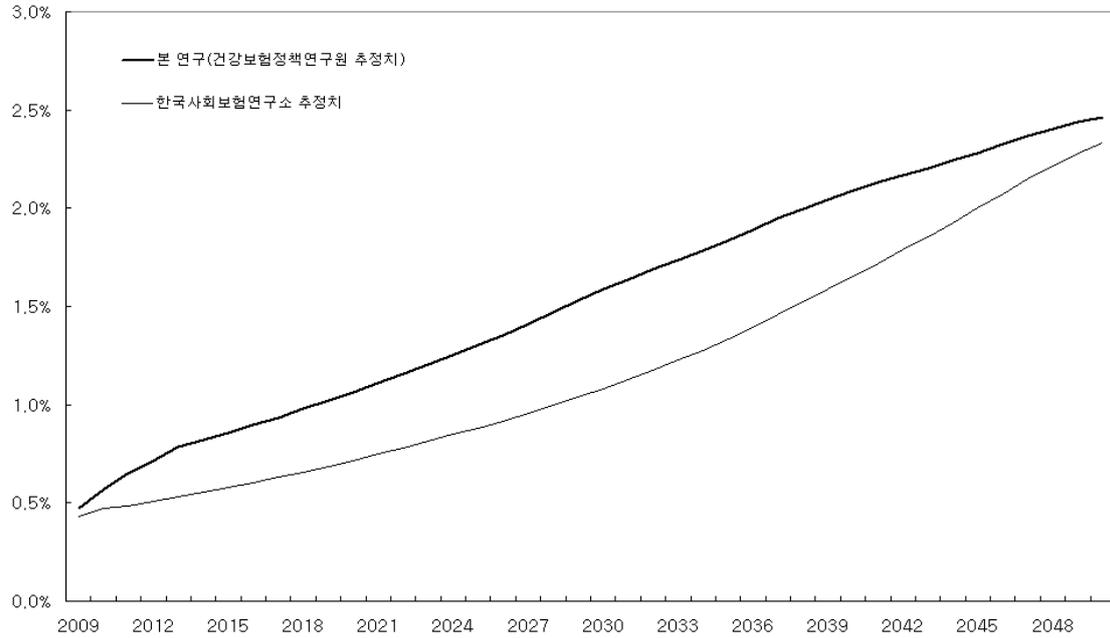
<표 III-2-2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추계인구 비율 전망 비교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0.59%	0.75%	0.93%	1.15%	1.41%	1.74%	2.16%	2.62%	3.05%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0.73%	1.12%	1.38%	1.70%	2.07%	2.39%	2.72%	2.97%	3.21%

- 4등급 수가를 3등급 수가×(3등급 수가/2등급 수가)가 아니라 3등급의 1/2, 2/3, 100%로 할 경우
  -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는 baseline인 시나리오 3의 GDP 대비 1.06%에서 민감도(50%) 및 민감도(67%)에서는 각각 1.04% 및 1.05%로 다소 감소하지만, 민감도(100%)에서는 1.07%로 0.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baseline 시나리오에서 급여종류별 수가사용률을 시설이 2011년 95%에서 100%로, 재가의 경우 80%에서 85%로 상향되는 경우
  -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는 baseline인 시나리오 3의 GDP 대비 1.06%에서 1.12%로 0.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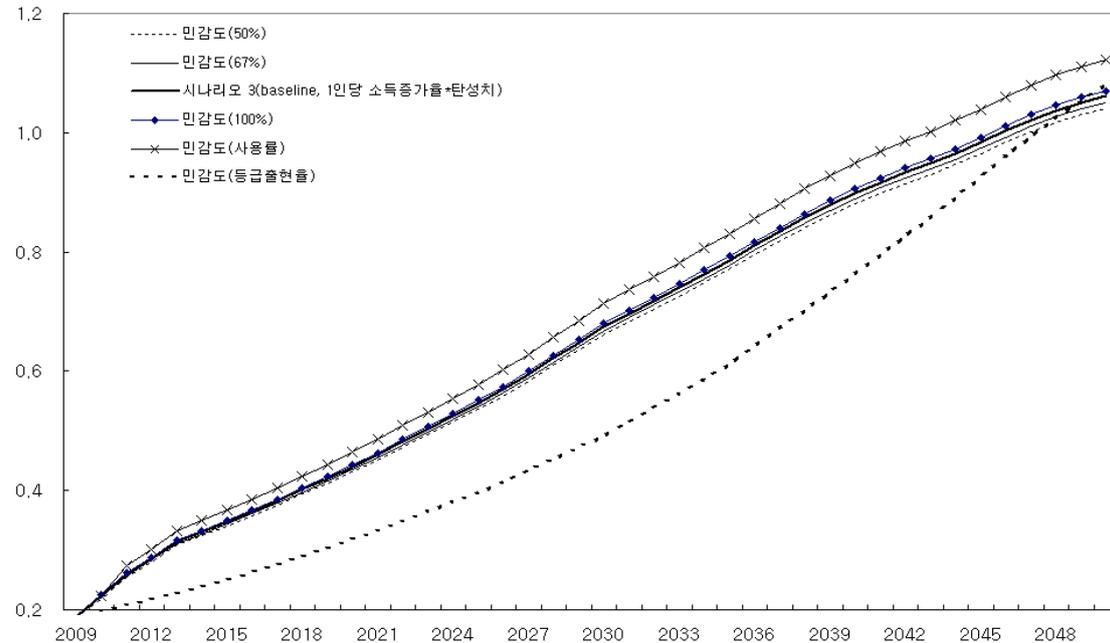
[그림 III-2-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에 대한 추정치

(인정자수/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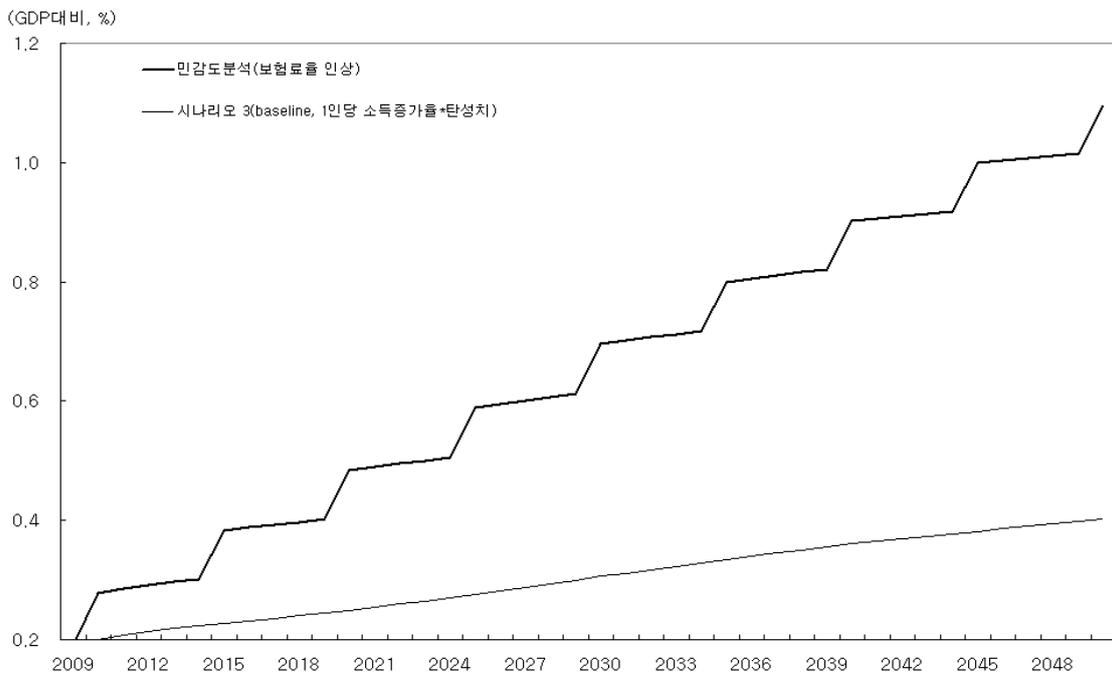
[그림 III-2-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GDP대비, %)



- baseline 하에서의 2050년까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을 위한 재정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2010년부터 매 5년마다 동일한 인상률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로 국고보조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전제)을 역산
  - 계산 결과 매 5년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16%씩 증가하여 현재 소득 대비 0.24% 수준에서 2050년에는 소득 대비 1.71%로 7.1배가 되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소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9)</sup>

[그림 III-2-9]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9) 여기서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이용되는 표준보수월액을 의미

### 3. 국민연금

#### 가. 현행제도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전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왔음
  - 현재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이 없는 주부 등임
  -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
    - 지역가입자는 가입대상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대상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60세에 도달한 자이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
  
- 국민연금의 수입은 가입자가 지불하는 기여금과 고용주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그 외 조성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구성됨
  -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균등 부담(각 4.5%)하며 지역가입자는 피보험자가 전액 지불
  - 국민연금으로 인한 과도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여금의 소득 상한선을 월 36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개인의 급여산식에 개인 평균소득과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

□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급하게 됨

○ 구체적인 급여 형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은퇴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 조기은퇴 여부, 계속근로 여부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으로 다시 구분됨

- 장애,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장애 혹은 사망시 본인 혹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인 외연확장으로 2008년 12월 기준 18.3백만명 수준으로 그 중 사업장가입자는 9.5백만명, 지역가입자 8.8백만명임

○ 지역가입자 중 6.8백만명은 도시지역 가입자로 농어촌 가입자는 1.9백만명 수준

○ 국민연금가입자 규모는 2008년 경제활동인구 24.3백만명의 75.3%에 해당하여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음

<표 III-3-1> 국민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유형		수급요건	수급기간 및 가입기간	급여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 (광원부원은 55세)에 달한 때	60세(55세)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광원 및 부원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60세(55세) 이상부터 65세(60세) 미만까지	기본연금액의 50~90% (가급연금 해당 없음)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한 때	60세(55세)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생존하는 동안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65세 미만까지 지급정지	기본연금액의 70~94% + 가급연금
	특례 노령연금	5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가입하여 60세에 도달할 때	60세 생일이 속하는 달 또는 자격상실 월의 다음 달부터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25(5년 가입) 내지 70%(14년 가입) + 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때	장애등급 1~4급	1~3급: 기본연금액의 100, 80, 60% + 기본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가입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가입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도달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 가입자의 국적상실 - 국외이주자		납부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합산한 액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	

<표 III-3-2>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99.04	16,268,779	174,496	4,992,716	11,113,148	2,067,336	9,045,812	34,250	128,665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2,037,722	8,381,451	34,148	80,122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048,075	8,132,036	29,982	115,815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007,196	7,997,593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009,142	7,403,424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자료: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기금은 2008년 12월까지 누적기준 280.9조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중 43.2조원은 연금급여지출 등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237.8조원은 적립기금 형태로 유지하고 있음
  - 연간 기준으로는 2008년 총수입은 32.3조원으로 그 중 보험료 수입은 23.0조원, 적립기금 운용수익이 9.3조원에 이르며 총지출은 6.6조원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수입-지출간 불균형은 국민연금의 도입기간이 짧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만족하는 연금수급 대상자가 적고 기여단계의 가입자가 많기 때문

<표 III-3-3> 국민연금기금 운용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조성	903,735	1,095,554	1,315,310	1,554,872	1,824,597	2,131,545	2,485,535	2,809,018
(증감률)	22.69%	21.23%	20.06%	18.21%	17.35%	16.82%	16.61%	13.01%
연금보험료	643,822	782,002	938,111	1,109,545	1,294,981	1,496,504	1,713,206	1,943,061
운용수익	259,761	313,375	377,018	443,954	526,987	630,760	766,683	860,113
전입금	3	3	3	3	3	3	3	3
결산잉여금	149	174	178	178	190	194	198	205
국고보조금	-	-	-	1,192	2,436	3,798	5,168	5,357
공단임대보증금						286	277	279
지출	144,644	165,002	189,634	222,103	261,768	309,403	365,468	431,518
(증감률)	13.07%	14.07%	14.93%	17.12%	17.86%	18.20%	18.12%	18.07%
연금급여지급	140,749	159,901	183,186	212,326	248,175	291,777	343,604	405,412
공단운영비등	3,839	4,993	6,279	9,544	13,294	17,257	21,366	25,527
복지타운관리비	56	108	169	233	299	369	498	579
운용	759,091	930,552	1,125,676	1,332,769	1,562,829	1,822,142	2,120,067	2,377,500
(증감률)	24.71%	22.59%	20.97%	18.40%	17.26%	16.59%	16.35%	12.14%
공공부문	307,847	301,989	152,512	63,770	-	-	-	-
복지부문	6,325	5,259	4,397	3,752	3,145	2,576	2,138	1,993
금융부문	442,232	620,489	965,770	1,261,851	1,556,151	1,815,936	2,114,265	2,371,745
기타부문	2,687	2,815	2,997	3,396	3,533	3,630	3,664	3,762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초기 3% 기여율과 평균 70%의 급여대체율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
  - 재정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여율의 경우 6%(1993년), 9%(1998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급여율도 60%(1998년)로 인하
  - 특히 2007년 7월에는 국민연금의 급여를 장기적으로 40%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개혁법안을 통과시킴.

- 구체적으로 현행 40년 가입 기준 60%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로 인하하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조정

$$1.8(A+B)(1+0.05(n-20))$$

$$\Rightarrow 1.2(A+B)(1+0.05(n-20))$$

A : 전체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n : 가입기간

## 나. 추계모형 및 추계결과

- 국민연금 추계모형 및 결과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계산제도에 의해 제시된 “2008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를 이용
  - 추계모형은 기본적으로 인구, 임금구조, 임금증가율, 이자율 등 미래 변수들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미래연도의 연금기여금 수입, 연금종류별 지출을 추계함
- 전망의 주요 가정 중 인구증가율은 2020년대부터 음(-)의 값을 갖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국내총생산도 2040년대 이후에는 3.2% 수준으로 가정
  - 기금운용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수준

<표 III-3-4> 주요 거시변수 가정

(단위: %)

	2007~2010	2011~2015	2016~2020	2021~2030	2031~2040	2040~2050
인구증가율	0.30	0.16	0.02	-0.14	-0.48	-0.90
GDP증가율	7.80	6.80	6.50	4.80	3.70	3.20
임금증가율	6.70	6.30	6.00	5.30	4.90	4.60
기금수익률	7.90	6.90	6.60	5.40	4.80	4.60

-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 이전 2003재정계산에서는 기금고갈연도가 2047년으로 추계
  -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의 보험료수입이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소진과 함께 대폭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태
    - 2060년 보험료 수입규모가 GDP 대비 약 2.7%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 규모는 4% 수준에 이를 전망
  
- 연금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지출은 2031년부터 기여금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
  - 적립기금 운용수입을 함께 고려한 재정수지는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적자 전환 16년 만에 적립기금 소진
  - 이는 분석기간 동안 연금지출 규모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
    -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금지출 규모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증가추세

<표 III-3-5>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GDP 비중)

(단위: GDP 대비 %)

연도	연금수입	연금지출	운영비	운용수입	수지차	적립기금
2005	2.29	0.44	0.05	1.02	2.84	19.28
2006	2.38	0.51	0.05	1.22	3.06	21.49
2007	2.41	0.60	0.03	1.65	3.43	23.36
2008	2.42	0.65	0.04	1.78	3.51	25.18
2009	2.42	0.83	0.04	1.91	3.45	26.81
2010	2.41	0.86	0.04	2.03	3.54	28.41
2011	2.43	0.90	0.04	1.89	3.38	29.98
2012	2.44	0.98	0.04	1.99	3.42	31.49
2013	2.45	0.82	0.02	2.10	3.71	33.20
2014	2.46	1.02	0.02	2.20	3.62	34.71
2015	2.46	1.09	0.02	2.30	3.65	36.15
2016	2.46	1.18	0.02	2.28	3.54	37.48
2017	2.47	1.25	0.02	2.36	3.55	38.75
2018	2.47	1.11	0.02	2.44	3.78	40.16
2019	2.46	1.35	0.02	2.52	3.61	41.33
2020	2.45	1.44	0.02	2.59	3.58	42.39
2021	2.47	1.59	0.02	2.20	3.06	43.51
2022	2.48	1.72	0.02	2.26	3.00	44.51
2023	2.49	1.60	0.02	2.31	3.18	45.66
2024	2.50	1.85	0.02	2.36	2.99	46.56
2025	2.50	1.98	0.02	2.41	2.91	47.34
2026	2.51	2.12	0.02	2.44	2.81	47.98
2027	2.51	2.23	0.02	2.47	2.74	48.52
2028	2.52	2.12	0.02	2.51	2.88	49.18
2029	2.51	2.33	0.02	2.53	2.69	49.61
2030	2.50	2.46	0.02	2.55	2.58	49.92
2031	2.51	2.61	0.02	2.33	2.21	50.35
2032	2.51	2.77	0.02	2.34	2.06	50.62
2033	2.51	2.74	0.02	2.36	2.11	50.92
2034	2.52	2.92	0.02	2.37	1.94	51.04
2035	2.52	3.08	0.02	2.37	1.79	51.01
2036	2.53	3.26	0.02	2.36	1.61	50.80
2037	2.53	3.44	0.02	2.35	1.41	50.40
2038	2.54	3.63	0.02	2.33	1.21	49.82
2039	2.55	3.77	0.02	2.30	1.05	49.09
2040	2.55	3.94	0.02	2.26	0.84	48.18
2041	2.55	4.12	0.02	2.12	0.53	47.21
2042	2.56	4.29	0.03	2.07	0.31	46.06
2043	2.56	4.42	0.03	2.02	0.13	44.76
2044	2.57	4.59	0.03	1.96	-0.09	43.28
2045	2.58	4.76	0.03	1.89	-0.32	41.62
2046	2.59	4.93	0.03	1.81	-0.56	39.77
2047	2.60	5.10	0.03	1.72	-0.80	37.73
2048	2.61	5.23	0.03	1.63	-1.02	35.55
2049	2.63	5.36	0.03	1.53	-1.23	33.21
2050	2.64	5.48	0.03	1.42	-1.44	30.74

<표 III-3-6>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2008재정재계산 기금수익률)

(단위: 경상십억원)

연도	연금수입	연금지출	운영비	운용수입	수지차	적립기금
2005	18,544	3,585	382	8,303	23,006	156,283
2006	20,152	4,360	403	10,377	25,931	182,214
2007	22,059	5,502	275	15,054	31,337	213,551
2008	23,808	6,373	419	17,566	34,582	248,133
2009	25,666	8,864	446	20,282	36,638	284,771
2010	27,629	9,852	476	23,222	40,523	325,294
2011	29,694	10,979	506	23,162	41,371	366,664
2012	31,889	12,734	537	26,044	44,662	411,326
2013	34,196	11,455	301	29,270	51,710	463,036
2014	36,608	15,123	320	32,810	53,975	517,011
2015	39,147	17,283	340	36,562	58,087	575,098
2016	41,749	20,015	360	38,651	60,025	635,123
2017	44,503	22,614	382	42,616	64,124	699,247
2018	47,378	21,321	405	46,983	72,635	771,882
2019	50,342	27,609	429	51,668	73,972	845,854
2020	53,421	31,364	455	56,528	78,131	923,985
2021	56,319	36,217	479	50,325	69,949	993,933
2022	59,328	41,156	504	54,043	71,711	1,065,644
2023	62,450	40,035	531	58,020	79,904	1,145,549
2024	65,643	48,533	559	62,185	78,737	1,224,286
2025	69,007	54,614	589	66,356	80,161	1,304,447
2026	72,489	61,271	620	70,592	81,190	1,385,637
2027	76,078	67,360	653	74,900	82,966	1,468,603
2028	79,775	67,352	687	79,470	91,205	1,559,808
2029	83,440	77,565	724	84,211	89,361	1,649,169
2030	87,150	85,525	762	88,913	89,777	1,738,946
2031	90,681	94,113	799	84,064	79,832	1,818,778
2032	94,174	103,766	838	87,779	77,349	1,896,127
2033	97,658	106,392	880	91,543	81,929	1,978,056
2034	101,388	117,557	923	95,329	78,238	2,056,294
2035	105,365	128,588	968	98,946	74,755	2,131,048
2036	109,649	141,323	1,015	102,361	69,671	2,200,720
2037	113,852	154,732	1,065	105,512	63,566	2,264,286
2038	118,332	169,024	1,117	108,352	56,544	2,320,830
2039	123,026	182,176	1,172	110,886	50,563	2,371,393
2040	127,764	197,440	1,229	113,080	42,174	2,413,567
2041	132,034	213,190	1,286	109,624	27,182	2,440,749
2042	136,334	229,038	1,345	110,615	16,565	2,457,314
2043	140,901	243,454	1,407	111,154	7,194	2,464,507
2044	145,974	261,057	1,472	111,198	-5,356	2,459,151
2045	151,441	279,230	1,539	110,659	-18,669	2,440,482
2046	156,780	298,349	1,610	109,480	-33,699	2,406,783
2047	162,318	318,387	1,684	107,590	-50,163	2,356,619
2048	168,348	337,147	1,762	104,980	-65,580	2,291,039
2049	174,816	356,619	1,843	101,652	-81,994	2,209,045
2050	181,417	375,952	1,928	97,571	-98,891	2,110,154

## 4. 기초노령연금

### 가. 현행제도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4. 25)에 따라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된 한시적 공적부조 제도<sup>10)</sup>
  -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이 단계별로 확대되어 왔음

<표 III-4-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구분	적용기간	지급대상
1단계	2008.1~6	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2008.7~12	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2009.1~	65세 이상 노인의 7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8.29)

###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 수급대상은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선정

10) 자산조사의 실시 및 대상자를 일정 노인인구의 60~70%로 한정하는 것에서 공적부조의 성격을 지님

<표 III-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 <sup>1)</sup>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 <sup>2)</sup>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 <sup>3)</sup>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주: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소득 환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선정기준액관련 고시(2008. 8. 29)

□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전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여타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국고는 차등적으로 지원

○ 국고보조율은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sup>11)</sup>를 기준으로 40~9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 차등지원 기준 적용에 따라 국고를 90% 지원받게 되는 시군구는 전체 시군구의 25.5%에 해당하는 약 59개이며, 80%는 41개(전체의 17.7%), 70%는 106개(전체의 45.9%), 50%와 40%는 각각 22개, 3개임

11)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합계를 의미.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또는 조정교부금의 합계를 말함.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보조를 위해서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재정자주도 평균치를 사용

<표 III-4-3> 기초노령연금 기초지자체별 국고지원 비율 및 분포(2009년)

(단위: %)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90% 이상	40(3개)	50(0개)	60(0개)
80~90% 미만	50(22개)	60(0개)	70(0개)
80% 미만	70(106개)	80(41개)	90(59개)

주: ( )안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10년 예산안 관련자료(2009)

□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 및 재산 기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초과분감액 및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지급

○ 초과분감액의 경우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부감액의 경우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때에는 각각 20%씩 감액

○ 연금액 수급내용

- 1인수급의 경우

• 초과분감액 기준

$$[\text{소득인정액} + \text{기초노령연금액}] > \text{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표 III-4-4>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수준(1인수급의 경우)

구분	내용					
노인 단독	소득인정액 구간	60만원 미만	60만~62만원 미만	62만~64만원 미만	64만~66만원 미만	66만~6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8만원 이하	4만~6만원 이하	2만~4만원 이하	0~2만원 이하
노인 부부	소득인정액 구간	100.8만원 미만	100.8만 ~102.8만원 미만	102.8만 ~104.8만원 미만	104.8만 ~106.8만원 미만	106.8만 ~10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8만원 이하	4만~6만원 이하	2만~4만원 이하	0~2만원 이하
연금액	'09.1~3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09.4~'10.3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주: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1인만 수급자에 해당  
 자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2009)

- 2인수급의 경우

- 부부감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text{연금지급액} = (\text{노인단독 연금지급액} \times 80\%) \times 2$$

- 초과분감액은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표 III-4-5>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수준(2인수급의 경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구간	96.8만원 미만	96.8만~100.8만원 미만	100.8만~104.8만원 미만	104.8만~10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12만원 이하	4만~8만원 이하	0~4만원 이하
연금액	'09.1~3	134,1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09.4~'10.3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2009)

-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현재 국민연금 A값의 5%를 기준으로 하나 2028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12)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단계별 확대 시행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대비 68.2%인 약 351만명 수준으로 그 중 전액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98.6%(346만명), 감액수급자는 1.4%(5만명)

<표 III-4-6> 연금액별 수급자 분포(2009년 4월 기준)

(단위: 만명)

구 분	합 계	전액 수급자	감액 수급자				
			소계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합 계	351	346	5	0.5	1.7	1.4	1.4
비 율	100.0%	98.6%	1.4%	0.1%	0.5%	0.4%	0.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10년 예산안 관련자료(2009)

- 전국 16개 시도별 수급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55.4만명, 서울특별시 46.7만명, 경상북도 32.7만명, 전라남도 29.3만명, 경상남도 28.9만명으로 상위 5개 시도의 수급권자(193만명)가 전체 대상자의 55%를 차지

12)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표 III-4-7> 시도별 수급률 분포(2009년 4월 기준)

구 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A) <sup>1)</sup>	기초노령연금 총수급자 수(B)	수급률 (B/A)
계	5,153,084	3,506,737	68.1%
서울특별시	910,624	466,730	51.3%
부산광역시	370,526	266,710	72.0%
대구광역시	237,660	163,772	68.9%
인천광역시	219,829	153,395	69.8%
광주광역시	120,425	83,441	69.3%
대전광역시	121,742	79,617	65.4%
울산광역시	71,292	49,521	69.5%
경기도	936,109	553,668	59.1%
강원도	213,105	156,170	73.3%
충청북도	195,607	145,162	74.2%
충청남도	297,584	217,475	73.1%
전라북도	274,367	218,589	79.7%
전라남도	340,625	292,658	85.9%
경상북도	407,740	327,422	80.3%
경상남도	370,675	289,406	78.1%
제주특별자치도	65,174	43,001	66.0%

주: 1)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2009. 4월 말 기준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09. 4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10년 예산안 관련자료(2009)

- 기초노령연금 2008년도 예산은 당초 15,908억원을 편성하였고 12월에 7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5,979억원을 집행

<표 III-4-8> 시·도별 기초노령연금 예산집행 현황(2008년)

(단위: 천원)

시도명	집행액	시도명	집행액
서울	156,021,838	강원	75,844,534
부산	116,761,498	충북	70,834,250
대구	70,986,223	충남	106,907,362
인천	70,538,686	전북	110,931,921
광주	36,588,600	전남	159,893,040
대전	35,098,143	경북	167,902,840
울산	21,765,516	경남	146,145,619
경기	232,774,108	제주	18,923,557
합계		합계	1,597,917,735

주: 집행액은 시·도별로 국고보조금 결산한 내역임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재원마련 문제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급여지출 증가 우려에 기인
  - 향후 국민연금 성숙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급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경우 급여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통합, 차등보조율 산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기적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나. 추계모형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규정
  -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 이는 동법 부칙에 의해 확장되도록 규정
    -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은 2008년 60%에서 2009년 70%로 높이도록 기초노령연금법 부칙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 기초노령연금 지급수준도 2028년까지 A값의 10%를 적용토록 규정(동법 부칙 제4조의 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지출 수준은 지급대상자 규모에 지급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산정

$$\text{총연금지급액} = (\text{65세 이상 노인인구} \times \text{수급률}) \times (\text{A값} \times \text{급여율})$$

- 분석을 위해 수급률은 2009년 수급률 70%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2027년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에 6%로 상향조정하여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한편, 국고보조율은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국고보조율을 72%\*로 적용

\* '09년도 예산상 평균 국고보조율은 72.3%임

- 그러나 이러한 추계방법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로서의 제도성격과 맞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률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 필요

## 다. 추계결과

- 추계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2008년 GDP 대비 0.30% 수준에서 수급대상 확대와 지급수준 증가로 2050년에는 1.72%까지 증가
  - 2009년의 경우 수급대상의 확대(60%→70%)로 인해 지급금액이 GDP 대비 0.07%p 증가
  - 이후 개인당 지급금액의 상향조정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기초노령연금 총지출 중에서 국비부담은 72%이므로 국고부담은 2008년 GDP 대비 0.22% 수준에서 2050년에는 1.24%까지 증가
  
- 민감도 분석
  - 시나리오 1(급여율 인상) : 급여율을 현행 5%에서 매 5년마다 1%p씩 인상하여 2028년 10%에 도달하면 이후 동 수준 유지하는 경우
  - 시나리오 2(급여율 인상 + 수급률 인상) : 시나리오 1의 급여율 인상에 추가하여 2010년부터 수급률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경우
  - 시나리오 3(급여율 인상 + 수급률 인상) : 시나리오 1의 급여율 인상에 추가하여 2013년부터 수급률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경우

<표 III-4-9> 기초노령연금 지출 전망

	금액(십억원)	GDP비율(%)	국비(72%)	GDP비율(%)
2008	3,095	0.30	2,228	0.22
2009	3,798	0.37	2,734	0.26
2010	4,152	0.38	2,990	0.27
2011	4,583	0.39	3,300	0.28
2012	5,085	0.40	3,661	0.29
2013	5,631	0.41	4,054	0.29
2014	6,196	0.42	4,461	0.30
2015	6,814	0.43	4,906	0.31
2016	7,450	0.45	5,364	0.32
2017	8,143	0.46	5,863	0.33
2018	8,861	0.47	6,380	0.34
2019	9,719	0.49	6,998	0.35
2020	10,702	0.51	7,706	0.37
2021	11,826	0.54	8,515	0.39
2022	13,045	0.56	9,392	0.41
2023	14,306	0.59	10,300	0.43
2024	15,785	0.62	11,366	0.45
2025	17,376	0.66	12,510	0.47
2026	19,141	0.69	13,782	0.50
2027	21,027	0.72	15,140	0.52
2028	27,449	0.90	19,764	0.65
2029	29,902	0.94	21,529	0.68
2030	32,469	0.98	23,377	0.71
2031	35,129	1.02	25,293	0.74
2032	37,876	1.06	27,271	0.76
2033	40,472	1.09	29,140	0.79
2034	43,431	1.14	31,270	0.82
2035	46,587	1.18	33,543	0.85
2036	49,786	1.23	35,846	0.88
2037	53,134	1.27	38,256	0.91
2038	56,538	1.31	40,707	0.95
2039	59,988	1.36	43,191	0.98
2040	63,428	1.40	45,668	1.00
2041	66,793	1.43	48,091	1.03
2042	70,081	1.46	50,458	1.05
2043	73,404	1.49	52,851	1.07
2044	76,882	1.52	55,355	1.10
2045	80,570	1.56	58,011	1.12
2046	84,475	1.60	60,822	1.15
2047	88,377	1.64	63,631	1.18
2048	92,095	1.67	66,308	1.20
2049	95,617	1.70	68,844	1.22
2050	98,867	1.72	71,185	1.24

<표 III-4-10> 기초노령연금(총지출)에 대한 민감도 분석

GDP비율(%)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08	0.30	0.30	0.30	0.30
2009	0.37	0.37	0.37	0.37
2010	0.38	0.38	0.43	0.38
2011	0.39	0.39	0.44	0.39
2012	0.40	0.48	0.55	0.48
2013	0.41	0.49	0.56	0.70
2014	0.42	0.51	0.58	0.72
2015	0.43	0.52	0.60	0.74
2016	0.45	0.62	0.71	0.89
2017	0.46	0.64	0.74	0.92
2018	0.47	0.66	0.76	0.94
2019	0.49	0.69	0.79	0.98
2020	0.51	0.82	0.94	1.17
2021	0.54	0.86	0.98	1.23
2022	0.56	0.90	1.03	1.29
2023	0.59	0.95	1.08	1.35
2024	0.62	1.12	1.28	1.60
2025	0.66	1.18	1.35	1.69
2026	0.69	1.24	1.42	1.77
2027	0.72	1.30	1.49	1.86
2028	0.90	1.50	1.72	2.15
2029	0.94	1.57	1.79	2.24
2030	0.98	1.64	1.87	2.34
2031	1.02	1.70	1.95	2.43
2032	1.06	1.77	2.02	2.53
2033	1.09	1.82	2.08	2.61
2034	1.14	1.89	2.16	2.70
2035	1.18	1.97	2.25	2.81
2036	1.23	2.04	2.33	2.92
2037	1.27	2.12	2.42	3.02
2038	1.31	2.19	2.50	3.13
2039	1.36	2.26	2.58	3.23
2040	1.40	2.33	2.66	3.32
2041	1.43	2.38	2.72	3.40
2042	1.46	2.43	2.78	3.47
2043	1.49	2.48	2.84	3.55
2044	1.52	2.54	2.90	3.62
2045	1.56	2.59	2.97	3.71
2046	1.60	2.66	3.04	3.80
2047	1.64	2.73	3.11	3.89
2048	1.67	2.78	3.18	3.98
2049	1.70	2.83	3.24	4.05
2050	1.72	2.87	3.28	4.10

## 5. 기초생활보장

### 가. 현행제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1. 10.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장은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도 가능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sup>13)</sup>
  - 수급대상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

[그림 III-5-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 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기준 · 금액기준 · 실물기준 (주택, 농지, 승용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기준	.....> ② 부양의무자기준
	① 소득인정액기준

13)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7)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09)를 참조하여 작성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표 III-5-1>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는 2008년, 2009년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각각 224,308원, 245,423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자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표 III-5-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2007.12월 이후 기준)

구 분		79세 이하	80세 이상
경로연금 수령액		45천원	50천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2008년	45천원	50천원
	2009년	35천원	40천원

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산정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감소할 계획

<표 III-5-3> 자활소득관련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표 III-5-4>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	3,400	2,900

<표 III-5-5>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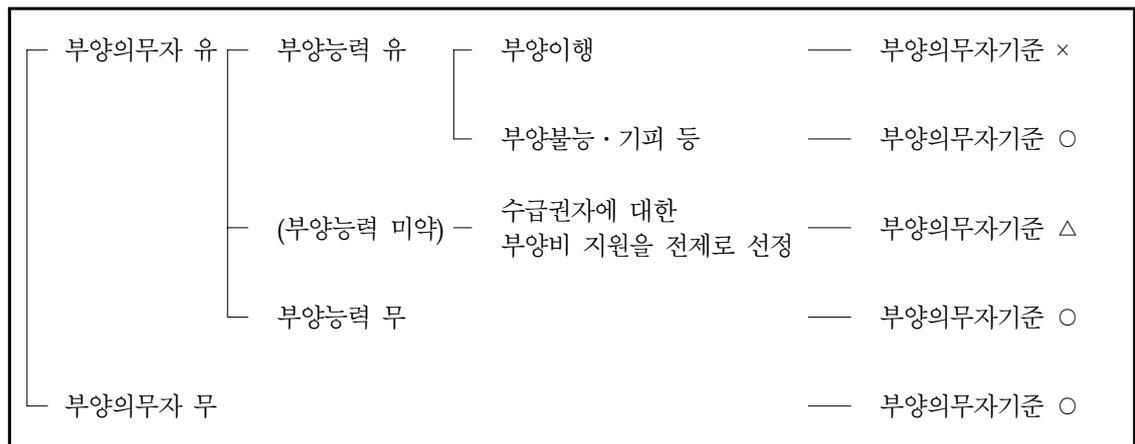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림 III-5-2]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흐름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성

<표 III-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구성

기준	구분	수급기준	내용
공통기준		최저생계비기준	동시 충족 필요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현금기준선 <sup>1)</sup> 이하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li> <li>○ 긴급 생계급여: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li> <li>○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기초생보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li> </ul>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시설거주자가 아닌 가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등 2종: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여 병의원, 약국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급여를 실시한 다음, 사후 급여비용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 중 중고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생: 부교재비</li> <li>○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부교재비 포함)</li> <li>○ 공통: 학용품비</li> </ul>
	해산급여	수급자 중 해당자	수급자가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해산비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 중 해당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자활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sup>2)</sup> 및 희망자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기능습득,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

주: 1)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 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

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09)

○ 생계 및 주거급여

- 급여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10원 단위(1원 단위에서 올림)로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35%)	(20.65%)	(100%)

<표 III-5-7> 생계 및 주거급여 수준(2009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타 지원액(B)	84,964	141,156	181,138	221,121	261,103	301,085
현금급여기준 (C=A-B)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주거급여 한도액(D)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생계급여액 (E=C-D)	321,227	550,467	713,581	876,694	1,039,808	1,202,922

주: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가구 : 2,062,87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씩 증가(7인가구 : 1,721,810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09)

○ 의료급여<sup>14)</sup>

- 근로능력보유세대 여부 등에 따라 수급권자 유형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아래 <표 III-5-8>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료비로 지원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세대

<표 III-5-8>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 촬영 등
1종	입원	면제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500원	10%
	외래	1,000원	15%		500원

주: 건강보험의 경우, 의원 30%, 병원 35~40%, 종합병원 45~50%, 종합전문요양기관(지정) 60%, 약국 3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사업 안내(2009)

○ 교육급여

-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학비 지원

<표 III-5-9> 교육급여 수준(2009년 기준)

(단위: 원/명)

지원대상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	-	33,000	45,000
고등학생	전액	109,000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09)

14) 이 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2종 수급권자 중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09. 4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예정

- 1종 수급권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 2종 수급권자: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해산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sup>15)</sup>(출산예정)한 경우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자활급여

- 일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및 사업시행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형태로 지급 가능

<표 III-5-10> 자활급여 수준(2009년 기준)

(단위: 원/인)

구 분 <sup>1)</sup>	계	급여단가	실비	비 고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31,000 (32,000)	29,000 (30,000)	2,000	1일 8시간, 주 5일
인턴형	30,000	28,000		
사회적 일자리형	28,000	26,000		
근로유지형	21,000	19,000		1일 5시간, 주 4일

주: 1)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안내(2009)

15)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를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만 해당)하며, 낙태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나. 추계모형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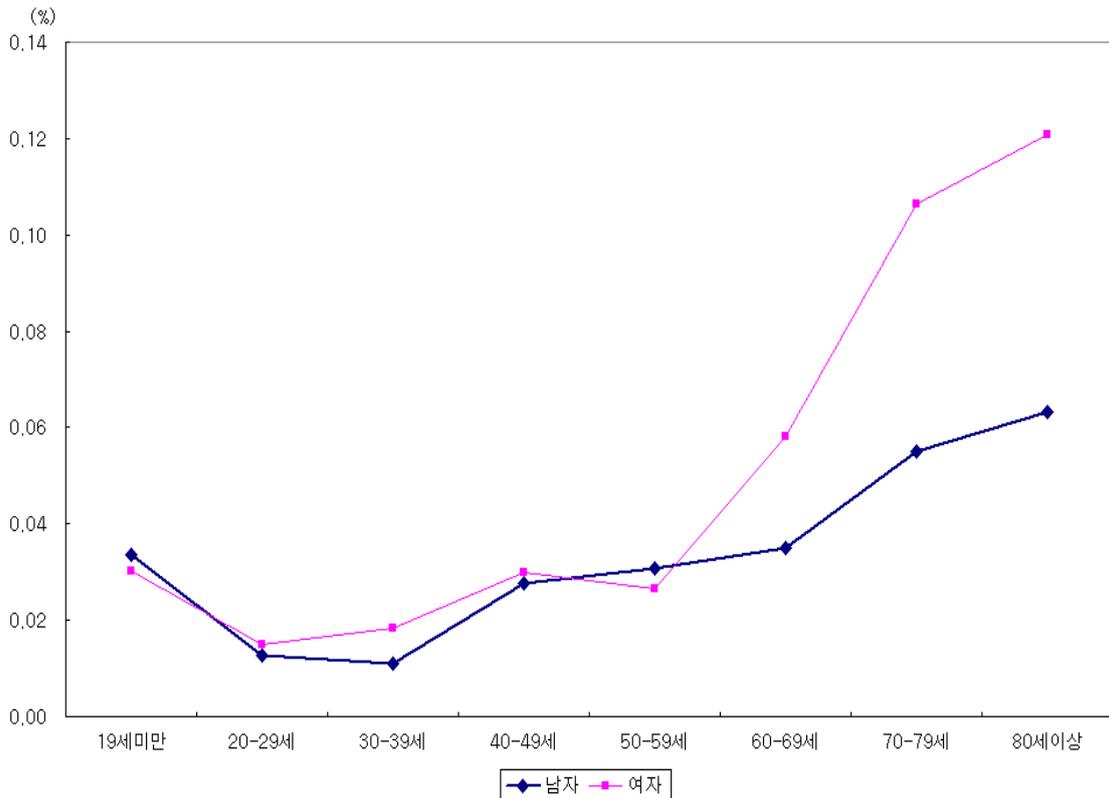
-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성격이 비슷한 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모형을 구축
  - 기초생보 수급자를 추계하여 (현금급여기준-평균소득)의 79.35%, 20.65%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동시에 추계하여야 함
    - 자활급여는 별도의 모형을 구축하지 않고 생계급여의 일정비율로 추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2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별 의료급여 대상자 추계로부터 구해지는 기초생보 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법률에 의한 수급자 수를 기초로 하여 추계
  -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초생보 수급자 중에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해 특정 품목별로 지급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기초생보 수급자 중에서 신생아 출산자 및 사망자 유가족에게만 지급

### 2) 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

- (기초생보 수급자 수) 인구부문에서 추계된 성별·연령별 인구추계 결과에서 성별·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2009년 이후는 동 비율이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성별·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은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06~2007년 성별·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의 평균을 2008년 전체수급자 비율이 3.2%가 되도록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사용

-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급자 비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령구간을 수급자의 성별·연령별 분포에 대한 정보입수가 가능한 19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세분화
- (수급자의 구분) 생계급여 금액 및 주거급여 수혜 여부의 구분을 위해 위에서 추계한 기초생보 수급자 수를 일반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로 구분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 전제치 평균인 94.58%(일반수급자) 및 5.42%(보장시설수급자) 적용
  - 2009년 현재 총수급자 158.6만명 중 일반수급자는 150.0만명으로 추정됨

[그림 III-5-3] 2008년 성별·연령구간별 수급자 비율



□ (1인당 최저생계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1.8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다시 1.8인으로 나누어 계산

- 기초생보 수급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1.8인이므로 1.8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야 함
- 1.8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 = OECD 기준 가구규모별 균등화지수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 + (2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 - 1인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0.8
- 최저생계비는 <표 III-5-12>에 정리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 전제치)를 기준으로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III-5-11> OECD 기준 균등화지수

구분	1인	2인	3인	4인
07년	0.3616	0.6092	0.8070	1.0000
08년	0.3658	0.6196	0.8110	1.0000
09년	0.3700	0.6300	0.8150	1.0000
10년	0.3700	0.6300	0.8150	1.0000
11년	0.3700	0.6300	0.8150	1.0000
12년	0.3700	0.6300	0.815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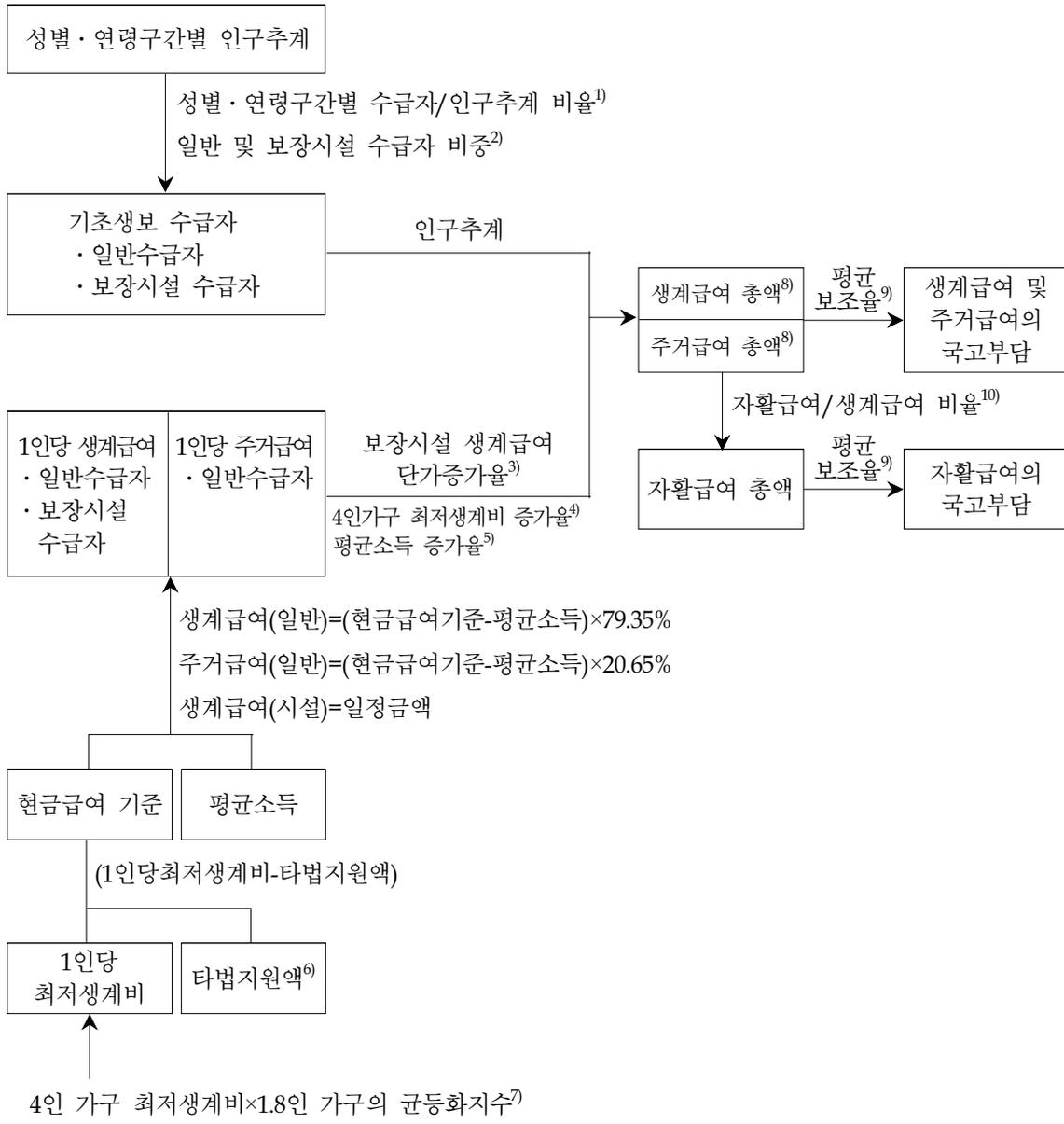
<표 III-5-12> 가구규모별 최저생계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09년	490,845	835,764	1,081,186	1,326,609
10년	505,571	860,837	1,113,622	1,366,407
11년	530,849	903,878	1,169,303	1,434,728
12년	546,775	930,995	1,204,382	1,477,769

- (1인당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현금급여기준을 구한 후 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추계
  - 현금급여기준은 위에서 구한 1인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범률에 의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구함
    - 타범지원액은 1인당 최저생계비의 16.3%로 가정
  - 생계급여(일반) 및 주거급여는 각각 (현금급여기준-평균소득)의 79.35% 및 20.65%로 계산
    - 평균소득은 2007년 월 13만 60원을 기준으로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생계급여(시설)는 2008년 월 12만 7,488원을 기준으로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 해당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평균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부담액을 계산
  -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노인수급자의 약 23%, 기초노령연금총액의 약 8%)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반영
  - 평균국고보조율은 78.38%를 적용
    - 서울지역 40~60%, 지방 70~90%
  - 다만 자활급여는 생계급여의 일정비율(『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전망치로부터 계산된 비율)로 추계
    - 2011년까지 24.4%로 상승한 후 동 비율이 유지됨

[그림 III-5-4] 기초생보(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 재정추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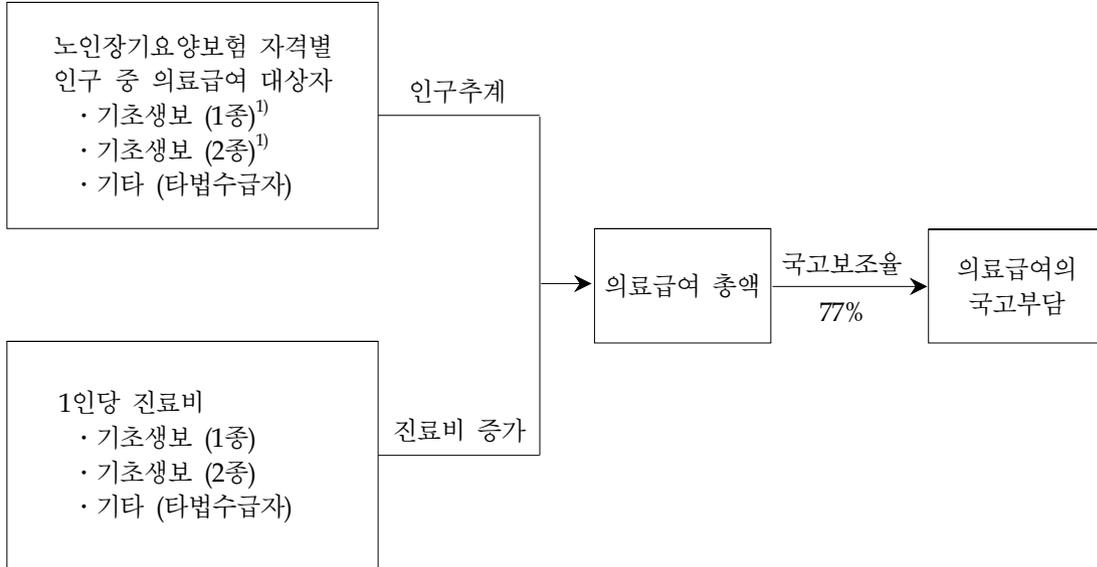
1.8

- 주: 1) 2006~2007년 실적치 평균을 2008년 전체 수급자 비율이 3.2%가 되도록 조정  
 2)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정부 전제치 평균인 94.58% 및 5.42% 적용  
 3) 본 연구에서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제치인 3% 적용  
 4) 본 연구에서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치와 2013년 이후는 증가율 3% 적용  
 5) 본 연구에서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치와 2013년 이후는 증가율 0% 적용  
 6) 1인당 최저생계비의 22% 적용  
 7) OECD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8)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노인수급자의 약 23%, 기초노령연금총액의 약 8%)에 대한 감액 반영  
 9) 평균국고보조율 78.38%(서울 40~60%, 지방 70~90%)  
 10) 본 연구에서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정부 전제치와 2014년 이후는 2013년 비율 24.4% 적용

### 3) 의료급여

- (수급자 수) 제2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자격별 의료급여 대상자 추계로부터 구해지는 기초생보 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법률에 의한 수급자 수를 기초로 기초생보(1종), 기초생보(2종), 기타(타법수급자)를 각각 추계
  - 기초생보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은 61.0%(2008년 실적치), 2종은 39.0%로 전체
  
- (급여종류별 수가) 2008년 급여종류별 수가(1종 336.7만원, 2종 87.9만원, 타법수급자 240.8만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수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시나리오 1 : 매년 2008년 증가율인 7.95%(1종), 9.22%(2종), 6.03%(타법)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2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장기추계에서처럼 3가지 급여 모두 1인당 수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3(baseline)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장기추계의 baseline처럼 3가지 급여 모두 1인당 수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증가하고 동시에 자연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이 1.1(2007년)~1.0(2050년)인 것으로 가정
  
- (의료급여) 해당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평균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부담액을 계산
  - 평균국고보조율은 77%를 적용

[그림 III-5-5] 기초생보(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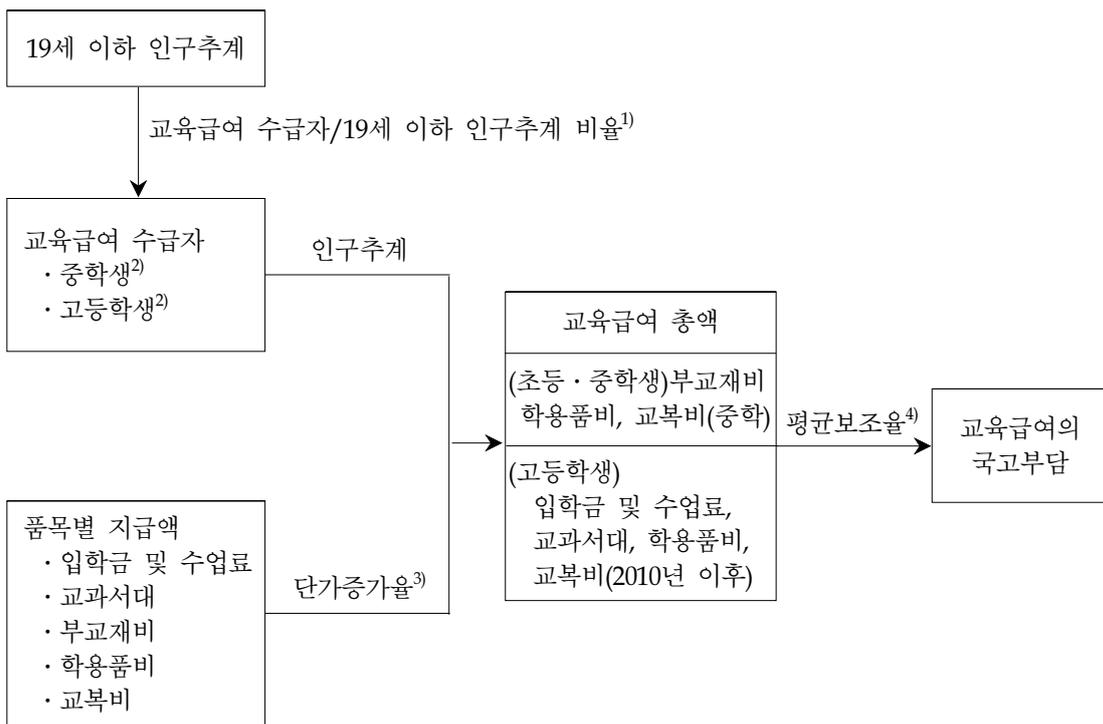
주: 1) 기초생보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은 61.0%, 2종은 39.0%로 전체

#### 4) 교육급여

- (수급자 수) 앞에서 추계된 성별·연령구간별 생계급여 수급자 수에서 19세 이하 수급자 추계 결과에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6년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55.7%)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2009년 이후는 동 비율이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이렇게 추계된 교육급여 수급자를 중학생(49.2%, 2006년 실적치) 및 고등학생(50.8%)으로 구분
  
- (품목별 지급액) 2008년 1인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이후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정부 전제치인 증가율 3%를 적용
  - 2008년 1인당 지급액 : 입학금및수업료 1,079,400원, 교과서대 106,000원, 부교재비 32,000원, 학용품비 44,000원

- (교육급여) 품목별 지급 대상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평균보조율을 78.38%(서울지역 40~60%, 지방 70~90%)를 적용하여 국고부담액을 계산
  - 중학생에 대한 지급품목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복비(2010년 이후, 대상학생의 1/3)
  - 고등학생에 대한 지급품목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교복비 (2010년 이후, 대상학생의 1/3)
  - 2010년 이후 초등학생에 대한 지급품목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그림 III-5-6] 기초생보(교육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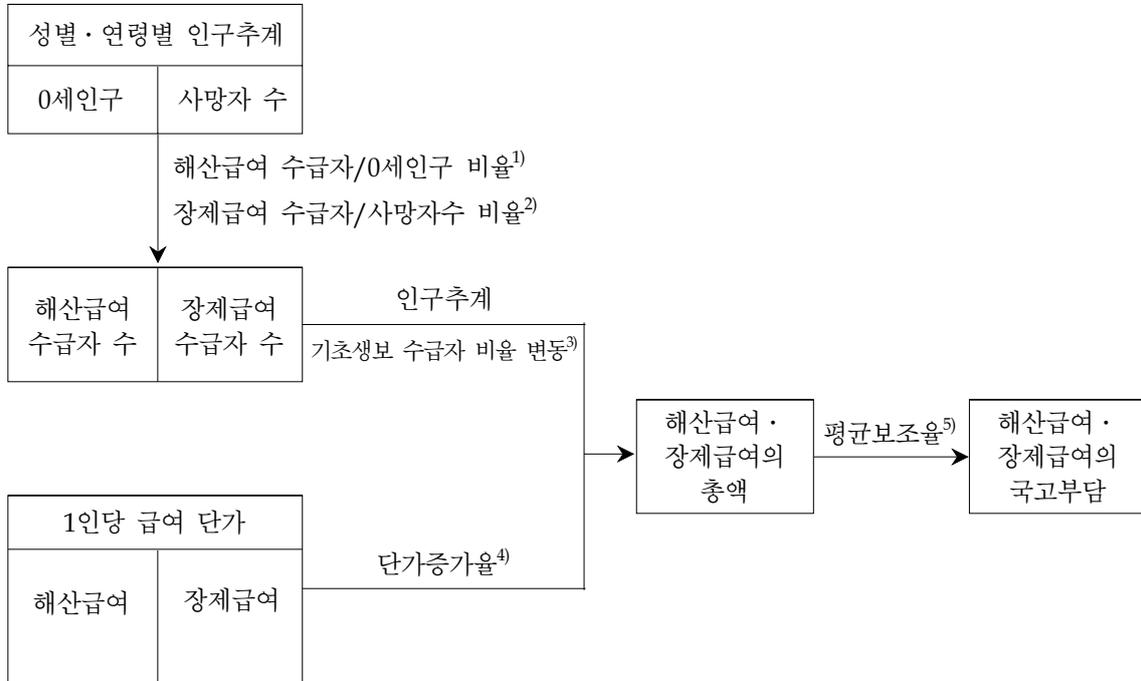


주: 1) 2006년 실적치 55.7% 적용  
 2) 총 교육급여 수급자 중 중학생은 49.2%, 고등학생은 50.8%(2006년 실적치) 적용  
 3) 본 연구에서는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정부 전제치 3% 적용  
 4) 평균 국고보조율 78.38% 적용

## 5)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격별 인구 수) 인구부문에서 추계된 연령별 인구추계 중 0세인구 및 사망자 수 추계 결과에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연도인 2010년 예산상의 자격별 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2011년 이후는 동 비율이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해산급여 수급자/0세인구 비율 = 0.74%
  - 장제급여 수급자/사망자 수 비율 = 11.8%
  - 다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기초생보 수급자 비율이 변동할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반영
    - 연도별 기초생보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자활급여 추계모형에서 산출됨
  
- (급여종류별 단가) 2009년 1인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 전제치(2009년 수준으로 동결) 및 2014년 이후 연1%의 증가율을 적용
  - 2009년 1인당 지급액 : 해산 50만원, 장제 50만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품목별 지급 대상 수급자 수에 1인당 급여액을 적용하여 추계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평균보조율 78.38%(서울지역 40~60%, 지방 70~90%)를 적용하여 국고부담액을 계산

[그림 III-5-7] 기초생보(해산급여·장제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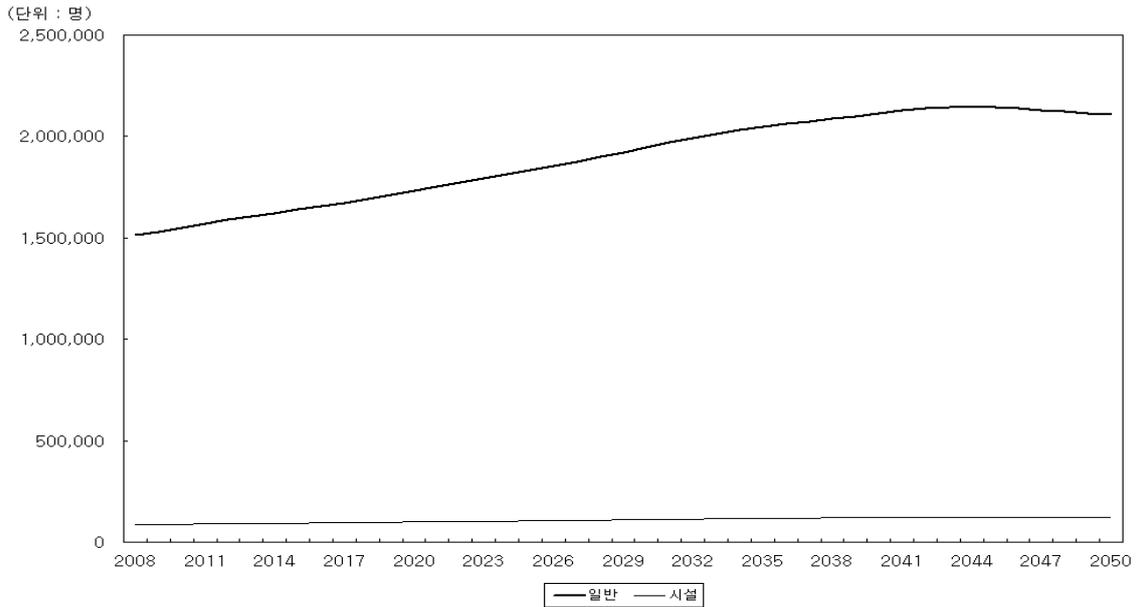


- 주: 1) 2010년 예산상의 비율 0.74% 적용  
 2) 2010년 예산상의 비율 11.8% 적용  
 3) 생계급여·주거급여 추계과정에서 계산되는 기초생보 수급자 적용  
 4) 2014년 이후 연 1% 증가율 적용  
 5) 평균 국고보조율 78.38%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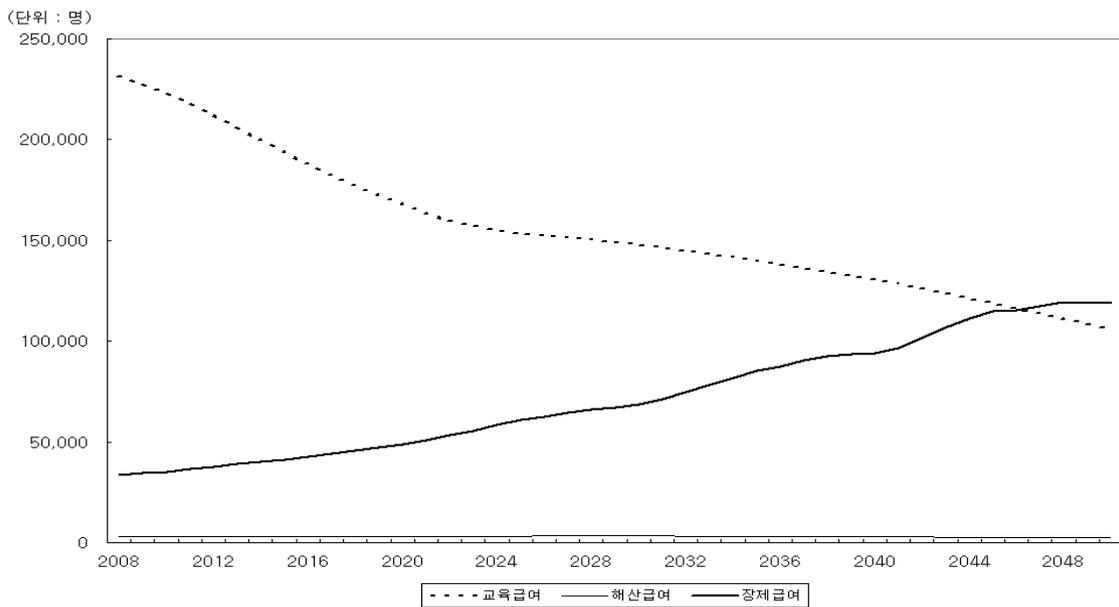
## 다. 추계결과

□ 2050년까지의 급여종류별 기초생보 수급자 수 추계결과는 [그림 III-5-8] 및 [그림 III-5-9]와 같음

[그림 III-5-8] 기초생보 수급자 수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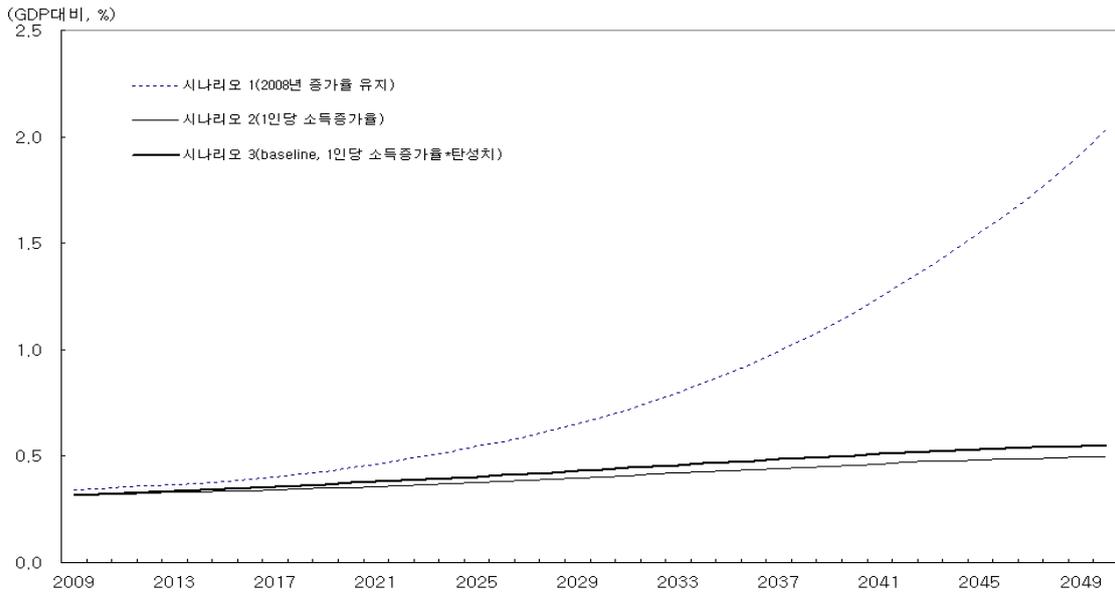


[그림 III-5-9] 교육·해산·장제 급여 수급자 수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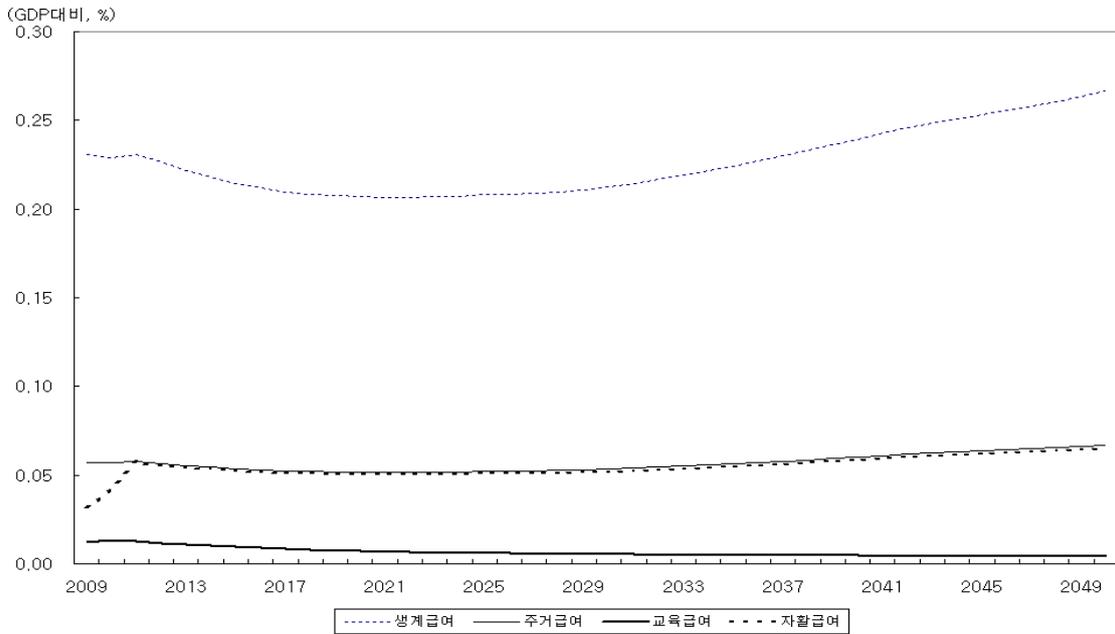


- 이성과 같은 방법으로 2050년까지의 기초생보 지출(국비 기준)을 전망해 보면 2009년 GDP 대비 0.7% 수준에서 2050년 1.1%로 0.4%p 정도 증가(베이스라인인 시나리오 3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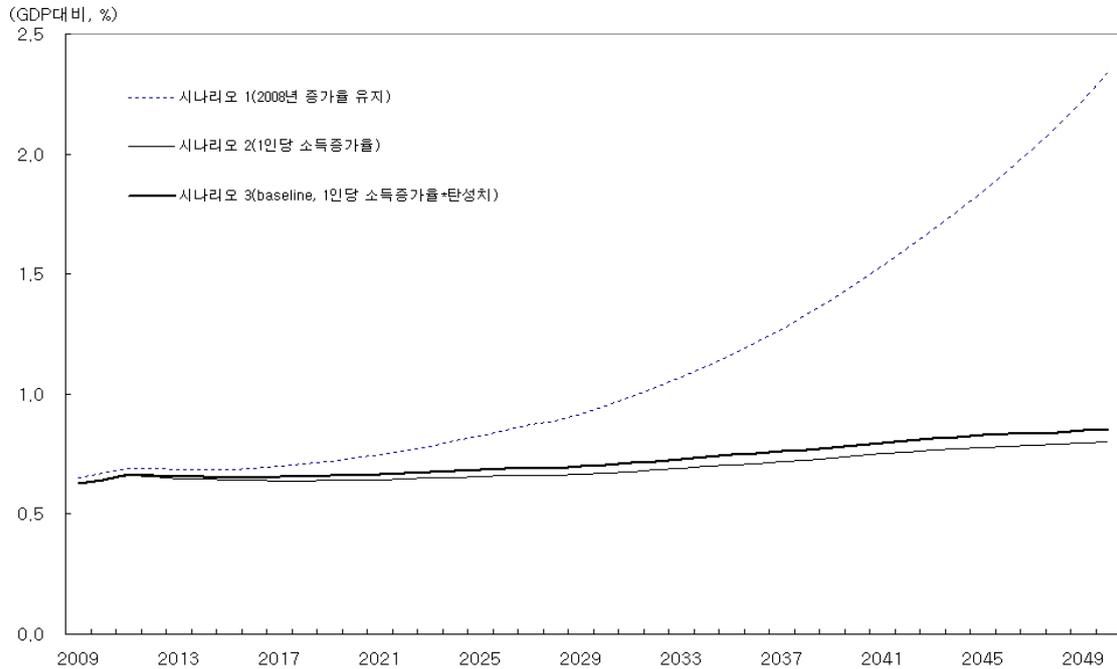
[그림 III-5-10] 시나리오별 의료급여 지출 추계결과



[그림 III-5-11] 기타 기초생보 지출 추계결과



[그림 III-5-12] 시나리오별 기초생보 지출총액 추계결과



- 한편, 기초생활보장 지출 중에서 국고지원규모 전망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3 기준)는 복지부 내부전망치에 비해서는 다소 과대추계되지만,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2009~2013년 중 국고지원규모 추계결과는 복지부 내부전망치에 비해서는 0.1조원에서 0.3조원 정도 다소 과소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서는 -0.6조원~+1.1조원으로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13> 추계결과의 중기재정전망과의 비교

(단위: 조원)

	본 연구		복지부 내부추계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2009	8.36	6.52	-	6.87	-	7.14
2010	9.11	7.11	-	7.45	-	7.30
2011	10.13	7.90	-	7.97	-	7.50
2012	10.83	8.45	-	8.54	-	7.71
2013	11.58	9.04	-	9.11	-	7.92
차이						
2009	-	-	-	-0.35	-	-0.62
2010	-	-	-	-0.34	-	-0.19
2011	-	-	-	-0.07	-	0.41
2012	-	-	-	-0.09	-	0.74
2013	-	-	-	-0.07	-	1.11

<표 III-5-14> 시나리오별 기초생보 지출(국비기준)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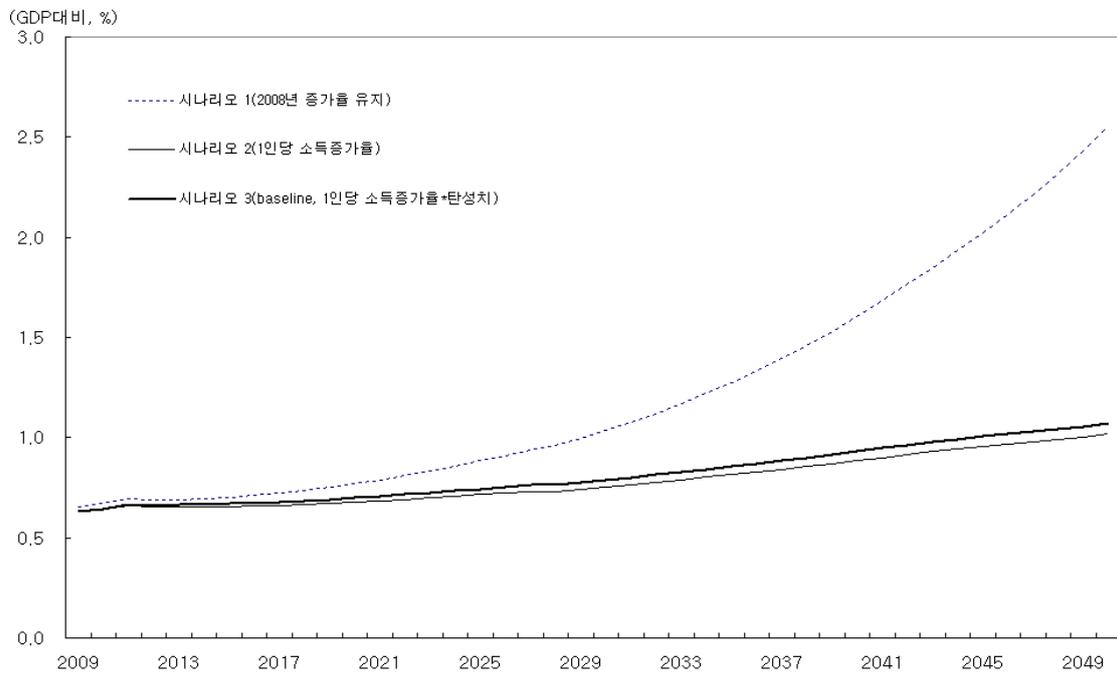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자활 급여	기초생보 합계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baseline)
2009	0.231	0.057	0.340	0.317	0.318	0.012	0.000	0.002	0.031	0.652	0.630	0.630
2010	0.229	0.057	0.349	0.321	0.323	0.013	0.000	0.002	0.043	0.670	0.642	0.644
2011	0.231	0.058	0.354	0.324	0.328	0.013	0.000	0.002	0.057	0.692	0.661	0.666
2012	0.226	0.056	0.360	0.327	0.333	0.012	0.000	0.001	0.055	0.688	0.655	0.661
2013	0.221	0.055	0.365	0.330	0.338	0.011	0.000	0.001	0.054	0.684	0.649	0.657
2014	0.218	0.054	0.374	0.333	0.343	0.010	0.000	0.001	0.053	0.687	0.646	0.656
2015	0.214	0.053	0.381	0.336	0.348	0.009	0.000	0.001	0.052	0.687	0.642	0.654
2016	0.212	0.053	0.391	0.339	0.353	0.009	0.000	0.001	0.052	0.691	0.639	0.653
2017	0.210	0.052	0.402	0.342	0.358	0.008	0.000	0.001	0.051	0.698	0.639	0.654
2018	0.208	0.052	0.415	0.346	0.363	0.008	0.000	0.001	0.051	0.708	0.639	0.656
2019	0.207	0.052	0.429	0.350	0.369	0.008	0.000	0.001	0.051	0.720	0.640	0.659
2020	0.207	0.052	0.445	0.354	0.374	0.007	0.000	0.001	0.051	0.733	0.642	0.663
2021	0.206	0.052	0.462	0.358	0.380	0.007	0.000	0.001	0.050	0.747	0.644	0.666
2022	0.206	0.052	0.480	0.362	0.386	0.007	0.000	0.001	0.050	0.764	0.646	0.670
2023	0.207	0.052	0.501	0.367	0.392	0.006	0.000	0.001	0.050	0.783	0.649	0.675
2024	0.207	0.052	0.522	0.371	0.398	0.006	0.000	0.001	0.051	0.804	0.653	0.679
2025	0.208	0.052	0.546	0.376	0.404	0.006	0.000	0.001	0.051	0.826	0.656	0.684
2026	0.208	0.052	0.569	0.381	0.410	0.006	0.000	0.001	0.051	0.848	0.660	0.689
2027	0.209	0.052	0.594	0.386	0.417	0.006	0.000	0.001	0.051	0.871	0.663	0.694
2028	0.210	0.053	0.621	0.391	0.423	0.006	0.000	0.001	0.051	0.889	0.659	0.692
2029	0.211	0.053	0.651	0.397	0.430	0.005	0.000	0.001	0.052	0.919	0.665	0.698
2030	0.213	0.053	0.684	0.403	0.438	0.005	0.000	0.001	0.052	0.952	0.671	0.706
2031	0.215	0.054	0.720	0.408	0.445	0.005	0.000	0.001	0.052	0.988	0.677	0.713
2032	0.217	0.054	0.758	0.414	0.452	0.005	0.000	0.001	0.053	1.027	0.684	0.721
2033	0.219	0.055	0.799	0.420	0.459	0.005	0.000	0.001	0.053	1.070	0.691	0.730
2034	0.222	0.056	0.843	0.426	0.466	0.005	0.000	0.001	0.054	1.115	0.698	0.738
2035	0.224	0.056	0.890	0.431	0.472	0.005	0.000	0.001	0.055	1.164	0.705	0.746
2036	0.227	0.057	0.941	0.436	0.479	0.005	0.000	0.001	0.055	1.216	0.712	0.754
2037	0.230	0.058	0.994	0.441	0.485	0.005	0.000	0.001	0.056	1.271	0.718	0.762
2038	0.233	0.059	1.051	0.447	0.491	0.005	0.000	0.001	0.057	1.330	0.725	0.770
2039	0.236	0.059	1.112	0.452	0.497	0.005	0.000	0.001	0.058	1.393	0.733	0.778
2040	0.239	0.060	1.177	0.458	0.504	0.005	0.000	0.001	0.058	1.461	0.742	0.788
2041	0.243	0.061	1.246	0.464	0.511	0.005	0.000	0.001	0.059	1.533	0.751	0.798
2042	0.246	0.062	1.318	0.470	0.518	0.004	0.000	0.001	0.060	1.607	0.759	0.807
2043	0.248	0.062	1.392	0.475	0.524	0.004	0.000	0.001	0.061	1.684	0.766	0.815
2044	0.251	0.063	1.469	0.479	0.529	0.004	0.000	0.001	0.061	1.763	0.773	0.822
2045	0.253	0.064	1.549	0.483	0.533	0.004	0.000	0.001	0.062	1.844	0.778	0.828
2046	0.256	0.064	1.634	0.486	0.536	0.004	0.000	0.001	0.062	1.930	0.782	0.833
2047	0.258	0.065	1.724	0.489	0.540	0.004	0.000	0.001	0.063	2.022	0.786	0.837
2048	0.260	0.066	1.820	0.491	0.543	0.004	0.000	0.002	0.064	2.119	0.791	0.842
2049	0.263	0.066	1.923	0.495	0.547	0.004	0.000	0.001	0.064	2.224	0.796	0.848
2050	0.266	0.067	2.034	0.498	0.551	0.004	0.000	0.001	0.065	2.339	0.803	0.855

□ 민감도 분석

- 최저생계비 및 1인당 생계급여(시설)의 증가율 및 교육급여의 품목별 지급액 증가율이 매년 3%에서 4%로 인상될 경우
  - 2050년 기초생보 지출(국비기준) 규모는 baseline인 시나리오 3의 GDP 대비 0.86%에서 1.07%로 0.21%p 정도 증가

[그림 III-5-13] 기초생보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6. 취약계층 지원

### 가. 현행제도

#### 1)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정책은 기능적으로 활동, 복지, 보호체계를 유지하면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대상에 따라 추진

<표 III-6-1>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정책 추진내용

대상	주요정책
영유아(6세 미만)	건강증진, 보육지원
아동(6~12세)	건강·안전, 기초학습, 활동기회 보장
청소년(13~18세)	비행·일탈예방, 학력향상, 청소년활동을 통한 잠재역량개발 지원
청년(19~24세)	취·창업 등 자립능력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2008)

-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크게 아동/청소년활동·복지·보호로 구분하여 실시
  - 아동·청소년활동 사업은 크게 아동청소년 참여/관리사업과 국제교류활동사업으로 구분

<표 III-6-2> 아동·청소년활동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참여/관리	아동청소년활동프로그램	- 문화존운영 - 동아리활동 지원 - 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신규 건립 및 기존 시설의 개보수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관리, 학교 및 복지 시설 등과의 자원봉사네트워크 형성 지원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설치운영 - 유엔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홍보 - 아동청소년 맞춤형권리교재 개발
	아동청소년 참여증진	- 전국 및 지역단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청소년증 운영	발급시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 부여 -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20%) - 영화관(500~1,000원) - 공연장, 공원 등(면제~50%)
국제교류 활동	국가간 청소년 교류	- 교류국의 언어(또는 영어)가 가능한 18~24세 청소년의 정부간 교류 지원
	민간국제교류	- 특별계기 청소년교류 지원 -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지원 - 국제 청소년 행사 국내 개최 및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사업 안내(2009)

○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은 크게 아동복지사업, 방과후활동, 위기청소년지원사업으로 구분

<표 III-6-3> 아동·청소년복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아동 복지 사업	국내가정보호	○ 가정위탁보호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자에 대하여 소정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국내입양가정 지원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13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실시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양육,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드림스타트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할 경우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를 지원
방과후 활동	지역아동센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생활, 학습, 놀이 및 특별활동, 지역 자원 연계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초등(4~6년), 중등(1~2)을 대상으로 기본, 전문, 특별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제공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위기(가능)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연계 제공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관련 상담을 위한 헬프콜 지원
	청소년 가출예방/쉼터	가출예방 홍보, 가출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5/100 이하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생계, 보건, 학업 등을 지원
	새터민/다문화 청소년 지원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한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사업 안내(2009)

- 아동·청소년보호 사업은 크게 아동청소년안전/예방사업, 청소년생활환경개선사업, 청소년성보호사업으로 구분

<표 III-6-4> 아동·청소년보호 지원내용

구분	구분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안전/예방	아동학대 예방/지원	아동학대관련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가정 내 아동 안전사고 예방	만 5세 이하 가정 내 아동사고율이 높은 지역 대상 시범사업 추진
	아동실종 예방/보호	시도별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실종가족 지원 등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유해환경 단속,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유해약물 예방/치료	유해약물 단속, 예방활동 지원 등
	건전 매체환경 조성	매체물 심의, 모니터링 강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청소년 성보호	성범죄예방/재범방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 청소년 성문화센터(SAY) 운영 지원 등
	성보호제도 운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피해·가해 청소년 교육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사업 안내(2009)

□ 아동·청소년지원관련 급여

- 아동·청소년관련 급여 내용은 다소 복잡하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ren, CRC)에 의한 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6-5>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여 구성(CRC 기준)

대상 연령	CRC에 의한 급여형태 분류				
	특성	생존권	보호권	활동권	참여권
영유아 (6세 미만)	일반	- 보육료 차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지원 - 안전사고예방 - 보육		- 아동권리 모니터링
	요보호	- 아동발달계좌 - 입양아양육수당 - 입양장애아양육수당 - 가정위탁상해보험료	- 시설보호 - 입양 - 가정위탁 -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		
아동 (6~12세)	일반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지원 - 안전사고예방		- 아동권리 모니터링
	요보호	- 아동발달계좌 - 입양아양육수당 - 입양장애아양육수당 - 가정위탁상해보험료 - 급식	- 시설보호 - 입양 -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 - 아동학대보호 - 실종아동보호		
청소년 (13~18세)	일반		- 지역아동센터 - 유해환경 정화 - 유해약물 예방	- 국가간청소년교류 - 우주센터조성 - 폭력및가출 예방 - 수련활동 - 활동진흥센터 운영 - 문화체험활동 지원	- 아동권리 모니터링 - 아동총회, 청소년 특별회의 등 참여 증진
	요보호	- 아동발달계좌 - 입양아양육수당 - 입양장애아양육수당 - 가정위탁상해보험료 - 급식	- 시설보호 - 입양 - 가정위탁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 동반자프로그램 - 청소년공부방운영 - CYS-net		- 아동학대보호
청년 (19~24세)	일반				
	요보호	-자립정착금	- 자립지원센터		

자료: 이해원외(2009),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용 및 수정

## 2) 장애인

□ 장애인정책은 크게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업과 이 외의 기관이나 단체 소관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장애인관련 사업의 구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지방이양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업은 크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관련 사업으로 구분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장애인시설 확충사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성
-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의료재활지원 등으로 구성
- 국민건강보험관련사업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지원 등이 있음

<표 III-6-6>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장애 수당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li> <li>-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li> <li>-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중증 : 1인당 월 130천원</li> <li>○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20천원</li> <li>○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li> <li>○ 보장시설 장애인</li> <li>- 기초 중증 : 1인당 월 70천원</li> <li>- 기초 경증 : 1인당 월 20천원</li> </ul>
장애아동 수당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li> <li>·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li> <li>·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li> <li>○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li> <li>○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li> </ul>
장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li> <li>○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2009. 4.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 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li> <li>-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li> <li>-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li> <li>○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li> <li>-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압,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li> <li>○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li> </ul>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li> <li>- 지적 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li> <li>-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li> <li>※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li> </ul>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li> <li>※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li> <li>· 1인 : 638,099원 이하</li> <li>· 2인 : 1,086,492원 이하</li> <li>· 3인 : 1,405,542원 이하</li> <li>· 4인 : 1,724,592원 이하</li> <li>· 5인 : 2,043,640원 이하</li> <li>· 6인 : 2,362,690원 이하</li> <li>※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li> <li>○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li> <li>○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li> <li>○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li> </ul>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등록 여성장애인 특히, 저소득·저학력 여성 장애인	○ 저학력 여성장애인 기초학습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 ○ 운영비 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자부담 추가 가능)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증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탐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가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지원금액 - 월 250ℓ 한도(리터당 220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009)

<표 III-6-7>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내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기능보강이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 신축 사업 : 1개소/30명/연면적700㎡/단가 1,094천원/국비492백만원 지원 ○ 증·개축 사업 : 보호인원에 비례하여 신축 사업 수준으로 지원 ○ 개보수 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009)

<표 III-6-8> 국민건강보험관련 사업내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잠수 산정시 특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산출 보험료 경감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지원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휠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table border="1" data-bbox="901 627 1348 1310"> <thead> <tr> <th>분 류</th> <th>기준액</th> <th>내구연한</th> </tr> </thead> <tbody> <tr> <td>○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td> <td>20,000</td> <td>2</td> </tr> <tr> <td>○ 목발</td> <td>15,600</td> <td>2</td> </tr> <tr> <td>○ 휠체어</td> <td>480,000</td> <td>5</td> </tr> <tr> <td>○ 의지·보조기</td> <td>유형별로 상이</td> <td>유형별로 상이</td> </tr> <tr> <td>○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td> <td></td> <td></td> </tr> <tr> <td>-안경</td> <td>100,000</td> <td>5</td> </tr> <tr> <td>-돋보기</td> <td>100,000</td> <td>4</td> </tr> <tr> <td>-망원경</td> <td>100,000</td> <td>4</td> </tr> <tr> <td>-콘택트렌즈</td> <td>80,000</td> <td>3</td> </tr> <tr> <td>-의안</td> <td>300,000</td> <td>5</td> </tr> <tr> <td>○ 휠지팡이</td> <td>14,000</td> <td>0.5</td> </tr> <tr> <td>○ 보청기</td> <td>240,000</td> <td>5</td> </tr> <tr> <td>○ 체외용인공후두</td> <td>500,000</td> <td>5</td> </tr> <tr> <td>○ 전동휠체어</td> <td>2,090,000</td> <td>6</td> </tr> <tr> <td>○ 전동스쿠터</td> <td>1,670,000</td> <td>6</td> </tr> <tr> <td>○ 정형외과구두</td> <td>220,000</td> <td>2</td> </tr> </tbody> </table>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 휠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 휠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009)

## 나. 추계모형

- 노인·청소년 분야 지출 중 앞에서 모형을 구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청소년관련 및 기타 노인관련 지출항목을 포괄
  - 이들 항목에 대한 지출규모는 2009년 및 2013년 GDP 대비 0.04% 수준에 불과하므로 동 비율이 2014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전제
  
- 취약계층지원 분야 지출 중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계모형을 구축
  - 나머지 항목인 요보호아동보호, 아동복지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부랑인의 사상자지원, 국립재활원 등은 2013년 GDP 대비 지출규모 0.1%가 2014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전제
  
- 장애인장기요양보험(2010년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2011년 본격 도입 예정)
  - 적용대상 장애인 수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를 감안하여 2013년 이후 총인구대비 비중이 일정(0.130%)하다고 전제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적용대상 장애인 수는 6.0만명(2011년, 총인구 대비 0.123%) 및 6.4만명(2012년, 총인구 대비 0.130%)
    - 한편, 재가 및 시설의 구분 및 등급(1~3급)별 비중도 다음과 같은 2012년 비중이 유지된다고 전제

구분	재가			시설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비중	25.75%	45.47%	19.21%	2.73%	4.82%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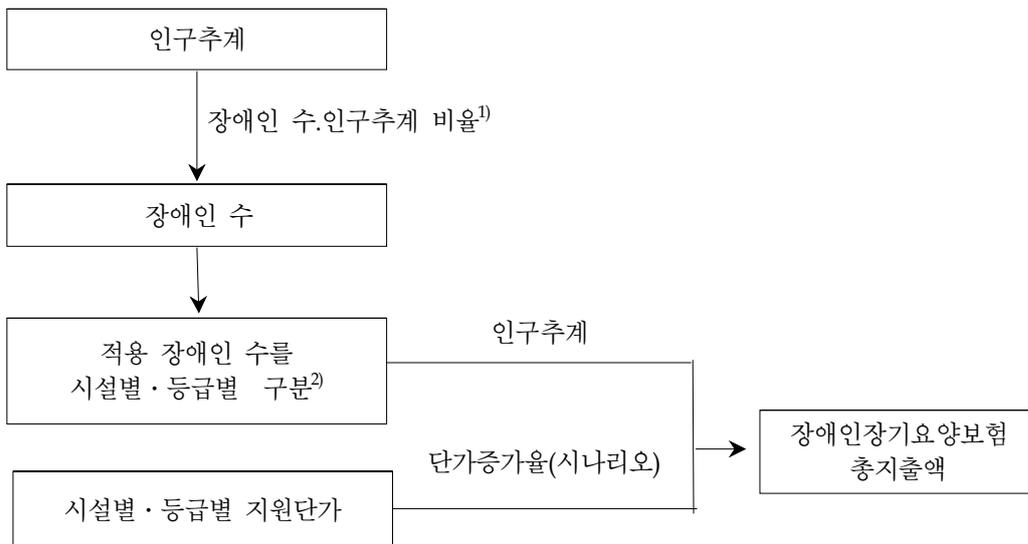
- 재가/시설별 및 장애등급별 수가는 2012년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수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구분	재가			시설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인당 월별 지급규모(천원)	1,097	879	760	1,173	945	797

- 시나리오 1 : 장기요양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에서처럼 매년 3%(2013년은 동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2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에 대한 장기추계에서처럼 수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3(baseline) : 건강보험 장기추계의 baseline처럼 수가가 1인당 소득증가율로 증가하고 동시에 자연증가 등을 감안한 소득에 대한 의료비지출 탄력성이 1.1(2007년)~1.0(2050년)인 것으로 가정

- 국고부담률은 평균 67%(서울지역 50%, 지방 70% 기준)를 적용

[그림 III-6-1]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주: 1) 2011년은 0.123%, 2012년 및 그 이후는 0.130%

2)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적용대상 장애인 구조가 유지된다고 전제

□ 중증장애인연금(2010년 7월 도입 예정)

- 적용대상 중증장애인 수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를 감안하여 2014년 이후 총인구대비 비중이 일정(0.960%)하다고 전제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적용대상 장애인 수는 44.0만명(2011년, 총인구 대비 0.896%), 46.6만명(2012년, 총인구 대비 0.947%) 및 47.3만명(2013년, 총인구 대비 0.960%)
- 연금단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0~2013년은 월 23만원으로 동결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연 3%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국고부담률은 평균 72.3%를 적용

[그림 III-6-2] 중증장애인연금 재정추계 흐름도



주: 1)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전망치(0.960%)가 유지된다고 전제  
 2) 2010~2013년은 월 213만원으로 동결되지만 2014년 이후 연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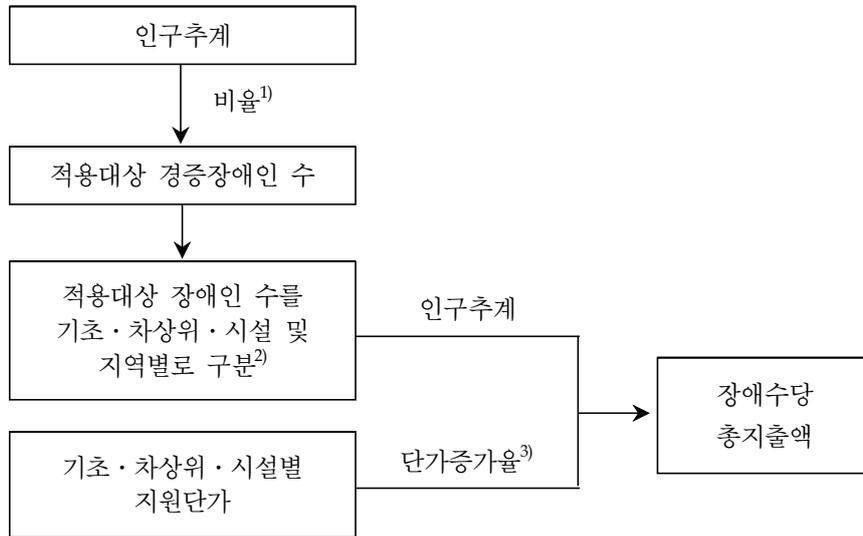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월2만~13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향후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10. 7. 1)으로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축소
- 적용대상 장애인 수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를 감안하여 2014년 이후 총인구 대비 비중이 일정(0.713%)하다고 전제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적용대상 장애인 수는 30.2만명(2011년, 총인구 대비 0.614%), 32.6만명(2012년, 총인구 대비 0.662%) 및 35.2만명(2013년, 총인구 대비 0.713%)
  - 기초경증 vs 차상위경증 vs 시설경증 비중 및 서울 vs 지방 비중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비중이 2014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전제

구분	기초경증		차상위경증		시설경증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서울	지방
비중	0.108	0.677	0.027	0.150	0.003	0.034
지원단가(월)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국고지원율	50%	70%	50%	70%	50%	70%

- 지원단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0~2013년은 2만~3만원으로 동결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연 3%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국고부담률은 서울지역 50%, 지방 70%를 적용

[그림 III-6-3] 장애수당 재정추계 흐름도



- 주: 1)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전망치(0.713%)가 유지된다고 전제  
 2)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비중이 유지된다고 전제  
 3) 2010~2013년은 월 2만~3만원으로 동결되지만 2014년 이후 연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다. 추계결과

- 취약계층지원 재정지출 규모 전망 결과 2009년 GDP 대비 0.115%에서 2050년 0.207% (baseline인 시나리오 3 기준)로 0.091%p 증가
  - 2050년 기준 재정부담 규모는 이보다 0.032%p 작은 0.175% 수준

<표 III-6-9> 취약계층지원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장애인 연금	(국고 부담)	장애 수당	(국고 부담)	취약계층지원 합계		
	총지출			(국고부담)							사나리오 1	사나리오 2	사나리오 3 (base line)
	사나리오 1	사나리오 2	사나리오 3	사나리오 1	사나리오 2	사나리오 3							
200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1	0.028	0.115	0.115	0.115	
2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52	0.038	0.025	0.017	0.149	0.149	0.149
2011	0.039	0.039	0.039	0.026	0.026	0.026	0.102	0.074	0.009	0.006	0.157	0.157	0.157
2012	0.039	0.039	0.039	0.026	0.026	0.026	0.101	0.073	0.009	0.006	0.149	0.149	0.149
2013	0.036	0.039	0.039	0.024	0.026	0.026	0.095	0.069	0.009	0.006	0.139	0.142	0.142
2014	0.035	0.039	0.039	0.023	0.026	0.026	0.092	0.066	0.009	0.006	0.236	0.239	0.240
2015	0.034	0.039	0.039	0.023	0.026	0.026	0.089	0.064	0.008	0.006	0.231	0.236	0.237
2016	0.033	0.039	0.040	0.022	0.026	0.027	0.086	0.062	0.008	0.006	0.227	0.233	0.234
2017	0.032	0.039	0.040	0.021	0.026	0.027	0.083	0.060	0.008	0.005	0.223	0.230	0.231
2018	0.031	0.039	0.040	0.021	0.026	0.027	0.081	0.059	0.008	0.005	0.220	0.228	0.229
2019	0.030	0.039	0.040	0.020	0.026	0.027	0.079	0.057	0.008	0.005	0.217	0.226	0.227
2020	0.029	0.039	0.040	0.020	0.026	0.027	0.077	0.056	0.007	0.005	0.214	0.224	0.225
2021	0.029	0.039	0.040	0.019	0.026	0.027	0.076	0.055	0.007	0.005	0.212	0.222	0.223
2022	0.028	0.039	0.041	0.019	0.026	0.027	0.074	0.054	0.007	0.005	0.209	0.220	0.222
2023	0.028	0.039	0.041	0.019	0.026	0.027	0.073	0.053	0.007	0.005	0.207	0.219	0.220
2024	0.027	0.039	0.041	0.018	0.026	0.027	0.072	0.052	0.007	0.005	0.206	0.217	0.219
2025	0.027	0.039	0.041	0.018	0.026	0.027	0.070	0.051	0.007	0.005	0.204	0.216	0.218
2026	0.026	0.039	0.041	0.018	0.026	0.027	0.069	0.050	0.007	0.004	0.202	0.214	0.217
2027	0.026	0.039	0.041	0.017	0.026	0.028	0.068	0.049	0.006	0.004	0.200	0.213	0.215
2028	0.025	0.039	0.041	0.017	0.026	0.028	0.067	0.048	0.006	0.004	0.198	0.212	0.214
2029	0.025	0.039	0.041	0.017	0.026	0.028	0.066	0.047	0.006	0.004	0.197	0.211	0.213
2030	0.025	0.039	0.041	0.017	0.026	0.028	0.065	0.047	0.006	0.004	0.196	0.210	0.212
2031	0.024	0.039	0.041	0.016	0.026	0.028	0.064	0.046	0.006	0.004	0.195	0.209	0.212
2032	0.024	0.039	0.042	0.016	0.026	0.028	0.063	0.046	0.006	0.004	0.193	0.208	0.211
2033	0.024	0.039	0.042	0.016	0.026	0.028	0.063	0.045	0.006	0.004	0.193	0.208	0.210
2034	0.024	0.039	0.042	0.016	0.026	0.028	0.062	0.045	0.006	0.004	0.192	0.207	0.210
2035	0.024	0.039	0.042	0.016	0.026	0.028	0.062	0.045	0.006	0.004	0.191	0.207	0.210
2036	0.023	0.039	0.042	0.016	0.026	0.028	0.062	0.044	0.006	0.004	0.191	0.206	0.209
2037	0.023	0.039	0.042	0.016	0.026	0.028	0.061	0.044	0.006	0.004	0.190	0.206	0.209
2038	0.023	0.039	0.042	0.016	0.026	0.028	0.061	0.044	0.006	0.004	0.190	0.206	0.209
2039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61	0.044	0.006	0.004	0.190	0.205	0.208
2040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60	0.044	0.006	0.004	0.189	0.205	0.208
2041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60	0.044	0.006	0.004	0.189	0.205	0.208
2042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60	0.043	0.006	0.004	0.188	0.204	0.208
2043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60	0.043	0.006	0.004	0.188	0.204	0.207
2044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8	0.204	0.207
2045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7	0.204	0.207
2046	0.023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7	0.204	0.207
2047	0.022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7	0.204	0.207
2048	0.022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7	0.204	0.207
2049	0.022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7	0.204	0.207
2050	0.022	0.039	0.042	0.015	0.026	0.028	0.059	0.043	0.006	0.004	0.187	0.204	0.207

## 7. 보육

### 가. 현행제도

- 보육지원제도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 탁아사업에서 국가 차원의 보육사업으로 확대되어 왔음
  - 현재 보육 지원사업은 보육수요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서비스 공급자의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별 지원으로 구분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시설로 하여 만 0~4세아 및 만 5세아,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형 등 5개의 범주로 보육료 지원
  - 만 0~4세아 차등보육료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방과후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

<표 III-7-1> 보육료 지원 세부 내용(2009년 기준)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정부지원
차등	○ 만 0세~4세 아동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중 정부미지원시설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1~5층, 5층 초과	○ 연령/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1~2층: 100%, 3층: 80%, 4층:60%, 5층: 30% - 5층초과(정부미지원시설 0~2세의 경우: 정액지원) - 보육유형(종일, 야간, 24시간) 및 정부의 인건비 지원시설 여부에 따라 지원단가 상이
두자녀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0세~4세) 아동	소득인정액 3~5층	○ 연령/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3층: 20%, 4층: 40%, 5층: 50%
만 5세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소득인정액 5층 이하	○ 지원단가: 172,000원
장애아	만 0~12세 취학 전 장애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교사대 아동비율이 1:3이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기준 - 정부 지원시설: 383,000원 - 정부 미지원시설: 733,000원 ○ 기준 미달시: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방과후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1~2층 및 장애아동	소득인정액 1~2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일반아동: 정부지원단가(만 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 ○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이 1:3이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기준 - 정부지원시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1,500원) - 정부미지원시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50%(366,500원) - 기준 미달시, 각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50%(86,000원), 만 5세아 보육료 상한액 50% 적용
시간 연장형	○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 취학아동 중 1층 및 장애아동 지원 가능(단, 취학아동은 24시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 중 1층 및 장애아동만 지원	개별기준 적용	○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30 ~24:00) 시간당 2,400원(장애아: 3,400원(연령불문 동일)),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 야간 보육료: 야간보육(19:30~익일07:30), 차등 보육료와 동일 ○ 24시간 보육료: 차등보육료 지원단가의 150% ○ 휴일(토요일 제외): 정부지원시설 일 보육료×150% 지원 ○ 시간제 보육료: 비정기적 보육 시 영유아 중 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에 대하여 1층 아동: 2,600원/장애아동: 3,500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연도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

○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 장애아 보육 지원

○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 기타 비용 등 지원 지원

- 차량운행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 보육료 지원별 세부내용

○ 보육료 지원대상은 가구원 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1~5층으로 구분하여 선정

○ 보육료 선정기준 개편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으로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에서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으로 변경할 예정<sup>16)</sup>

---

16) 보육관련 추계시 2009년 7월 이후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이용

<표 III-7-2>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2009년 7월 이전)

(단위: 만원 이하)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357	398	420	460

주: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표 III-7-3>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2009년 7월 이후 기준)

(단위: 만원 이하)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 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방과후 보육료 (소득하위 35% 이하)	119	137	154	168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주: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차등 보육료

- 만 0~4세아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계층구분에 따라 다르게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규모는 정부지원시설과 정부 미지원시설에 따라 상이

<표 III-7-4> 정부지원 및 미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7월 이전)  
(단위: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80%	만0세	306,400	656,400
			만1세	269,600	438,600
			만2세	222,400	334,400
			만3세	152,800	152,800
			만4세	137,600	137,6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5층 초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초과		만0세	-	350,000
			만1세	-	169,000
			만2세	-	112,000

주: 지원단가는 종일보육료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2009)

<표 III-7-5> 정부지원 및 미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7월 이후)

(단위: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소득하위 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 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70% 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연령별 정액	만0세	-	350,000
		만1세	-	169,000
		만2세	-	112,000

주: 방과후 보육 지원금액은 만 4세아동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수준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보육시설에 자녀를 2명 이상 보낼 경우 둘째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표 III-7-6>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20%	만0세	76,600
			만1세	67,400
			만2세	55,600
			만3세	38,200
			만4세	34,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는 172,000원이며, 만 5세아 지원아동의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1층 정부지원 단가 적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표 III-7-7>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구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기준 충족	383,000원	733,000원
기준 불충족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방과후 보육료

- 법정저소득층(1층)·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 일반아동의 경우 정부지원단가(만 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

<표 III-7-8> 방과후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구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기준 충족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191,5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50% (366,500원)
기준 불충족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50% (86,000원)	만 5세아 보육료 상한액 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방학기간 종일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은 각각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기준시간(07:30~19:30)을 초과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며,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로 구성
- 시간연장 보육료는 기준시간 초과(19:30~24:00)에 대하여 지원대상별로 시간당 720~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하며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표 III-7-9>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2009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1층	2,400	144,000	기준액
2층	2,400	144,000	기준액×100%
3층	1,920	115,200	기준액×80%
4층	1,440	86,400	기준액×60%
5층	720	43,200	기준액×3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야간 보육료는 야간보육(19:30~익일 7:30)에 대하여 차등 보육료의 야간보육료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보육에 대하여 차등 보육료의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 보육에 대하여 일 보육료<sup>17)</sup>의 150%를 지원(단,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 지원)
- 시간제 보육료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의미
  - 지원대상은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이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2,600원, 장애아동의 경우 3,500원을 지원

17)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시설별 지원관련 세부내용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을 원칙

<표 III-7-10>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2009년 기준)

(단위: 원)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19,583,930	1,631,990	16,220,770	1,351,730	13,323,830	1,110,320
2	20,113,060	1,676,090	16,690,570	1,390,880	13,716,260	1,143,020
3	20,769,620	1,730,800	17,205,370	1,433,780	14,276,170	1,189,680
4	21,391,330	1,782,610	17,745,750	1,478,810	14,573,680	1,214,470
5	22,018,600	1,834,880	18,290,820	1,524,240	14,894,540	1,241,210
6	23,399,950	1,950,000	19,547,710	1,628,980	15,570,760	1,297,560
7	24,227,950	2,019,000	20,376,080	1,698,010	16,251,920	1,354,330
8	24,769,070	2,064,090	20,748,860	1,729,070	16,518,520	1,376,540
9	25,483,720	2,123,640	21,315,440	1,776,290	17,062,360	1,421,860
10	26,204,810	2,183,730	21,929,240	1,827,440	17,589,640	1,465,800
11	27,110,050	2,259,170	22,726,210	1,893,850	18,299,600	1,524,970
12	27,901,340	2,325,110	23,410,580	1,950,880	18,919,820	1,576,650
13	28,500,060	2,375,000	24,009,420	2,000,790	19,433,010	1,619,420
14	29,141,670	2,428,470	24,543,990	2,045,330	19,967,580	1,663,970
15	29,783,150	2,481,930	25,078,690	2,089,890	20,480,890	1,706,740
16	30,602,490	2,550,210	25,833,760	2,152,810	21,171,940	1,764,330
17	31,222,720	2,601,890	26,389,840	2,199,150	21,685,130	1,807,090
18	31,907,090	2,658,920	26,945,910	2,245,490	22,219,820	1,851,650
19	32,570,080	2,714,170	27,501,870	2,291,820	22,733,010	1,894,420
20	33,147,420	2,762,280	28,057,820	2,338,150	23,267,580	1,938,960
21	34,123,240	2,843,600	28,969,490	2,414,120	24,115,230	2,009,600
22	34,764,720	2,897,060	29,525,570	2,460,460	24,607,030	2,050,590
23	35,342,060	2,945,170	30,017,500	2,501,460	25,098,830	2,091,570
24	35,919,520	2,993,290	30,573,450	2,547,790	25,569,260	2,130,770
25	36,561,130	3,046,760	31,086,640	2,590,550	26,082,440	2,173,540
26	37,159,850	3,096,650	31,599,820	2,633,320	26,552,990	2,212,750
27	37,715,920	3,142,990	32,048,740	2,670,730	26,959,380	2,246,620
28	38,293,260	3,191,100	32,540,670	2,711,720	27,429,810	2,285,820
29	38,827,830	3,235,650	33,075,240	2,756,270	27,878,850	2,323,240
30	39,426,550	3,285,550	33,545,780	2,795,480	28,349,270	2,362,440

주: 1)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포함

2) 특수교사 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은 국공립, 법인, 법인외(지원) 보육시설이며, 종사자 유형 및 요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내용이 상이

<표 III-7-11> 국공립·법인시설 지원 내용(2009년 기준)

유형	지원요건	지원액	비고
원장	21인(현재원) 이상 시설	인건비의 80%	현재원 20인 이하 시설은 지원 제외
영아반 교사	영아반 2개 이상 시설	인건비의 80%	농어촌지역 및 1세 이하 영아반은 1개라도 80% 지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방과후반 교사	2004년 이전 방과 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한함	인건비의 50%	
시간제 교사		지원하지 않음	보육료로 충당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

-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및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구분<sup>18)</sup>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18)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해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이며,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설

<표 III-7-12> 장애인 보육시설 지원내용(2009년 기준)

유형	요건	지원액	비고
원장	18인(현재원) 이상 및 6개반 이상 편성	인건비의 80%	
보육교사 (특수교사)	소요현원(정원 이내)	인건비의 80%	특수교사 자격 충족시 1인당 월 10만원 수당 지원 가능
치료사	장애아동 9명당 1명	인건비의 100%	현재원 감소시 5명까지 지원 가능
방과후반 교사	아동 3명 1개반 기준 및 일일 4시간 보육 원칙	인건비의 50%	
취사부	1명	인건비의 100%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민간지정시설의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
-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시설)
  -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

<표 III-7-13>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내용(2009년 기준)

유형	요건	지원액	비고
원장	18인(현재원) 이상	인건비의 80%	
보육교사	소요현원(정원 이내)	인건비의 80%	유아를 2세반과 혼합 보육할 경우 영아가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취사부	1명	인건비의 100%	
차량운영비	농어촌 시설에 한함	월 2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 기준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최소 21:0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
  -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
  
- 24시간 보육시설 지원
  -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
  
- 휴일 보육시설 지원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을 의미
  -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근무수당 일일 5만원 지원
  
-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 2004년 이전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4시간 이상 19:30분까지)하는 시설을 의미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방과후 아동 16~20명을 보육하는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단,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 3명을 반편성 기준으로 하여 100% 지원)

○ 차량운영비 지원

-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한하여 개소당 연 240만원을 반기별로 분할 지원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현재 설치·운영중인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비를 현재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표 III-7-14>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용(2009년 기준)

시설규모	지원금액
3~ 9인 이하	50만원
10~20인 이하	80만원
21~39인 이하	90만원
40~60인 이하	100만원
61인 이상	12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 및 보육시설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보육시설 확충, 환경개선,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사업별로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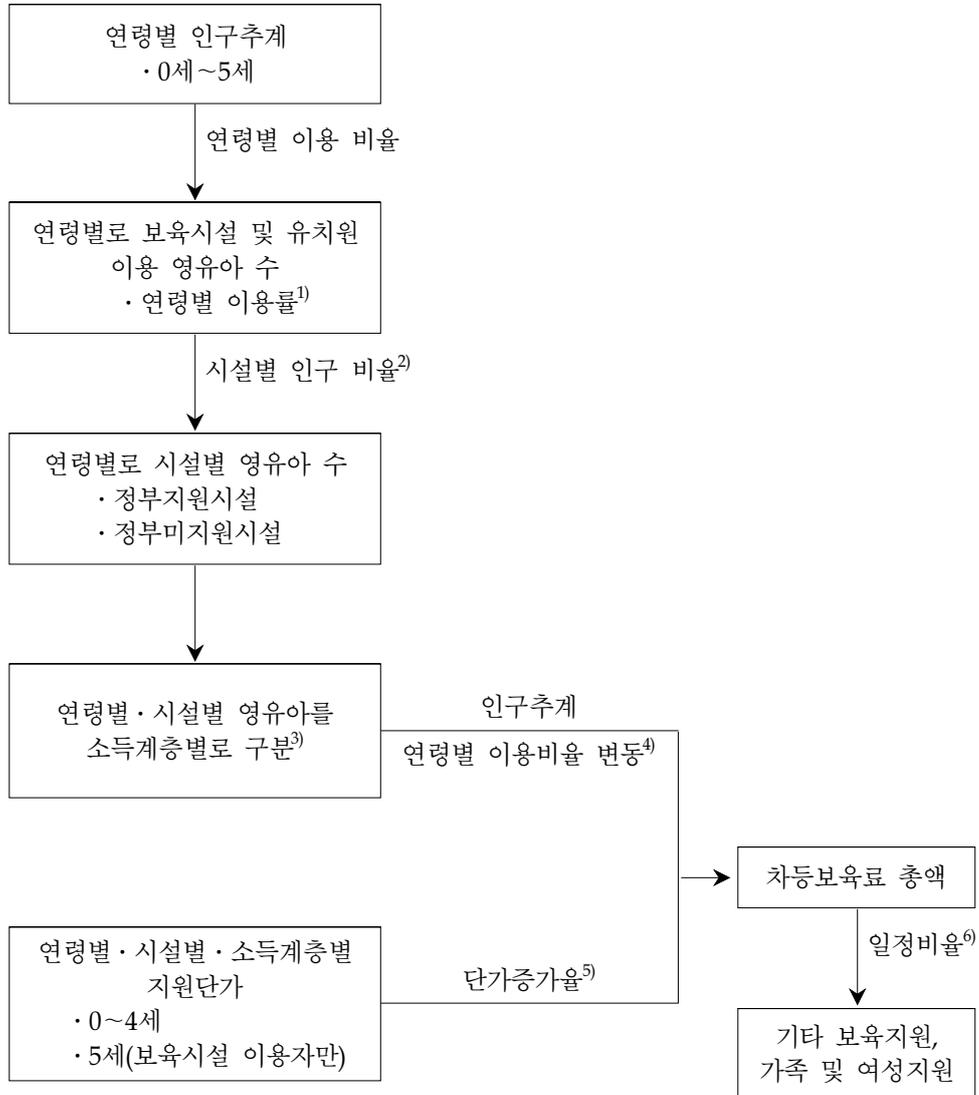
<표 III-7-15>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용(2009년 기준)

사업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시설 신축	1,201,300원/㎡ (국비, 지방비 포함)	- 330㎡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 가능 - 국비지원 한도액: 237,857천원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한도액까지 지원가능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50,000천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
	개인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80,000천원/개소 - 일반 시설 신축 60,000천원/개소 - 이전 또는 대체 신축: 30,000천원/개소 - 민간시설 매입: 2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 40,000천원/개소	-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1,201,300원/㎡ (국비, 지방비 포함)	- 396㎡까지 지원 가능
보육시설 환경개선	증·개축비	751,440원/㎡	- 132㎡까지 지원
	시설 개·보수비	30,000천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장비비	2,000천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시설 개·보수비	30,000천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장비비	3,000~4,000천원/개소당 (국비, 지방비 포함)	장애아 현원기준 - 20인 미만: 3,000천원 - 20인 이상: 4,000천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안내(2009)

## 나. 추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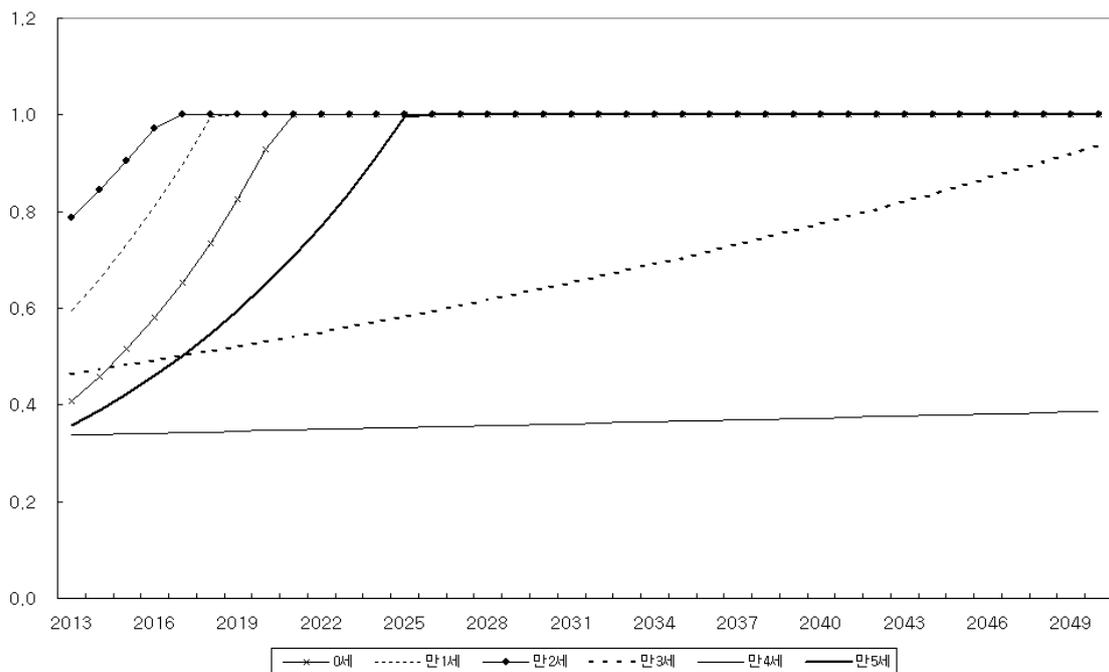
[그림 III-7-1]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재정추계 흐름도



- 주: 1)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 전망치 적용  
 2) 정부지원시설 이용비중 23%(『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 전망치) 적용  
 3)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 전망시 소득분포가 이후 유지된다고 가정  
 4) 2012년 증가율로 연장. 다만 100%를 넘지 않도록 함  
 5) 교육급여에서처럼 3% 적용  
 6) 차등보육료를 제외한 기타 보육지원 규모는 이러한 차등보육료 총액 추계결과의 일정 비율(51.8%, 2009년 예산기준)을 적용하고,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규모는 이렇게 구한 보육료 총지급액 추계결과의 일정비율(27.5%,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 전망치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

- (연령별·시설별 수급자 수) 인구부문에서 추계된 0~5세 연령별 인구추계 결과에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비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14년부터의 각 연령별 이용률의 증가속도는 2012년 증가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다만 각 연령별 이용률은 100%를 넘지 않도록 함
  - 또한 각 연령별 이용자 수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전망치인 정부지원시설 이용자 비중 23%를 적용하여 정부지원시설 이용자와 정부미지원시설 이용자로 구분

[그림 III-7-2]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 전망



- (연령별·시설별·소득계층별 수급자 수) 소득계층별로 정부지원 단가가 달라지므로 이상과 같이 구한 연령별·시설별 수급자를 소득계층별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
  - 시설이용 가구나 미이용 가구의 소득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하위 x% 가구의 영유아 수는 전체 이용 영유아 수의 x%로 구할 수 있음

- (연령별·시설별·소득계층별 지원단가) 2009년 기준 정부지원 단가에 기초생보 교육급여 추계에서처럼 매년 일정한 증가율(3%)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III-7-16> 2009년 기준 정부지원 단가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지원비율	100%	60%	30%	지원비율	100%	60%	30%
지원대상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지원대상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0세	383,000	229,800	114,900	0세	733,000	579,800	464,900
1세	337,000	202,200	101,100	1세	506,000	371,200	270,100
2세	278,000	166,800	83,400	2세	390,000	278,800	195,400
3세	191,000	114,600	57,300	3세	191,000	114,600	57,300
4세	172,000	103,200	51,600	4세	172,000	103,200	5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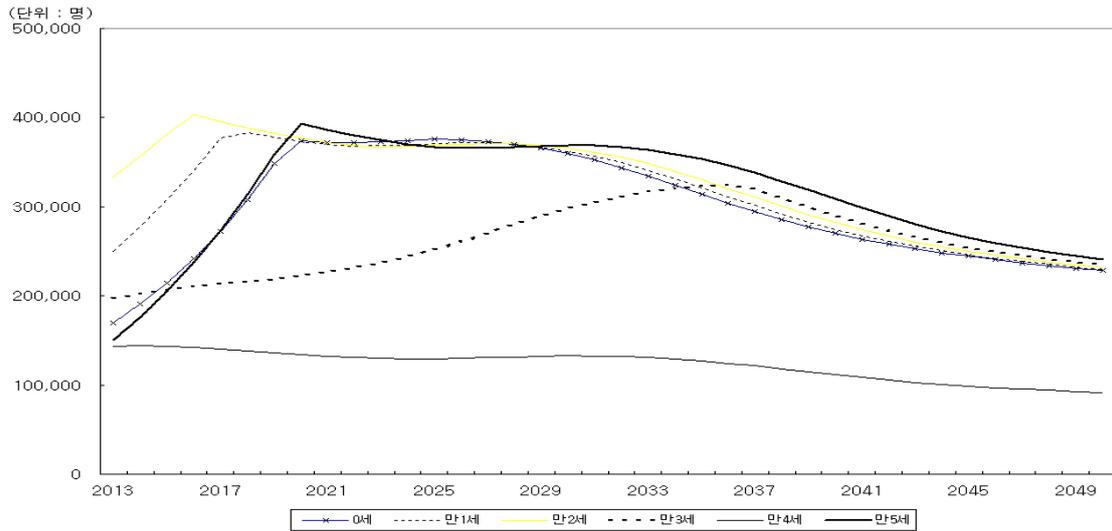
주: 정부미지원시설 이용자 중 소득하위 60% 및 70% 가구에 대한 지원단가는 정부지원시설 소득하위 60% 및 70% 가구에 대한 지원단가 + 기본보조금

- (차등보육료 총액) 해당 수급자 수에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차등보육료 지급총액을 계산
- 차등보육료를 제외한 기타 보육지원 규모는 이러한 차등보육료 총액 추계결과와의 일정비율(51.8%)을 적용하여 추계
    - 동 항목에는 보육관련 예산 중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두자녀 이상 보육, 영아기본보조금 등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종사자인건비, 농어촌유아기본보조금,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환경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사업 전자바우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보육관련 예산사업이 포함됨
  - 한편,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규모는 이렇게 구한 보육료 지급 총액 추계결과와의 일정비율(27.5%)을 적용하여 추계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활용하고, 2014년 이후는 2013년 비율 27.5%를 적용하여 추계

## 다.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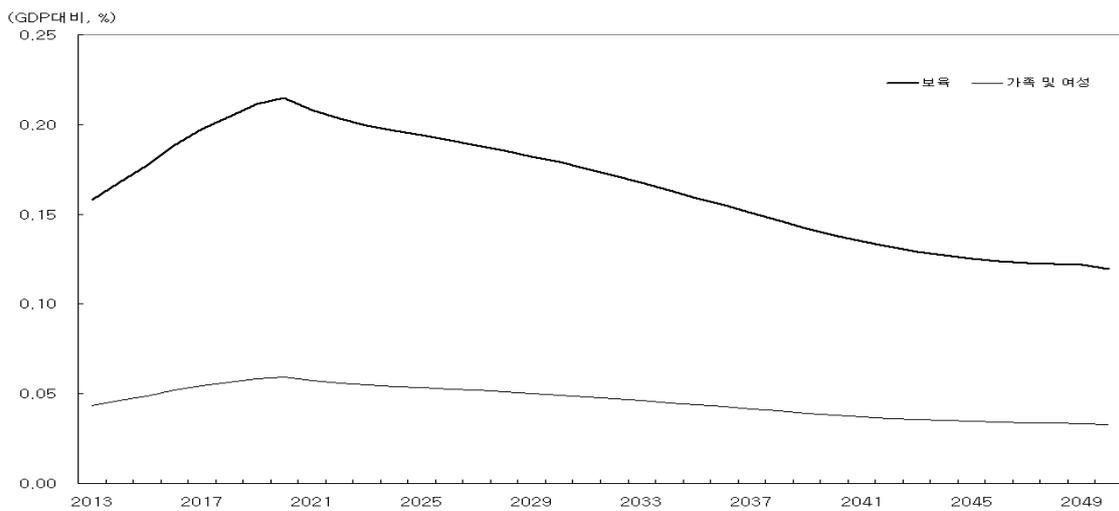
□ 2050년까지의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추계결과는 [그림 III-7-3]과 같음

[그림 III-7-3] 연령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추계결과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50년까지의 보육 관련 지출,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을 각각 전망해 보면, 2013년 GDP 대비 0.16% 및 0.04% 수준에서 2020년 0.22% 및 0.06%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50년에는 0.12% 및 0.03% 수준으로 하락

[그림 III-7-4] 보육,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 추계결과



<표 III-7-17> 보육, 가족 및 여성지원 관련 지출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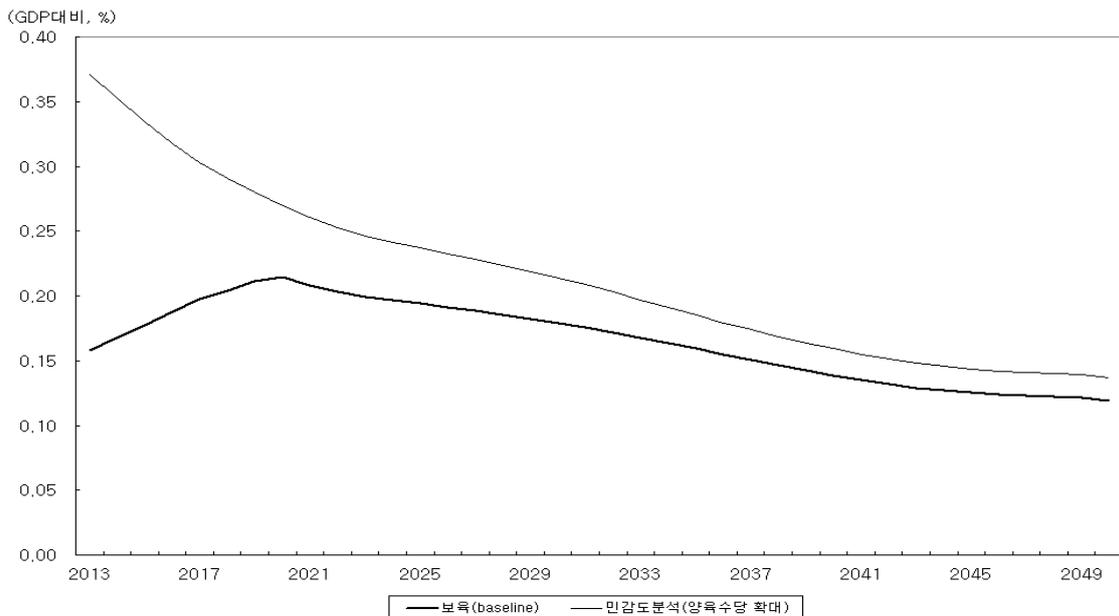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보육			가족 및 여성
	차등보육료	기타	합계	
2013	0.104	0.054	0.158	0.043
2014	0.111	0.057	0.168	0.046
2015	0.117	0.061	0.177	0.049
2016	0.124	0.064	0.188	0.052
2017	0.130	0.067	0.198	0.054
2018	0.135	0.070	0.204	0.056
2019	0.139	0.072	0.212	0.058
2020	0.142	0.073	0.215	0.059
2021	0.137	0.071	0.208	0.057
2022	0.134	0.069	0.203	0.056
2023	0.131	0.068	0.199	0.055
2024	0.130	0.067	0.197	0.054
2025	0.128	0.066	0.194	0.053
2026	0.126	0.065	0.191	0.053
2027	0.124	0.064	0.188	0.052
2028	0.122	0.063	0.185	0.051
2029	0.120	0.062	0.182	0.050
2030	0.118	0.061	0.179	0.049
2031	0.116	0.060	0.175	0.048
2032	0.113	0.059	0.172	0.047
2033	0.110	0.057	0.167	0.046
2034	0.108	0.056	0.163	0.045
2035	0.105	0.054	0.159	0.044
2036	0.102	0.053	0.155	0.043
2037	0.099	0.051	0.151	0.041
2038	0.096	0.050	0.146	0.040
2039	0.094	0.049	0.142	0.039
2040	0.091	0.047	0.138	0.038
2041	0.089	0.046	0.135	0.037
2042	0.087	0.045	0.132	0.036
2043	0.085	0.044	0.129	0.036
2044	0.084	0.043	0.127	0.035
2045	0.083	0.043	0.125	0.034
2046	0.082	0.042	0.124	0.034
2047	0.081	0.042	0.123	0.034
2048	0.081	0.042	0.122	0.034
2049	0.080	0.041	0.122	0.033
2050	0.079	0.041	0.119	0.033

□ 민감도 분석

- 현재 보육료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대할 계획
  - 2009년 차상위 이하, 0~1세(11만명), 월10만원(6개월)
  - 2010년 소득하위 60% 이하, 0~2세, 월15만원(12개월)
  - 2011년 소득하위 70% 이하, 0~3세, 월20만원(12개월)
  - 2012년 소득하위 80% 이하, 0~5세, 월23만원(12개월)
  - 2013년 이후는 2012년 수준에서 연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이러한 양육수당 지급 확대 계획이 실시되면 2022년까지 baseline인 시나리오보다 보육관련 지출규모가 커지지만 그 이후에는 시설이용률이 증가하여 양육수당 지급이 줄어들게 됨
  - 양육수당 지급규모는 2013년 GDP 대비 0.213%에서 2050년 0.017%(총보육료 지출의 13%를 차지)로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III-7-5] 보육관련 지출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 8. 고용보험

### 가. 현행제도

-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
  -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도입
  
-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등의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사업, 공사금액이 고시금액 이하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은 적용 제외됨
  - 2009. 1. 1.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

<표 III-8-1>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이

사업구분	'95. 7. 1~	'98. 1. 1	'98. 3. 1	'98. 7. 1	'98.10.1이후	'06.1.1.이후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주: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 60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고용보험확대 적용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2009)

- 고용보험의 기여금은 고용보험 지출사업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상이
  -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율은 사업별로 매년 고시하며 연도별 적용요율은 근로자의 경우 0.3%~0.45%이며, 사업주의 경우 0.1%~0.85%임

<표 III-8-2>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추이

(단위: %)

구 분		'98.12.31까지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사업		0.3	0.3	0.5	0.5	0.45	0.45	0.45	0.45
고용안정사업			0.2		0.3		0.15		×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1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3		0.45
	150~1000인 미만 기업		0.5		0.5		0.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0.7		0.85

주: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2009)

- 고용보험 사업(급여)은 크게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
  - 실업급여사업은 일정한 가입실적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보험 사업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III-8-1] 고용보험 사업체계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급되며 직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전직하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표 III-8-3> 실업급여별 지원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원내용	
구직 급여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연령 및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
	특별연장급여	실업증으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된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이 가능(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제외)
	상병급여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 신청 후 지급(구직급여에 같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 미지급한도 내 지급)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시되는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 따라 1/3, 1/2, 1/3의 일시금을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	1일 5천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한 운임과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비를 지급
	이주비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2009)

-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을 것,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을 것으로 규정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것,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중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일부(대규모기업) 또는 전부(우선지원대상기업<sup>19)</sup>)를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는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략 9.4백만명이며 대상사업장은 1.3백만개소에 달함
  - 2008년 기준 총징수액은 3.9조원, 총급여지출은 4.1조원으로 0.2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대비 지출비율은 105.3%

---

19)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표 III-8-4> 고용보험 가입자/재정수지 추이

(단위: 개소,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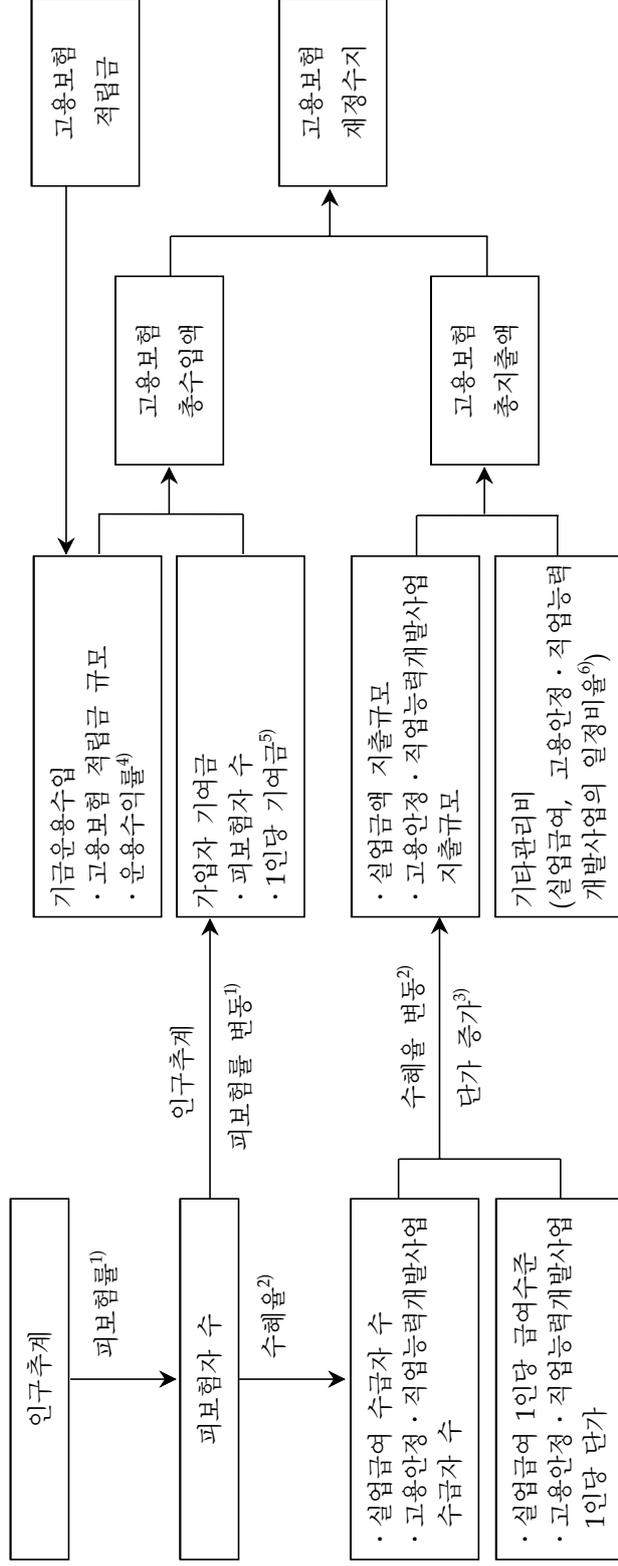
연도	가입자		재정수지						수지율 (B/A)
	대상 사업장	피보험자	징수액 (A)	급여(B)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모성보호	
1997	47,427	4,280,430	922,438	149,885	78,737	12,275	58,873	-	16.25
1998	400,000	5,267,658	981,799	1,154,536	799,416	97,449	257,671	-	117.59
1999	601,394	6,054,479	1,644,845	1,538,651	936,163	184,304	418,184	-	93.54
2000	693,414	6,747,263	2,057,547	988,840	470,793	113,809	404,238	-	48.06
2001	806,962	6,908,888	2,548,540	1,360,844	845,116	128,751	386,977	-	53.40
2002	825,531	7,171,277	2,743,326	1,347,294	839,315	90,052	392,239	25,688	49.11
2003	845,910	7,203,347	2,619,640	1,640,915	1,030,304	91,573	474,940	44,098	62.64
2004	1,002,638	7,576,856	2,904,101	2,131,957	1,448,306	97,006	524,232	62,413	73.41
2005	1,148,474	8,063,797	3,207,152	2,548,728	1,751,974	202,081	520,390	74,283	79.47
2006	1,176,462	8,536,966	3,446,703	3,227,882	2,074,004	374,985	653,486	125,407	93.65
2007	1,288,138	9,063,301	3,582,904	3,830,557	2,434,032	448,657	754,467	193,401	106.91
2008	1,424,330	9,385,239	3,923,258	4,129,799	2,865,255	375,148	624,333	265,063	105.2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호

## 나. 추계모형

- 추계모형은 가입자부문, 수입부문 그리고 지출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
  - 가입자부문은 고용보험 가입자규모를 추정하는 부문으로 수입 및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
  - 수입부문은 가입자 및 고용주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지불하는 기여금과 적립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
  - 지출부문은 사업부문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추계

[그림 III-8-2] 고용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 주: 1) 2008년 실적치(39.8%)를 기준으로 2000~2008년 평균증가율의 80%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다만 상한선은 65%로 전제  
 2) 실업급여 수혜율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수혜율의 장기균형치를 각각 전체 피보험자의 12% 및 50%로 전제  
 3)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인당 단가는 모두 임금상승률의 90%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4) 회사채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  
 5)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변경되지 않아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6) 2007~2008년 실적치(1.5%)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가입자 전망은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가입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피보험률을 전망하여 거시전망의 취업자 수를 곱하여 추계
  - 장기적으로 피보험률(고용보험가입자/취업자)은 2000~2008년 기간 증가율의 80%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후 증가율을 2000년대 증가율의 80%로 가정
  - 피보험률의 상한선은 전체 취업자에서 농림어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65% 수준으로 가정(2008년 현재 39.8%)
    - 농림어업종사자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루어진 부분은 고용보험 피보험대상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 부분의 비중 35%를 제외
  
- 수입부문은 크게 가입자 기여금과 기금운용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
  - 가입자 기여금수입은 앞서 도출된 전체 가입자 전망에 일인당 징수액을 곱하여 추정
    -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일인당 징수액은 개인임금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므로 향후 임금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금운용수입은 기금적립규모에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기금운용수입 이외 각종 징수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하여 기금운용수익 중심으로 추계
  
- 지출부문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기타 관리비 부문으로 나누어 추계
  - 실업급여 지출은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평균 급여를 추정하고 이를 곱하여 산정
    -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취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가정함으로써 추정하였는데, 수급자 증가추세와 경기변동 등을 감안하여 2006~2008년 평균 12.0%를 장기균형치로 가정
      -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수급자 비율은 2009년 14.7%를 정점으로 3년 후인 2012년 장기균형치로 수렴한다고 가정

- 2009년 수급자비율은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증가율을 적용
- 수급자당 평균급여는 2003~2008년 평균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의 90% 수준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임금증가율의 90%로 증가한다고 가정
  - 실업급여의 상한선 등을 감안할 때 임금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사업대상자 수에다 평균 지출액을 곱하여 추계
  - 사업대상자 수는 총취업자 대비 비율을 통해 산정하는데, 수급자 증가추세, 사업통합, 경기변동 등을 감안하여 2006~2008년 평균 50.0%를 장기균형치로 가정
    -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수급자 비율은 2008~2009년을 56.0%를 정점으로 3년 후인 2012년 장기균형치로 수렴한다고 가정
  - 평균지출액은 실업급여 평균급여액과 같이 임금상승률의 90%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관리비는 총지출액에 대한 관리비 비중 1.5%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다. 추계결과

- 고용보험 재정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2007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가 경제위기 정점인 2009년 GDP 대비 -0.1%로 가장 큰 적자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에는 대체로 수지균형을 보일 전망
    - 경기에 후행하는 실업률의 특성으로 인해 2011년까지는 다소 큰 적자 예상
  - 한편 고용보험의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고갈될 전망이지만 이후 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보일 전망이므로 고용보험 지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표 III-8-5> 고용보험 장기재정 추계결과

(단위: GDP 대비 %)

	수입부문			지출부문				재정수지	적립기금
	기여금	운용수입	총수입	실업급여	고용,직능	기타	총지출		
2009	0.40	0.05	0.45	0.35	0.18	0.01	0.54	-0.09	0.70
2010	0.41	0.04	0.45	0.34	0.18	0.01	0.52	-0.07	0.59
2011	0.42	0.04	0.46	0.32	0.17	0.01	0.50	-0.04	0.50
2012	0.43	0.03	0.46	0.30	0.17	0.01	0.48	-0.02	0.45
2013	0.44	0.03	0.47	0.31	0.17	0.01	0.49	-0.02	0.39
2014	0.45	0.02	0.47	0.31	0.17	0.01	0.49	-0.03	0.34
2015	0.46	0.02	0.48	0.32	0.18	0.01	0.50	-0.03	0.30
2016	0.47	0.02	0.48	0.32	0.18	0.01	0.51	-0.03	0.25
2017	0.48	0.01	0.49	0.33	0.18	0.01	0.52	-0.03	0.20
2018	0.49	0.01	0.50	0.33	0.19	0.01	0.53	-0.03	0.16
2019	0.50	0.01	0.50	0.34	0.19	0.01	0.54	-0.03	0.12
2020	0.51	0.01	0.51	0.34	0.19	0.01	0.55	-0.03	0.08
2021	0.52	0.00	0.52	0.35	0.20	0.01	0.55	-0.03	0.05
2022	0.53	0.00	0.53	0.36	0.20	0.01	0.56	-0.03	0.01
2023	0.54	0.00	0.54	0.36	0.20	0.01	0.57	-0.03	-0.02
2024	0.55	0.00	0.55	0.37	0.21	0.01	0.58	-0.03	-0.05
2025	0.57	0.00	0.56	0.37	0.21	0.01	0.59	-0.03	-0.07
2026	0.58	0.00	0.58	0.38	0.21	0.01	0.60	-0.03	-0.10
2027	0.59	0.00	0.59	0.39	0.22	0.01	0.61	-0.03	-0.12
2028	0.60	0.00	0.60	0.39	0.22	0.01	0.62	-0.02	-0.14
2029	0.62	-0.01	0.61	0.40	0.22	0.01	0.63	-0.02	-0.15
2030	0.63	-0.01	0.63	0.41	0.23	0.01	0.64	-0.02	-0.17
2031	0.65	-0.01	0.64	0.41	0.23	0.01	0.66	-0.02	-0.18
2032	0.64	-0.01	0.63	0.41	0.23	0.01	0.65	-0.01	-0.18
2033	0.64	-0.01	0.63	0.41	0.23	0.01	0.64	-0.01	-0.19
2034	0.64	-0.01	0.63	0.40	0.23	0.01	0.64	-0.01	-0.19
2035	0.64	-0.01	0.63	0.40	0.23	0.01	0.64	0.00	-0.19
2036	0.64	-0.01	0.63	0.40	0.22	0.01	0.63	0.00	-0.18
2037	0.64	0.00	0.63	0.40	0.22	0.01	0.63	0.00	-0.17
2038	0.64	0.00	0.63	0.40	0.22	0.01	0.63	0.01	-0.16
2039	0.64	0.00	0.63	0.40	0.22	0.01	0.63	0.01	-0.15
2040	0.64	0.00	0.63	0.39	0.22	0.01	0.62	0.01	-0.14
2041	0.64	0.00	0.63	0.39	0.22	0.01	0.62	0.01	-0.12
2042	0.64	0.00	0.64	0.39	0.22	0.01	0.62	0.02	-0.10
2043	0.64	0.00	0.64	0.39	0.22	0.01	0.62	0.02	-0.08
2044	0.64	0.00	0.64	0.39	0.22	0.01	0.61	0.02	-0.05
2045	0.64	0.00	0.64	0.39	0.22	0.01	0.61	0.03	-0.03
2046	0.64	0.00	0.64	0.38	0.22	0.01	0.61	0.03	0.00
2047	0.64	0.00	0.64	0.38	0.21	0.01	0.61	0.03	0.03
2048	0.64	0.00	0.64	0.38	0.21	0.01	0.61	0.03	0.07
2049	0.64	0.00	0.64	0.38	0.21	0.01	0.60	0.04	0.10
2050	0.64	0.00	0.64	0.38	0.21	0.01	0.60	0.04	0.14

## 9. 산재보험

### 가. 현행제도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보험으로 1963년부터 시작된 제도
  - 근로기준법상 급여종류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시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
  
-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고용보험과 동일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되며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적용됨

<표 III-9-1>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추이

연 도	1964	1965	1966	1967	1968	1972	1973	1976~ 1981	1982~ 1991	1992	1996	1998	2000.7.1
적용 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 16인	5~ 10인	5인	5인	5인	1인

주: 1. '76~'91년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2. '92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3. '96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4. '98. 1. 1.부터 금융·보험업으로 적용 확대

자료: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업무편람, 2007.1.

-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가 고용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기여금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 보험료율은 재해율에 따라 세분화된 사업집단별로 매년 고시하며 2009년 적용요율은 0.7~36.0%(평균 1.8%)이다.

<표 III-9-2> 2009년도 산재보험 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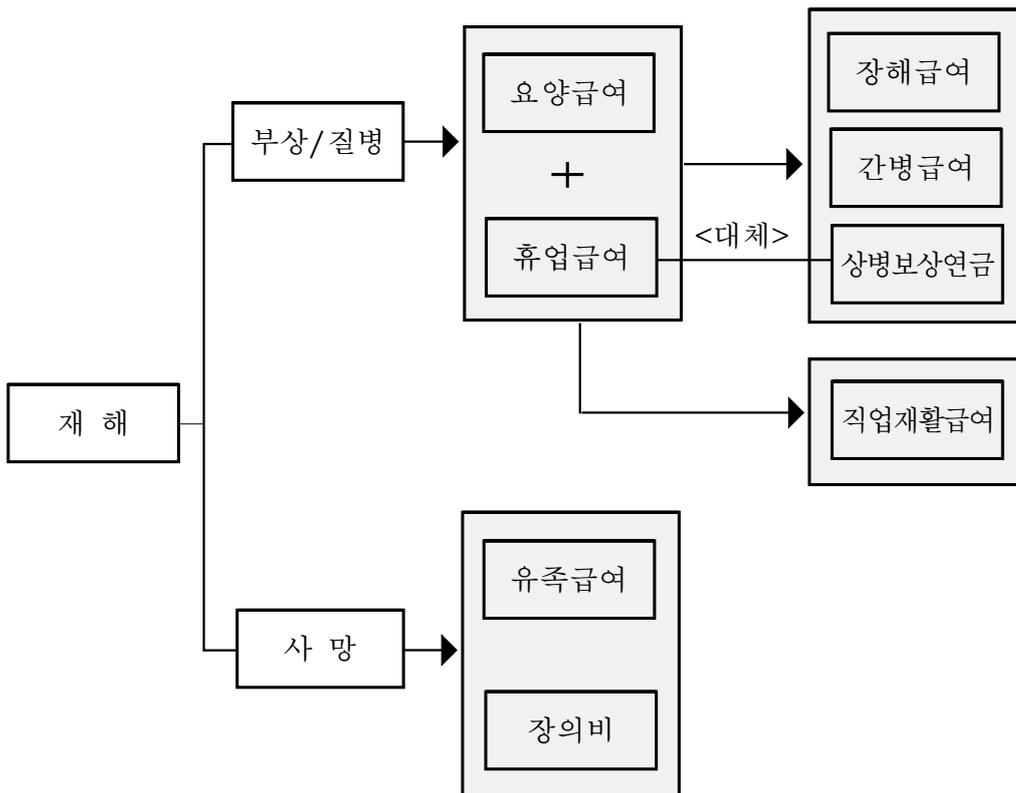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기구제조업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취급사업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펠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9. 기타의사업	
유리 제조업	23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1
시멘트 제조업	2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제련업	12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전문기술서비스업	7
도 금 업	2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교육서비스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10. 금융 보험업	7
전자제품 제조업	8		
선박 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자료: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9

□ 산재보험급여는 보험대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8개 종류로 구분될 수 있음

○ 산재보험 보상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III-9-1] 산재보험 보상 과정



자료: 김호경, 산재보험 중장기재정추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을 저자 수정

- 요양급여는 피보험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이의 치료·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등으로 규정됨
-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

- 급여지급액은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치 않고 있음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완치한 후에도 신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지급 형태가 달라지는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장해등급 1~3급)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며 장해등급 4~7급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이하 장해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해등급 1, 2급의 중증장애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급여 일시금 지급대상은 유족 중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로 사망 당시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로 규정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로 구성
- 산재보험 피보험자 규모는 2008년 3/4분기 기준 13.4백만명이며 대상사업장은 1.4백만개소에 달함
- 산재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율 등에 따라 매년 요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구조에 기인함

- 즉, 재정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도록 보험료율을 설정하기 때문
- 2007년 기준 총징수액은 4.4조원, 총급여지출은 3.2조원으로 1.1조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수입 대비 지출비율은 74.2%
-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점차 연금형태의 장기급여 지급이 확대되고 있어 재정집행의 경직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I-9-3> 산재보험 가입자/재정수지 추이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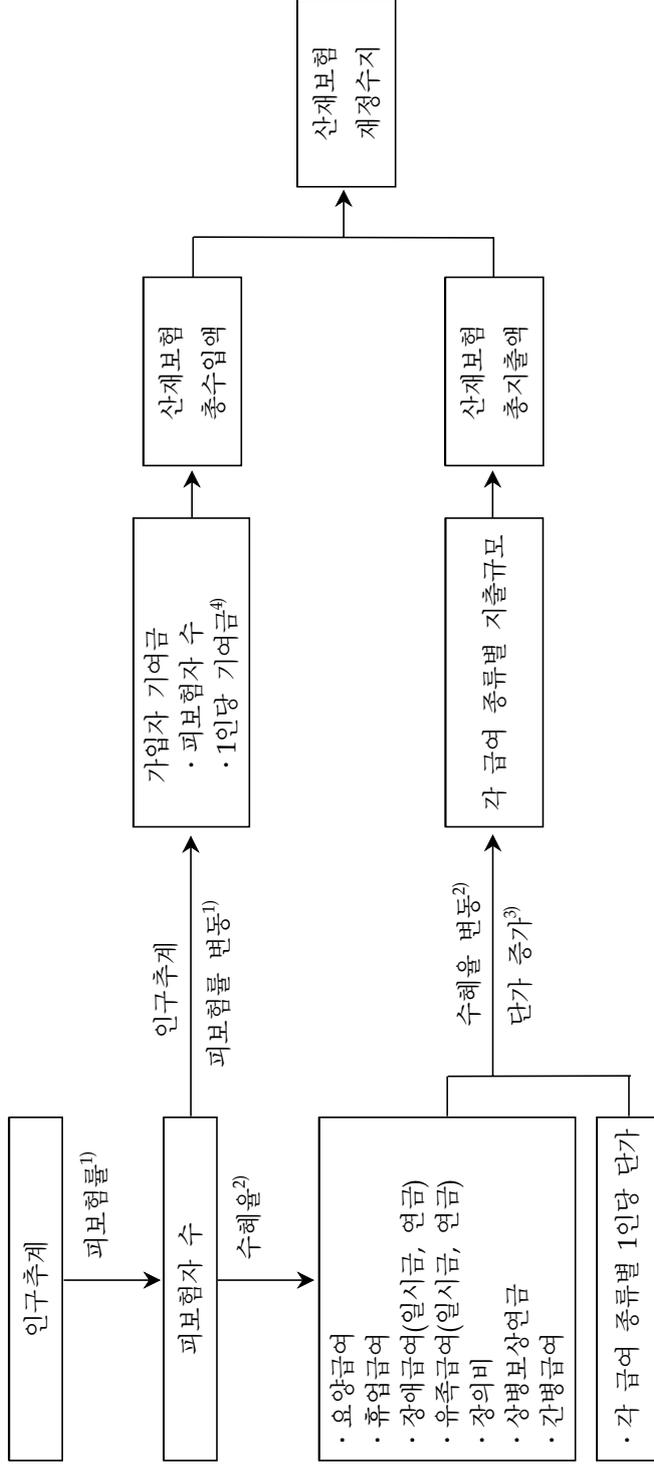
연도	가입자		재정수지		
	대상사업장	피보험자	징수액(A)	급여(B)	수지율(B/A)
1990	129,687	7,542,752	601	539	89.74
1991	146,284	7,922,704	789	702	88.94
1992	154,820	7,058,704	1,088	932	85.61
1993	163,152	6,942,527	1,445	873	60.39
1994	172,871	7,273,132	1,291	999	77.32
1995	186,021	7,893,727	1,454	1,134	77.99
1996	210,226	8,156,894	1,675	1,355	80.90
1997	227,564	8,236,641	2,020	1,556	77.03
1998	215,539	7,582,479	1,719	1,451	84.41
1999	249,405	7,441,160	1,612	1,274	79.04
2000	706,231	9,485,557	1,955	1,456	74.47
2001	909,461	10,581,186	2,364	1,745	73.78
2002	1,002,263	10,571,279	2,716	2,020	74.40
2003	1,006,549	10,599,345	3,030	2,482	81.91
2004	1,039,208	10,473,090	2,959	2,860	96.65
2005	1,175,606	12,069,599	3,248	3,026	93.17
2006	1,292,696	11,688,797	3,827	3,164	82.66
2007	1,429,885	12,528,879	4,367	3,242	74.24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고용보험징수실적분석 2008년 3/4분기, 2008.

## 나. 추계모형

- 추계모형은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누어 구성
  - 수입부문은 현재의 실효요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 즉 가입자당 징수액이 향후 평균임금 상승률로 증가
  - 지출부문은 총 8개 부문 중 지급실적이 거의 없는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 7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정
    - 7개 부문 중 장애급여와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두 종류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계
    - 즉 총 9개 부분으로 나누어 추정

[그림 III-9-2] 산재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주: 1) 2008년 실적치(27.6%)를 기준으로 2000~2008년 평균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다만 상한선은 33.4%로 전제

2) 요양급여(피보험자의 1.3%), 휴업급여(요양급여 수급자의 77%), 장애급여(2007년 요양급여 수급자의 34%에서 2050년까지 70%로 상승, 장애일시금 수령자는 21.8%로 고정), 유족급여(2007년 총피보험자수의 0.12%에서 2050년까지 0.56%로 상승), 장의비(2007년 총피보험자수의 0.019%에서 2050년까지 0.011%로 상승), 상병보상연금(요양급여 수급자의 3.9%), 간병비(2007년 장애연금 수급자의 8.7%에서 2050년까지 40%로 상승)

3)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기준 수급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신규수급자는 명목임금 상승률), 상병보상연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목임금 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4) 보험료율이 변경되지 않아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급여지출 부문은 기본적으로 급여대상자를 중심으로 추계하고 수급자당 평균급여는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우선 추계의 기본이 되는 피보험자 규모는 총인구 대비 2008년 가입률 27.6%가 향후 2000~2008년중 평균증가율로 2015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2015년 수준인 33.4%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요양급여의 경우, 재해발생률이 2007년 1.3% 수준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이는 2000년 이후 재해발생률이 1.0~1.5% 수준임을 감안한 것임
  - 요양급여가 4일 이상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 발생률은 2007년 발생률 77.0%가 205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00년을 제외한 2001~2007년 기간중 휴업급여 발생률은 72.6~79.3%로 추세적인 변동을 발견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도 치료기간이 4일 요구되는 중증 재해발생확률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치료 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하는 장애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누어 지급
    - 장애급여 대상자의 추정을 위해 휴업급여 발생자 중 장애가 남는 장애급여 대상자의 비율은 2007년 34.0%에서 2050년 기준 70%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에 따라 요양급여 발생률은 크게 감소하나, 요양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적 장애확률은 높아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을 반영
    - 장애일시금 수령자비율은 2007년과 동일수준 유지를 가정
    - 장애연금 수령자 비율은 전체 장애급여 대상자 중 일시금 수령자 비율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분하여 추정
    - 총유족급여 발생률은 2007년 기준 발생률에서 근로자 평균소득과 유사한 40세 남성의 사망률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정

- 유족급여 발생자 중 일시금 수령비율은 2007년과 동일하게 유지
  - 연금수령자 비율은 총유족급여 발생률에서 일시금 수령자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
  - 장의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발생하므로 2007년 장의비 발생률이 가입자의 사망률 하락분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
  - 상병보상연금은 2007년 발생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간병비 발생률은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수급자의 일부분으로 2030년까지 장애연금 수급자의 40% 수준으로 가정
    - 연금수급자는 장애등급 1~3등급, 4~7등급은 일시금과 선택적으로 수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40% 수준으로 가정
  - 수급자당 평균급여는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기존 수급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신규 급여자는 명목임금 상승률), 상병보상연금(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목임금 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수입부문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당 평균급여가 임금수준에 연동되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연금급여의 경우, 신규수급자에게만 해당되며 기존 수급자 평균급여는 소비자물가에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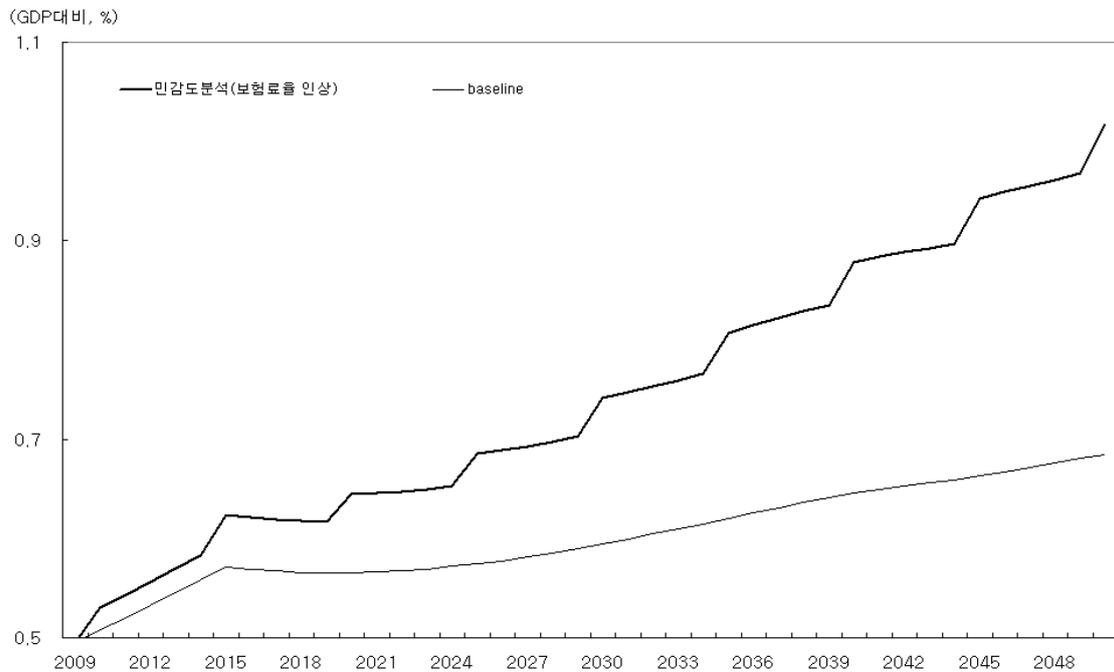
#### 다. 추계결과

- 산재보험 지출전망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0.3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16% 수준으로 크게 증가
- 주된 요인은 재해발생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당 단가의 증가,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

□ 민감도 분석

-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동일한 인상률로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지출소요를 모두 충당할수 있도록 할 경우
  - 계산결과 1인당 보험료 부담을 매 5년마다 4.5%씩 인상하면 2050년까지의 산재보험 지출소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경우 2050년 1인당 보험료 부담은 baseline에 비해 1.49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됨

[그림 III-9-3] 산재보험재정수입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표 III-9-4> 산재보험 장기재정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	총지출	(GDP비중)	총수입	(GDP비중)	재정수지	(GDP비중)
2009	4,029	0.39	5,125	0.50	1,096	0.11
2010	4,503	0.41	5,606	0.51	1,103	0.10
2011	5,048	0.43	6,173	0.52	1,124	0.09
2012	5,655	0.44	6,801	0.53	1,146	0.09
2013	6,328	0.46	7,494	0.55	1,167	0.08
2014	7,033	0.48	8,187	0.56	1,154	0.08
2015	7,818	0.50	8,958	0.57	1,141	0.07
2016	8,508	0.51	9,503	0.57	995	0.06
2017	9,230	0.52	10,053	0.57	823	0.05
2018	9,989	0.53	10,613	0.57	624	0.03
2019	10,793	0.54	11,195	0.57	402	0.02
2020	11,644	0.56	11,794	0.57	150	0.01
2021	12,563	0.57	12,445	0.57	-118	-0.01
2022	13,533	0.59	13,108	0.57	-425	-0.02
2023	14,560	0.60	13,789	0.57	-771	-0.03
2024	15,656	0.62	14,499	0.57	-1,157	-0.05
2025	16,821	0.63	15,232	0.57	-1,589	-0.06
2026	18,102	0.65	16,052	0.58	-2,050	-0.07
2027	19,479	0.67	16,914	0.58	-2,565	-0.09
2028	20,951	0.69	17,804	0.59	-3,147	-0.10
2029	22,523	0.71	18,717	0.59	-3,807	-0.12
2030	24,212	0.73	19,661	0.59	-4,551	-0.14
2031	25,773	0.75	20,618	0.60	-5,155	-0.15
2032	27,388	0.77	21,578	0.60	-5,810	-0.16
2033	29,055	0.79	22,539	0.61	-6,517	-0.18
2034	30,773	0.80	23,494	0.61	-7,279	-0.19
2035	32,549	0.83	24,456	0.62	-8,093	-0.21
2036	34,386	0.85	25,426	0.63	-8,961	-0.22
2037	36,283	0.87	26,399	0.63	-9,883	-0.24
2038	38,239	0.89	27,377	0.64	-10,862	-0.25
2039	40,257	0.91	28,361	0.64	-11,896	-0.27
2040	42,339	0.93	29,352	0.65	-12,986	-0.29
2041	44,484	0.95	30,348	0.65	-14,136	-0.30
2042	46,690	0.97	31,340	0.65	-15,351	-0.32
2043	48,960	0.99	32,330	0.66	-16,630	-0.34
2044	51,294	1.01	33,321	0.66	-17,972	-0.36
2045	53,691	1.04	34,311	0.66	-19,380	-0.37
2046	56,154	1.06	35,307	0.67	-20,847	-0.39
2047	58,682	1.09	36,303	0.67	-22,379	-0.41
2048	61,270	1.11	37,293	0.68	-23,977	-0.43
2049	63,923	1.14	38,287	0.68	-25,636	-0.46
2050	66,638	1.16	39,278	0.68	-27,360	-0.48

## 10. 특수직역 연금

### 가. 현행제도

#### 1)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도입되어 전·현직공무원의 소득상실 사유 발생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음
  -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군인(군인연금법 적용),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임
  
- 공무원연금의 수입은 가입자가 지불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기조성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구성
  -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7%이며, 이 중 공무원이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
    - 단,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표 III-10-1> 기여금 및 부담금의 종류

종류	내용	기여/부담금액
기여금	일반기여금	보수월액 85/1,000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과거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아 납부하는 반납금	퇴직당시의 급여액 + 이자
부담금	연금부담금	보수예산의 8.5%
	보전금	①에 ②를 가감한 금액 ① 당해연도 추정부족금액 ②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연금급여 총액을 초과 또는 부족한 금액
	퇴직수당 부담금	당해연도 지급액 전액
	재해보상 부담금	①+②+③+④+⑤ ① 당해연도 지급예상액(단, 지자체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② 전전년도의 당해급여가 부담금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금액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금 및 그 이자 ⑤ 기타 당해연도 재해보상급여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

자료: 공무원연금 실무(2008)

□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008년 6월 기준 약 102.9만명 수준

○ 최근 5년간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연평균 1.9% 증가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전체 가입자 중 20년 미만 공무원 수는 67.3만명이며 20년 이상 공무원 수는 35.6만명 수준

<표 III-10-2> 공무원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수			증감인원	증감률(%)
	합 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1995	957,882	683,279	274,603	9,731	1.0
1996	971,303	683,021	288,282	13,421	1.4
1997	981,759	676,187	305,572	10,456	1.1
1998	952,154	658,509	293,645	△29,605	△3.0
1999	913,891	644,457	269,434	△38,263	△4.0
2000	909,155	646,194	262,961	△4,736	△0.5
2001	913,192	636,290	276,902	4,037	0.4
2002	930,835	641,806	289,029	17,643	1.9
2003	947,616	647,887	299,729	16,781	1.8
2004	964,593	663,125	301,468	16,977	1.8
2005	986,339	671,217	315,122	21,746	2.3
2006	1,009,145	679,336	329,809	22,806	2.3
2007	1,021,771	674,209	347,562	12,626	1.3
2008. 6	1,029,836	673,222	356,614	8,065	0.8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 급여는 급여 성격 및 청구시효 등에 따라 구분 가능

- 급여성격에 따라 소득보장, 재해보상, 근로보상, 부조적 급여로 구분
- 청구시효 등에 따라 급여 청구시효가 3년인 단기급여와 5년인 장기급여로 구분
  - 단기급여: 부조급여, 요양급여
  - 장기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

<표 III-10-3> 공무원연금 급여의 구분

급여성격	장기급여		단기급여
소득보장	퇴직급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
재해보상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근로보상	퇴직수당	퇴직수당	-
부조	-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자료: 공무원연금 실무(2008)

<표 III-10-4> 공무원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유형		수급요건	급여수준	
퇴직급여	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또는 연금지급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	(평균보수월액×50/1000) + (평균보수월액×20년초과재직연수×2/100)	
	조기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지급연령 전에 퇴직하여 조기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연금 지급연령에 미달되는 연수에 따라 당해 퇴직연금의 75%~95% 상당금액 지급	
	퇴직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100)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 5년 미만 재직자: 보수월액×재직연수×120/100 ○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퇴직연금일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유족급여	유족연금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시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시 ○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이 70/1000	
	유족연금 부가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당시 퇴직연금 일시금×1/4×(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유족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할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폐질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00~15/100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5년분의 장해연금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연장) 승인을 받아 요양 한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상 요양일시금	장기요양(실제 요양기간이 730일 경과)을 하는 경우	1년간의 범위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부조급여	재해보조금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때	재해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6배 금액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부양한 경우)한 때	○ 본인: 보수월액의 3배 ○ 배우자 및 직계존속: 보수월액 1배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보수월액×재직년수×재직년수별 지급율(10/100~60/100)	

자료: 공무원연금 실무(2008)

□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8년 6월까지 누적기준 약 4.8조원이 조성

- 1998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2000년 9,458억원의 연금회계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0년 제도 개선의 영향 및 퇴직자 수의 감소에 따라 2001년 이후 연금재정이 단기적인 안정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3년 548억원, 2005년 6,096억원, 2007년 9,892억원의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연금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

<표 III-10-5> 공무원연금재정 운영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수입					지출	순수 지차	운용 수익	국고 보전금	기금 증가액	기금 총액
	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	기타 <sup>1)</sup>	소계						
	가입자 기여금	국가 부담금									
2000	11,437	11,901	10,928	108	34,374	43,832	-9,458	920	-	-8,538	17,752
2001	14,699	13,923	5,903	67	34,592	35,191	-599	3,145	599	3,144	20,896
2002	16,558	17,645	5,865	92	40,160	36,384	3,776	2,604	-	6,380	27,276
2003	17,832	18,579	7,838	110	44,359	44,907	-548	3,399	548	3,399	30,675
2004	19,228	19,763	9,275	93	48,359	50,101	-1,742	2,543	1,742	2,543	33,218
2005	20,045	20,722	12,813	168	53,748	59,844	-6,096	5,077	6,096	5,077	38,295
2006	21,321	22,551	12,011	204	56,087	62,564	-6,477	3,935	6,477	3,935	42,230
2007	22,020	23,470	13,154	372	59,016	68,935	-9,919	5,814	9,892	5,814	48,044

주: 1) 연금회계 계정 중 '사업외 수익'(급여환수금의 국가법정부담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영공시 각 년도

## 2) 사학연금

-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부터 도입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은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특수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 학교의 교직원 등
    - 위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단, 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형태 포함)의 교원 및 사무직원,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
  
- 사학연금의 수입은 본인·학교경영기관·국가가 각각 일정률씩 부담하는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구성
  - 부담금은 급여의 주요 재원으로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합한 금액
    -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기관이 부담
    - 퇴직수당부담금은 당해연도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 공단, 국가가 부담

<표 III-10-6>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부담금의 종류		부 담 자 (납부자)	부 담 물		비 고	
			교 원	사 무 직 원		
개 인 부 담 금	당 월 분	교 직 원	보수월액의 85/1,000	보수월액의 85/1,000	월 납	
	소 급 분	동일법인소급분	보수월액의 85/1,000	보수월액의 85/1,000	월 납	
		타법인소급분	해당교직원	보수월액의 170/1,000		보수월액의 170/1,000
		군소급분		보수월액의 85/1,000		보수월액의 85/1,000
법 인 부 담 금		학교(법인)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0/85	개인부담금과 동액	월 납	
국 가 부 담 금		국가	" 35/85	-	분기납	
재 해 보 상 부 담 금		학교(법인)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55		월 납	
퇴직수당 부담금	법인부담금 <sup>1)</sup>	학교(법인)	-		-	
	국가부담금	국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연 납	
	공단부담금	공단	'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		연 납	

주: 1) 퇴직수당법인부담금은 1993년부터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이를 부담  
자료: 사학연금 실무(2008)

□ 사학연금 가입자는 2007년 기준 약 25.1만명 수준

- 최근 5년간 사학연금 가입자는 연평균 2.6%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전체 가입자 중 교원 수는 16만명이며 사무직원은 9만명 수준

<표 III-10-7> 사학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교직원			증감인원	증감률(%)
	합 계	교원	사무직원		
1995	181,128	116,895	64,233	6,195	3.5
1996	191,949	120,909	71,040	10,821	6.0
1997	202,981	125,957	77,024	11,032	5.7
1998	206,278	129,023	77,255	3,297	1.6
1999	207,664	130,355	77,309	1,386	0.7
2000	210,864	132,008	78,856	3,200	1.5
2001	216,362	135,877	80,485	5,498	2.6
2002	220,874	139,431	81,443	4,512	2.1
2003	225,354	143,579	81,775	4,480	2.0
2004	229,926	147,118	82,808	4,572	2.0
2005	236,726	151,535	85,191	6,800	3.0
2006	245,520	157,168	88,352	8,794	3.7
2007	250,652	160,266	90,386	5,132	2.1

자료: 사학연금 통계연보(2007)

- 사학연금 급여는 재직 중 급여인 단기급여와 퇴직 후 급여인 장기급여로 구분
  - 단기급여(재해보상급여)에는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으로 구성
  - 장기급여(연금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

**<표 III-10-8> 사학연금 급여의 구분**

구분	급여의 종류		
단기급여 [재해보상급여]	직무상요양비(간병비, 보철구수당 포함),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연금급여]	퇴직급여 (퇴직)	연 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사망)	연 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급여]
	장애급여 (폐질)	연 금	장애연금[재해보상급여]
		일시금	장애보상금[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퇴직)	퇴직수당		

자료: 사학연금 실무(2008)

<표 III-10-9> 사학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유형	수급요건	급여수준												
퇴직급여	퇴직일시금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할 때 ○ 5년 미만 재직자: 보수월액×재직월수/12×1.2 ○ 5년 이상 재직자: (보수월액×재직월수/12×1.5) + (보수월액×재직월수/12× (재직월수-60)/12×1/100)												
	퇴직연금 일시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산식												
	퇴직연금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 a. 60세에 도달한 때 b.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 c.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d.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할 때 e. 폐질등급 제1급~제7급의 상태로 된 때 (평균보수월액×1/2)+(평균보수월액×(재직월수-240) × 1/12 × 2/100)												
	조기 퇴직연금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사망한 때까지 조기퇴직연금 지급 ○ [(평균보수월액×1/2)+(평균보수월액×(재직월수-240) × 1/12 × 2/100)]× 감액지급률 ○ 미달연수에 따른 감액지급률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미달연수</th> <th>지급률 (퇴직연금 상당액)</th> </tr> </thead> <tbody> <tr> <td>1년 이내</td> <td>95%</td> </tr> <tr> <td>1년초과~2년 이내</td> <td>90%</td> </tr> <tr> <td>2년초과~3년 이내</td> <td>85%</td> </tr> <tr> <td>3년초과~4년 이내</td> <td>80%</td> </tr> <tr> <td>4년초과~5년 이내</td> <td>75%</td> </tr> </tbody> </table>	미달연수	지급률 (퇴직연금 상당액)	1년 이내	95%	1년초과~2년 이내	90%	2년초과~3년 이내	85%	3년초과~4년 이내	80%	4년초과~5년 이내	75%
	미달연수	지급률 (퇴직연금 상당액)												
1년 이내	95%													
1년초과~2년 이내	90%													
2년초과~3년 이내	85%													
3년초과~4년 이내	80%													
4년초과~5년 이내	75%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지급개시연령 등에 도달한 교직원이 퇴직하여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나머지 기간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 (보수월액×공제재직월수/12×1.5)+(보수월액×공제재직월수/12×공제재직월수/12×1/100)													
유족급여	유족연금	○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의 요건에 해당시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시 ○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70/1000												
	유족연금 부가금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급여유형		수급요건	급여수준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당시 퇴직연금 일시금 $\times 1/4 \times (36 - \text{연금수급월수}) \times 1/36$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유족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 산출방법과 동일
장 해 급 여	장해연금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15/100~ 80/100(퇴직 급여와 병급)
	장해보상금	장해연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 (퇴직급여와 병급)
재 해 보 상 급 여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질병·부상에 대하여 직무상요양(연장) 승인을 받아 요양 한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직무상요양일시금	장기요양(실제 요양기간이 730일 경과)을 하는 경우	1년간의 범위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사망 당시(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의 36배
	간병비	직무상요양기간 경과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	산재보상보험법 규정 준용
	보철구수당	직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보철구 등이 필요한 때	산재보상보험법 규정 준용
	재요양	직무상요양비 또는 장해급여 수급자가 치유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 부상·질병이 재발 및 악화된 때	직무상 요양비와 동일
	재해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 1/3이상 손해를 입은 때	주택 피해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 6배 금액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부양한 경우)한 때	○ 본인: 보수월액의 3배 ○ 배우자 및 직계존속 보수월액 1배
퇴직수당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보수월액 $\times$ 재직년수 $\times$ 재직년수별 지급율(10/100~60/100)	

자료: 사학연금 실무(2008)

□ 사학연금 기금은 2007년 12월까지 누적기준 약 8.6조원이 조성

-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제도 중 흑자기조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재정에 안정성을 이루고 있음
- 사학연금은 1998년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급여비 등의 증가로 1999년에 처음으로 3,0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흑자세를 유지

<표 III-10-10> 사학연금재정 운영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수입					지출	순수 지차	운용 수익	기금증 가액	기금 총액
	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	기타 <sup>1)</sup>	소계					
	가입자 기여금	사학/국 가부담금								
2000	2,945	2,851	1,566	24	7,386	6,942	444	837	1,281	39,796
2001	3,763	3,574	790	12	8,139	5,930	2,209	3,572	5,781	45,577
2002	4,280	4,197	1,020	63	9,560	6,862	2,698	3,134	5,832	51,409
2003	4,663	4,568	1,295	100	10,626	8,038	2,588	3,671	6,259	57,668
2004	5,009	4,913	1,558	27	11,507	8,987	2,520	3,420	5,940	63,608
2005	5,408	5,298	1,618	23	12,347	9,667	2,680	6,119	8,799	72,407
2006	5,863	5,727	1,881	534	14,005	10,953	3,052	3,505	6,557	78,964
2007	6,096	6,013	2,388	33	14,530	12,683	1,847	6,329	8,176	87,140

주: 1) 연금회계 계정중 '사업의 수익'(급여환수금의 국가법정부담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경영공시 각 년도

### 3) 군인연금

□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부터 도입되어 직업군인이 퇴직,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 본인 및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현재 군인연금 가입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재해보상급여(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에 한하여 적용

- 군인연금의 수입은 가입자가 지불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으로 구성
  -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은 17%이며, 이 중 군인이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
  -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성격의 재해보상급여, 복지 성격의 부조급여 및 퇴직수당은 사용자인 국가가 전액 부담
  
- 군인연금은 계급별 정년이 적용되어 20년 미만 퇴직자가 상당하여 2006년 퇴직자 중 88.1%가 퇴직연금의 미적용 대상
  - 연도별 신규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10-11> 복무기간별 신규 퇴직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군인 신규퇴직자			비율	
	합 계	2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0년 미만
1995	16,723	2,325	14,398	13.9	86.1
1996	18,121	2,260	15,861	12.5	87.5
1997	16,498	1,099	15,399	6.7	93.3
1998	15,119	2,120	12,999	14.0	86.0
1999	14,914	2,643	12,271	17.7	82.3
2000	16,690	2,352	14,338	14.1	85.9
2001	17,721	2,326	15,395	13.1	86.9
2002	18,133	2,360	15,773	13.0	87.0
2003	15,421	1,804	13,617	11.7	88.3
2004	16,337	2,144	14,193	13.1	86.9
2005	15,404	2,290	13,114	14.9	85.1
2006	15,978	1,895	14,083	11.9	88.1

자료: 군인연금 통계연보(2006)

- 군인연금 급여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군인연금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으로 구성

<표 III-10-12> 군인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유형		수급요건	급여수준												
퇴직급여	퇴역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한 때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50%(20년)~76%(33년)												
	퇴역연금 일시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면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복무연수×{1.5+(복무연수-5)/100}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면서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	보수월액×공제복무연수×(1.5+공제재직연수/100) * 공제복무연수 :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기간												
	퇴직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역한 때	5년이상 20년 미만 복무자 : 보수월액×복무연수×{1.5+(복무연수-5)/100} 5년미만 복무자 : 보수월액×복무연수×1.2												
유족급여	유족연금	○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중 사망한 때 ○ 퇴역/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퇴역/상이연금액의 70%												
	유족연금 부가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중 사망한 때	퇴역연금일시금의 25%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한 경우	퇴역연금일시금×25%×(36-연금받은달수)/36												
	유족연금 일시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중 사망한 때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												
	유족일시금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중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												
재해보상급여	유족연금 (순직)	군인이 복무중 공무상 원인으로 사망한 때	보수월액×65%(복무연수 20년이상), 55%(20년이하)												
	상이연금	군인이 복무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때	보수월액의50%(7급)~80%(1급)												
	공무상 요양비	군인이 복무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한 때	요양에 소요된 비용												
	사망조위금	군인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본인 사망 : 보수월액 3배, 그외 : 보수월액 1배												
	재해부조금	군인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손실을 입은 때	보수월액의 6배 이내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군인(사병포함)이 복무중 사망시	○ 공무상 사망: 보수월액 36배 ○ 일반사망 : 보수월액 12배 ○ 전사 : 소령10호봉 보수월액 72배												
	장애보상금	군인(사병포함)이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때	신체장애등급 1급(보수월액 12배), 2급(8배), 3급(6배) * 재해보상금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이 중사 1호봉 보수월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사 1호봉 보수월액을 적용												
퇴직수당		군인이 1년이상 복무하고 퇴역한 때	보수월액×복무연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복무연수</th> <th>지급률 (퇴직연금 상당액)</th> </tr> </thead> <tbody> <tr> <td>1년이상~5년미만</td> <td>10%</td> </tr> <tr> <td>5년초과~10년미만</td> <td>35%</td> </tr> <tr> <td>10년초과~15년이내</td> <td>45%</td> </tr> <tr> <td>15년초과~20년이내</td> <td>50%</td> </tr> <tr> <td>20년이상</td> <td>60%</td> </tr> </tbody> </table>	복무연수	지급률 (퇴직연금 상당액)	1년이상~5년미만	10%	5년초과~10년미만	35%	10년초과~15년이내	45%	15년초과~20년이내	50%	20년이상	60%
복무연수	지급률 (퇴직연금 상당액)														
1년이상~5년미만	10%														
5년초과~10년미만	35%														
10년초과~15년이내	45%														
15년초과~20년이내	50%														
20년이상	60%														

자료: 군인연금 통계연보(2006)

□ 군인연금 기금은 2007년 12월까지 누적기준 약 3,619억원이 조성

- 군인연금은 3종의 특수직역 연금 중 재정수지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상태
- 2000년 5,513억원 적자에서 2007년 현재 9,939억원의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연금재정수지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

<표 III-10-13> 군인연금재정 운영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수입					지출	순수 지차	운용 수익	국고 보전금	기금 증가액	기금 총액
	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	기타 <sup>1)</sup>	소계						
	가입자 기여금	국가 부담금									
2000	1,656	1,659	1,601	-	4,916	10,429	-5,513	457	4,569	-479	3,401
2001	2,135	2,135	2,140	-	6,410	11,139	-4,729	187	5,514	188	3,590
2002	2,380	2,380	2,062	-	6,822	12,124	-5,302	169	5,690	962	4,552
2003	2,544	2,520	2,134	-	7,198	14,214	-7,016	226	6,313	-61	4,491
2004	2,723	2,686	2,271	-	7,680	15,210	-7,530	204	6,147	-1,985	2,505
2005	2,864	2,816	2,399	15	8,094	16,076	-7,982	154	8,563	154	2,659
2006	3,027	2,948	2,574	15	8,564	16,743	-8,179	151	9,261	732	3,391
2007	2,982	2,982	2,878	17	8,859	18,798	-9,939	196	9,939	228	3,619

주: 1) 연금회계 계정중 '사업외 수익'(급여환수금의 국가법정부담금)

2) 2007년은 계획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및 군인연금 통계연보(2006) 참조

#### 나. 추계모형 및 추계결과

- 공무원연금 기금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은 2008년 9월 25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에 포함된 현행제도하에서의 재정전망 결과를 활용
  - 다만 전망치가 2008년 불변가격 기준이므로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명목 금액으로 환산함
  - 전망결과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0.20% 적자에서 2050년 1.49% 적자로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14> 공무원연금 향후 재정전망

(단위: 억원/2008년 불변가격기준)

연 도	총수입(A)		총지출(B)		보전액(B-A)	
	수입률 <sup>1)</sup>	지출률 <sup>2)</sup>	수입률 <sup>1)</sup>	지출률 <sup>2)</sup>	보전율 <sup>3)</sup>	
2008	48,486	11.4%	61,170	14.4%	12,684	3.0%
2009	49,644	11.1%	69,575	15.5%	19,931	4.5%
2010	51,833	11.0%	74,973	15.9%	23,140	4.9%
2011	53,501	10.8%	78,587	15.9%	25,086	5.1%
2012	55,277	10.7%	87,642	17.0%	32,365	6.3%
2013	57,089	10.6%	95,961	17.9%	38,872	7.2%
2014	59,273	10.6%	105,768	19.0%	46,495	8.3%
2015	61,550	10.6%	116,824	20.2%	55,274	9.5%
2016	64,076	10.7%	127,135	21.2%	63,059	10.5%
2017	66,609	10.7%	138,973	22.4%	72,364	11.7%
2018	69,099	10.8%	150,775	23.5%	81,676	12.7%
2020	-	10.8%	-	25.3%	-	14.5%
2030	-	11.0%	-	36.4%	-	25.4%
2050	-	11.5%	-	45.6%	-	34.1%
2070	-	11.5%	-	48.4%	-	37.0%

주: 1) 수입률 : 총수입 / 과세대상보수총액, 2) 지출률 : 총지출 / 과세대상보수총액,  
3) 보전율 : 보전액 / 과세대상보수총액

- 사학연금 기금도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가 2008년 11월 마련한 연금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현행제도하에서의 재정전망 결과를 활용
  - 전망결과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0.07% 흑자에서 2017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2050년 0.42% 적자로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 기금은 2006년 비전 2030 수립 당시 국방부에서 전망한 수치를 활용
  - 당시 전망결과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0.10% 적자에서 2050년 0.15% 적자로 적자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15> 특수직역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

(단위: GDP 대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	총수입	총지출	수지	총수입	총지출	수지
2009	0.49	0.69	-0.20	0.19	0.12	0.07	0.10	0.20	-0.10
2010	0.49	0.71	-0.22	0.20	0.13	0.07	0.10	0.20	-0.10
2011	0.49	0.71	-0.23	0.19	0.13	0.06	0.10	0.20	-0.10
2012	0.48	0.76	-0.28	0.19	0.14	0.05	0.10	0.20	-0.10
2013	0.47	0.79	-0.32	0.19	0.14	0.04	0.10	0.20	-0.10
2014	0.47	0.84	-0.37	0.19	0.15	0.03	0.10	0.20	-0.10
2015	0.47	0.88	-0.42	0.19	0.16	0.02	0.10	0.20	-0.10
2016	0.47	0.93	-0.46	0.18	0.17	0.01	0.10	0.20	-0.10
2017	0.47	0.98	-0.51	0.18	0.19	-0.01	0.10	0.20	-0.10
2018	0.47	1.02	-0.55	0.18	0.20	-0.02	0.10	0.20	-0.10
2019	0.47	1.06	-0.59	0.17	0.21	-0.04	0.10	0.20	-0.10
2020	0.46	1.09	-0.63	0.17	0.23	-0.06	0.10	0.20	-0.10
2021	0.45	1.13	-0.68	0.15	0.24	-0.09	0.10	0.20	-0.10
2022	0.44	1.17	-0.73	0.15	0.26	-0.11	0.10	0.20	-0.10
2023	0.43	1.21	-0.78	0.14	0.28	-0.13	0.10	0.20	-0.10
2024	0.42	1.25	-0.82	0.14	0.29	-0.16	0.10	0.20	-0.10
2025	0.42	1.29	-0.87	0.14	0.31	-0.17	0.10	0.21	-0.10
2026	0.42	1.34	-0.92	0.14	0.32	-0.19	0.11	0.21	-0.10
2027	0.42	1.38	-0.97	0.14	0.33	-0.20	0.11	0.21	-0.10
2028	0.42	1.43	-1.01	0.14	0.35	-0.20	0.11	0.21	-0.10
2029	0.42	1.48	-1.06	0.14	0.36	-0.21	0.11	0.22	-0.11
2030	0.42	1.53	-1.11	0.14	0.37	-0.22	0.11	0.22	-0.11
2031	0.42	1.55	-1.13	0.15	0.38	-0.23	0.11	0.22	-0.11
2032	0.42	1.57	-1.15	0.15	0.39	-0.24	0.11	0.22	-0.11
2033	0.42	1.59	-1.17	0.15	0.40	-0.24	0.12	0.23	-0.11
2034	0.42	1.61	-1.19	0.15	0.41	-0.25	0.12	0.23	-0.11
2035	0.42	1.63	-1.20	0.16	0.42	-0.26	0.12	0.24	-0.12
2036	0.42	1.65	-1.22	0.16	0.43	-0.27	0.12	0.24	-0.12
2037	0.42	1.67	-1.24	0.16	0.44	-0.28	0.12	0.24	-0.12
2038	0.43	1.69	-1.26	0.17	0.45	-0.29	0.13	0.25	-0.12
2039	0.42	1.71	-1.28	0.17	0.47	-0.29	0.13	0.25	-0.12
2040	0.43	1.73	-1.30	0.18	0.48	-0.30	0.13	0.26	-0.13
2041	0.44	1.76	-1.32	0.18	0.49	-0.31	0.13	0.26	-0.13
2042	0.44	1.78	-1.34	0.18	0.50	-0.32	0.14	0.27	-0.13
2043	0.45	1.80	-1.36	0.18	0.52	-0.33	0.14	0.27	-0.13
2044	0.45	1.83	-1.38	0.19	0.53	-0.35	0.14	0.28	-0.14
2045	0.45	1.85	-1.40	0.19	0.55	-0.36	0.14	0.28	-0.14
2046	0.46	1.87	-1.41	0.19	0.56	-0.37	0.15	0.29	-0.14
2047	0.46	1.90	-1.43	0.20	0.58	-0.38	0.15	0.29	-0.14
2048	0.47	1.92	-1.45	0.20	0.60	-0.40	0.15	0.30	-0.15
2049	0.47	1.94	-1.47	0.21	0.62	-0.41	0.15	0.30	-0.15
2050	0.48	1.97	-1.49	0.21	0.64	-0.42	0.16	0.31	-0.15

## IV. 구축된 모형의 활용

### 1. 사회복지지출 장기전망

- 이상과 같이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2050년까지의 중장기 사회복지 지출 추계결과를 종합
  - 각 사회복지 지출항목별로 baseline 전망치를 기준으로 함
    -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총지출 규모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재정부담 규모로 구분하여 집계
  - EU에서 2006년 실시한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국제비교
    - 재정추계 결과를 OECD에서 발표하는 사회보장비(SOCX) 통계기준으로 환산하여 OECD 국가들과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표 IV-1-1>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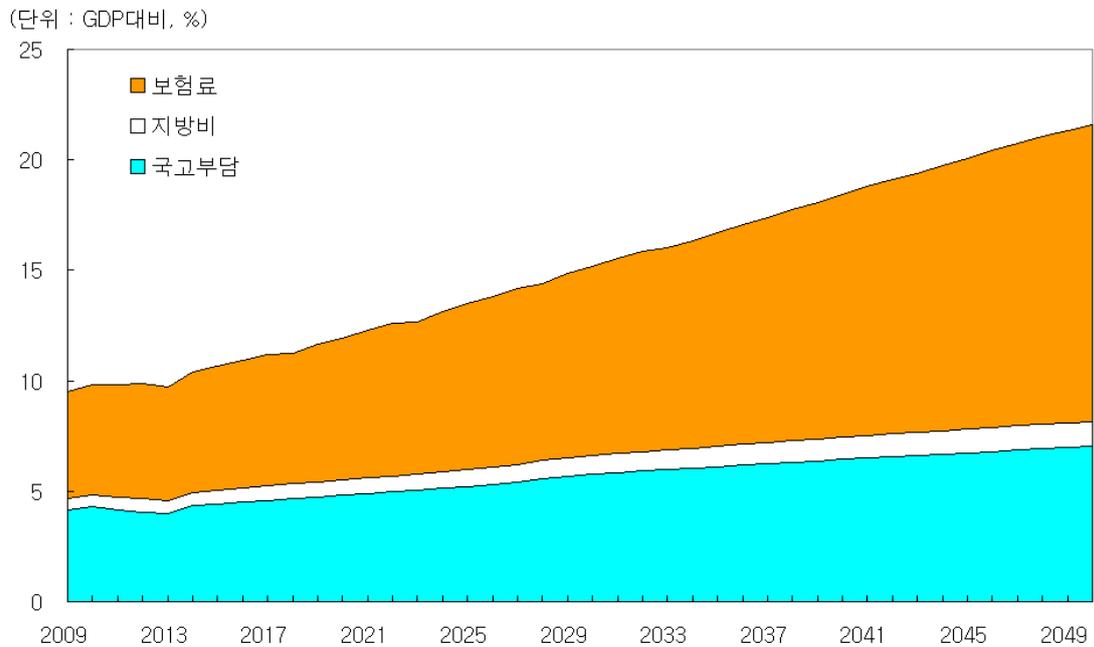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노동 분야	745,892	810,398	852,822	906,963	969,206	6.8
○ 사회복지	677,229	737,827	771,257	823,944	882,277	6.8
• 기초생활보장	71,427	73,001	74,962	77,064	79,236	2.6
• 취약계층지원	10,536	15,012	13,383	13,502	13,714	6.8
• 공적연금	238,197	260,886	289,686	327,567	364,161	11.2
• 보육·가족·여성	19,296	22,976	25,377	26,021	27,688	9.4
• 노인·청소년	32,534	35,852	39,389	40,259	41,617	6.3
• 노동	117,547	123,190	125,409	124,824	127,876	2.1
• 보훈	33,596	35,773	37,213	38,893	41,113	5.2
• 주택	150,172	166,542	161,161	171,056	182,020	4.9
• 사회복지일반	3,924	4,595	4,677	4,758	4,852	5.5
○ 보건	68,663	72,571	81,565	83,019	86,929	6.1
• 보건의료	14,544	16,303	20,518	20,579	21,343	10.1
• 건강보험	52,039	53,827	58,122	59,456	62,830	4.8
• 식품의약품안전	2,080	2,441	2,925	2,984	2,756	7.3

- 다음과 같이 집계되는 보건분야 지출규모는 2009년 GDP 대비 3.09%에서 2050년 5.3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건의료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16%)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건강보험지원 : 제Ⅲ장 1절의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5) 활용
    - 국고부담을 별도로 추계
  - 식품의약품안전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02%)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또한 다음과 같이 집계되는 사회복지분야 지출규모도 2009년 GDP 대비 7.56%에서 2050년 19.5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초생활보장 : 제Ⅲ장 5절의 기초생활보장 재정추계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3) 활용
    - 국고부담 및 지방비 부담을 별도로 추계
  - 취약계층지원 : 제Ⅲ장 6절의 취약계층지원의 장애인장기요양보험(baseline인 시나리오 3),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취약계층지원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1%)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의 국고부담 및 지방비 부담을 각각 별도로 추계
  - 공적연금 : 제Ⅲ장 3절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10절의 특수직역연금 재정추계를 활용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반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기금수지 적자분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

- 보육, 가족 및 여성 : 제Ⅲ장 7절의 보육 재정추계 결과 활용
    - 국고부담 및 지방비 부담을 별도로 추계
  - 노인·청소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Ⅲ장 2절의 재정추계 결과(baseline인 시나리오 3)를, 기초노령연금은 제Ⅲ장 4절의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은 각각 국고부담 및 지방비 부담을 별도로 추계
  - 노동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각각 제Ⅲ장 8절 및 9절의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노동관련 지출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14%)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성기금이므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보훈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30%)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주택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1.32%)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사회복지일반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도 GDP 대비 비율(0.04%)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이를 종합해 보면 보건·사회복지분야 지출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09%p나 증가
-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재원구조 추계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국고부담이 2.36%p(4.11%→6.47%),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0.63%p(0.50%→1.13%),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5.42%p(4.73%→10.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는 궁극적으로 보험료와 국고부담(5:1의 비율)으로, 산재보험의 재정적자는 전액 보험료로 충당될 것이므로 이들 사회보장보험들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 국고부담 및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은 각각 2.87%p 및 8.59%p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사학연금의 적자는 국고지원이 없으므로 보험료부담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음

[그림 IV-1-1] 사회복지지출 총규모 및 재원구조 추계결과  
(재정적자 보전 후)



주: 10개 항목의 사회복지지출을 제외한 지방비는 포함되지 않음

<표 IV-1-2> 보건분야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보건 의료	건강보험지원				식품 의약 안전	보건소계			
		총지출	국고 부담	보험료	재정 적자		총지출	국고 부담	보험료	재정 적자
2009	0.14	2.72	0.41	2.03	0.28	0.02	2.88	0.57	2.03	0.28
2010	0.15	2.77	0.41	2.03	0.33	0.02	2.94	0.58	2.03	0.33
2011	0.17	2.83	0.41	2.03	0.38	0.02	3.02	0.60	2.03	0.38
2012	0.16	2.89	0.41	2.03	0.44	0.02	3.07	0.59	2.03	0.44
2013	0.16	2.95	0.41	2.03	0.51	0.02	3.12	0.58	2.03	0.51
2014	0.16	3.01	0.41	2.03	0.56	0.02	3.18	0.58	2.03	0.56
2015	0.16	3.07	0.41	2.03	0.62	0.02	3.24	0.58	2.03	0.62
2016	0.16	3.13	0.41	2.03	0.68	0.02	3.30	0.58	2.03	0.68
2017	0.16	3.19	0.41	2.03	0.75	0.02	3.36	0.58	2.03	0.75
2018	0.16	3.25	0.41	2.03	0.81	0.02	3.43	0.58	2.03	0.81
2019	0.16	3.31	0.41	2.04	0.87	0.02	3.49	0.58	2.04	0.87
2020	0.16	3.38	0.41	2.04	0.93	0.02	3.55	0.58	2.04	0.93
2021	0.16	3.45	0.41	2.04	1.01	0.02	3.62	0.58	2.04	1.01
2022	0.16	3.52	0.41	2.03	1.08	0.02	3.69	0.58	2.03	1.08
2023	0.16	3.59	0.41	2.03	1.15	0.02	3.77	0.58	2.03	1.15
2024	0.16	3.66	0.41	2.03	1.22	0.02	3.84	0.58	2.03	1.22
2025	0.16	3.74	0.41	2.03	1.30	0.02	3.91	0.58	2.03	1.30
2026	0.16	3.81	0.41	2.03	1.37	0.02	3.98	0.58	2.03	1.37
2027	0.16	3.88	0.41	2.03	1.44	0.02	4.06	0.58	2.03	1.44
2028	0.16	3.95	0.41	2.03	1.51	0.02	4.12	0.58	2.03	1.51
2029	0.16	4.02	0.41	2.03	1.58	0.02	4.19	0.58	2.03	1.58
2030	0.16	4.08	0.41	2.03	1.65	0.02	4.26	0.58	2.03	1.65
2031	0.16	4.15	0.41	2.03	1.72	0.02	4.32	0.58	2.03	1.72
2032	0.16	4.21	0.40	2.02	1.78	0.02	4.39	0.58	2.02	1.78
2033	0.16	4.27	0.40	2.02	1.84	0.02	4.45	0.58	2.02	1.84
2034	0.16	4.33	0.40	2.02	1.90	0.02	4.51	0.58	2.02	1.90
2035	0.16	4.39	0.40	2.02	1.96	0.02	4.56	0.58	2.02	1.96
2036	0.16	4.45	0.40	2.02	2.02	0.02	4.62	0.58	2.02	2.02
2037	0.16	4.50	0.40	2.02	2.08	0.02	4.68	0.58	2.02	2.08
2038	0.16	4.56	0.40	2.02	2.14	0.02	4.73	0.58	2.02	2.14
2039	0.16	4.61	0.40	2.01	2.20	0.02	4.79	0.58	2.01	2.20
2040	0.16	4.67	0.40	2.01	2.25	0.02	4.84	0.58	2.01	2.25
2041	0.16	4.72	0.40	2.01	2.31	0.02	4.90	0.58	2.01	2.31
2042	0.16	4.77	0.40	2.01	2.36	0.02	4.95	0.58	2.01	2.36
2043	0.16	4.82	0.40	2.01	2.41	0.02	4.99	0.58	2.01	2.41
2044	0.16	4.86	0.40	2.01	2.45	0.02	5.04	0.58	2.01	2.45
2045	0.16	4.91	0.40	2.01	2.50	0.02	5.09	0.58	2.01	2.50
2046	0.16	4.96	0.40	2.01	2.55	0.02	5.13	0.58	2.01	2.55
2047	0.16	5.00	0.40	2.01	2.59	0.02	5.18	0.58	2.01	2.59
2048	0.16	5.04	0.40	2.01	2.64	0.02	5.22	0.58	2.01	2.64
2049	0.16	5.08	0.40	2.01	2.68	0.02	5.26	0.58	2.01	2.68
2050	0.16	5.12	0.40	2.01	2.71	0.02	5.29	0.58	2.01	2.71

<표 IV-1-3>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소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2009	0.81	0.63	0.18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3	0.01	0.12	0.10	0.01
2010	0.83	0.64	0.18	0.01	0.01	0.00	0.05	0.04	0.01	0.03	0.02	0.01	0.16	0.14	0.02
2011	0.85	0.67	0.19	0.04	0.03	0.01	0.10	0.07	0.03	0.01	0.01	0.00	0.16	0.11	0.04
2012	0.85	0.66	0.19	0.04	0.03	0.01	0.10	0.07	0.03	0.01	0.01	0.00	0.15	0.11	0.04
2013	0.84	0.66	0.19	0.04	0.03	0.01	0.10	0.07	0.03	0.01	0.01	0.00	0.14	0.10	0.04
2014	0.84	0.66	0.18	0.04	0.03	0.01	0.09	0.07	0.03	0.01	0.01	0.00	0.24	0.20	0.04
2015	0.84	0.65	0.18	0.04	0.03	0.01	0.09	0.06	0.02	0.01	0.01	0.00	0.24	0.20	0.04
2016	0.84	0.65	0.18	0.04	0.03	0.01	0.09	0.06	0.02	0.01	0.01	0.00	0.23	0.19	0.04
2017	0.84	0.65	0.18	0.04	0.03	0.01	0.08	0.06	0.02	0.01	0.01	0.00	0.23	0.19	0.04
2018	0.84	0.66	0.19	0.04	0.03	0.01	0.08	0.06	0.02	0.01	0.01	0.00	0.23	0.19	0.04
2019	0.84	0.66	0.19	0.04	0.03	0.01	0.08	0.06	0.02	0.01	0.01	0.00	0.23	0.19	0.04
2020	0.85	0.66	0.19	0.04	0.03	0.01	0.08	0.06	0.02	0.01	0.00	0.00	0.23	0.19	0.04
2021	0.85	0.67	0.19	0.04	0.03	0.01	0.08	0.05	0.02	0.01	0.00	0.00	0.22	0.19	0.04
2022	0.86	0.67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2	0.19	0.04
2023	0.86	0.67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2	0.18	0.04
2024	0.87	0.68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2	0.18	0.04
2025	0.88	0.68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2	0.18	0.04
2026	0.88	0.69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2	0.18	0.03
2027	0.89	0.69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2	0.18	0.03
2028	0.88	0.69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29	0.89	0.70	0.19	0.04	0.03	0.01	0.07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0	0.90	0.71	0.20	0.04	0.03	0.01	0.06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1	0.91	0.71	0.20	0.04	0.03	0.01	0.06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2	0.92	0.72	0.20	0.04	0.03	0.01	0.06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3	0.93	0.73	0.20	0.04	0.03	0.01	0.06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4	0.94	0.74	0.21	0.04	0.03	0.01	0.06	0.05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5	0.95	0.75	0.21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6	0.96	0.75	0.21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7	0.97	0.76	0.21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8	0.98	0.77	0.21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39	0.99	0.78	0.22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40	1.01	0.79	0.22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41	1.02	0.80	0.22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42	1.03	0.81	0.22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43	1.04	0.82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8	0.03
2044	1.05	0.82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2045	1.06	0.83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2046	1.06	0.83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2047	1.07	0.84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2048	1.07	0.84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2049	1.08	0.85	0.23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2050	1.09	0.86	0.24	0.04	0.03	0.01	0.06	0.04	0.02	0.01	0.00	0.00	0.21	0.17	0.03

<표 IV-1-3>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계속)

(단위: GDP 대비, %)

	공적연금								보육, 가족 및 여성		
	국민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소계		총지출	국고부담	지방비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총지출	국고부담			
2009	0.83	0.12	0.20	0.10	0.69	0.20	<b>1.84</b>	0.30	<b>0.34</b>	0.19	0.16
2010	0.86	0.13	0.20	0.10	0.71	0.22	<b>1.90</b>	0.32	<b>0.39</b>	0.21	0.18
2011	0.90	0.13	0.20	0.10	0.71	0.23	<b>1.94</b>	0.33	<b>0.40</b>	0.21	0.18
2012	0.98	0.14	0.20	0.10	0.76	0.28	<b>2.07</b>	0.38	<b>0.38</b>	0.20	0.17
2013	0.82	0.14	0.20	0.10	0.79	0.32	<b>1.95</b>	0.42	<b>0.37</b>	0.20	0.17
2014	1.02	0.15	0.20	0.10	0.84	0.37	<b>2.21</b>	0.46	<b>0.40</b>	0.21	0.18
2015	1.09	0.16	0.20	0.10	0.88	0.42	<b>2.33</b>	0.52	<b>0.42</b>	0.23	0.19
2016	1.18	0.17	0.20	0.10	0.93	0.46	<b>2.47</b>	0.56	<b>0.44</b>	0.24	0.20
2017	1.25	0.19	0.20	0.10	0.98	0.51	<b>2.61</b>	0.61	<b>0.47</b>	0.25	0.21
2018	1.11	0.20	0.20	0.10	1.02	0.55	<b>2.53</b>	0.65	<b>0.48</b>	0.26	0.22
2019	1.35	0.21	0.20	0.10	1.06	0.59	<b>2.82</b>	0.69	<b>0.50</b>	0.27	0.23
2020	1.44	0.23	0.20	0.10	1.09	0.63	<b>2.96</b>	0.73	<b>0.51</b>	0.27	0.23
2021	1.59	0.24	0.20	0.10	1.13	0.68	<b>3.16</b>	0.78	<b>0.49</b>	0.27	0.23
2022	1.72	0.26	0.20	0.10	1.17	0.73	<b>3.35</b>	0.83	<b>0.48</b>	0.26	0.22
2023	1.60	0.28	0.20	0.10	1.21	0.78	<b>3.29</b>	0.88	<b>0.47</b>	0.25	0.22
2024	1.85	0.29	0.20	0.10	1.25	0.82	<b>3.59</b>	0.92	<b>0.46</b>	0.25	0.21
2025	1.98	0.31	0.21	0.10	1.29	0.87	<b>3.79</b>	0.97	<b>0.46</b>	0.25	0.21
2026	2.12	0.32	0.21	0.10	1.34	0.92	<b>3.99</b>	1.02	<b>0.45</b>	0.24	0.21
2027	2.23	0.33	0.21	0.10	1.38	0.97	<b>4.16</b>	1.07	<b>0.44</b>	0.24	0.20
2028	2.12	0.35	0.21	0.10	1.43	1.01	<b>4.11</b>	1.12	<b>0.44</b>	0.24	0.20
2029	2.33	0.36	0.22	0.11	1.48	1.06	<b>4.38</b>	1.17	<b>0.43</b>	0.23	0.20
2030	2.46	0.37	0.22	0.11	1.53	1.11	<b>4.57</b>	1.22	<b>0.42</b>	0.23	0.19
2031	2.61	0.38	0.22	0.11	1.55	1.13	<b>4.75</b>	1.24	<b>0.41</b>	0.22	0.19
2032	2.77	0.39	0.22	0.11	1.57	1.15	<b>4.95</b>	1.26	<b>0.40</b>	0.22	0.19
2033	2.74	0.40	0.23	0.11	1.59	1.17	<b>4.95</b>	1.28	<b>0.39</b>	0.21	0.18
2034	2.92	0.41	0.23	0.11	1.61	1.19	<b>5.16</b>	1.30	<b>0.39</b>	0.21	0.18
2035	3.08	0.42	0.24	0.12	1.63	1.20	<b>5.36</b>	1.32	<b>0.38</b>	0.20	0.17
2036	3.26	0.43	0.24	0.12	1.65	1.22	<b>5.58</b>	1.34	<b>0.37</b>	0.20	0.17
2037	3.44	0.44	0.24	0.12	1.67	1.24	<b>5.79</b>	1.36	<b>0.36</b>	0.19	0.16
2038	3.63	0.45	0.25	0.12	1.69	1.26	<b>6.02</b>	1.38	<b>0.35</b>	0.19	0.16
2039	3.77	0.47	0.25	0.12	1.71	1.28	<b>6.19</b>	1.40	<b>0.34</b>	0.18	0.15
2040	3.94	0.48	0.26	0.13	1.73	1.30	<b>6.41</b>	1.43	<b>0.33</b>	0.18	0.15
2041	4.12	0.49	0.26	0.13	1.76	1.32	<b>6.63</b>	1.45	<b>0.32</b>	0.17	0.15
2042	4.29	0.50	0.27	0.13	1.78	1.34	<b>6.84</b>	1.47	<b>0.31</b>	0.17	0.14
2043	4.42	0.52	0.27	0.13	1.80	1.36	<b>7.01</b>	1.49	<b>0.30</b>	0.16	0.14
2044	4.59	0.53	0.28	0.14	1.83	1.38	<b>7.22</b>	1.51	<b>0.30</b>	0.16	0.14
2045	4.76	0.55	0.28	0.14	1.85	1.40	<b>7.44</b>	1.53	<b>0.30</b>	0.16	0.14
2046	4.93	0.56	0.29	0.14	1.87	1.41	<b>7.65</b>	1.55	<b>0.29</b>	0.16	0.13
2047	5.10	0.58	0.29	0.14	1.90	1.43	<b>7.87</b>	1.58	<b>0.29</b>	0.16	0.13
2048	5.23	0.60	0.30	0.15	1.92	1.45	<b>8.05</b>	1.60	<b>0.29</b>	0.16	0.13
2049	5.36	0.62	0.30	0.15	1.94	1.47	<b>8.22</b>	1.62	<b>0.29</b>	0.16	0.13
2050	5.48	0.64	0.31	0.15	1.97	1.49	<b>8.39</b>	1.64	<b>0.28</b>	0.15	0.13

<표 IV-1-3>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계속)

(단위: GDP 대비, %)

	노인·청소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기타	소계				
	총지출	국고	보험료	지방비	재정적자	총지출	국고	지방비		총지출	국고	지방비	보험료	재정적자
2009	0.19	0.02	0.12	0.05	0.00	0.37	0.26	0.10	0.03	<b>0.58</b>	0.31	0.15	0.12	0.00
2010	0.22	0.03	0.12	0.06	0.02	0.38	0.27	0.11	0.02	<b>0.62</b>	0.32	0.16	0.12	0.02
2011	0.26	0.03	0.12	0.06	0.05	0.39	0.28	0.11	0.02	<b>0.66</b>	0.32	0.17	0.12	0.05
2012	0.29	0.03	0.12	0.07	0.07	0.40	0.29	0.11	-0.01	<b>0.67</b>	0.30	0.18	0.12	0.07
2013	0.31	0.03	0.12	0.08	0.10	0.41	0.29	0.11	-0.03	<b>0.69</b>	0.29	0.19	0.12	0.10
2014	0.33	0.03	0.12	0.08	0.11	0.42	0.30	0.12	0.00	<b>0.75</b>	0.33	0.20	0.12	0.11
2015	0.35	0.03	0.12	0.08	0.12	0.43	0.31	0.12	0.00	<b>0.78</b>	0.34	0.21	0.12	0.12
2016	0.36	0.03	0.12	0.09	0.13	0.45	0.32	0.12	0.00	<b>0.81</b>	0.35	0.21	0.12	0.13
2017	0.38	0.03	0.12	0.09	0.15	0.46	0.33	0.13	0.00	<b>0.84</b>	0.36	0.22	0.12	0.15
2018	0.40	0.03	0.12	0.10	0.16	0.47	0.34	0.13	0.00	<b>0.87</b>	0.37	0.23	0.12	0.16
2019	0.42	0.03	0.12	0.10	0.17	0.49	0.35	0.14	0.00	<b>0.91</b>	0.38	0.24	0.12	0.17
2020	0.44	0.03	0.12	0.11	0.19	0.51	0.37	0.14	0.00	<b>0.95</b>	0.40	0.25	0.12	0.19
2021	0.46	0.03	0.12	0.11	0.20	0.54	0.39	0.15	0.00	<b>1.00</b>	0.41	0.26	0.12	0.20
2022	0.48	0.03	0.12	0.12	0.22	0.56	0.41	0.16	0.00	<b>1.05</b>	0.43	0.27	0.12	0.22
2023	0.50	0.03	0.12	0.12	0.24	0.59	0.43	0.17	0.00	<b>1.09</b>	0.45	0.29	0.12	0.24
2024	0.53	0.03	0.12	0.13	0.25	0.62	0.45	0.17	0.00	<b>1.15</b>	0.48	0.30	0.12	0.25
2025	0.55	0.03	0.12	0.13	0.27	0.66	0.47	0.18	0.00	<b>1.20</b>	0.50	0.32	0.12	0.27
2026	0.57	0.03	0.12	0.14	0.29	0.69	0.50	0.19	0.00	<b>1.26</b>	0.52	0.33	0.12	0.29
2027	0.60	0.03	0.12	0.14	0.31	0.72	0.52	0.20	0.00	<b>1.32</b>	0.55	0.35	0.12	0.31
2028	0.62	0.03	0.12	0.15	0.33	0.90	0.65	0.25	0.00	<b>1.52</b>	0.68	0.40	0.12	0.33
2029	0.65	0.03	0.12	0.16	0.35	0.94	0.68	0.26	0.00	<b>1.59</b>	0.71	0.42	0.12	0.35
2030	0.67	0.03	0.12	0.16	0.37	0.98	0.71	0.27	0.00	<b>1.66</b>	0.74	0.44	0.12	0.37
2031	0.70	0.03	0.12	0.17	0.38	1.02	0.74	0.29	0.00	<b>1.72</b>	0.76	0.45	0.12	0.38
2032	0.72	0.03	0.12	0.17	0.40	1.06	0.76	0.30	0.00	<b>1.78</b>	0.79	0.47	0.12	0.40
2033	0.74	0.03	0.12	0.18	0.42	1.09	0.79	0.31	0.00	<b>1.83</b>	0.82	0.48	0.12	0.42
2034	0.76	0.03	0.12	0.18	0.43	1.14	0.82	0.32	0.00	<b>1.90</b>	0.85	0.50	0.12	0.43
2035	0.79	0.03	0.12	0.19	0.45	1.18	0.85	0.33	0.00	<b>1.97</b>	0.88	0.52	0.12	0.45
2036	0.81	0.03	0.12	0.19	0.47	1.23	0.88	0.34	0.00	<b>2.04</b>	0.91	0.54	0.12	0.47
2037	0.83	0.03	0.12	0.20	0.49	1.27	0.91	0.36	0.00	<b>2.10</b>	0.94	0.56	0.12	0.49
2038	0.86	0.03	0.12	0.21	0.51	1.31	0.95	0.37	0.00	<b>2.17</b>	0.98	0.57	0.12	0.51
2039	0.88	0.03	0.12	0.21	0.52	1.36	0.98	0.38	0.00	<b>2.24</b>	1.01	0.59	0.12	0.52
2040	0.90	0.03	0.12	0.22	0.54	1.40	1.00	0.39	0.00	<b>2.29</b>	1.04	0.61	0.12	0.54
2041	0.92	0.03	0.12	0.22	0.55	1.43	1.03	0.40	0.00	<b>2.35</b>	1.06	0.62	0.12	0.55
2042	0.93	0.03	0.12	0.22	0.56	1.46	1.05	0.41	0.00	<b>2.39</b>	1.08	0.63	0.12	0.56
2043	0.95	0.03	0.12	0.23	0.58	1.49	1.07	0.42	0.00	<b>2.44</b>	1.10	0.64	0.12	0.58
2044	0.97	0.03	0.12	0.23	0.59	1.52	1.10	0.43	0.00	<b>2.49</b>	1.13	0.66	0.12	0.59
2045	0.98	0.03	0.12	0.24	0.60	1.56	1.12	0.44	0.00	<b>2.54</b>	1.15	0.67	0.12	0.60
2046	1.00	0.03	0.12	0.24	0.62	1.60	1.15	0.45	0.00	<b>2.60</b>	1.18	0.69	0.12	0.62
2047	1.02	0.03	0.12	0.24	0.63	1.64	1.18	0.46	0.00	<b>2.66</b>	1.21	0.70	0.12	0.63
2048	1.04	0.03	0.12	0.25	0.64	1.67	1.20	0.47	0.00	<b>2.71</b>	1.23	0.72	0.12	0.64
2049	1.05	0.03	0.12	0.25	0.65	1.70	1.22	0.48	0.00	<b>2.75</b>	1.26	0.73	0.12	0.65
2050	1.06	0.03	0.12	0.25	0.66	1.72	1.24	0.48	0.00	<b>2.78</b>	1.27	0.74	0.12	0.66

<표 IV-1-3>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계속)

(단위: GDP 대비, %)

	노동									보훈	주택	사회 복지 일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기타	소계						
		총지출	보험료	재정적자		총지출	국고	보험료	재정적자			
2009	0.54	0.39	0.50	-0.11	0.20	<b>1.14</b>	0.20	1.04	-0.11	0.32	1.45	0.04
2010	0.52	0.41	0.51	-0.10	0.19	<b>1.12</b>	0.19	1.03	-0.10	0.31	1.51	0.04
2011	0.50	0.43	0.52	-0.09	0.13	<b>1.06</b>	0.13	1.02	-0.09	0.31	1.36	0.04
2012	0.48	0.44	0.53	-0.09	0.05	<b>0.98</b>	0.05	1.01	-0.09	0.30	1.34	0.04
2013	0.49	0.46	0.55	-0.08	-0.02	<b>0.93</b>	-0.02	1.03	-0.08	0.30	1.32	0.04
2014	0.49	0.48	0.56	-0.08	0.14	<b>1.11</b>	0.14	1.05	-0.08	0.30	1.32	0.04
2015	0.50	0.50	0.57	-0.07	0.14	<b>1.14</b>	0.14	1.07	-0.07	0.30	1.32	0.04
2016	0.51	0.51	0.57	-0.06	0.14	<b>1.16</b>	0.14	1.08	-0.06	0.30	1.32	0.04
2017	0.52	0.52	0.57	-0.05	0.14	<b>1.18</b>	0.14	1.09	-0.05	0.30	1.32	0.04
2018	0.53	0.53	0.57	-0.03	0.14	<b>1.20</b>	0.14	1.09	-0.03	0.30	1.32	0.04
2019	0.54	0.54	0.57	-0.02	0.14	<b>1.22</b>	0.14	1.10	-0.02	0.30	1.32	0.04
2020	0.55	0.56	0.57	-0.01	0.14	<b>1.24</b>	0.14	1.11	-0.01	0.30	1.32	0.04
2021	0.55	0.57	0.57	0.01	0.14	<b>1.26</b>	0.14	1.12	0.01	0.30	1.32	0.04
2022	0.56	0.59	0.57	0.02	0.14	<b>1.29</b>	0.14	1.13	0.02	0.30	1.32	0.04
2023	0.57	0.60	0.57	0.03	0.14	<b>1.31</b>	0.14	1.14	0.03	0.30	1.32	0.04
2024	0.58	0.62	0.57	0.05	0.14	<b>1.34</b>	0.14	1.16	0.05	0.30	1.32	0.04
2025	0.59	0.63	0.57	0.06	0.14	<b>1.36</b>	0.14	1.17	0.06	0.30	1.32	0.04
2026	0.60	0.65	0.58	0.07	0.14	<b>1.39</b>	0.14	1.18	0.07	0.30	1.32	0.04
2027	0.61	0.67	0.58	0.09	0.14	<b>1.42</b>	0.14	1.19	0.09	0.30	1.32	0.04
2028	0.62	0.69	0.59	0.10	0.14	<b>1.45</b>	0.14	1.21	0.10	0.30	1.32	0.04
2029	0.63	0.71	0.59	0.12	0.14	<b>1.48</b>	0.14	1.22	0.12	0.30	1.32	0.04
2030	0.64	0.73	0.59	0.14	0.14	<b>1.51</b>	0.14	1.24	0.14	0.30	1.32	0.04
2031	0.66	0.75	0.60	0.15	0.14	<b>1.54</b>	0.14	1.26	0.15	0.30	1.32	0.04
2032	0.65	0.77	0.60	0.16	0.14	<b>1.55</b>	0.14	1.25	0.16	0.30	1.32	0.04
2033	0.64	0.79	0.61	0.18	0.14	<b>1.56</b>	0.14	1.25	0.18	0.30	1.32	0.04
2034	0.64	0.80	0.61	0.19	0.14	<b>1.58</b>	0.14	1.25	0.19	0.30	1.32	0.04
2035	0.64	0.83	0.62	0.21	0.14	<b>1.60</b>	0.14	1.26	0.21	0.30	1.32	0.04
2036	0.63	0.85	0.63	0.22	0.14	<b>1.62</b>	0.14	1.26	0.22	0.30	1.32	0.04
2037	0.63	0.87	0.63	0.24	0.14	<b>1.64</b>	0.14	1.26	0.24	0.30	1.32	0.04
2038	0.63	0.89	0.64	0.25	0.14	<b>1.65</b>	0.14	1.27	0.25	0.30	1.32	0.04
2039	0.63	0.91	0.64	0.27	0.14	<b>1.67</b>	0.14	1.27	0.27	0.30	1.32	0.04
2040	0.62	0.93	0.65	0.29	0.14	<b>1.69</b>	0.14	1.27	0.29	0.30	1.32	0.04
2041	0.62	0.95	0.65	0.30	0.14	<b>1.71</b>	0.14	1.27	0.30	0.30	1.32	0.04
2042	0.62	0.97	0.65	0.32	0.14	<b>1.73</b>	0.14	1.27	0.32	0.30	1.32	0.04
2043	0.62	0.99	0.66	0.34	0.14	<b>1.75</b>	0.14	1.27	0.34	0.30	1.32	0.04
2044	0.61	1.01	0.66	0.36	0.14	<b>1.77</b>	0.14	1.27	0.36	0.30	1.32	0.04
2045	0.61	1.04	0.66	0.37	0.14	<b>1.79</b>	0.14	1.27	0.37	0.30	1.32	0.04
2046	0.61	1.06	0.67	0.39	0.14	<b>1.81</b>	0.14	1.28	0.39	0.30	1.32	0.04
2047	0.61	1.09	0.67	0.41	0.14	<b>1.83</b>	0.14	1.28	0.41	0.30	1.32	0.04
2048	0.61	1.11	0.68	0.43	0.14	<b>1.85</b>	0.14	1.28	0.43	0.30	1.32	0.04
2049	0.60	1.14	0.68	0.46	0.14	<b>1.88</b>	0.14	1.28	0.46	0.30	1.32	0.04
2050	0.60	1.16	0.68	0.48	0.14	<b>1.90</b>	0.14	1.29	0.48	0.30	1.32	0.04

<표 IV-1-3>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계속)

(단위: GDP 대비, %)

	사회복지소계				
	총지출	국고부담	지방비	보험료	재정적자
2009	6.64	3.54	0.50	2.70	-0.11
2010	6.87	3.67	0.54	2.73	-0.08
2011	6.78	3.48	0.59	2.76	-0.04
2012	6.78	3.39	0.58	2.83	-0.02
2013	6.59	3.30	0.59	2.68	0.01
2014	7.21	3.66	0.61	2.91	0.03
2015	7.40	3.73	0.62	3.01	0.05
2016	7.61	3.79	0.64	3.11	0.07
2017	7.82	3.86	0.66	3.21	0.10
2018	7.81	3.92	0.67	3.09	0.13
2019	8.18	3.98	0.69	3.35	0.15
2020	8.40	4.05	0.71	3.46	0.18
2021	8.65	4.11	0.71	3.62	0.21
2022	8.90	4.17	0.72	3.77	0.24
2023	8.90	4.24	0.73	3.67	0.27
2024	9.29	4.31	0.74	3.94	0.30
2025	9.56	4.38	0.75	4.10	0.33
2026	9.85	4.46	0.77	4.26	0.36
2027	10.10	4.53	0.78	4.40	0.40
2028	10.28	4.70	0.83	4.32	0.43
2029	10.65	4.78	0.85	4.55	0.47
2030	10.94	4.86	0.86	4.71	0.50
2031	11.21	4.91	0.88	4.89	0.53
2032	11.47	4.96	0.89	5.06	0.56
2033	11.55	5.01	0.90	5.04	0.59
2034	11.84	5.07	0.92	5.23	0.62
2035	12.12	5.12	0.93	5.41	0.66
2036	12.42	5.18	0.95	5.61	0.69
2037	12.73	5.23	0.96	5.81	0.72
2038	13.04	5.29	0.98	6.02	0.76
2039	13.30	5.34	0.99	6.17	0.79
2040	13.59	5.40	1.01	6.37	0.82
2041	13.89	5.45	1.02	6.57	0.85
2042	14.17	5.50	1.03	6.76	0.88
2043	14.41	5.54	1.04	6.91	0.91
2044	14.69	5.59	1.05	7.10	0.94
2045	14.98	5.64	1.07	7.29	0.98
2046	15.28	5.70	1.08	7.49	1.01
2047	15.58	5.75	1.10	7.69	1.04
2048	15.83	5.80	1.11	7.84	1.08
2049	16.08	5.85	1.12	8.00	1.11
2050	16.31	5.89	1.13	8.15	1.14

<표 IV-1-4>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1)

(단위: GDP 대비, %)

	보건소계				사회복지소계				
	총지출	국고부담	보험료	재정적자	총지출	국고부담	지방비	보험료	재정적자
2009	2.88	0.57	2.03	0.28	6.64	3.54	0.50	2.70	-0.11
2010	2.94	0.58	2.03	0.33	6.87	3.67	0.54	2.73	-0.08
2011	3.02	0.60	2.03	0.38	6.78	3.48	0.59	2.76	-0.04
2012	3.07	0.59	2.03	0.44	6.78	3.39	0.58	2.83	-0.02
2013	3.12	0.58	2.03	0.51	6.59	3.30	0.59	2.68	0.01
2014	3.18	0.58	2.03	0.56	7.21	3.66	0.61	2.91	0.03
2015	3.24	0.58	2.03	0.62	7.40	3.73	0.62	3.01	0.05
2016	3.30	0.58	2.03	0.68	7.61	3.79	0.64	3.11	0.07
2017	3.36	0.58	2.03	0.75	7.82	3.86	0.66	3.21	0.10
2018	3.43	0.58	2.03	0.81	7.81	3.92	0.67	3.09	0.13
2019	3.49	0.58	2.04	0.87	8.18	3.98	0.69	3.35	0.15
2020	3.55	0.58	2.04	0.93	8.40	4.05	0.71	3.46	0.18
2021	3.62	0.58	2.04	1.01	8.65	4.11	0.71	3.62	0.21
2022	3.69	0.58	2.03	1.08	8.90	4.17	0.72	3.77	0.24
2023	3.77	0.58	2.03	1.15	8.90	4.24	0.73	3.67	0.27
2024	3.84	0.58	2.03	1.22	9.29	4.31	0.74	3.94	0.30
2025	3.91	0.58	2.03	1.30	9.56	4.38	0.75	4.10	0.33
2026	3.98	0.58	2.03	1.37	9.85	4.46	0.77	4.26	0.36
2027	4.06	0.58	2.03	1.44	10.10	4.53	0.78	4.40	0.40
2028	4.12	0.58	2.03	1.51	10.28	4.70	0.83	4.32	0.43
2029	4.19	0.58	2.03	1.58	10.65	4.78	0.85	4.55	0.47
2030	4.26	0.58	2.03	1.65	10.94	4.86	0.86	4.71	0.50
2031	4.32	0.58	2.03	1.72	11.21	4.91	0.88	4.89	0.53
2032	4.39	0.58	2.02	1.78	11.47	4.96	0.89	5.06	0.56
2033	4.45	0.58	2.02	1.84	11.55	5.01	0.90	5.04	0.59
2034	4.51	0.58	2.02	1.90	11.84	5.07	0.92	5.23	0.62
2035	4.56	0.58	2.02	1.96	12.12	5.12	0.93	5.41	0.66
2036	4.62	0.58	2.02	2.02	12.42	5.18	0.95	5.61	0.69
2037	4.68	0.58	2.02	2.08	12.73	5.23	0.96	5.81	0.72
2038	4.73	0.58	2.02	2.14	13.04	5.29	0.98	6.02	0.76
2039	4.79	0.58	2.01	2.20	13.30	5.34	0.99	6.17	0.79
2040	4.84	0.58	2.01	2.25	13.59	5.40	1.01	6.37	0.82
2041	4.90	0.58	2.01	2.31	13.89	5.45	1.02	6.57	0.85
2042	4.95	0.58	2.01	2.36	14.17	5.50	1.03	6.76	0.88
2043	4.99	0.58	2.01	2.41	14.41	5.54	1.04	6.91	0.91
2044	5.04	0.58	2.01	2.45	14.69	5.59	1.05	7.10	0.94
2045	5.09	0.58	2.01	2.50	14.98	5.64	1.07	7.29	0.98
2046	5.13	0.58	2.01	2.55	15.28	5.70	1.08	7.49	1.01
2047	5.18	0.58	2.01	2.59	15.58	5.75	1.10	7.69	1.04
2048	5.22	0.58	2.01	2.64	15.83	5.80	1.11	7.84	1.08
2049	5.26	0.58	2.01	2.68	16.08	5.85	1.12	8.00	1.11
2050	5.29	0.58	2.01	2.71	16.31	5.89	1.13	8.15	1.14

<표 IV-1-5>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재정추계 결과(2)

(단위: GDP 대비, %)

	보건 및 사회복지 합계								
	적자보전 이전					적자보전 이후			
	총지출	국고부담	지방비	보험료	재정적자	총지출	국고부담	지방비	보험료
2009	9.51	4.11	0.50	4.73	0.17	9.51	4.16	0.50	4.85
2010	9.80	4.25	0.54	4.76	0.25	9.80	4.31	0.54	4.95
2011	9.80	4.09	0.59	4.79	0.34	9.80	4.16	0.59	5.06
2012	9.85	3.98	0.58	4.86	0.43	9.85	4.06	0.58	5.20
2013	9.71	3.89	0.59	4.72	0.52	9.71	3.99	0.59	5.13
2014	10.39	4.24	0.61	4.95	0.59	10.39	4.35	0.61	5.43
2015	10.64	4.31	0.62	5.04	0.67	10.64	4.43	0.62	5.59
2016	10.92	4.37	0.64	5.15	0.76	10.92	4.50	0.64	5.77
2017	11.18	4.44	0.66	5.24	0.85	11.18	4.59	0.66	5.94
2018	11.24	4.50	0.67	5.12	0.94	11.24	4.67	0.67	5.90
2019	11.67	4.57	0.69	5.39	1.03	11.67	4.74	0.69	6.24
2020	11.95	4.63	0.71	5.49	1.12	11.95	4.82	0.71	6.42
2021	12.27	4.69	0.71	5.66	1.22	12.27	4.89	0.71	6.67
2022	12.59	4.75	0.72	5.81	1.32	12.59	4.97	0.72	6.91
2023	12.67	4.82	0.73	5.70	1.42	12.67	5.05	0.73	6.89
2024	13.13	4.89	0.74	5.98	1.52	13.13	5.14	0.74	7.25
2025	13.48	4.96	0.75	6.13	1.63	13.48	5.23	0.75	7.50
2026	13.83	5.04	0.77	6.30	1.73	13.83	5.31	0.77	7.75
2027	14.16	5.11	0.78	6.43	1.84	14.16	5.40	0.78	7.98
2028	14.40	5.28	0.83	6.35	1.94	14.40	5.59	0.83	7.98
2029	14.84	5.36	0.85	6.58	2.05	14.84	5.68	0.85	8.31
2030	15.20	5.44	0.86	6.74	2.15	15.20	5.78	0.86	8.56
2031	15.53	5.49	0.88	6.91	2.25	15.53	5.84	0.88	8.81
2032	15.86	5.55	0.89	7.08	2.34	15.86	5.91	0.89	9.06
2033	15.99	5.59	0.90	7.06	2.44	15.99	5.97	0.90	9.12
2034	16.35	5.65	0.92	7.26	2.53	16.35	6.04	0.92	9.40
2035	16.69	5.70	0.93	7.43	2.62	16.69	6.10	0.93	9.65
2036	17.05	5.76	0.95	7.63	2.72	17.05	6.17	0.95	9.93
2037	17.41	5.81	0.96	7.82	2.81	17.41	6.24	0.96	10.20
2038	17.77	5.87	0.98	8.03	2.90	17.77	6.31	0.98	10.49
2039	18.09	5.92	0.99	8.19	2.99	18.09	6.37	0.99	10.72
2040	18.44	5.97	1.01	8.38	3.07	18.44	6.44	1.01	10.99
2041	18.78	6.03	1.02	8.58	3.16	18.78	6.50	1.02	11.26
2042	19.11	6.07	1.03	8.77	3.24	19.11	6.56	1.03	11.52
2043	19.40	6.12	1.04	8.92	3.32	19.40	6.62	1.04	11.74
2044	19.73	6.17	1.05	9.11	3.40	19.73	6.68	1.05	12.00
2045	20.07	6.22	1.07	9.30	3.48	20.07	6.74	1.07	12.26
2046	20.41	6.27	1.08	9.50	3.56	20.41	6.80	1.08	12.53
2047	20.76	6.33	1.10	9.69	3.64	20.76	6.86	1.10	12.79
2048	21.05	6.38	1.11	9.85	3.71	21.05	6.92	1.11	13.02
2049	21.34	6.42	1.12	10.01	3.78	21.34	6.98	1.12	13.24
2050	21.61	6.47	1.13	10.16	3.85	21.61	7.03	1.13	13.44

- EU에서 2006년 실시한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국제비교
-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출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대상으로 함
  -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에 불과하지만 25개 EU회원국의 평균은 21.7%에 달함
  -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이 EU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50년 지출규모가 2004년 대비 13.9%p(EU국가 전체 및 평균은 각각 3.4%p 및 4.2%p)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규모는 GDP 대비 22.4%로 EU국가 전체 및 평균인 26.8% 및 25.9%에 비해 여전히 낮음

<표 IV-1-6> 장기재정전망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우리나라	1.8	3.8	8.3	2.5	1.8	2.8	0.0	0.7	1.1
EU전체	10.6	1.3	2.2	6.4	1.0	1.6	0.9	0.3	0.7
EU평균	9.5	1.8	3.2	5.6	0.9	1.4	0.9	0.3	0.7

	노동(실업 등)			교육			합계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수준	2004년대비 변동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2004	2030	2050
우리나라	0.8	0.7	1.1	3.4	0.6	0.6	8.5	7.5	13.9
EU전체	0.9	-0.3	-0.3	4.6	-0.7	-0.6	23.4	1.6	3.4
EU평균	0.8	-0.2	-0.2	4.9	-0.9	-0.9	21.7	2.0	4.2

출처: 우리나라는 본 연구결과(교육지출은 박형수 등(2007)), EU는 Economic Policy Committee and the European Commission(2006)

□ 본 연구의 재정추계 결과를 OECD에서 발표하는 사회보장비(SOCX) 통계기준으로 환산하여 OECD 국가들과의 공공사회지출에 대한 국제비교

○ 2009년 9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GDP 대비 7.4%였음

○ 사회복지지출 추계항목은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비(SOCX) 통계기준 상의 9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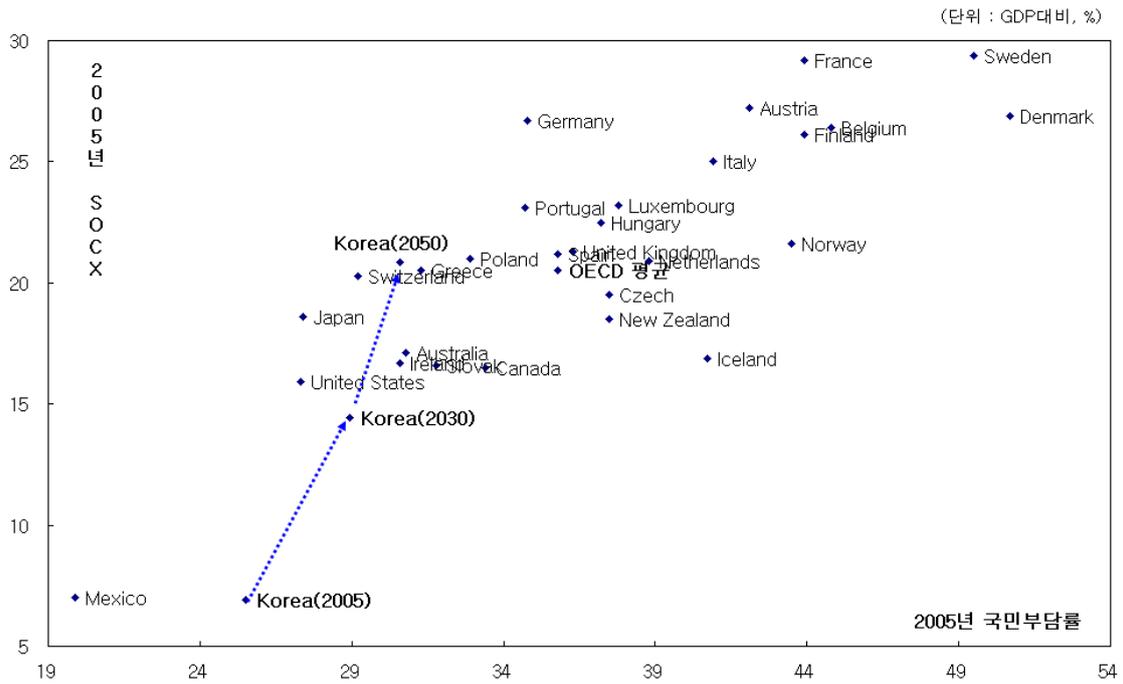
- 다만 주택 분야 지출규모는 사회보장비(SOCX) 통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방자체사업에 의한 지방비 부담 및 국비와의 매칭사업 중 누락분은 2007년 기준 약 5.4조원(2007년 GDP 대비 0.5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V-1-7> OECD 사회보장비(SOCX) 통계 포괄범위

구분	해당 사회복지지출 항목
1. 노령	- 4대 공적연금                      - 기초노령연금
2. 유족	- 중증장애인연금
3. 근로무능력	- 산재보험(요양급여 제외)                      - 보훈(보상)
4. 보건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요양급여) - 보건의료                                      - 식품의약품안전
5. 가족	- 보육    - 가족 및 여성 - 보훈(복지, 기타)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고용보험(기타)                              - 기타 노동
7. 실업	- 고용보험(실업급여)
8. 주거	
9. 기타	- 기초생활보장                                      - 기타 노인/청소년 - 취약계층지원(장애수당, 기타)                      - 사회복지일반

- 추계결과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8.6%에서 2050년 20.8%로 12.2%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수치는 2005년 OECD국가 평균 사회보장비 지출규모(20.5%)와 비슷한 수준

[그림 IV-1-2] OECD 공공사회지출 규모 추계결과



주: 지방자체사업에 의한 지방복지지출 규모 및 국비와의 매칭사업중 누락분(2007년 기준 약 5.4조원, GDP 대비 0.55%) 포함

<표 IV-1-8> OECD 공공사회지출(SOCX) 전망결과

(단위: GDP 대비, %)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합계	
									계	(지방비 추가)
2009	2.21	0.53	3.15	0.44	0.39	0.35	-	0.99	8.06	8.62
2010	2.33	0.53	3.26	0.48	0.37	0.34	-	0.99	8.30	8.85
2011	2.43	0.55	3.41	0.49	0.31	0.32	-	0.93	8.45	9.00
2012	2.57	0.56	3.49	0.47	0.23	0.30	-	0.89	8.51	9.06
2013	2.46	0.58	3.57	0.46	0.16	0.31	-	0.85	8.39	8.94
2014	2.72	0.59	3.65	0.48	0.32	0.31	-	0.98	9.06	9.62
2015	2.86	0.61	3.73	0.51	0.32	0.32	-	0.98	9.32	9.87
2016	3.01	0.62	3.80	0.53	0.32	0.32	-	0.98	9.59	10.15
2017	3.15	0.63	3.88	0.55	0.33	0.33	-	0.98	9.86	10.41
2018	3.08	0.64	3.97	0.57	0.33	0.33	-	0.98	9.91	10.47
2019	3.39	0.66	4.05	0.59	0.33	0.34	-	0.99	10.35	10.90
2020	3.55	0.67	4.13	0.60	0.34	0.34	-	0.99	10.62	11.18
2021	3.78	0.68	4.22	0.58	0.34	0.35	-	1.00	10.95	11.50
2022	3.99	0.70	4.32	0.57	0.34	0.36	-	1.00	11.27	11.82
2023	3.95	0.71	4.41	0.56	0.35	0.36	-	1.01	11.35	11.90
2024	4.29	0.73	4.50	0.55	0.35	0.37	-	1.01	11.81	12.36
2025	4.51	0.74	4.60	0.55	0.36	0.37	-	1.02	12.15	12.70
2026	4.74	0.76	4.70	0.54	0.36	0.38	-	1.02	12.51	13.06
2027	4.95	0.78	4.79	0.53	0.36	0.39	-	1.03	12.83	13.39
2028	5.08	0.80	4.89	0.53	0.37	0.39	-	1.03	13.08	13.63
2029	5.39	0.82	4.99	0.52	0.37	0.40	-	1.03	13.51	14.07
2030	5.62	0.84	5.08	0.51	0.37	0.41	-	1.04	13.87	14.43
2031	5.84	0.86	5.17	0.50	0.38	0.41	-	1.05	14.21	14.76
2032	6.07	0.87	5.25	0.49	0.37	0.41	-	1.06	14.54	15.09
2033	6.11	0.89	5.33	0.48	0.37	0.41	-	1.07	14.67	15.22
2034	6.36	0.91	5.42	0.47	0.37	0.40	-	1.08	15.02	15.58
2035	6.60	0.93	5.50	0.46	0.37	0.40	-	1.09	15.36	15.92
2036	6.86	0.95	5.58	0.45	0.37	0.40	-	1.10	15.72	16.28
2037	7.12	0.97	5.66	0.44	0.37	0.40	-	1.11	16.08	16.64
2038	7.39	0.99	5.74	0.43	0.37	0.40	-	1.12	16.45	17.00
2039	7.61	1.01	5.82	0.42	0.37	0.40	-	1.13	16.76	17.32
2040	7.86	1.03	5.90	0.41	0.37	0.39	-	1.15	17.11	17.67
2041	8.12	1.05	5.97	0.41	0.37	0.39	-	1.16	17.46	18.01
2042	8.36	1.07	6.03	0.40	0.36	0.39	-	1.17	17.79	18.34
2043	8.56	1.09	6.10	0.39	0.36	0.39	-	1.18	18.08	18.63
2044	8.80	1.11	6.16	0.39	0.36	0.39	-	1.19	18.41	18.96
2045	9.05	1.13	6.23	0.38	0.36	0.39	-	1.20	18.74	19.30
2046	9.31	1.16	6.29	0.38	0.36	0.38	-	1.20	19.09	19.64
2047	9.56	1.18	6.36	0.38	0.36	0.38	-	1.21	19.43	19.99
2048	9.77	1.20	6.42	0.38	0.36	0.38	-	1.21	19.73	20.28
2049	9.98	1.23	6.47	0.38	0.36	0.38	-	1.22	20.02	20.57
2050	10.17	1.25	6.52	0.37	0.36	0.38	-	1.23	20.28	20.84

<표 IV-1-9> OECD 공공사회지출의 국제비교 : 2005년 기준<sup>1)</sup>

(단위: GDP 대비, %)

	1.노령	2.유족	3.근로무 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합계
Australia	4.4	0.2	2.4	5.9	2.8	0.4	0.5	0.3	0.1	17.1
Austria	12.6	0.4	2.4	6.8	2.8	0.6	1.1	0.1	0.3	27.2
Belgium	7.2	2.0	2.3	7.3	2.6	1.1	3.3	0.1	0.4	26.4
Canada	3.7	0.4	0.9	6.8	1.0	0.3	0.6	0.4	2.2	16.5
Czech	7.5	0.2	2.4	6.3	1.7	0.3	0.6	0.1	0.4	19.5
Denmark	7.2	0.0	4.3	5.9	3.2	1.7	2.8	0.7	1.0	26.9
Finland	8.5	0.9	3.8	6.2	3.0	0.9	2.0	0.3	0.5	26.1
France	10.9	1.8	1.9	7.8	3.0	0.9	1.7	0.8	0.4	29.2
Germany	11.2	0.4	1.9	7.7	2.2	1.0	1.7	0.6	0.2	26.7
Greece	10.8	0.8	0.9	5.6	1.1	0.1	0.4	0.5	0.4	20.5
Hungary	8.8	0.3	2.8	6.0	3.1	0.3	0.6	0.5	0.1	22.5
Iceland	3.8	0.0	2.7	6.3	3.0	0.1	0.3	0.2	0.5	16.9
Ireland	2.9	0.8	1.6	6.5	2.5	0.6	0.9	0.5	0.3	16.7
Italy	11.6	2.5	1.7	6.8	1.3	0.6	0.5	0.0	0.0	25.0
Japan	8.6	1.3	0.7	6.3	0.8	0.3	0.3	(a)	0.3	18.6
Korea(2005)	1.5	0.2	0.6	3.2	0.3	0.1	0.2	(a)	0.7	6.9
Korea(2030)	5.62		0.84	5.08	0.51	0.37	0.41	-	1.04	14.43
Korea(2050)	10.17		1.25	6.52	0.37	0.36	0.38	-	1.23	20.84
Luxembourg	5.2	2.0	3.3	7.0	3.6	0.5	1.0	0.2	0.4	23.2
Mexico	1.0	0.3	0.1	2.9	1.0	0.0	(a)	1.1	0.5	7.0
Netherlands	5.5	0.3	3.6	6.0	1.6	1.3	1.5	0.3	0.6	20.9
New Zealand	4.2	0.1	2.9	6.9	2.6	0.4	0.4	0.8	0.2	18.5
Norway	6.3	0.3	4.4	5.8	2.8	0.7	0.5	0.1	0.6	21.6
Poland	10.4	1.0	2.7	4.3	1.1	0.4	0.5	0.1	0.4	21.0
Portugal	8.7	1.6	2.3	7.2	1.2	0.7	1.2	0.0	0.2	23.1
Slovak	6.2	0.2	1.7	5.3	2.1	0.3	0.3	0.0	0.5	16.6
Spain	7.9	0.5	2.5	5.8	1.1	0.8	2.2	0.2	0.2	21.2
Sweden	9.6	0.6	5.6	6.8	3.2	1.3	1.2	0.5	0.6	29.4
Switzerland	6.6	0.4	3.3	6.1	1.3	0.7	0.9	0.2	0.7	20.3
Turkey	6.4	1.6	0.2	5.4	0.0	0.0	0.1	(m)	(m)	13.7
United Kingdom	6.1	0.2	2.4	7.0	3.2	0.5	0.3	1.4	0.2	21.3
United States	5.3	0.8	1.3	7.0	0.6	0.1	0.3	(a)	0.6	15.9
OECD 평균	7.0	0.7	2.3	6.2	2.0	0.6	1.0	0.4	0.7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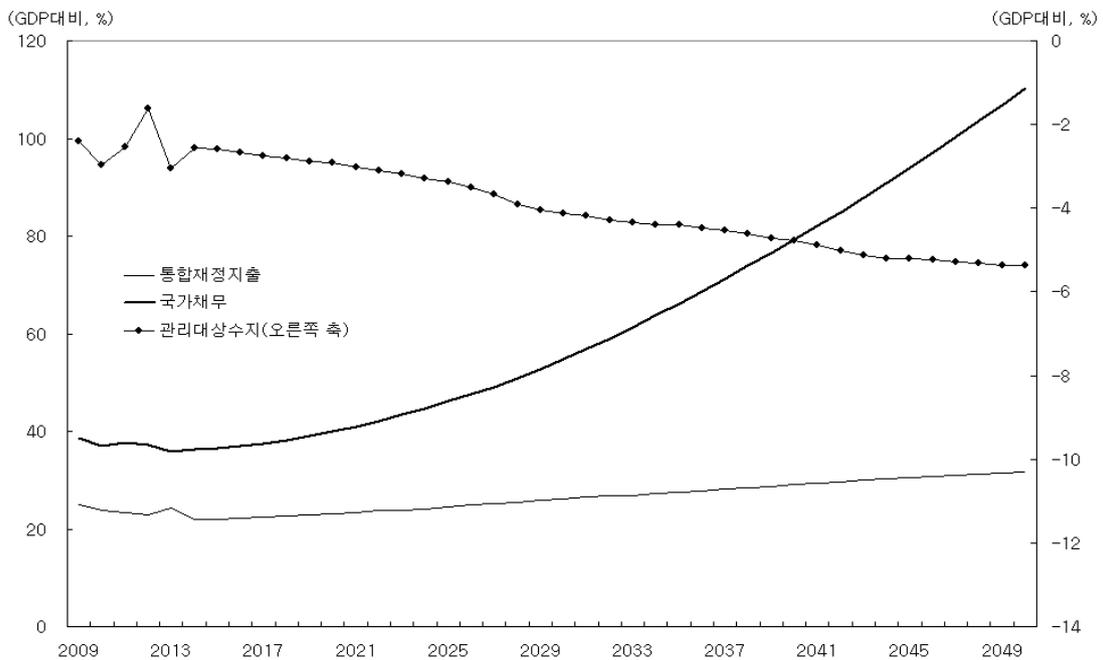
주: 1) 포르투갈은 2004년

## 2. 장기재정전망

- 한편, 추계된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기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
  - 제Ⅱ장 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수입은 조세부담률 20.8%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사회보험재정의 전망과정에서 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부담률 및 세외수입 전망결과를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재정부담 규모 기준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규모는 2050년 기준 GDP 대비 16.25%
    - 동 수치는 <표 IV-1-5>의 적자보전 이후의 2050년 국고부담 7.03%에 <표 IV-1-4>의 공적연금(국고부담분 제외) 7.46%(=9.10%-1.64%)와 100% 보험료로 운용되는 고용보험(0.60%) 및 산재보험(1.16%) 지출규모를 합산하여 산출
  - 제Ⅱ장 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규모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3년 GDP 대비 비율 13.60%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이가지출을 제외한 기타 일반공공행정 지출규모 2.60%도 일정하다고 전제
    - 매년도 이가지출 규모는 제Ⅱ장 4절에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당해연도 재정수지 규모 및 전년말 국가채무 규모에 연동되어 계산됨
  - 이상과 같이 구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를 이용하여 재정수지를 구한 후 2013년 말 국가채무비율(35.9%,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에 연동하여 이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정
- 추계결과 2014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시킬 경우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 116%에 달할 전망
  - 세입 및 세출의 주요 항목별 추계결과는 각각 <표 Ⅱ-4-2> 및 <표 Ⅱ-4-3>에 정리

- 통합재정수입, 지출 및 수지와 국가채무비율 전망결과는 <표 IV-2-1>에 정리
- 2050년 116%라는 우리 재정의 장기전망 결과는 <표 IV-2-2>에 정리된 EU국가들의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16% 또는 125%와 비슷한 수준
- 이러한 추계결과는 2007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30.7%로 EU국가 평균 65.9% 또는 59.3%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재정악화 속도가 EU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이러한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거의 사라지게 됨을 시사

[그림 IV-2-1]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



<표 IV-2-1> 중장기 재정추계 결과

(단위: GDP 대비, %)

	통합재정 수입	통합재정 지출	통합재정 수지	사회보장 기금수지	관리대상 수지	국가채무
2009	25.51	24.89	0.62	3.01	-2.40	38.50
2010	23.49	23.93	-0.43	2.54	-2.97	36.89
2011	23.48	23.46	0.02	2.56	-2.54	37.62
2012	23.84	22.98	0.86	2.48	-1.62	37.15
2013	23.72	24.39	-0.67	2.37	-3.04	35.89
2014	23.52	21.99	1.53	2.29	-0.76	34.40
2015	23.65	22.06	1.59	2.37	-0.78	32.93
2016	23.63	22.14	1.49	2.32	-0.83	31.77
2017	23.72	22.25	1.47	2.37	-0.90	30.84
2018	23.80	22.13	1.67	2.42	-0.75	29.89
2019	23.87	22.41	1.45	2.47	-1.01	29.32
2020	23.96	22.56	1.39	2.50	-1.11	28.95
2021	23.57	22.79	0.79	2.07	-1.28	28.76
2022	23.64	23.01	0.63	2.10	-1.47	28.83
2023	23.70	22.99	0.71	2.11	-1.40	28.90
2024	23.76	23.35	0.41	2.13	-1.71	29.32
2025	23.86	23.61	0.24	2.15	-1.90	29.94
2026	23.91	23.91	0.00	2.15	-2.15	30.72
2027	23.96	24.19	-0.23	2.16	-2.39	31.73
2028	24.03	24.35	-0.33	2.18	-2.51	32.85
2029	24.06	24.73	-0.67	2.17	-2.85	34.34
2030	24.12	25.04	-0.91	2.17	-3.08	36.05
2031	23.94	25.32	-1.39	1.94	-3.32	37.99
2032	23.95	25.61	-1.66	1.93	-3.59	40.17
2033	23.98	25.70	-1.72	1.93	-3.65	42.42
2034	24.01	26.00	-1.99	1.92	-3.91	44.96
2035	24.06	26.29	-2.23	1.90	-4.13	47.70
2036	24.07	26.59	-2.52	1.87	-4.39	50.69
2037	24.07	26.91	-2.84	1.84	-4.67	53.93
2038	24.07	27.25	-3.17	1.80	-4.97	57.41
2039	24.06	27.55	-3.49	1.74	-5.23	61.07
2040	24.08	27.91	-3.83	1.68	-5.51	64.91
2041	23.95	28.28	-4.33	1.52	-5.84	68.99
2042	23.93	28.64	-4.71	1.44	-6.16	73.30
2043	23.89	28.95	-5.06	1.37	-6.43	77.83
2044	23.85	29.28	-5.43	1.28	-6.71	82.61
2045	23.85	29.59	-5.75	1.18	-6.93	87.62
2046	23.79	29.89	-6.10	1.07	-7.18	92.87
2047	23.73	30.18	-6.46	0.95	-7.41	98.34
2048	23.66	30.45	-6.78	0.83	-7.62	103.98
2049	23.60	30.73	-7.13	0.70	-7.83	109.74
2050	23.56	31.01	-7.46	0.56	-8.01	115.62

<표 IV-2-2> 장기재정추계 결과의 국제비교

Table I.4.4:

**Projected debt developments in the EU Member States (% of GDP)**

	Gross debt	'2007' scenario			Programme' scenario		
	2007	2010	2030	2050	2010	2030	2050
BE	84.9	76	60	145	75	31	80
BG <sup>(1)</sup>	19.8	17	-97	-269	17	-97	-269
CZ	30.4	34	116	386	30	76	282
DK	25.6	15	-64	-131	19	-26	-49
DE	64.9	59	43	89	60	22	38
EE	2.7	2	-43	-129	2	-41	-123
IE	25.1	26	33	139	29	58	198
EL <sup>(1)</sup>	93.4	87	90	136	83	33	-7
ES	36.2	29	-27	41	30	-14	75
FR	64.2	64	88	173	62	43	70
IT	105.0	101	86	133	99	28	-9
CY	60.0	39	-31	20	44	18	130
LV	9.4	10	18	69	6	-29	-52
LT	17.6	18	27	88	14	-20	-32
LU	6.9	8	47	197	7	26	155
HU	65.4	68	113	312	63	70	205
MT	62.9	57	57	49	53	17	-41
NL	46.8	44	63	173	41	34	112
AT	59.9	56	37	57	55	24	25
PL	44.9	44	10	-36	42	-20	-117
PT	64.4	63	70	168	60	33	74
RO <sup>(1)</sup>	11.9	15	72	139	15	58	105
SI	25.6	23	56	255	23	45	227
SK	30.6	31	66	212	30	32	116
FI	35.3	26	-45	-61	29	-2	36
SE	39.7	25	-43	-75	25	-57	-105
UK	43.9	47	92	223	45	59	147
Euro area <sup>(2)</sup>	65.9	62	52	116	61	25	52
EU <sup>(2)</sup>	59.3	56	54	125	55	27	61

Notes:

<sup>(1)</sup> No commonly agreed pension projections were available for Greece and the rise in age-related expenditure is therefore underestimated. Pension expenditure was projected to rise between 2005 and 2050 by 10.2% in the 2002 update of the Greek stability programme. No commonly agreed long-term projections for Bulgaria and Romania exist.

<sup>(2)</sup> The aggregate results for the euro area exclude Greece and for the European Union additionally exclude Bulgaria and Romania.

Source: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Commission services.

출처: EU, 『Public finance in EMU 2008』

### 3. 정책 시뮬레이션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중장기 사회복지 지출 및 전체 재정 전망모형을 활용하면 세입정책 또는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정책 변경에 따른 가상적인 재정지표의 변화를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음
  - 여기에서는 한가지 예로써 baseline 시나리오하에서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시킨다는 가정을 변경할 경우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볼 수 있음
    - 목표 ①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EU의 가이드라인인 6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경우
    - 목표 ②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감축하는 경우
  - 계산결과 목표 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0.38%p씩 2050년까지 총 3.04%p를 인상시켜야 하며, 목표 ②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률 인상규모는 매 5년마다 0.576%p씩 2050년까지 총 4.61%p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3-1> 정책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단위: GDP 대비, %)

	baseline			목표 ① 60%(EU 가이드라인) 목표			목표 ② 38.5%(2009년 수준) 목표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국가채무 비율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국가채무 비율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국가채무 비율
2009	20.45	26.50	38.50	20.45	26.50	38.50	20.45	26.50	38.50
2010	20.04	26.40	36.89	20.04	26.40	36.89	20.04	26.40	36.89
2011	20.11	26.80	37.62	20.11	26.80	37.62	20.11	26.80	37.62
2012	20.42	27.40	37.15	20.42	27.40	37.15	20.42	27.40	37.15
2013	20.76	28.10	35.89	20.76	28.10	35.89	20.76	28.10	35.89
2014	20.76	27.39	36.20	20.76	27.46	34.40	20.76	27.46	34.40
2015	20.76	27.49	36.43	21.14	27.95	32.54	21.34	28.14	32.34
2016	20.76	27.55	36.88	21.14	28.02	30.98	21.34	28.21	30.58
2017	20.76	27.61	37.51	21.14	28.10	29.67	21.34	28.29	29.06
2018	20.76	27.70	38.24	21.14	28.17	28.33	21.34	28.36	27.52
2019	20.76	27.77	39.09	21.14	28.23	27.37	21.34	28.43	26.37
2020	20.76	27.87	40.04	21.52	28.70	26.22	21.91	29.09	24.82
2021	20.76	27.95	41.01	21.52	28.80	25.26	21.91	29.19	23.46
2022	20.76	28.03	42.13	21.52	28.89	24.56	21.91	29.28	22.37
2023	20.76	28.15	43.38	21.52	28.98	23.87	21.91	29.37	21.27
2024	20.76	28.23	44.74	21.52	29.07	23.52	21.91	29.47	20.53
2025	20.76	28.35	46.15	21.90	29.57	22.99	22.49	30.16	19.41
2026	20.76	28.44	47.53	21.90	29.67	22.64	22.49	30.26	18.47
2027	20.76	28.54	49.04	21.90	29.77	22.51	22.49	30.36	17.76
2028	20.76	28.66	50.83	21.90	29.87	22.50	22.49	30.46	17.15
2029	20.76	28.76	52.77	21.90	29.96	22.84	22.49	30.55	16.90
2030	20.76	28.89	54.79	22.28	30.46	23.02	23.06	31.24	16.30
2031	20.76	28.98	56.88	22.28	30.56	23.43	23.06	31.34	15.92
2032	20.76	29.04	59.07	22.28	30.63	24.09	23.06	31.41	15.80
2033	20.76	29.14	61.34	22.28	30.70	24.82	23.06	31.49	15.73
2034	20.76	29.21	63.75	22.28	30.79	25.82	23.06	31.57	15.94
2035	20.76	29.31	66.19	22.66	31.28	26.65	23.64	32.26	15.79
2036	20.76	29.38	68.72	22.66	31.36	27.73	23.64	32.34	15.89
2037	20.76	29.45	71.31	22.66	31.44	29.08	23.64	32.42	16.26
2038	20.76	29.51	73.94	22.66	31.52	30.67	23.64	32.50	16.89
2039	20.76	29.58	76.62	22.66	31.61	32.46	23.64	32.59	17.71
2040	20.76	29.68	79.31	23.04	32.10	34.06	24.22	33.27	18.15
2041	20.76	29.73	82.05	23.04	32.16	35.90	24.22	33.34	18.84
2042	20.76	29.78	84.88	23.04	32.24	37.98	24.22	33.41	19.76
2043	20.76	29.83	87.80	23.04	32.30	40.26	24.22	33.48	20.88
2044	20.76	29.88	90.83	23.04	32.37	42.78	24.22	33.55	22.23
2045	20.76	29.98	93.91	23.42	32.87	45.13	24.79	34.24	23.21
2046	20.76	30.04	97.09	23.42	32.94	47.72	24.79	34.31	24.43
2047	20.76	30.10	100.34	23.42	33.02	50.54	24.79	34.39	25.88
2048	20.76	30.16	103.62	23.42	33.09	53.54	24.79	34.46	27.52
2049	20.76	30.21	106.92	23.42	33.16	56.69	24.79	34.53	29.33
2050	20.76	30.32	110.22	23.80	33.65	59.58	25.37	35.21	30.67

## 참 고 문 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호.
- \_\_\_\_\_, 『사업장 업무편람』, 각 호.
- \_\_\_\_\_,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심사 민원상담 사례집』, 2009.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무환·최기홍, 2002.
- \_\_\_\_\_, 『연금부문과 경제부문을 연계한 거시계량모형(I)』, 박무환·한성신·서승환, 2003.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각 호.
-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8.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호.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호.
- \_\_\_\_\_,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각 호.
- \_\_\_\_\_, 『보육사업 안내』, 각 호.
- \_\_\_\_\_, 『아동·청소년백서』, 각 호.
- \_\_\_\_\_,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각 호.
- \_\_\_\_\_, 『09년 예산안 관련자료』, 내부자료, 2008.
- \_\_\_\_\_, 『의료급여사업 안내』, 각 호.
- \_\_\_\_\_, 『자활사업 안내』, 각 호.
- \_\_\_\_\_,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각 호.
- \_\_\_\_\_,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보험연구소, 2008. 12.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윤상용·김태완·강민희·최현수·이병화, 2008.
- \_\_\_\_\_,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변용찬 외 11명, 2008.

- 대한민국정부(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 정부·민간합동작업단(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 8. 31.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06. 11.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호.
- 김성숙·권문일·배준호·이용하·김순옥·박태영·정해식,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2008. 12.
- 박형수, 『중장기 조세 및 재정전망』,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박형수·류덕현,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박형수 외 6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07-04, 2007.
- 배성일·최기춘·신형준·김경하·이동현,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2008.
- 이혜원·김성천·오승환·이태수·정익중,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아동복지학회지』, 제28호, 2009.
- 최경수·홍기석·한진희·임경목·문형표·박창균·신인석·안종범·김용하·이철희,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06, 2003.
- 최준욱·전병목, 『인구구조 변화가 조세·재정정책(I):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3-08, 2003.
- \_\_\_\_\_, 『인구고령화와 재정』,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고령화대비 협동연구시리즈 04-07, 2004.
- 최준욱 편,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경제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0-05, 2005.
- Gruenberg E.M., The failure of success, *Mil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55, pp.3-24, 1997.
- EU, *Public finance in EMU*, 2008.

- EPC and European Commission), *The impact of ageing on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s for the EU25 Member States on pensions, health care, long-term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 transfers(2004-2005)*, DG ECFIN Special Report No. 1, 2006.
- Fries J.F., Ageing, natural death, and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03, pp.130-135. 1980.
- \_\_\_\_\_,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61, pp.397-419, 1983.
- \_\_\_\_\_,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near or far?,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67, pp.208-232, 1989.
- \_\_\_\_\_, Compression of morbidity: life span, disability, and health care costs, *Facts and Research in Gerontology*, Vol.7, pp.183-190, 1993.
- \_\_\_\_\_, Measuring and Monitoring Success in Compressing Morbidity,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139, pp.455-459, 2003.
- Guralnik J.M., Prospects for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Evidence from the Alameda County stud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3, pp.138-153, 1991.
- Manton K.G., Changing concept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60, pp.183-244, 1982.
- Manton K.G., E.Stallard, L.Corder, Changes in morbidity and chronic disability in the U.S. elderly population: Evidence from the 1982, 1984 and 1989 National Long Term Care Survey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No.50(4), pp.S194-S204, 1995.
- Nusselder W., Compression of Morbidity, in: J.-M.Robine, C.Jagger, C.D.Mathers, E.M.Crimmins, R.M.Suzman (eds.), *Determining Health Expectancies*, John Wiley and Sons, Chichester, pp.35-58, 2003.
- Oeppen J. and J.W.Vaupel, *Broken Limits to Life Expectancy*, *Science*, Vol.296, pp.1029-1031, 2002.

- Olshansky S.J., M.A.Rudberg, B.A.Carnes, C.K.Cassel, J.A.Brody, Trading off longer life for worsening health,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3, pp.194-216, 1991.
- Robine J.M. and J.W.Vaupel, *Emergence of supercentenarians in low mortality countries*, 2002. (available at: <http://user.demogr.mpg.de/jwv/pdf/AmActJournal2002.pdf>.)
- Robine J.M., C.Jagger, H.van Oyen, *Interpreting national evidence on the evolution of morbidity and disability prevalence over time and perspectives for extended healthy life expectancy*, presentation at the Joint EU-OECD workshop, February 21-22, 2005.
- Verbrugge L.M., Longer life but worsening health? Trends in health and mortality of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62, pp.475-519, 1984.